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50호 2015. 12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특집 광복 70주년·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한일 역사 현안과 과제

- 한철호 | 일본 수로국 아마기함[天城艦]의 울릉도 최초 측량과 독도인식 7
- 윤대원 | '병합조칙'의 이중적 성격과 '병합칙유'의 동시 선포 경위 49
- 허수열 | 식민지기 조선인 1인당 소득과 소비에 관한 논의의 검토 85
- 박진우 | 일본의 패전과 천황의 전쟁 책임 - '성단'과 평화주의의 허구 121
- 최영호 | 한국과의 어업협정 교섭을 위한 1952년 일본 측 기본방침에 관한 연구 159
- 남상구 | 야스쿠니신사 문제의 현황과 연구 동향 201
- 김관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구제에 관한 일고(一考) 239

서평

- 최희식 |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지혜의 모색 - 和田春樹, 『慰安婦問題の解決のために: アジア女性基金の経験から』(平凡社, 2015) 275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283

Contents

Special Issue **Korea's 7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from Japanese occupation, and 50 years after normaliz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Current affairs and future challenges (between Korea and Japan)**

Han Cheolho | The First Survey of Ulleungdo by the Warship *Amagi* of the Japanese Hydrographic Office and the Office's Recognition of Dokdo 7

Yun Daewon | The Dual Nature of the "Imperial Edict for Annexation" and the Simultaneous Proclamation Circumstances of the "Imperial Instructions for Annexation" 49

Huh Sooyoul | Critical Review of the Theory of Colonial Modernity 85

Park Jinwoo | The Defeat of Japan in World War II and the War Responsibility of the Emperor of Japan 121

Choi Youngho | Japan's Basic Policy for the Negotiation of the Fisheries Agreement with Korea in 1952 159

Nam Sanggu | Current Status and Research Trends of the Yasukuni Shrine Issue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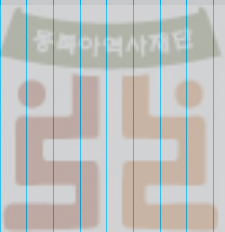
Kim Gwanwon | The Consideration of the Resolution for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239

Book Review

Choi Heesik | Search for the practical wisdom to resolve the "comfort women" issue 275

특집

광복 70주년 ·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한일 역사 현안과 과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 수로국 아마기함[天城艦]의 울릉도 최초 측량과 독도인식

한철호 ■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1878년 6월 일본 해군 수로국¹⁾의 아마기함[天城艦]은 원산 등 동해 연안 지역을 조사한 데 이어 ‘竹島’와 ‘松島’(울릉도)를 측량하였다. 이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처음 조선의 동해와 울릉도를 측량한 것이었으며, 역시 최초로 ‘竹島’가 존재하지 않는 ‘아르고노트 섬(Argonaut Island)’임을 확인한 것이었다. 이어 1880년 6월에도 아마기함은 다시 파견되어 동해와 울릉도를 측량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원산을 개항장으로 선정했고, 지명과 소속의 혼란을 빚었던 ‘松島’가 조선 영토인 울릉도임을 인식했으며, 나아가 독도를 직간접적으로 새롭게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1878년 아마기함의 울릉도 측량과 독도인식

※ 투고: 2015년 3월 25일, 심사 완료: 2015년 7월 28일, 게재 확정: 2015년 11월 23일

1) 일본 수로국은 1871년 10월 병부성 해군부 수로국, 1872년 4월 해군성 수로국과 11월 해군경 직할 수로료, 1876년 9월 해군 수로국, 1886년 4월 해군 수로부를 거쳐 이해 6월부터 수로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따라서 아마기함 파견 당시의 명칭은 해군 수로국이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이들을 통칭해서 수로부로 적기도 하였다.

에 관한 연구는 1880년 측량에 초점이 맞춰져 왔던 일본의 독도 강점과 그 논리의 문제점을 새롭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지금까지 1878년과 1880년 두 차례에 걸친 아마기함의 울릉도 측량에 대한 한일 양국 간의 해석은 사뭇 다르다. 일본 측은 「조선전도(朝鮮全圖)」(1875) 등에서 울릉도를 ‘松島’로 표기하고 그 서북방의 아르고노트 섬의 위치에 ‘竹島’라는 표기해놓은 것은 필립 프란츠 폰 시볼트(Philipp Franz B. von Siebold)계의 지도에 의거했음을 나타내며, 아르고노트 섬이 가공의 섬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松島를 ‘磯竹島’에 끼워 맞추는 오류를 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로 말미암아 ‘松島’와 ‘竹島’의 도명(島名)이 혼란해졌지만, 1880년 아마기함의 측량으로 ‘松島’를 울릉도로 확인한 뒤 일본은 곧잘 ‘竹島’(독도)를 ‘리양코루도’ 혹은 ‘메네라이뢰(瀨) 및 오리우쓰뢰’ 등으로 부르면서 자국령으로 인식해왔다는 것이다.²⁾

하지만 일본학자들 중 일부는 일본에서 도명의 혼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해석을 달리하였다. 서양에서 제작된 지도나 해도에 영향을 받아 「조선전도」와 「일본전도(日本全圖)」(1877) 등에 울릉도가 竹島와 松島 둘로 그려지고 독도는 누락되는 등 두 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이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이러한 사실은 竹島(독도)가 고래(古來)로 일본의 고유영토였다는 견해에 대한 반증이라고 파악했던 것이다.³⁾

한국 측도 1860년대 이미 구미 제국의 지도에서 사라진 아르고노트 섬을 넣는 오류를 범하거나 도명의 혼란을 초래한 것 자체는 당시 일본 정부가 울릉

2)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된 ‘竹島’와 ‘松島’의 도명 혼란설은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川上健三, 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下條正男, 2004,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藝春秋; 일본외무성 홈페이지.

3) 堀和生, 1987, 「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 24; 内藤正中, 2000, 『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朝關係史』, 多賀出版(나이토 세이추, 권오엽·권정 역, 2005, 『독도와 죽도』, 제이앤씨); 内藤正中·朴炳涉, 2007, 『竹島=獨島論争—歴史資料から考える』, 新幹社(박병섭·나이토 세이추 지음, 호사카 유지 옮김, 2008, 『독도=다케시마 논쟁—역사자료를 통한 고찰』, 보고사).

도와 독도에 관한 명확한 정보가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조선전도」 등에 실린 松島와 竹島가 그 위치상 아르고노트 섬과 울릉도라고 하더라도 실질상 고래의 울릉도와 독도인식이 반영된 만큼, 이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지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나아가 한국학자들은 아마기함의 울릉도 측량을 통해 일본 수로부가 울릉도와 그 부속섬인 독도를 조선령으로 인식하고 독도를 강점한 직후까지도 『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에 수록한 사실을 근거로 일본 정부가 줄곧 독도를 조선령으로 확실하게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⁴⁾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중요한 근거로 삼아왔던 기타자와 마사노부[北澤正誠]의 『죽도고증(竹島考證)』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아마기함의 울릉도(松島) 측량을 최초로 정리한 기타자와는 「죽도판도소속고(竹島版圖所屬考)」에서 분명하게 1878년과 1880년 두 차례에 걸친 아마기함의 松島 측량을 모두 기록했지만, 「죽도판도소속고」의 원본적인

4) 강만길, 1985, 「외국의 문헌상에 나타난 독도」, 『독도연구』, 문광사; 신용하, 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송병기, 1999,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판부; 송병기, 2010, 『울릉도와 독도 -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윤소영, 2005, 「일본 메이지 시대 문헌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 인식」, 『독도연구』 1; 김영수, 2009, 「근대 독도·울릉도 명칭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시각」, 『역사와현실』 73(김영수, 2009, 「근대 독도와 울릉도 명칭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그 의미」, 『독도와 한일관계 - 법 역사적 접근』, 동북아역사재단); 유미림·최은석, 2010, 「지리지 안의 울릉도·독도 인식의 추이」, 『근대 일본의 지리지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송휘영, 2012, 「근대 일본의 수로지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 『대구사학』 106; 정영미, 2012a, 「일본의 '섬의 명칭 혼란에 대한 연구'와 Liancourt Rocks를 중심으로」, 『근대 이행기의 한일 경계와 인식에 대한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정영미, 2012b, 「『죽도고증』의 「마쓰시마 개척원」과 아마기함의 울릉도 조사 - 메이지 시대 새로운 마쓰시마=독도 창출 일(-) 과정」, 『한일관계사연구』 43; 정영미, 2015, 『일본은 어떻게 독도를 인식해 왔는가』, 한국학술정보; 한철호, 2013, 「일본 해군 수로부의 오키 측량과 독도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65; 한철호, 2014a, 「일본 수로부의 「조선동해안도」(1875) 간행·개정 및 활용과 독도 인식」, 『울릉제도(鬱陵諸島)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전망』,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학술심포지엄 발표문; 한철호, 2014b, 「일본 수로부 간행의 수로지와 해도에 나타난 독도」, 『독도연구』 17; 한철호, 2015, 「일본 수로부의 「조선전안」 간행·개정 및 활용과 독도 인식」, 『한국사연구』 169.

『죽도고증』에서는 1878년 측량을 전혀 서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1880년 松島 측량 시기를 6월이 아니라 9월로 오기하였다. 1880년 6월 5일 아마기함이 울릉도를 측량했음에도 기타자와는 1880년 9월 13일자 수로국장 야나기 나라 요시[柳檀悅]의 「수로보고(水路報告) 제33호」를 착각해서 아마기함이 1880년 9월에 울릉도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松島가 조선의 울릉도임이 확실해지면서 오랜 의심과 논의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었다는 것이다.⁵⁾

그럼에도 아마기함의 울릉도 측량에 대한 한일 양국의 기존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기타자와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반복한 채, 1878년 일본 최초의 울릉도 측량을 거론조차 하지 않거나 그 의미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면서 1880년의 측량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나 다무라 세이치부로[田村清三郎]는 아마기함이 원산 등 개항장 후보지를 조사한 사실에 역점을 둔 나머지 松島를 측량한 사실을 기술하지 않았다.⁶⁾ 1878년 울릉도 측량은 일본 수로 측량의 역사를 총정리한 『일본수로사(日本水路史)』에서도 기술되지 않았을 정도였다.⁷⁾

5) 北澤正誠, 1881a, 『竹島考證』 下(北澤正誠, 2006, 『독도자료집 2 竹島考證』, 바른 역사정립기획단, 500~505쪽); 北澤正誠, 1881b, 「竹島版圖所屬考」, 『日本外交文書』 14, 394쪽. 단, 정영미는 기타자와의 오류를 정확히 지적했음에도, 그 시기에 관해서는 아마기함이 첫 번째로 울릉도를 조사했던 1878년 6월이라고 잘못 비정하였다. 정영미, 2015, 앞의 책, 192쪽. 1880년 6월 5일 아마기함이 울릉도를 측량했던 사실에 관해서는 「外入312 天城艦元山津より釜山港へ廻艦の形行鎮守府届」, 防衛省防衛研究所 청구기호 海軍省-公文類纂-M13-11-513, 明治 13年 6月 8日~明治 13年 6月 21日; 「外入313 天城艦乗組三浦少尉外2名より報告書水路局届」, 防衛省防衛研究所 청구기호 海軍省-公文類纂-M13-11-513, 明治 13年 6月 9日~明治 13年 6月 22日; 「外入313 三浦少尉等より報知書の件水路局届」, 防衛省防衛研究所 청구기호 海軍省-公文原書-M13-42-388, 明治 13年 6月 9日~明治 13年 6月 22日 등 참조.

6) 田保橋潔, 1931, 「鬱陵島, その發見と領有」, 『青丘學叢』 3, 25~30쪽; 田保橋潔, 1932, 「鬱陵島の名稱に就いて」, 『青丘學叢』 4; 田保橋潔, 1940, 『近代日鮮關係の研究』 上, 朝鮮總督府中樞院, 685~693쪽; 田村清三郎, 1975, 『島根県竹島の新研究』, 田村清三郎, 33~34쪽(田村清三郎, 1965, 『島根県竹島の新研究』, 島根県総務部総務課).

7) 海上保安廳水路部 編, 1971, 『日本水路史: 1871~1971』, 日本水路協會, 34쪽.

가와카미 역시 1878년 아마기함은 松島·竹島를 실제로 확인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량하지 않았다고 평가절하한 채 1880년에야 비로소 松島를 고래의 울릉도로 판명했다고 파악했으며, 그 시기도 1880년 9월로 비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⁸⁾ 이러한 그의 오류는 마치 정설처럼 굳어져 한일 양국 가릴 것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필자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⁹⁾ 1878년 아마기함이 일본에서 최초로 아르고노트 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松島(울릉도)를 측량했다는 사실은 간과되었던 것이다. 이는 당연하게도 『죽도고증』의 각종 송도개척원(松島開拓願)과 그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자료면에서도 기존 연구들은 일본 수로국에서 발행한 『수로잡지(水路雜誌)』와 기타자와의 『죽도고증』을 중심으로 이뤄져왔기 때문에, 아마기함이 울릉도와 독도를 직간접으로 조사한 실태와 그 의미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한계를 지닌다. 예컨대, 일본의 방위성방위연구소·외교사료관·국립공문서관 등에는 아마기함이 울릉도와 독도를 측량하기 위해 파견되는 배경과 과정 및 목적, 그리고 측량 결과 보고 등이 상세하게 기록된 일차 자료들이 상당량 소장되어 있지만, 거의 활용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자료들을 꼼꼼히 분석하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울릉도와 독도 관련 내용을 새롭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해서 이 글은 새로 발굴한 자료를 토대로 1878년 아마기

8) 川上健三, 1966, 앞의 책, 27쪽, 39~42쪽.

9) 그 대표적인 연구로는 下條正男, 2004, 앞의 책, 124~125쪽; 나이토 세이추, 2005, 앞의 책, 171~178쪽; 박병섭·나이토 세이추, 2008, 앞의 책, 249~251쪽; 한철호, 2008, 「메이지 초기 일본 외무성 관리 다나베 다이치[田邊太一]의 울릉도·독도 인식-일본의 '공도'정책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19, 225쪽; 정영미, 2012a, 앞의 글, 254쪽; 정영미, 2012b, 앞의 글, 503~504쪽 등이 있다. 단, 인용하는 1878년 6월 29일 아마기함의 울릉도 측량 사실이 담긴 『수로잡지』 16(1879. 4)을 근거로 삼으면서도 1878년 4월 '松島'의 실체를 실측했다고 서술하는 오류를 범했지만, 이후부터 해군성이 울릉도를 松島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지적하였다. 또 호리 가즈오(堀和生)는 『수로잡지』 41(1882. 1)을 근거로 1880년 7월로 비정하였다. 신용하, 1996, 앞의 책, 174~175쪽;堀和生, 1987, 앞의 글, 105쪽.

함이 울릉도를 측량한 내용과 그 의미를 부각시켜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아마기함이 파견된 배경을 고찰하되, 『죽도고증』에 실린 송도개척원 등의 내용을 새롭게 재정리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아마기함이 일본에서 최초로 ‘竹島’와 ‘松島’를 측량한 목적과 그 과정을 밝혀보겠다. 마지막으로 아마기함이 측량 당시 참고했던 일본·러시아의 지도와 해도, 영국 수로부 간행의 해도와 수로지 등을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를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분석해볼 것이다.

II. 아마기함의 파견 배경

1_동해안 개항장 선정을 위한 측량

서구 열강에게 문호를 개방한 뒤 해안 측량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본은 교착상태에 빠진 조선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빌미로 측량을 앞세워 운요호[雲揚號]사건을 일으켰다. 그 후 일본은 가스기[春日]·다이니테이보[第二丁卯] 등을 잇달아 부산에 파견해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중 수로료(水路寮)의 측량선 다이니테이보는 일본 북부를 측량하려고 출항하는 도중 조선에 대한 군사행동에 참가하라는 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결국 일본은 운요호사건을 트집 잡아 조선 정부의 사죄와 개항을 강요한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를 체결하였다.¹⁰⁾

당시 일본은 조선 영해를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항해하기 위해 해안측량권을 반드시 조약에 삽입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이는 구로다 기요타미[黒田清隆] 특명전권대신 일행이 출발하기 직전 산쵸 사네토미[三條實美] 태정대신(太政大臣)이 협상의 지침으로 내렸던 훈조(訓條[훈령])와 내유(內諭)에 잘 나

10) 横山伊徳, 2001, 「十九世紀日本近海測量について」, 黒田日出男 等編, 『地圖と繪圖の政治文化史』, 東京大學出版會, 320~321쪽.

타나 있다.¹¹⁾ 이들 중 훈조에는 “화교(和交)가 성립되면 도쿠가와씨(德川氏)의 구례(舊例)에 구애됨 없이” 일본이 획득해야 할 8개 조항에 불평등조약의 상징인 치외법권이 빠진 반면, 가장 중요한 문제로 개항과 더불어 조선 연안에 대한 자유로운 측량권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또 내유에도 조선 정부에 대한 요구 중 강화도사건에 대한 조선 정부의 사죄, 조선 영해의 자유항행, 강화부 부근 지점의 개항 등 3항은 절대로 양보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다.¹²⁾

그 결과 강화도조약 제7관에는 “조선국 연해의 도서(島嶼)와 암초는 종전에 자세히 조사한 것이 없어 극히 위험하므로 일본군 항해자들이 수시로 해안을 측량해 위치와 깊이를 재고 도지(圖誌)를 제작해 양국의 배와 사람들이 위험한 곳을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연안측량권과 도지제작권이 들어가게 되었다. 또 제9관에서는 일본 측량선의 상륙권과 그 보호도 보장받았다. 이러한 조항은 군사적인 시위 및 도발, 개항장의 일본 거류민 보호를 위한 군함 파견의 필요에서 설정된 것으로, 향후 조선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경제적 침략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¹³⁾

실제로 이들 조항에 근거해서 개항 후 일본은 조선 해안 전역을 상대로 측량을 실시하였다. 1876년 3월 14일 가와무라 스미요시[川村純義] 해군대보(海軍大輔)는 산조 태정대신에게 조선 해안 측량을 건의했고, 3월 25일 ‘조선국 해안 측량 순서’ 등을 고안(考案)하였다.¹⁴⁾ 그리하여 강화도조약이 맺어진 지 3개월 뒤인 5월 25일에는 조선 연안의 구체적인 측량수속을 정한 「조선국연해 도서측량심득서(朝鮮國沿海島嶼測量心得書)」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중

11) 이 훈조는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등이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와 협의한 후에 결정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日本外務省 編, 1965, 『日本外交年表并主要文書』, 原書房, 62~64쪽.

12) 田保橋潔, 1940, 앞의 책, 423~427쪽.

13) 김경태, 1973, 「병자개항과 불평등조약관계의 구조」, 『이대사원』 11, 19~21쪽; 김경태, 1994,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창작과비평사, 33~35쪽.

14) 「朝鮮近海測量ノ儀伺」, 明治 9年 3月 14日, 國立公文書館 청구기호 公01763100; 「朝鮮國海岸測量」, 明治 9年 3月 25日, 國立公文書館 청구기호 太00444100.

요 내용은 측량하기 2개월 이전까지 그 취지를 외무성에 보고할 것, 어쩔 수 없이 상륙하더라도 내륙으로 들어가지 말 것, 토착민이 숭경하는 절이나 사묘(祠廟) 등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말 것, 상륙 후 폭풍우나 파도 때문에 본선에 돌아올 수 없는 경우라도 조선 인민의 집에 머무르지 않도록 할 것, 측량이 끝나면 측량 중의 보고와 도지를 2개월 내에 상신하되 도지는 조선 정부에 1부를 보내야 할 경우 2부를 제출할 것 등이다.¹⁵⁾

이처럼 일본이 조선 해안 측량을 급선무로 삼은 이유는 강화도조약 체결 후 조일 양국 간의 교통과 통상이 점차 증가했음에도, 항로상에 있는 일본 본주(本州) 북서 해안과 조선 연안의 해도는 서양 국가가 측량한 것을 포함하더라도 겨우 한 두 개의 약측도가 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강화도조약 체결로 북해북륙(北海北陸)으로부터 만주나 중국 연해로 항해할 해로가 더욱 번성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해로 측량의 미비로 선박이 항해하거나 정박하는 데 여전히 위험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1877년 1월 10일 수로국장 야나기는 아직 미측량 상태로 남아 있던 일본 본주 북서안부터 조선 연안까지 측량에 착수하자는 건의안을 가와무라 해군 대보에게 올렸다. 함선 한 척을 측량용으로 빌려 두 조의 측량원이 탑승하여 한 조는 북안(北岸)에 잔류시켜 육상장측(陸上長測)으로 시모노세키[下関]부터 오쿠고[奥御] 닛삐미사키[龍飛岬]에 이르는 연안을 측량하고, 다른 한 조는 조선 연안에 착수해서 빨리 실측제도(實測製圖)의 성과를 거둔다면 영·미 국가들에 대해 기선을 잡고 또 훗날 함선 혹은 해경(海警)에 활용하는 데 편리함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는 기후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조선 측량은 2개월 전에 조선에 조회해야하는 규칙을 근거로 늦어도 3월 중에는 측량에 착수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건의안을 제출했던 것이다. 이에 2월 6일에는 조선 지방의 측량 지역과 도서 및 정확한 측량일자 등을 조사해 제출하기도 하였다.¹⁶⁾ 그러나

15) 「同國沿海島嶼測量心得書」, 明治 9年 5月 25日, 國立公文書館 청구기호 太00444100.

16) 水路局長海軍大佐 柳橋悅, 「本邦北岸并朝鮮沿海測量着手之儀二付上請」, 『往入41 本邦北岸并朝鮮沿海測量の件水路局上請』, 明治 10年 1月 10日, 明治 10年

이처럼 일본 수로국이 의욕을 보였던 일본 본주 북서안부터 조선 서안을 거쳐 압록강에 이르는 약 660마일의 해로 측량계획은 1877년 2월 세이난전쟁[西南戰爭]이 발발하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중단되고 말았다.¹⁷⁾

세이난전쟁이 진정된 후인 1877년 9월 말, 일본 대리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는 도쿄를 출발해 부산·인천을 거쳐 서울에 머물면서 반점관 홍우창과 추가 개항장 문제로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우창은 하나부사가 제시한 함경도 영흥만, 즉 문천군 송전리에 대해 태조 이성계의 조상 묘가 위치한 곳이라는 이유로 완강히 거부하면서 함경도 북청부와 전라도 진도군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하나부사가 이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홍우창은 능침의 소재지가 아닌 덕원부의 원산항을 추천했고, 하나부사도 실측해서 적당하다고 판명되면 무방하다고 마무리를 지었다.

1878년 1월 20일 하나부사는 귀국해 개항장 선정 외에 공사주차와 상경도로 설정 등 당시의 현안에 관해 보고하였다. 그 과정에서 하나부사가 탑승했던 다카오마루[高雄丸]는 주로 전라도 남동 연안을 측량했지만 적당한 개항장 후보지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기대했던 남양만을 목측(目測)한 결과 좋은 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조선 측이 문천 대신 제안했던 원산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부사는 함경도 북청부·덕원부, 진도에서 안면도에 이르는 전라·충청 양도 연안의 측량이 초미의 급무이므로 측량함을 다시 파견할 것을 건의하기에 이르렀다.¹⁸⁾

2_ '송도개척원'에 따른 울릉도·독도 조사

일본이 조선 동해안의 개항장을 선정하기 위해 측량함을 파견하려는 상황에서, 松島를 개척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들이 잇달아 정부에 제출되었다. 이에

2월 6日, 防衛省防衛研究所 청구기호 海軍省-公文類纂-M10-25-245.

17) 海上保安廳水路部編, 1971, 앞의 책, 32~33쪽; 竹内正浩, 2013, 『地圖で読み解く日本の戦争』, 筑摩書房, 75~76쪽.

18) 田保橋潔, 1940, 앞의 책, 685~693쪽.

따라 일본 외무성에서는 松島의 실체를 둘러싼 논의가 벌어졌다.¹⁹⁾ 우선 1876년 7월에 무토 헤이가쿠[武藤平學]·고타마 사다야스[兒玉貞易], 이어 12월에 사이토 시치로베에[齊藤七郎兵衛]는 나가사키[長崎]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왕래하는 도중 松島의 존재를 알게 되어 당시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외무성 파견 무역사무관 세와키 히사토[瀨脇壽人]에게 송도개척원을 제출하였다. 이에 세와키는 무토와 사이토의 요구를 받아들여 1877년 4월 25일 외무경 데라지마 무네노리[寺島宗則] 등에게 개척원을 상신하였다.

이 과정에서 외무성 기록국장 와다나베 고키[渡邊洪基]는 무토와 고타마의 송도개척원에 대해 일본과 서양의 각종 기록과 해도 등을 근거로 松島와 竹島가 별개의 두 섬이라는 이도이명(二島二名)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서양의 자료에 의하면, 竹島는 존재하지 않는 섬인 아르고노트 섬을, 松島는 본래 竹島인 다즐레 섬(울릉도)을 각각 지칭하며, 본래의 松島는 ‘호넷 록스’(독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고래로 竹島는 조선의 울릉도로 막부가 조선에게 주었지만, 竹島 외에 松島(독도)가 있다면 조선보다 더 가까운 일본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松島는 고래의 竹島(울릉도)가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에 함선을 보내 조사한 후 그에 대한 대책을 정하자고 주장하였다. 여기에는 松島가 일본과 조선·러시아를 이어주는 중요한 항로상에 있는 섬이므로 이를 차지해야 한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²⁰⁾

그 반면 세와키가 올린 송도개척원에 대해 다나베 다이치[田邊太一] 공신국장은 첨지(籤紙)로 “松島는 조선의 울릉도로 우리 판도에 속해 있지 않으니, 사이토 모[齊藤某]의 원의(願意)는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답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였다.²¹⁾ 아마 그는 개척원의 초점이 울릉도에 해당하는 松島·竹島에 맞춰졌기 때문에, 고래의 松島인 독도에 관해 알고 있었

19) 이에 관해서는 『죽도고증』 下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정영미의 글을 참조해 재정리하되, 1878년 아마기함의 울릉도 측량을 염두에 두면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20) 北澤正誠, 1881, 앞의 책, 355~377쪽.

21) 北澤正誠, 1881, 위의 책, 396~397쪽.

지만 달리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²²⁾ 그럼에도 와다나베와 다나베 모두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1877년에 접어들어서도 1·3·4월에 시마네 현(島根縣) 출신으로 도쿄(東京)에 거주하고 있던 도다 다카요시(戸田敬義)가 ‘죽도도해지원(竹島渡海之願)’을 세 차례에 걸쳐 외무성에 제출하였다. 여기에서 松島와 竹島는 모두 울릉도를 가리킨다. 1877년 6월 8일 도쿄부지사(東京府知事) 구스모토 마사타카(楠本正隆)는 도다의 개척원을 허가할 수 없다고 기각시켰다.²³⁾ 구스모토는 기각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았는데, 아마 여기에는 다나베의 의견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리라고 여겨진다.

이처럼 ‘松島’ 혹은 竹島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조선의 울릉도라는 판단 아래 개척원을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1877년 5월 6일 무토는 재차 송도개척원을 세와키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6월 25일과 7월 2일에 세와키 역시 “공도개척은 그 양국관계를 살펴볼 수 있고, 국산품 수출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소위 일거양득할 수 있는 계획”임을 강조하면서 간절히 허락해달라는 ‘공도개척 일건(空島開拓一件)’을 또 다시 외무성에 올렸다.²⁴⁾

22) 다나베 등은 고래의 松島가 이미 기록에서 사라졌거나 기록상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달리 언급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다. 정영미, 2012b, 앞의 글, 486~488쪽, 502쪽. 이와 관련해서 1878년 6월 아마기함의 울릉도 측량 이후에도 다나베가 여전히 松島는 일본인이 명명한 이름이며 실제로 “조선의 울릉도에 속하는 于山”이고, 울릉도가 “조선에 속한다”는 것은 막부 때 “영구히 인정하고 우리 소유가 아니라고 약속한 기록이 양국의 역사서에 실려 있다”면서 울릉도 순시를 이웃의 지경을 범하는 것과 같다고 파악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그가 동해안에 있는 고래의 ‘竹島’·‘松島’가 조선 영토인 울릉도·독도라고 분명하게 인식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는 1878년 7월 4일 부산주재 외무 5등속 아마노조 나가히로(山之城裕長)에게서 아마기함의 측량 상황을 보고받았는데, 이때 松島가 울릉도임을 확인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울릉도·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그의 인식은 아마기함 파견 이전에 이미 확고했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이 점에 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본외교문서』 11, 292~293쪽; 北澤正誠, 1881, 앞의 책, 476~481쪽, 496~501쪽; 堀和生, 1987, 앞의 글, 103~105쪽.

23) 北澤正誠, 1881, 위의 책, 292~323쪽.

24) 北澤正誠, 1881, 위의 책, 418~459쪽.

하지만 이번에도 다나베는 “松島는 조선의 울릉도로 우리나라(일본)의 판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재천명한 뒤, “우리나라가 개간에 착수하는 것은 원래 안 되는 일이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아울러 다나베는 松島개척 방안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가능성이 없는 ‘꿈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해 버렸다. 심지어 그는 “뒷일에 대한 처분은 (물어보는) 의견서의 취지에도 틀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음과 동시에 두 차례나 송도개척원을 올린 “헤이카쿠라는 자는 어떤 자인가”라고 강력하게 불만을 드러내기도 하였다.²⁵⁾ 즉, 송도·죽도개척원에서 거론된 松島와 竹島가 조선의 울릉도라는 다나베의 정확한 답변은 외무성의 주류를 이루는 공식적인 인식이자 판단이었다.²⁶⁾

그럼에도 외무성 내에서는 여전히 竹島와 松島에 대해 매우 모호하고 혼란된 정보와 인식이 정리되지 않았던 탓인지 관리들에게 의견을 개진토록 하였다. 이들 중 사카다 모로토[坂田諸遠]는 1877년 8월 6일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를 비롯해 각종 일본 자료와 서양 해도 등을 인용한 끝에 松島와 竹島는 별개의 두 섬이므로 松島를 竹島의 별호(別號)로 보기 어렵다는 「송도이견(松島異見)」을 내놓았다.²⁷⁾ 이는 무도와 고타마의 개척원에 대한 와다나베의 견해와 맥락이 같은 것이다.²⁸⁾

25) 北澤正誠, 1881, 앞의 책, 452~457쪽.

26) 정영미는 기타자와의 조사로 竹島가 이미 예전의 조선 영토인 울릉도로 판정났으며, 일본이 竹島를 개척할 수 없다는 인식이 기타자와를 통해 외무성에 전달되어 외무성의 공식입장이 되었고, 이에 따라 다나베가 사이토 등의 개척원을 기각시켰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기타자와와 다나베의 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자와는 송도개척원이 제출된 후 松島 혹은 竹島의 존재에 관한 논의가 분분해지자 외무성의 명령을 받아 관련 자료와 사건의 경위 등을 조사·정리한 뒤 1881년 4월에 그 결과 보고서인 『죽도고증』을 내놓았다. 따라서 竹島가 조선 영토인 울릉도라는 다나베의 견해가 외무성의 공식입장으로 되면서 사이토 등의 개척원을 기각시켰으며, 1878년과 1880년 아마기함의 울릉도 측량을 근거로 기타자와가 다나베의 견해를 외무성의 공식입장으로 재확인했다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영미, 2012b, 앞의 글, 493쪽.

27) 北澤正誠, 1881, 앞의 책, 460~469쪽.

28) 이와 관련해서 사카다가 편찬을 주도했던 『統通信全覽』의 「小笠原島開拓再興一件 顛末提要」에 「송도이견」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 앞부분은 「송도이견」과 똑같고, 결론 부분에 1696년 1월 28일 막부의 竹島

이와 같이 개척원의 대상인 松島와 竹島를 별개로 파악한 견해도 제기되었지만, 두 섬 모두 조선의 울릉도에 해당된다는 외무성의 주된 인식에는 변함이 없는 듯 이후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²⁹⁾ 그러던 중 1878년에 접어들어 조선 동해안의 개항장을 선정하기 위해 외무성과 해군성의 협의 아래 군함 파견을 결정하자 그 업무 중의 하나로 '松島'를 조사하는 일에 들어가게 되었다.

Ⅲ. 아마기함의 울릉도 측량 목적 및 과정

1878년 2월 20일 데라지마 외무경은 하나부사 대리공사의 귀국 보고서에 의거해서 조선의 함경·전라·충청도 해안에서 개항장을 물색하기 위해 측량선을 파견하고 그 탐색의 편의 등을 해군성과 협의하겠다는 건의안을 산조 태정대신에게 올렸다. 3월 4일 산조는 이를 받아들여 해군성에 외무성과 협의하여 측량선을 파견하라고 지시했으며, 3월 28일 해군성은 측량선으로 도카이진수부

『渡海禁止令』 전문을 게재한 뒤 竹島(울릉도)가 일본 영토이므로 이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것이며, 막부의 '渡海禁止'로 인한 조선의 竹島 소유 사례는 小笠原島에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과 서로 동일한 '覆轍'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현재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논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外務省 [原]編纂, 通信全覽編集委員會 編, 1987, 「小笠原島開拓再興一件 顛末提要」, 『統通信全覽』 53, 雄松堂出版, 401~404쪽; 한철호, 2008, 앞의 글, 212~215쪽.

- 29) 『죽도고증』에는 1877년 8월 사카다가 의견을 개진한 후부터 아마기함이 울릉도를 측량한 후인 1878년 8월 15일 사이토가 시모무라 유하치로[下村輪八郎]와 연명으로 다시 '송도개척원'을 세와키에게 제출하기 전까지 개척원에 관련한 문서가 실려 있지 않고, 사카다의 의견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적었을 뿐이다. 단, 기타자와는 사이토 등의 '송도개척원' 제출일을 1877년 8월로 파악했는데, 그 청원서에 1878년 6월 시모무라가 松島를 목격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고 그 해 8월 15일 사이토와 연명해서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기재된 점으로 볼 때 명백한 오류임을 알 수 있다. 渡邊洪基 外, 『渡邊洪基松島ノ議』, 外務省外交史料館 청구기호 B-3-5-3-2; 北澤正誠, 1881, 앞의 책, 468~475쪽.

[東海鎮守府] 소관의 아마기함을 차출했으므로 정확한 측량날짜와 측량착수 순서 및 탐색방법 등에 관해 협의하자고 통지하였다. 이에 외무성에서는 이번 조선해 측량은 우선 만항의 양부(良否)와 무역의 편부(便否)를 탐색하는 데 역점을 두고, 귀국 후 보고서를 바탕으로 내무·외무·대장·해군성 등 무역·항해 관련부서들이 협동으로 회의해서 최적의 개항장을 선택하되, 외무·해군성의 서기관 중에 각각 2~3인의 위원을 선발해 각종 문제를 협의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³⁰⁾

이러한 협의를 거쳐 4월 13일 해군성의 가와무라 해군대보는 데라지마 외무경에게 4월 하순까지 아마기함이 측량 준비를 완료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이에 4월 16일 데라지마 외무경도 측량착수 순서와 개항장탐색 주의사항 등을 확정하고, 외무성은 특별한 관원을 파출하지 않고 다만 부산공관의 통역관 1명과 어학소생도 2명을 탑승시킬 계획이라고 통보하였다. 이때 작성된 「측량선 파출목적(測量船派出目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측량선파출목적

1. 일본해[동해]의 수어(守禦)를 굳게 하고, 또 이 해(海)의 항해를 안전하게 하며 무역을 흥용시키려면, 조선동안에서 안전한 만항에 출입·정박의 자유를 획득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1. 블라디보스토크항과 나가사키·하코다테는 해마다 통선(通船) 수가 증가하고, 이 통선이 점차 번성해짐에 따라 조선동안의 양항(良港)은 더욱 불가결한 것이 될 것이다. ……
1. 위 송전(松田)에 대신해 원산진으로 하자는 것은 조선이 희망하는 바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을 실험해서 개항하는 데 적당한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본년 탐항(探港)의 초보일 것이다.
1. 조선전도에 근거하면, 원산진은 ‘브로우톤’만 ‘라자레프’ 외항의 외도에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렇다면 대선(大船)의 결박에 편리하지 않을 것이다. ……

30) 『일본외교문서』 11, 284~286쪽; [海軍省] 水路部 編, 1916, 『水路部沿革史: 自明治二年至十八年』, 水路部, 217쪽.

1. 이러한 사정이므로 본년의 탐항은 함경도 원산진 및 북청, 전라도에서 흥덕·옥구, 충청도에서 해미·결성변이다.
1. 탐항의 순서는 제1 원산진, 제2 북청일 것이며, 제3·제4는 흥덕·옥구이고, 해미·결성은 제5·제6일 것이다. 이는 송전에 석탄을 저장하는 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려는 조선 정부의 바람이기도 하며, 우리 항해의 편리상에서도 가능한 한 빨리 동안(東岸)의 항(港)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
1. 함경도 측량 순서로 松島의 실황(實況)이 『차이나 씨 디렉토리』 소재(所載)와 동일한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³¹⁾

요컨대 아마기함의 파견 목적은 동해(‘일본해’)의 방어와 항해 안전 및 무역 진흥 등을 위해서 그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조선동안에서 안전한 만항(灣港)을 측량·선정해 선박의 출입과 정박의 자유를 획득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동해안에서 ‘탐항’은 조선 측이 제시했던 원산과 북청을 대상으로 삼아 개항장으로 적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런데 「측량선과출목적」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함경도 측량 순서로 松島의 실황이 『차이나 씨 디렉토리』(THE CHINA SEA DIRECTORY)에 소개된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판별 혹은 일응 탐시해야만 한다는 점이다.³²⁾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메이지유신 후에도 일본 내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과 인식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1876~1877년 간 해외 항해의 붐을 타고 물산이 풍부한 ‘松島’(울릉도)개척원을 정부에 제출하는 자가 속출하는 데 대한 대응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실제로 아마기함이 출발하기 전, 해군성은 동해 竹島와 松島의 위치·광협·주민·산물 등을 지급히 조사한 뒤 답변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영국판 수로지 번역본과 나리마쓰 메이켄(成松

31) 『일본외교문서』 11, 287~290쪽.

32) 復第 40號, 明治 11年 4月 16日, 『秘入195朝鮮海岸測量船發遣の件太政官え御達』, 防衛省防衛研究所 청구기호 海軍省-公文類纂-M11-27-331.

明賢] 소좌의 기록을 적록(摘錄)해서 진달한 적이 있었다.³³⁾ 요컨대, 아마기함은 울릉도뿐 아니라 독도를 실측해서 영국수로지, 즉 영국판 중국수로지인 『차이나 씨 디렉토리』의 기재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던 것이다.

마침내 1878년 4월 28일 아마기함은 시나가와[品川]항을 출발해 부산에 기항한 뒤, 5월 9일 부산을 출발해 11일부터 원산 측량을 개시하였다. 조선 정부는 사태를 중대하다고 보고 함경도 관찰사 김세균에게 급히 명령을 내려 덕원부사 이교칠과 문천군수 이정필로 하여금 아마기함의 측량을 감독하면서 덕원지방 연안의 측량을 저지하도록 조치하였다. 그 이유는 덕원부 용주리가 조선의 개창자 이성계의 선조인 목조 이하 도조에 이르는 누대의 고향으로 국가의 근본이 되는 땅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안변부터 문천을 거쳐, 영흥·함흥에 이르는 일대가 해안을 이루고, 능침에 가까운 곳으로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마기함의 함장 마쓰무라 야스타네[松村安種]는 이전에 반점관 홍우창의 하나부사 대리공사에 대한 언명을 인용해 이에 응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쓰무라는 사정의 여하를 불문하고 일본 해군경의 명령을 받은 이상 덕원의 측량을 중지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중지하려면, 동래부사로 하여금 부산 주재관리관을 거쳐 일본 외무성에 항의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덕원부사 이교칠 등은 실력을 행사하지 않고서는 측량을 저지할 수단이 없어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아마기함은 한 달 남짓 덕원의 해안 측량에 종사한 뒤, 6월 18일 문천군 송전리로 갔다가 22일 원산에 귀항했고, 25일 다시 북청부로 떠나 26일 신포진 마량도에 정박하면서 신포 및 마량도를 시찰하였다.³⁴⁾

33) [海軍省] 水路部 編, 1916, 앞의 책, 217~218쪽. 이 책에서는 단순히 동해안과 울릉도 사이에 그려져 있던 아르코노트 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처럼 서술했지만, 이는 1916년 당시 이미 사실관계가 파악되었던 만큼 독도 강제 편입의 부당성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여겨진다.

34) 『承政院日記』, 1878. 4. 23; 『日省錄』, 1878. 4. 21·23; 『高宗實錄』, 1878. 4. 23; 『일본외교문서』 11, 284~285쪽, 294~295쪽, 296~304쪽.

이러한 군함 아마기의 측량은 소요했던 시일과 그 성과를 보더라도 일본국 해군의 외국 수로측량으로서 이전에는 없는 것으로 전년도 특무함 다카오마루가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는 이전 조선 정부가 지칭했던 함경도 북청부 신포진이 당초 예상했던 것에 비해 양향이었고 또 덕원부 원산진에 이르러서는 일본국 측이 고집했던 문천군 송전리에 비해서 좋으면 좋았지 떨어질 바 없는 개항장의 좋은 후보지였던 것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³⁵⁾

아마기함은 개항장 후보 지역인 원산·덕원 등을 측량한 다음, 松島의 실황이 『차이나 씨 디렉토리』 소재와 동일한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6월 28일 신포를 출발하였다. 이어 아마기함은 竹島와 松島를 측량한 뒤 30일 부산에 도착했으며, 7월 4일 나가사키로 돌아갔다.³⁶⁾ 아마기함은 측량 과정을 『측량일지(測量日誌)』에 기록해 두었는데, '竹島'와 '松島'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월 28일 맑음[晴] …… 오후 0시 50분 전만(前灣)에서 발묘(拔錨)하고 출항해 竹島의 유무(有無)를 구명(판정)하기 위해 항로를 해도(該島)로 향하였다. 이미 그 치지(置地)에 이르러도 전혀 눈에 띄는 것이 없었다. 이로 인해 해도는 없다고 판정하고, 松島로 향하였다.

6월 29일 맑 오후 4시 松島에 이르러 천천히 섬 주위를 순항하면서 간취(看取)하였다. 이 섬은 초목이 번무 중인데 소나무가 많고, 인가는 2~3호 있다. 조선인이 와서 배를 조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또 기석 괴암이 많음을 바라보았다.³⁷⁾

35) 田保橋潔, 1940, 앞의 책, 694~696쪽.

36) 天城艦 測量課, 1878, 『朝鮮國海岸測量日誌 附地名和韓對譯』, 外出953, 『天城艦朝鮮全羅忠清兩道測量略取調の件に付水路局へ下付(1)』, 防衛省防衛研究所 청구기호 海軍省-公文類纂-M11-79-383; 『帝國軍艦天城号朝鮮國沿岸測量一件』, 外務省外交史料館 청구기호 5-1-10-0-2; 『일본외교문서』 11, 292~293쪽; 山澄直清, 小林春三, 福地邦鼎, 1879, 『朝鮮國東海岸畧記』, 『水路雜誌』 16; 田保橋潔, 1940, 위의 책, 694~696쪽. 측량일지는 『朝鮮國海岸測量日誌 附地名和韓對譯』에 의거하였다.

37) 天城艦 測量課, 1878, 위의 글.

6월 28일 아마기함은 '竹島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그곳이 위치했다고 여겨진 곳까지 나아갔지만 전혀 눈에 띄지 않아서 '竹島'가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고 판정하였다.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기에 언급된 '竹島'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해도상에 잘못 표기된 아르고노트 섬이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아마기함이 일본에서 아르고노트 섬이 가공의 섬임을 최초로 확인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된 적이 없다.

그 다음날 29일 아마기함은 '松島'(울릉도)로 가서 그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배를 정박할 만한 곳이나 들어갈 항만도 없는데다가 바닷가는 모두 암초여서 접근할 수가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아마기함은 松島 주변을 돌면서 측량·조사한 결과, 소나무와 기암괴석이 많고 두서너 인가가 있으며, 조선인이 배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파악하였다.³⁸⁾

이처럼 아마기함은 메이지유신 이후 처음으로 해도 혹은 지도에 나타난 '竹島'가 존재하지 않는 아르고노트 섬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울릉도를 최초로 측량했던 것이다. 이는 아마기함이 함경도 신포를 출발해 '松島'(울릉도)로 나아가는 도중에 '竹島'가 위치했다는 점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Ⅳ. 아마기함의 울릉도 측량 보고서와 울릉도·독도인식

아마기함은 1878년 6월 원산 개항장의 선정 외에 일본 군함 최초로 '竹島'(아르고노트 섬)의 유무를 조사함과 동시에 '松島'의 위치와 실상을 측량·조사함으로써 울릉도·독도에 관한 일본 내 명칭과 소속의 혼란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측량에 참여했던 아마스미 나오키요[山

38) 아마노조요의 보고에 의하면, 아마기함은 29일 오후 4시가 아니라 3시부터 6시까지 松島를 측량했다고 한다. 『일본외교문서』 11, 292쪽.

澄直清]가 공식 보고서로 제출한 「조선국동해안약기(朝鮮國東海岸畧記)」의 ‘松島’에 대한 다음의 내용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었다.

松島

이 섬은 바다 가운데 하나의 고도(孤島)로서 우리[일본] 오키국[隱岐國] 오키시마[沖島]로부터 북동 2분의 1, 동 134리, 나가토국[長門國] 쓰노시마[角島]로부터 북 2분의 1, 동 185리, 부산포로부터 북서 4분의 3, 북 165리 되는 곳에 있다. 전도(全島)가 암석으로 이루어진 듯하다. 그리고 수목이 울창하고 주위는 절벽이 많다. 다만 남동면에 약간 평탄한 곳이 있다[우리들이 이곳에 도착하였을 때 토인(土人)이 오두막집 [소사(小舎)]을 짓고 어선을 만드는 것을 보았다]. 다른 빈안(濱岸)은 작은 배일지라도 접근할 수 없는 것 같았다. 동쪽으로 하나의 작은 섬이 있고, 또 기석괴암이 섬을 둘러싸고 별처럼 늘어서 있다. 우리 함대가 향해 중에 이 섬 정상(頂上)의 고도를 재어보았는데, 2,391척을 얻었다. 6월 29일 우리 함선이 해도[松島]에 감에 바다 가운데에서 요시다[吉田] 중위는 정오 분함 소재를 실측하여 북위 37도 48분을 얻었고, 또 오전 7시 58분에 태양 고도를 측정하여 분함 소재의 동경 130도 32분을 얻은 데 근거하여 정오 위도를 추산하였다. 여기에서 침로를 동남 2분의 1 남으로 변경하여 수정의(水程儀)로 측정하며 항주하기를 20리, 즉 松島에서 대강 2리 떨어진 곳에 도달하여 해도의 중부를 정남으로 바라보았다. 이때 태양 고도를 측정하여 분함 소재의 경위를 산출해서 북위 37도 32분 45초, 동경 130도 39분을 얻었다.³⁹⁾

이는 아사스미가 측량 직후에 작성했던 「조선국함경도덕원송전급북청신포만수로지(朝鮮國咸鏡道德源松田及北靑新浦灣水路誌)」의 다음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松島는 바다 가운데 하나의 고도로서 10여 개의 암서(岩嶼)가 그 주위에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섬은 모두 수목으로 뒤덮여 있는데, 토질

39) 山澄直清, 小林春三, 福地邦鼎, 1879, 「朝鮮國東海岸畧記」, 『水路雜誌』 16, 24쪽.

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해안은 절벽으로 오직 동남면에 약간 평탄한 땅이 있어서 한인 5~6명이 어선을 만들고 있음을 보았다. 그 외 빈안은 작은 배일지라도 댈 수 있는 곳을 볼 수 없었다. 또 추형(錐形)의 암석이 곳곳에 우뚝 솟아 있다. 이 산정의 고도를 향해 중에 재어 보니 2,391척이었다. …… 이 섬은 오키국으로부터 북동 2분의 1, 동으로 134리, 또 나가토국 쓰노시마로부터 북 2분의 1, 서로 185리, 또 조선국 부산포로부터 북서 4분의 4, 북 165리에 있다.⁴⁰⁾

그런데 아마기함장 마쓰무라가 「조선동안수로잡지(朝鮮東岸水路雜誌)」(속표지 「조선국동안수로지(朝鮮國東岸水路誌)」)에서 ‘松島’뿐 아니라 ‘竹島’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竹島는 영판의 해도에 나와 있지만 육군판의 조선도에는 약형(略形)이 적혀 있었다. 그런 까닭에 항로를 竹島로 향해 나아갔지만 아직은 눈으로 볼 수 없었다. 실측과 추측에 의하면, 이 섬에서 6리(24km)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서 맑은 날(晴天)에 이를 볼 수 없었다. 이로써 미루어보면 이 섬은 반드시 없는 것으로 결정해도 아마도 큰 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훗날 항해자가 실험하기를 바란다.

松島의 모양 및 위치는 서양 1873년 영국수로지와 같이 대체로 눈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거세(巨細)에 대해서는 자연히 대동소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바닷가는 전부 단애준벽(斷崖峻壁)한 곳이 많아서 큰 선박을 가까이 댈 만한 빈만(濱灣)을 볼 수 없다. 단지 東南 쪽에 근소한 평지가 열려 있는 부분이 있을 뿐이다. 이곳에는 전지(前誌)에 서술한 것과 같이 조선인이 두 척의 소선(小船)을 새로 건조하는 것을 실제로 보았다. 그리고 낡은 소선 한 척과 서너 집의 작은 나무 지붕을 발견하였다. 조선인의 말을 들어보면 여름철이 되면 강원도의 울진포(蔚珍浦)에서 매년 두세 척씩 松島에 건너와 신조(新造)의 배를 만들어서

40) 「朝鮮國咸鏡道德源松田及北青新浦灣水路誌」, 明治 11年 6月, 『帝國軍艦天城号朝鮮國沿岸測量一件』; 「朝鮮國咸鏡道德源松田及北青新浦灣水路誌」, 明治 11年 6月, 外出953, 『天城艦朝鮮全羅忠清兩道測量略図取調の件に付水路局へ下付(2)』, 明治 11年 4月 30日~明治 11年 12月 21日, 防衛省防衛研究所 청구기호 海軍省-公文類纂-M11-79-383.

울진포로 돌아간다고 한다. 이 松島는 대체로 청록을 띤 수목숲으로 보이지만 대체로 암산(岩山) 위에 생겨나는 잡목·소목(小木)이 많아 큰 나무가 있다고는 감히 생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상 또는 계곡 사이에서 어느 정도 큰 나무는 반드시 茂生하는 것이라고 의심할 만하다. 방위와 경위도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수로지[「조선국함경도덕원송전 급북청신포만수로지」-필자주]에 실려 있는 까닭에 여기서는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수로지와 영판수로지를 참고로 봐야 할 것이다.⁴¹⁾

이러한 마쓰무라의 기록은 ‘松島’에 관한 한 야마스미의 보고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마쓰무라가 『측량일지』와 마찬가지로 ‘竹島’의 유무를 조사한 사실을 기록한 점, 또 ‘竹島’와 ‘松島’를 측량할 때 사용했던 ‘영판의 해도’·‘육군판의 조선도’·‘서양 1873년 영국수로지’ 혹은 ‘영판수로지’ 등의 참고 자료들을 언급한 점 등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수로국 혹은 일본 정부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준다는 면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따라서 이들 보고서에 거론된 참고 자료들의 내용과 성격을 중심으로 아마기함의 울릉도·독도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_참고 지도·해도와 울릉도·독도인식

먼저 아마기함이 참고했던 지도-‘竹島’의 ‘약형’이 그려진 ‘육군판의 조선도’-는 육군 참모국이 1875년에 간행한 「조선전도」(1876년도 개정판)로, 「측량선 파출목적」에서도 직접 거론된 적이 있다. 측량 기계와 기술이 불충분했던 일본은 천측(天測)을 바탕으로 정밀도를 높여 제작했던 서양의 해도에 표시된 해안선과 경위도를 틀로 삼아 내륙부를 묘사하는 지도인 외방도(外邦圖)를 제작했는데, 그 전형이 바로 이 「조선전도」였던 것이다. 그 명칭대로 ‘조선의 전도(全

41) 「朝鮮東岸水路雜誌」(속표지 「朝鮮國東岸水路誌」), 明治 11年 6月, 『帝國軍艦天城号朝鮮國沿岸測量一件』; 「朝鮮東岸水路雜誌」(속표지 「朝鮮國東岸水路誌」), 明治 11年 6月, 外出953, 「天城艦朝鮮全羅忠清兩道測量略図取調の件に付水路局へ下付(2)」.

土)를 도시(圖示)한 이 지도는 그 좌하 ‘예언(例言)’에서 밝혔듯이, 「조선팔도전도(朝鮮八道全圖)」·「대청일통여도(大清一統輿圖)」 등의 지도와 해안선이 실측된 영국·미국 등의 해도들을 종합하고, 조선의 함경도 출신 김인승의 협조를 받아 제작된 것으로, 발행 당시에 가장 신빙성이 있고 내용이 풍부한 지도였다. 이 지도의 해안 지역에서 서구어의 가타카나[片假名] 표기의 지명이 쓰인 것은 해안선과 경위법이 영·미의 해도에 근거했기 때문이다.⁴²⁾ 이 지도에는 울릉도를 松島로 표기하고, 울릉도의 서북쪽에 竹島가 점선으로 그려져 있다. 「조선전도」에는 두 섬에 대한 일본 고래의 인식, 즉 竹島와 松島가 각각 조선의 영토인 울릉도와 독도라는 인식이 담겨져 있었다.

다음으로 아마기함은 ‘竹島’(아르고노트 섬)가 그려져 있는 ‘영판의 해도’를 이미 확보·참고하였다. 이 ‘영판의 해도’는 바로 영국 해도(Admiralty Chart) 2347 「일본(Japan)」의 1863년 개정판인 「일본-니폰, 큐슈, 시코쿠 및 한국 일부(Japan-Nipon, Kiusiu & Sikok, and part of the Korea)」라고 판단된다. 일본 해군 수로부는 초창기에 국제항해용 해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의 수로부가 직접 측량한 자료 혹은 에도 말기 관찬지도 제작자인 이노 다다타카[伊能忠敬]가 실측·제작한 일본지도를 참고로 일본의 근대 해도를 그렸다. 이렇게 그려진 해도가 1827년에 간행된 영국 해도 2347 「일본」이다. 이 해도는 몇 차례에 걸쳐 개보가 이뤄졌는데, 1854년 사라센호의 리차드(Richard)가 동해를 북상해서 오키 등을 약측해 이도(離島) 위치에 수정을 가하고 1854년 러시아의 측량에 의한 분도 6점을 수록했던 1855년도(「일본-니폰, 큐슈, 시코쿠 및 한국의 해안 일부(Japan-Nipon, Kiusiu & Sikok, and A part of the Coast of Korea)」)판이 널리 활용되었다. 그 뒤 1855년도 판 영국 해도 2347은 1861년과 1862년에 개정되었는데, 1861년 개정시에는 1857년까지 러시아가 조선 동해안을 측량한 성과가 채용되었다.⁴³⁾

42) 남영우, 2011, 『일제의 한반도 측량침략사-조선말~일제강점기』, 법문사, 26~28쪽, 263~264쪽; 小林茂, 2011, 『外方圖-帝國日本のアジア地圖』, 中央公論新社, 34~37쪽.

43) 菊池眞一, 2007, 「幕末から明治初年にかけての日本近海英國海図-日本水路部

이어 1863년도판에는 1859년 영국 악테온(Acteon)호의 선장 존 워드(John Ward)가 측량한 자료도 더해져 이름도 영국 해도 2347「일본-니폰, 큐슈, 시코쿠 및 한국 일부」로 바뀌었다. 여기에는 점선으로 그려진 가공의 섬을 ‘타코 시마 혹은 아르고노트 확인 요(Tako sima or Argonaut P. D.)’로, 울릉도는 ‘마투 시마(다즐레 섬)〈Matu sima(Dagelet I)〉, 부술 록스(Boussole Rk), 실 포인트(Seal Pt)’로, 독도는 ‘리앙쿠르 록스, 프랑스인이 발견한 리앙쿠르 바위 섬(1849)〈Liancourt Rks, Discd. by French(1849)〉, 영어로 호넷 섬(Engl. Hornet I), [러시아어로] 메넬라이와 올리부차(Menelai & Olivutsa)’로 각각 표시되어 있다. 이후 1863년도판은 1864년과 1865년에 개정을 거쳐 1876년도판이 발행되었다. 그런데 1876년도판에는 아르고노트 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됨에 따라 삭제되고, 울릉도인 ‘마투 시마(다즐레 I)’, ‘부술 록스, 실 포인트’와 독도인 리앙쿠르 록스만 남게 되었다. 따라서 아자기함이 참고했던 ‘영판의 해도’는 아르고노트 섬이 점선으로 그려진 1863년도판 영국 해도 2347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⁴⁴⁾

이처럼 아자기함은 영국 해도 2347과 「조선전도」에 표기된 ‘竹島’가 과연 존재하는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그 예상되는 위치의 24km 지점까지 다가가 살펴본 결과, ‘竹島’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마도 영국 해도 2347과 「조선전도」에 ‘竹島’가 점선으로 그려졌을 뿐 아니라 ‘타코 시마 혹은 아르고노트 확인 요’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아자기함은 竹島가 과연 존재하는지 그 ‘유무’를 조사하려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는 뒤에서 살펴볼 『차이나 씨 디렉토리』에는 竹島나 아르고노트 섬의 명칭이나 설명이 들어 있지 않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創設前の海図史, 『海洋情報部研究報告』 43, 8~9쪽; 정영미, 2012a, 앞의 글, 281~282쪽.

44) 필자는 1863년도판 영국 해도 2347의 1864년과 1865년의 개정판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1864년과 1865년의 개정판에 여전히 아르고노트 섬이 실려 있다면, 아자기함은 1876년도판 이전에 간행된 1863년판과 1864년판 그리고 1865년도판 중 어느 것을 참고했을 것이다. 菊池眞一, 2007, 앞의 글, 9~10쪽; 이진명, 2005,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195~196쪽, 272~275쪽.

마지막으로 마쓰무라의 「조선동안수로잡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야마스미의 「조선국동해안약기」·「조선국함경도덕원송전급북청신포만수로지」 등에 ‘영도’와 더불어 등장하는 ‘노도(魯(露)圖)’도 눈여겨 볼만하다.⁴⁵⁾ 조선의 동해안의 상황이 그려진 러시아의 해도는 바로 1857년 러시아 해군 수로부가 간행한 「조선동해안도(ВОСТОЧНАГО БЕРЕГА ПОЛУОСТРОВА КОРЕ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러시아 해군 수로부는 1854년 러시아군함 팔라다호와 올리브차호의 조선 동해안과 독도 측량 성과를 바탕으로 1857년 「조선동해안도」를 간행하였다. 그후 1860년에는 세르게프 해군중령이 독도를 3.5마일(6.5km), 5마일(9.3km), 14마일(25.9km) 떨어진 거리에서 바라본 3점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들은 1862년, 1868년, 1882년에 간행된 「조선동해안도」에 실렸다. 1862·1868년도판에는 울릉도를 ‘다즐레 섬(Dagelet island)’으로, 독도의 서도와 동도를 러시아명인 ‘올리부차 바위산(Скала Оливуца)’과 ‘메넬라이 바위산(Скала Менелай)’으로 각각 표기했으며, 독도 바로 밑에는 세점의 그림이 들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일본 해군 수로료가 러시아의 「조선동해안도」를 토대로 삼고, 러시아의 측량 성과를 반영한 영국 해도 2347의 1861년 8월 개정판을 참작해서 1875년 「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圖)」를 간행했다는 점이다.⁴⁶⁾ 두 해도를 비교해보면, 수록 범위도 거의 비슷하고 그 형태나 삼입지도 역시 동일하며, 독도를 러시아명인 ‘오리우쓰초(礁)’와 ‘메네라이초’로 각각 표기하고 독도 그림 세 점도 동일한 위치에 실려 있다. 다만 러시아 해도에는 표시되지 않았던 아르코노트 섬이 일본 해도에는 점선으로 그려지고 ‘아루고나후타島’로 표기되었으며, 울릉도는 ‘Matsu-sima’와 ‘다제레타도’로 각각 달리 표기되었다. 따라서 아마기함이 참고한 「노도」가 수로료 간행의 「조선동해안도」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아마기함이 조선 동해안 지역과 ‘松島’ 등

45) 山澄直清, 小林春三, 福地邦鼎, 1879, 위의 글: 「朝鮮國咸鏡道德源松田及北青新浦灣水路誌」, 明治 11年 6月.

46) 한철호, 2014a, 앞의 글 참조.

의 측량 임무를 띤 만큼, 수로료에서 러시아어를 일본어로 번역·제작했을 뿐 아니라 울릉도를 비롯한 조선 동해안의 정보가 담겨졌던 「조선동해안도」를 외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⁴⁷⁾

이와 같이 아마기함이 참고했던 「조선전도」·영국 해도 2347·「조선동해안도」에는 ‘竹島(아르고노트 섬)’와 ‘松島(다즐레 섬)’뿐만 아니라 독도에 해당하는 ‘리앙쿠르 록스’·‘올리부차초와 메넬라이초’도 경위도상 거의 비슷한 위치에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다. 특히 「조선동해안도」에는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사진처럼 그린 세 점의 그림도 들어 있었다. 아마기함은 ‘竹島’와 ‘松島’의 존재 여부와 그 실황을 조사하는 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독도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도 없고 관심도 갖지 않았다. 그렇지만 아마기함은 독도가 확실하게 표시된 해도들을 참고했던 만큼, 적어도 울릉도 외에 독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⁴⁸⁾

이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당시 아마기함에 탑승했던 측량선

47) 수로료의 「조선동해안도」에 대해 “단 러시아版의 覆版이다. 당시 러시아국어의 역자가 없어 橫濱에 정착한 러시아함 ‘가이다마-쿠’에게 질문한 뒤 이 해석을 얻었다”는 기록도 참고할 만하다. [海軍省] 水路部 編, 1916, 앞의 책, 112쪽, 120쪽; 海上保安廳水路部 編, 1971, 앞의 책, 57쪽.

48) 특히 러시아해도 등을 참고로 수로료가 간행한 「조선동해안도」는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니라 조선 영토로 간주하여 일본 본주 서북해안이 아닌 ‘조선 동해안’에 넣었던 일본 해군 수로국의 인식이 담겨져 있었던 만큼, 아마기함이 이를 참고했다면 이는 松島를 울릉도로 확인함과 동시에 울릉도와 그 부속섬인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실제로 1878년에 이어 1880년에 아마기함의 울릉도 측량 성과가 반영되어 「조선동해안도」는 1889년 소개정(小改正)판이 발간되었는데, 울릉도는 ‘다제레타도’에서 ‘松島’로 바뀌었지만 점선으로 그린 ‘아루고나후타도’와 ‘오리우쓰초’·‘메넬라이초’, 그리고 세 점의 독도 그림은 그대로 들어 있다. 이 해도는 1893년 대개정(大改正)되면서 「朝鮮東岸 附伯德大帝灣」으로 이름도 바뀌고 아르고노트 섬이 삭제되었으며, 다즐레도와 올리부차초·메넬라이초는 각각 ‘鬱陵島(松島)’와 ‘리앙쿠루도암’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조선동해안도」가 개정을 거치면서도 독도가 제외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일본이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잘 보여준다. 신용하, 1996, 앞의 책, 39~40쪽, 172~174쪽; 신용하, 2006,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경인문화사, 28~29쪽, 126~127쪽; 송병기, 2010, 앞의 책, 156~157쪽, 168쪽, 305쪽, 307~308쪽, 321쪽; 한철호, 2014a, 앞의 글.

문가 중 한 사람이 바로 1879년 기모쓰키 가네유키[肝付兼行]에 이어 1884년에 다시 오키를 측량했던 가토 시게나리[加藤重成]였다는 점이다.⁴⁹⁾ 해안 및 경위도 측량에서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갖춘 기모쓰키와 가토는 모두 오키를 측량한 뒤 그 범주에서 명백하게 독도를 제외한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그들이 독도를 오키 소속이 아닌, 즉 조선 영토라고 정확하게 인식 혹은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가토가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데에는 1878년 아마기함의 울릉도 측량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⁵⁰⁾

2_영국판 『중국해역 항해지침』과 울릉도·독도인식

아마기함이 竹島와 松島에 관해서 각종 해도 외에 ‘1873년도판 영국수로지’를 근거자료로 삼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서 영국수로지는 영국 해군 수로부가 간행한 중국수로지, 즉 『중국해역 항해지침(THE CHINA SEA DIRECTORY)』이다. 이는 「조선국함경도덕원송전급북청신평만수로지」에서 「노도」·「영도」 외에 『지나수로지(支那水路誌)』를 인용했다고 적혀 있다는 사실, 또 아마기함의 임무 중 하나가 ‘松島’의 실황을 측량해서 『차이나 씨 디렉토리』 소재의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영국 수로부는 1856년 극동에 관한 최초의 수로지인 『중국수로지(THE CHINA PILOT)』를 발간한 이래 1858년 제2판, 1861년 제3판, 1864년 제4판을 간행했는데, 조선과 일본 해역은 1858년 제2판부터 다루었다. 그 후 한 권으로 간행되던 『중국수로지』는 4권으로 세분화되었는데, 조선해역을 다룬 제4권 『중국해역 항해 지침-한국, 러시아, 일본해역 항해지침』은 1873년에 초

49) 天城艦 測量課, 1878, 앞의 글; 履入640 「水路局より加藤少尉天城艦乗組届」, 公文原書 卷31 本省公文 明治 11年 4月 27日~明治 11年 4月 30日, 防衛省防衛研究所 청구기호 海軍省-公文原書-M11-31-174.

50) 한철호, 2013, 앞의 글, 11~18쪽, 22~26쪽.

판, 1884년에 제2판, 1894년에 제3판이 각각 발간되었다.⁵¹⁾ 따라서 '1873년도 판 영국수로지'는 바로 아마기함의 「측량선파출목적」 중 松島의 실황에 관해 게재한 1873년도판 『중국해역 항해지침』임을 알 수 있다.

이 『중국해역 항해지침』에는 독도('LIANCOURT ROCKS')와 울릉도('MATU SIMA, Dagelet island') 순서로 기술되었는데, 1859년 악테온호에 의해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되었던 아르고노트 섬은 빠져 있다. 독도에 관해서는 리양쿠르 록스·'메넬라이'와 '올리부차'·'호넷' 등의 명칭 유래와 위치·길이·모습 등이 서술되었다. 또 울릉도에 관해서는 명칭 설명은 없고, 위치·길이·수심·모습 등을 비롯해서 조선인들이 배를 건조하고 조개를 채취해 말린다는 조사 상황이 자세히 적혀 있다.⁵²⁾ 그렇다면 아마기함이 1873년도판 『중국해역 항해지침』을 측량의 근거 혹은 참고로 활용했다는 사실은 어떠한 의미를 지닐까?

첫째, 아마기함이 영국 해도 2347 등과 함께 『중국해역 항해지침』을 근거로 '竹島'가 가공의 섬이었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영국 해도 2347과 「조선전도」에는 竹島 혹은 아르고노트 섬이 점선으로 그려져 있던 반면, 『중국해역 항해지침』에는 이미 아르고노트 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반영되어 삭제되어 있었다. 아마도 이는 그렇지 않아도 당시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왔던 『중국해역 항해지침』의 정확성을 더욱 신뢰하고 의존하는 계기, 더 나아가 『중국해역 항해지침』 속에 담긴 국가영역관도 수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아마기함은 『중국해역 항해지침』에 기재된 '마투 시마(MATU SIMA), 혹은 다즐레 섬(Dagelet island)'의 위치·형태·상황 등을 근거로 영국 해도 2347의 '마투 시마(다즐레 섬)·「조선동해안도」의 '다제레타도'와 동일한 섬인 '松島', 즉 울릉도라고 판단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51) 이진명, 2005, 앞의 책, 80~85쪽.

52) Hydrographic Office, 1873, THE CHINA SEA DIRECTORY, London: Hydrographic Office, Admiralty, pp.75~76.

아마기함은 울릉도 주위를 순항하면서 남동면의 약간 평탄한 곳에 도착해 『중국해역 항해지침』의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즉, 아마기함은 『중국해역 항해지침』에 기재된 것과 똑같이 조선인이 두 척의小船을 새로 건조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았을 뿐 아니라, 나아가 조선인에게서 직접 여름철에 건너와 새 배를 만들어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확인했던 것이다.

셋째, 아마기함이 리앙쿠르암, 즉 독도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중국해역 항해지침』에 실린 ‘리앙쿠르 록스’의 명칭 유래와 정보는 아마기함이 참고했던 영국 해도 2347과 러시아·일본의 「조선동해안도」에 표기된 ‘리앙쿠르 록스·호넷 섬·메넬라이초와 올리부차초’ 등의 명칭과 경위도상의 위치에 부합한다. 따라서 아마기함은 『중국해역 항해지침』의 ‘리앙쿠르 록스’가 울릉도와 오키섬 사이에 위치한 동일한 섬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아마기함이 ‘松島(울릉도)뿐만 아니라 ‘리앙쿠르암(독도)을 조선 영토라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아마기함을 비롯한 일본 수로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영국판 수로지인 『중국해역 항해지침』 제3장에는 소재 목인 ‘SEA OF JAPAN’ 아래 조선의 동해안(‘East coast of Korea’) 등이 들어 있고, 독도(‘LIANCOURT ROCKS’)·울릉도(‘MATU SIMA, Dagelet island’)·동해안 등의 순서로 기술되어 있는 반면, 오키섬(‘Oki islands’)은 당연히 제7장 일본의 도서들(JAPAN ISLANDS)의 일본 서부 연안(‘West coast of Nippon’)에 분류되어 있다. 이는 영국 해군 수로부가 ‘松島(울릉도)와 ‘리앙쿠르 록스(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 혹은 인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영국 해군 수로부의 분류 원칙은 조선과 일본 해역을 처음 다루었던 1858년 제2판 『중국수로지』부터 『중국해역 항해지침』을 거쳐 1904년 『일본, 한국 및 인접 지역 해역 항해지침(SAILING DIRECTIONS FOR JAPAN, KOREA, AND ADJACENT SEA)』까지 줄곧 유지되어 왔다. 즉, 1858년 제2판에 호넷섬(독도)은 제9장 조선의 동해에 있는 반면 오키는 제8장 일본 열도에,

1861년 제3판에는 마투 시마(울릉도)·타코 시마(아르고노트)·리양쿠르 록스가 제11장 조선의 동해에 있고 오키는 제8장 일본 열도에, 1864년 제4판에도 리양쿠르 록스·마투 시마·타코 시마가 제15장 조선의 동해에 편제되고 오키는 제13장 일본 서부해안(The West Coasts of Nipon)에, 1873년 초판에도 리양쿠르 록스·마투 시마(다즐레 섬)은 제3장 조선의 동해에 있고 오키는 제7장 일본 서부해안에 각각 실려 있는 것이다. 또 일본 해군 수로국 자료와 조선·일본주재 영국영사보고서 등을 참고했던 1884년 제2판과 1894년 제3판 역시 1873년 초판과 동일하게 편제되었다.⁵³⁾

요컨대, 영국 수로부는 1905년 일본이 독도를 강점하기 전까지 『중국수로지』 등을 편찬하면서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 혹은 인정하고 조선의 동해 항목으로 분류·서술했던 것이다. 이처럼 영국 해군 수로부가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사실은 적어도 일본 수로부에 의해 고스란히 수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수로부가 그 후 아마기함의 측량성과 등을 바탕으로 삼아 발행한 『환영수로지(寰瀛水路誌)』 제2권(1883, 1886)과 『조선수로지』(1894, 1899) 및 독도 강점 후에 발행한 『조선수로지』(1907)의 ‘조선동안’에 모두 독도를 기재했고, 독도 항목에 「조선동해안도」(1875)·「조선동안(朝鮮東岸)」(1893)과 「조선전안(朝鮮全岸)」(1896)을 기본으로 삼고 일본과 영국의 해도를 참고 해도로 덧붙인 사실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해안과 섬이 표시된 일본·영국 해도, 독도가 수록된 「조선동해안도」·「조선동안」과 「조선전안」, 그리고 『조선수로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독도는 당연히 조선의 섬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일본·영국 해도에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그려져 있으므로 독도의 소속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들 해도와 『조선수로지』 혹은 『일본수로지』를 근거로 독도가 한국에 속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⁴⁾

그 이유에 대해서 일본 측은 ‘竹島’(울릉도)·‘松島’(독도)에 대한 도명의 혼

53) 이진명, 2005, 앞의 책, 81~86쪽; 海上保安廳水路部 編, 1971, 앞의 책, 9~10쪽.

54) 앞의 주 3과 4를 참조.

란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 측은 당시 일본이 독도를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했으며 독도를 측량하지도 않아 아무런 정보를 갖지 않았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논외로 하고, 여기에서는 단지 아마기함이 독도를 ‘松島’ 혹은 ‘竹島’로 인식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영국 해군 수로부의 수로지와 해도의 정보를 매우 신빙했던 만큼, 그 속에 담겨진 영토관 역시 자연스럽게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아울러 아마기함이 『차이나 씨 디렉토리』와 영국 해도 등을 비교·참고하면서 竹島와 松島를 조사하려 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적어도 1878년 당시까지 해군성이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일본 고래의 지식이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도 알 수 있다.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878년 6월 아마기함이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최초로 조선의 ‘竹島’(아르고노트섬)와 ‘松島’(울릉도)를 측량한 사실은 일본의 독도 강점과 그 논리의 문제점을 새롭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 의미 역시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기타자와가 『죽도고증』에서 1878년 아마기함의 울릉도 측량을 거론하지 않았고, 이후 연구들도 원사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의 근거와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새로 발굴한 1878년 아마기함의 측량 보고를 토대로 아마기함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울릉도 측량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일본은 개항 후 해안 측량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강화도조약에 조선헌안 측량권을 삽입한 데 이어 「조선국연해도서측량심독서」를 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조선 해안을 본격적으로 측량함과 동시에 개항장을 선정

하기 위해 측량함 파견을 서둘렀다. 이때 외무성에서는 ‘松島’·‘竹島’개척원이 잇달아 제출되자, 두 섬의 실체를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결국 이 섬은 조선의 울릉도라는 견해가 우세했기 때문에 개척원은 모두 기각되었지만, 함선을 보내 그 실체를 조사하자는 주장이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878년에 외무성과 해군성은 개항장을 모색하러 아마기함을 파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때 작성된 「측량선파출목적」에는 조선동안에서 안전한 만항을 측량·선정하는 것 외에, 松島의 실황이 『차이나 씨 디렉토리』에 기록된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판별하라는 사항이 들어 있었다. 이에 따라 아마기함은 개항장 후보지역인 함경도 원산 일대를 측량한 뒤, 6월 28일 竹島의 유무를 살펴보기 위해 竹島로 향했으나 찾지 못하였다. 아마기함은 일본에서는 최초로 아르고노트 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직접 확인·판정했던 것이다. 그 다음날 아마기함은 역시 메이지유신 이래 일본에서는 최초로 울릉도를 조사·측량하였다.

아마기함의 측량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야마스미의 「조선국동해안약기」 외에도 함장 마쓰무라의 「조선국동안수로잡지」, 「조선국해안측량일지(朝鮮國海岸測量日誌)」 등이 남아 있다. 이 자료들에 아마기함이 竹島·松島 측량 당시 일본육군 참모국의 「조선전도」, 영국 해도 2347, 러시아 해도 「조선동해안도」 등과 1873년도판 영국수로지인 『중국해역 항해지침』 등을 참고했다고 적혀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조선전도」에는 울릉도를 ‘松島’로 표기하고, 울릉도의 서북쪽에 ‘竹島’가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두 섬이 조선의 영토인 울릉도와 독도라는 일본 고래의 인식이 담겨져 있었다. 영국 해도 2347의 1863년 개정판에는 점선으로 그려진 가공의 섬이 ‘타코 시마 혹은 아르고노트 확인 요’로, 울릉도는 ‘마투 시마(다즐레 섬)’로, 독도는 ‘리앙쿠르 록스·호넷 섬·메넬라이와 올리부차’로 각각 표시되었다. 아마기함은 이들에 표기된 ‘竹島’를 살펴본 결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던 것이다. 아마도 이들에 ‘竹島’가 점선으로 그려졌을 뿐 아니라 ‘타코 시마 혹은 아르고노트 확인 요’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아마기함은 竹島가 과연 존재하는지 그 ‘유무’를 조사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러시아 해도 「조선동해안도」에는 울릉도를 ‘다즐레 섬’으로, 독도의 서도·동도를 올리부차초·메넬라이초로 각각 표기했으며, 독도 바로 밑에는 서로 다른 지점에서 그린 세 점의 그림이 실려 있다. 일본 수로부는 이 해도를 토대로 삼고 러시아의 측량 성과를 반영한 영국 해도 2347을 참작해서 동일한 명칭의 「조선동해안도」를 간행하였다. 여기에는 아르고노트 섬이 점선으로 그려지고 ‘아루고나후타島’로, 울릉도는 ‘Matsu-sima’와 ‘다제레타도’로 각각 달리 표기되었다. 따라서 아마기함은 자국 수로부 간행의 「조선동해안도」를 참고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이 아마기함이 참고했던 지도와 해도에는 ‘竹島(아르고노트 섬)’와 ‘松島(울릉도)’뿐 아니라 독도가 경위도상 거의 비슷한 위치에 확실하게 표시되었고, 세 점의 독도 그림도 실린 것이 있었다. 비록 아마기함은 ‘竹島·松島’의 실황을 조사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하더라도, 독도가 분명하게 표시된 해도들을 참고했던 만큼 울릉도 외에 독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한편 『중국해역 항해지침』 제3장에는 리양쿠르 록스와 마투 시마(다즐레 섬) 순서로 기술되었고, 아르고노트 섬은 빠져 있다. 따라서 아마기함은 영국 해도 2347 등과 함께 『중국해역 항해지침』을 근거로 ‘竹島’가 가공의 섬이었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 아마기함은 『중국해역 항해지침』에 기재된 ‘마투 시마(다즐레 섬)’의 위치·형태·상황 등을 근거로 松島를 측량한 결과, 영국 해도 2347의 ‘마투 시마(다즐레 섬)·「조선동해안도」의 ‘다제레타도’와 동일한 섬인 울릉도라고 판단하게 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아마기함은 『중국해역 항해지침』에 실린 ‘리양쿠르 록스’의 명칭 유래와 정보가 영국 해도 2347 등에 표기된 리양쿠르 록스 등의 명칭과 경위도상의 위치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아마기함은 ‘松島(울릉도)’뿐만 아니라 ‘리양쿠르 록스(독도)’를 조선 영토라고 인식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아마기함을 비롯한 일본 수로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중국해역 항해지침』 제3장에는 리양쿠르 록스·마투 시마(다즐레 섬)이 기술된 반면, 오키섬은 제7장 일본의 도서들에서 일본 서부 연

안에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松島’(울릉도)와 ‘리앙쿠로 록스’(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했던 『중국해역 항해지침』의 분류 원칙은 한국과 일본 해역을 처음 다루었던 1858년 제2판 『중국수로지』부터 『중국해역 항해지침』을 거쳐 1904년 『일본, 한국 및 인접 지역 해역 항해지침』까지 줄곧 유지되었다.

이러한 영국 수로부의 독도인식은 실제로 일본 수로부에서도 고스란히 수용되었다. 이는 1873년판 『중국해역 항해지침』의 독도와 울릉도 내용이 1880년 6월 아마기함의 울릉도 측량으로 재차 확인되면서 그 후 일본 수로부가 간행한 『환영수로지』를 비롯해 『조선수로지』·『일본수로지』 등에 거의 그대로 게재되었던 사실로도 입증된다. 요컨대, 1878년 아마기함의 울릉도 측량과 독도인식은 그 후 일본 수로부뿐 아니라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모자 관계로 파악하고 조선 영토로 인식·인정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참고문헌

저서

- 남영우, 2011, 『일제의 한반도 측량침략사-조선말~일제강점기』, 법문사.
- 송병기, 1999,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판부(송병기, 2010, 『울릉도와 독도-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 신용하, 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 신용하, 2006,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경인문화사.
- 이진명, 2005,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 정영미, 2015, 『일본은 어떻게 독도를 인식해 왔는가』, 한국학술정보.
- 内藤正中, 2000, 『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朝関係史』, 多賀出版(나이토 세이추, 권오엽·권정 역, 2005, 『독도와 죽도』, 제이엔씨).
- 内藤正中·朴炳涉, 2007, 『竹島=独島論争-歴史資料から考える』, 新幹社(박병섭·나이토 세이추 지음, 호사가 유지 옮김, 2008, 『독도=다케시마 논쟁-역사자료를 통한 고찰』, 보고사).
- 小林茂, 2011, 『外方圖-帝國日本のアジア地圖』, 中央公論新社.
- 田保橋潔, 1940, 『近代日鮮關係の研究』上, 朝鮮總督府中樞院.
- 田村清三郎, 1965, 『島根県竹島の新研究』, 島根県総務部総務課(田村清三郎, 1975, 『島根県竹島の新研究』, 田村清三郎).
- 竹内正浩, 2013, 『地圖で読み解く日本の戦争』, 筑摩書房.
- 川上健三, 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 下條正男, 2004,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藝春秋.
- 海上保安廳水路部 編, 1971, 『日本水路史: 1871~1971』, 日本水路協會.

논문

- 강만길, 1985, 「외국의 문헌상에 나타난 독도」, 『독도연구』, 문광사.
- 김영수, 2009, 「근대 독도·울릉도 명칭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시각」, 『역사와현실』 73.
- 송휘영, 2012, 「근대 일본의 수로지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 『대구사학』 106.
- 윤소영, 2005, 「일본 메이지 시대 문헌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 인식」, 『독도연구』 1.
- 정영미, 2012a, 「일본의 '섬의 명칭 혼란에 대한 연구'와 Liancourt Rocks를 중심으로」, 『근대 이행기의 한일 경계와 인식에 대한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정영미, 2012b, 「『죽도고증』의 「마쓰시마 개척원」과 아마기함의 울릉도 조사-메이지 시대 새로운 마쓰시마 = 독도 창출 일(-) 과정」, 『한일관계사연구』 43.
- 한철호, 2008, 「메이지 초기 일본 외무성 관리 다나베 다이치[田邊太一]의 울릉도·독도 인식-일본의 '공도'정책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19.
- 한철호, 2013, 「일본 해군 수로부의 오키 측량과 독도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65.
- 한철호, 2014a, 「일본 수로부의 「조선동해안도」(1875) 간행·개정 및 활용과 독도 인식」, 『울릉제도(鬱陵諸島)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전망』,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학술심포지엄 발표문.
- 한철호, 2014b, 「일본 수로부 간행의 수로지와 해도에 나타난 독도」, 『독도연구』 17.
- 한철호, 2015, 「일본 수로부의 「조선전안」 간행·개정 및 활용과 독도 인식」, 『한국사연구』 169.
- 菊池眞一, 2007, 「幕末から明治初年にかけての日本近海英國海図-日本水路部創設前の海図史」, 『海洋情報部研究報告』 43.
- 堀和生, 1987, 「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 24.
- 田保橋潔, 1931, 「鬱陵島, その發見と領有」, 『靑丘學叢』 3.
- 田保橋潔, 1932, 「鬱陵島の名稱に就いて」, 『靑丘學叢』 4.
- 橫山伊徳, 2001, 「十九世紀日本近海測量について」, 黒田日出男 等編, 『地圖と繪圖の政治文化史』, 東京大學出版會.

자료

- 渡邊洪基 外, 『渡邊洪基松島ノ議』, 外務省外交史料館 청구기호 B-3-5-3-2.
- 山澄直清, 小林春三, 福地邦鼎, 1879, 「朝鮮國東海岸畧記」, 『水路雜誌』 16.
- 三浦重卿, 1882, 「朝鮮水路畧記」, 『水路雜誌』 41.
- 北澤正誠, 1881a, 『竹島考證』 下(北澤正誠, 2006, 『竹島考證』, 바른역사정립기획단).
- 北澤正誠, 1881b, 「竹島版圖所屬考」, 『日本外交文書』 14.
- 水路部 編, 1916, 『水路部沿革史: 自明治二年至十八年』, 水路部.
- 日本外務省 編, 1878, 『日本外交文書』 11.
- 日本外務省 編, 1965, 『日本外交年表并主要文書』, 原書房.
- 天城艦 測量課, 1878, 外出953, 『天城艦朝鮮全羅忠清兩道測量略図取調の件に付水路局へ下付(1), (2)』, 防衛省防衛研究所 청구기호 海軍省-公文類纂-M11-79-383.

天城艦 測量課, 1878, 『帝国軍艦天城号朝鮮国沿岸測量一件』, 外務省外交史料館 청
구기호 5-1-10-0-2.

Hydrographic Office, 1873, THE CHINA SEA DIRECTORY, London:
Hydrographic Office, Admiralt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 초록]

일본 수로국 아마기함[天城艦]의
울릉도 최초 측량과 독도인식

한철호

1878년 6월 일본 수로국의 아마기함[天城艦]은 '竹島'와 '松島'(울릉도)를 측량하였다. 이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처음 조선의 동해와 울릉도를 측량하고 '竹島'가 존재하지 않는 섬임을 확인한 것이었다. 이 사실은 일본의 독도 강점과 그 논리의 문제점을 새롭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임에도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는 새로 발굴한 자료를 토대로 1878년 아마기함이 울릉도를 측량한 내용과 그 의미를 부각시켰다.

일본은 개항 후 해안 측량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에 조선 해안 측량권을 넣었고, 이를 근거로 조선 해안을 본격적으로 측량하였다. 이때 외무성에서는 松島를 개척하자는 논의가 일어났다. 외무성과 해군성은 아마기함을 파견해 개항장 후보지를 찾고 松島의 실체를 파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1878년 6월 아마기함은 竹島와 松島를 조사한 결과, 竹島가 존재하지 않은 아르고노트 섬이며 松島가 조선의 울릉도라고 확인하였다.

당시 아마기함은 일본육군 참모국의 「조선전도」, 영국 해도 2347, 러시아 해도 「조선동해안도」, 『중국해역 항해지침』 등을 참고로 측량하였다. 이들 해도와 수로지에는 '竹島(아르고노트 섬)'와 '松島(울릉도)'뿐 아니라 독도가 경위도상 거의 비슷한 위치에 확실하게 표시되었다. 따라서 아마기함은 '竹島'가 가공의 섬이고, 松島가 울릉도라고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또 아마기함은 독도를 조사하지 않았지만, 이들 참고자료에 표시된 독도의 존재와 위치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을 것이다.

『중국해역 항해지침』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에 기술된 반면, 오키는 일본 서부 연안에 분류되었다. 따라서 아마기함은 ‘松島’(울릉도)뿐만 아니라 ‘리양쿠르 록스’(독도)를 조선 영토라고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했던 『중국해역 항해지침』의 분류 원칙은 1904년까지 유지되었고, 일본 수로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중국해역 항해지침』의 독도와 울릉도 내용은 1880년 6월 아마기함의 울릉도 측량으로 재차 확인되었고, 그 후 일본 수로부가 1907년 3월까지 간행한 모든 수로지에 거의 그대로 서술되었던 것이다. 1878년 아마기함의 울릉도 측량과 독도인식은 그 후 일본 수로부뿐 아니라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판단된다.

동북아역사재단

주제어

울릉도, 독도, 일본 수로부(국), 아마기함[天城艦], 아르고노트 섬, 영국 해도 2347(「일본」), 『중국해역 항해지침』, 「조선동해안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First Survey of Ulleungdo by the Warship *Amagi*
of the Japanese Hydrographic Office and
the Office's Recognition of Dokdo

Han Cheolho

The warship *Amagi*, which belonged to the Japanese Hydrographic Office(JHO), surveyed "Takeshima"(竹島, Argonaut Island) and "Matsushima"(松島, Ulleungdo) in June 1878. This was the first Japanese official survey of Ulleungdo, and it confirmed that "Takeshima" was a fictitious island. This historical survey provides an important basis for understanding the falsehood of Japan's claim on Dokdo, but it has not attracted appropriate attention until recently. This paper aims to reveal the meaning of the *Amagi*'s first survey of Ulleungdo in 1878 based upon newly obtained data.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coastal surveys after the opening of ports in Korea, Japan inserted its right to survey the Korean coast into the Treaty of Amity between Korea and Japan in 1876(Treaty of Ganghwa). On the basis of this treaty, the JHO freely surveyed the entire Korean coastline. At that time, there was a debate in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Matsushima. As a result,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Navy together dispatched the *Amagi* to determine a suitable place for an open port and to determine whether Matsushima existed or not. In June 1878, the *Amagi* surveyors concluded that Takeshima was the Argonaut Island that did not exist and that Matsushima was Ulleungdo,

Korea.

In its survey mission, the *Amagi* officers referred to The Complete Map of Korea published by the Japanese Army General Staff Office, British Admiralty Chart 2347(The Japan), East Coast of Korea(ВОСТОЧ НАГО БЕРЕГА ПОЛУОСТРОВА КОРЕИ) compiled by the Russian Admiralty, The China Sea Directory, and other texts. In these materials, not only Ulleungdo and Argonaut Island, but also Dokdo, were recorded accurately in nearly the same geographical positions. Therefore, the surveyors on the *Amagi* precisely recognized that Takeshima was a fictitious island and that Matsushima was Ulleungdo. The *Amagi* did not survey Dokdo, but the surveyors on board would have recognized its existence by referring to those materials.

Ulleungdo(Dagelet Island) and Dokdo(Liancourt Rocks) were described as Korean territory while Oki Island was described as belonging to the western coast of Japan in The China Sea Directory. The *Amagi* officers thus would have realized that Ulleungdo and Dokdo were Korean territory. This principle of The China Sea Directory that considered Ulleungdo and Dokdo as Korean territory was maintained until 1904, and was also accepted by the JHO. The contents of The China Sea Directory were verified again in the survey of Ulleungdo by the *Amagi* in June 1880, and reiterated afterwards in almost all of the sea directories published by the JHO until March 1907. In conclusion, the first survey of Ulleungdo by the warship *Amagi* of the JHO and its recognition of Dokdo would have provided an important case for allowing the JHO and the Japanese government to recognize Ulleungdo and Dokdo as Korean territory.

Keywords

Ulleungdo(Dagelet Island, Matsushima), Dokdo(Liancourt Rocks), Japanese Hydrographic Office(JHO), the warship *Amagi*, Argonaut Island, Admiralty Chart 2347(The Japan), *The China Sea Directory*, *East Coast of Korea*(ВОСТОЧНАГО БЕРЕГА ПОЛУОСТРОВА КОРЕ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병합조치’의 이중적 성격과 ‘병합칙유’의 동시 선포 경위

윤대원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10년 8월 29일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공포된 일본 황제의 ‘병합조서’¹⁾와 순종 황제의 병합칙유는 현재 그 절차와 형식에 있어 병합의 불법성과 관련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병합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순종 황제의 병합칙유에 어명이 없고 국새 대신 당시 통감부가 소지했던 어새만 찍힌 점 등을 근거로 일본이 이 칙유를 ‘날조’했고 또한 정식조약의 체결 절차상 반드시 있어야 할 비준서가 없는 점을 들어 순종 황제의 칙유를 비준서로 대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 이에

※ 투고: 2015년 2월 10일, 심사 완료: 2015년 7월 13일, 게재 확정: 2015년 11월 23일

1) 1910년 8월 29일 일본 황제가 선포한 것은 병합 ‘조서(詔書)’인데 병합 전 일본 정부의 대한방침에서는 ‘병합조치’를 선포한다고 하였다. 조서는 임금의 명령을 쓴 기록이고 조칙(詔勅)은 임금의 명령으로 들은 같은 의미다. 때문에 이 글에서 병합조서 또는 병합조치는 병합조칙으로 통일하고 다만 원문 인용과 같이 필요한 경우 ‘병합조서’라고 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2) 이태진, 1995, 「공포 칙유가 날조된 ‘일한병합조약」,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보호

반해 병합의 유효부당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순종 황제의 칙유는 병합에 즈음하여 한국 국민에게 병합의 뜻을 알리려고 연출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병합 칙유 제8조에 이미 양국 황제가 조약을 사전에 재가한 사실을 명기했기 때문에 비준 절차가 필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³⁾ 또한 칙유의 날조설은 “조칙과 ‘칙유’의 문서형식을 동일시하고 있는데 양자는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며 날조설을 비판하였다.⁴⁾ 이에 대해 대한제국기에 고종과 순종이 선포한 칙유의 문서형식을 병합칙유와 비교한 결과, 병합칙유는 대한제국의 고유한 칙유 형식도 1907년 11월에 일본이 강요한 일본의 공문서식도 아닌 ‘국적 불명’의 문서임이 다시 확인되었다.⁵⁾

한편 천황 대권에 의한 한국 통치와 헌법불시행을 천명한 ‘병합조서’는 조선총독의 제령제정권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아왔다. 조선총독에게 부여된 제령제정권 문제에 대해서는 1911년 제27회 제국의회에서 진행된 논쟁을 당시 일본의 국내 정치 구조인 문관파와 무관파의 대립이란 관점에서 파악하거나⁶⁾ 일본의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조선총독의 제령권과 일본 육군 군부의 대륙팽창정책과의 연관성에 주목한 연구가 있었다.⁷⁾ 또한 헌법불시행론 방침이 병합 직

조약”에서 “병합조약”까지], 도서출판 까치; 이태진, 2001, 「약식 조약으로 어떻게 국권을 이양하는가: 운노 교수의 비판에 답하며」, 『한국병합, 성립하지 않았다』, 태학사; 이태진, 2009, 「1904~1910년 한국 국권 침탈 조약들의 절차상 불법성」, 『한국병합과 현대-역사적 국제법적 재검토』, 태학사; 이태진, 2013, 「한국병합조약 양국 황제 조칙의 비준 효과」, 『한일역사문제의 핵심을 어떻게 풀 것인가?』, 지식산업사.

- 3) 운노 후쿠주, 2001, 「한국병합의 역사인식」, 『한국병합, 성립하지 않았다』, 태학사; 운노 후쿠주 지음, 정재정 옮김, 2008, 『한국병합사연구』, 논형.
- 4) 운노 후쿠주 지음, 정재정 옮김, 2008, 위의 책, 405쪽.
- 5) 윤대원, 2011, 「1910년 병합 ‘칙유’의 文書上的 결함과 불법성」, 『한국문화』 53.
- 6) 김창록, 2002, 「제령에 관한 연구」, 『法史學研究』 26; 이승일, 2007,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통해 본 식민지배의 양상-조선총독의 제령 제정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조선총독부 공문서: 일제시기 기록관리와 식민지배』, 역사비평사; 김종식, 2011, 「1910년대 식민지 조선 관련 일본 국내 정치 논의의 한 양상-제국의회의 식민지 조선 제령 입법 과정을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38.
- 7) 전영욱, 2014, 「한국병합 직후 일본 육군 및 제국의회의 ‘제국통합’ 인식과 그 충돌의 의미-제27회 제국의회의 制令權과 재조일본인 논의를 중심으로」, 『아세아연

전 헌법시행론으로 바뀐 것에 대해 헌법불시행론에 대한 일본 내부의 논쟁 과정에서 식민지에 대한 헌법의 시행 여부라는 일반적 관점과 함께 한국을 어떻게 편입할 것인가 하는 개별적 논점을 포함하게 되면서 결국 타이완과의 정합성을 이유로 병합 직전 헌법시행론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하였다.⁸⁾

하지만 이들 연구는 병합 후 제국의회에서의 논쟁이라는 일본 국내 정치의 분석과 제령제정권의 성립 문제에 집중되거나 병합 정책의 '정합성'이란 논리적 일관성에 치우쳐 병합조치 자체가 갖는 의미는 물론 이를 선포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의도를 간과하고 있다. 병합조치에는 제령제정권뿐만 아니라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가 통감으로 내정된 뒤 병합을 주도하면서 식민통치와 관련된 핵심 방침들이 포함되어 있어 병합의 본질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인데도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병합조치'와 동시에 공포된 병합칙유에 대해서는 이미 칙유가 '날조'된 것이고 비준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애초 병합방침에도 없었던 순종 황제의 병합조치를 왜 일본 황제의 조치와 동시에 선포하기로 했는지 그 경위와 배경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본 정부가 이미 타이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헌법불시행론 방침을 왜 조치에 명시하려 했는지, 이 과정에서 일본 군부의 역할과 의도가 병합 후 식민통치 방침에 어떻게 반영되고, 구체화됐는지 그리고 본래 병합방침에 없었던 순종 황제의 병합조치를 일본 황제의 조치와 동시에 공포하기로 한 배경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구』 제57권 2호.

8) 小川原宏幸, 2005, 「韓國併合と朝鮮への憲法施行問題－朝鮮における植民地法制度の形成科程」, 『日本植民地研究』 17; 오가와라 히로유키 지음, 최덕수·박한민 옮김, 2012, 「제5장 한국병합」,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 병합 구상과 조선사회』, 열린책들.

II. 병합조치의 선포 방침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면서 일본 황제의 병합조치를 선포한다는 방침이 내부적으로 처음 확인된 것은 1909년 7월 하순이었다.

일본 정부가 한국병합을 비밀리에 준비한 것은 1909년 3월 이후였다. 1909년 3월 말 외무대신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의 지시를 받은 외무성 정무국장 구라치 데츠키치[倉知鐵吉]가 병합방침 초안을 만들고 이것을 고무라가 수정하여 대한방침(對韓方針)을 작성하였다. 이 안을 가지고 그해 4월 10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통감, 가즈라 타로[桂太郎] 수상, 고무라 외무대신 3인이 비밀리에 만나 고무라가 작성한 대한방침을 합의하였다. 이 합의안은 그해 7월 6일 내각에서 ‘대한병합방침급시설대강(對韓併合方針及施設大綱)’으로 공식 결정되었다. 이 방침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였다. 즉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병합한다는 것’과 ‘병합의 시기가 도래하기까지 충분히 보호의 실권을 거두고 실력을 키운다’는 것이었다.⁹⁾

고무라는 7월 6일 각의 결정 직후 곧바로 이 결정에 대한 사후 방침을 준비하였다. 고무라의 지시를 받은 구라치는 병합의 적당한 시기에 이르기까지의 사후 조치안인 「대한세목요강기초안(對韓細目要綱基礎案)」을 작성하였다. 고무라는 이 기초안을 근거로 “병합단행의 순서, 방법 등 항목의 세목에 관해 추고(推敲)를 거듭한 한국병합의 선포, 한국황실의 처분, 한국 장래의 통치, 대외 관계 등에 걸친 여러 항목을 상세히 갖춘 의견서”를 작성하여 7월 하순 가즈라에게 제출하였다.¹⁰⁾ 이 때 가즈라도 사후조치에 대한 자신의 방침인 「한국병합방침의 대강(大綱)」(이하 「대강」)을 제시하고 논의를 하였다.¹¹⁾ 한국을 병합할

9) 倉知鐵吉 述, 1939, 『韓國併合の經緯』, 外務大臣官房文書課, 2~4쪽; 日本外務省 編, 1966, 『小村外交史』, 原書房, 834~845쪽; 日本外務省 編纂, 1961, 『日本外交文書』 第42卷 第1冊, 巖南堂書店, 179~180쪽.

10) 倉知鐵吉 述, 1939, 위의 책, 6~7쪽; 日本外務省 編, 1966, 위의 책, 840~841쪽.

11) 德富猪一郎 編, 1917, 『公爵桂太郎傳』 坤卷, 故桂太郎公爵紀念事業會, 459쪽.

때 일본 황제가 조칙을 선포한다는 방침은 이때 처음으로 등장했고 시기는 1909년 7월 하순이었다.

그럼 고무라와 가츠라가 구상한 병합조칙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고무라의 「의견서」를 보면 전문에서 “한반도에서 우리 실력을 확립하고 아울러 한국과 제외국과의 조약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해 적당한 시기에 한국병합을 단행하기로 한 것은 이미 조정에서 결정된 바이고 병합 실행의 시기 여하는 내외의 정세에 의해 결정될 문제에 속하니”, “언제 병합 시기가 도래할지 알기 곤란함에 따라 병합 실행의 경우 우리가 취해야 할 방침 및 조치는 지금부터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구체적인 방침으로 4개항을 제시하였다.¹²⁾ 그 가운데 병합조칙과 관계된 것이 ‘제1 병합의 선포’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 병합의 선포

1. 병합 실행에 즈음해서는 특히 조칙을 발표하여 병합 사실을 내외에 선포하고 아울러 좌의 사항을 선명(宣明)하게 할 것
 - (1) 병합을 실행하는 것이 부득이함에 이른 사유
 - (2) 동양 영원의 평화를 유지하여 제국의 안고(安固)를 확보하고 아울러 한국민과 한반도에서의 외국인의 강녕을 증진하기 위해 병합이 필요하다는 것
 - (3) 반도에서 외국의 권리는 병합에 의해 일어날 신사태(新事態)와 양립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국 정부에서 충분히 이를 보증한다는 것
2. 우 조칙에서는 오히려 한반도의 통치가 완전히 천황 대권의 행동에 속한다는 뜻을 보여줌으로써 반도의 통치가 제국헌법의 조장에 준거해야 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 후일의 쟁의를 예방할 것¹³⁾

고무라는 병합조칙의 선포와 함께 조칙에서 밝힐 내용으로 두 가지를 제시

12) 日本外務省 編, 1966, 앞의 책, 841쪽.

13) 日本外務省 編, 1966, 위의 책, 841~842쪽.

하였다. 하나는 조칙 선포를 통해 병합 사실을 내외에 알리되 병합이 부득이한 사유와 동양 평화의 유지 그리고 병합 이후 한국과 조약을 맺은 제외국의 권리 보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병합 이후 한국 통치는 천황의 대권에 속함을 조칙으로 선포함으로써 한국에는 제국헌법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 후일의 쟁의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츠라의 「대강」을 보자. 가츠라는 전문에서 “적당한 시기에 한국의 병합을 단행하는 것은 이미 조정에서 결정된 바다. 그리고 병합 단행의 시기에 이르면 제국 정부와 한국 정부와의 사이에 하나의 조약을 체결하고 한국의 뜻에 따랐다는 형식으로 병합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온당한 방법이지만 만약 이 방법으로 이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의 일방적 행위로 인해 제국 정부에서 한국에 대해 병합을 선언하는 것으로 하고 더욱 어느 방법에 의할지 관계없이 병합 실행에 즈음해서는 조칙으로서 병합을 선포”한다고 하면서¹⁴⁾ 3개 항을 제시했는데 병합조칙과 관계되는 것이 다음의 ‘제2 병합의 선포’다.

제2 병합의 선포

병합 실행에 즈음하여 특히 조칙을 발하여 병합의 사실을 내외에 선포하고 아울러 좌의 사항을 선명하게 할 것

- (1) 병합의 사정 및 병합의 실행에 이른 사유
- (2) 동아(東亞)의 영원한 평화를 유지하고 제국의 안고(安固)를 확보하고 아울러 한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한반도에서의 외국인의 안녕을 꾀하기 위해 병합이 필요하다는 것¹⁵⁾

가츠라 역시 고무라와 마찬가지로 병합 실행에 즈음한 조칙 선포를 주장하였다. 다만 가츠라는 고무라와 달리 조칙 선포를 조약 체결에 따라 병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방적인 선언에 따른 병합의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조칙을 선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조칙에서 분명하게 밝힐 내용

14) 德富猪一郎 編, 1917, 앞의 책, 460쪽.

15) 德富猪一郎 編, 1917, 위의 책, 461~462쪽.

은 앞서 본 고무라와 대동소이하다.

「의견서」의 '제1 병합의 선포' 1항과 「대강」의 '제2 병합의 선포'에서처럼 고무라와 가츠라가 병합조치에서 강조한 내용은 동일하다. 그것은 병합이 부득이하고 동양 평화를 위한 것이며 한국민의 복리 증진과 외국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내외에 알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후조치의 세목에 대한 방침에서 고무라와 가츠라 사이에는 차이도 있었다. 가츠라는 「대강」에서 조치를 조약 체결에 따라 병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병합의 한 방법으로 주장한 반면, 고무라의 「의견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제2 병합의 선포' 2항에서 '병합 후 한국의 통치가 천황의 대권에 속하며 한국에는 제국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식민통치에 대한 대방침을 제시하였다.

문제는 병합조치에 대한 가츠라와 고무라의 의견 차이 실제 여부와 함께 이들 방침이 일본 정부의 방침으로 결정됐는지 여부다. 『소촌외교사』와 『공작계태랑전』의 두 편자는 각각의 방침이 각의 결정됐다고¹⁶⁾ 했으나 사실은 각의 결정되지 않았다.¹⁷⁾ 또한 『소촌외교사』에 따르면 가츠라와 고무라는 「의견서」를 논의한 뒤 이어서 “별도로 병합이 조약체결의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조치를 협의했다”고 하였다.¹⁸⁾ 이것은 병합방법과 관련하여 가츠라와 고무라가 처음부터 조약체결에 의한 병합을 전제하고 있었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를 협의했다는 것은 가츠라가 제시한 ‘일방적 선언에 의한 병합’을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무라는 그해 가을 「의견서」 즉 「외무대신안」을¹⁹⁾ 각의에 제출하였다. 이 사실은 최소한 당시 병합 논의를 주도하던 가츠라와 고

16) 日本外務省 編, 1966, 앞의 책, 843쪽; 徳富猪一郎 編, 1917, 앞의 책, 459쪽.

17) 和田春壽, 2014, 「寺内統監の韓國併合手法について」, 『2010년의 약속, 2015년의 미래』, 2010년 한일지식인공동성명기념 3차 학술회의(서울) 발표문, 13쪽.

18) 日本外務省 編, 1966, 앞의 책, 843쪽.

19) 「韓國併合ニ關スル閣議決定書 共三」,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 A03023677100, 公文別録·韓國併合ニ關スル書類, 明治四十二年~明治四十三年 第一卷(國立公文書館)(이하 『韓國併合ニ關スル文書』). 이 문서의 표지에는 “명치 42년(1909-필자) 가을 각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는 난외의 주가 있다.

무라가 사후조처안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이다. 다만 가츠라와 고무라는 병합의 ‘적당한 시기’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두 사람은 1910년 1월 ‘병합의 즉시 단행’을 확정했고²⁰⁾ 일본 정부는 이러한 ‘즉시 병합론’을 그해 2월 중에 결정함으로써²¹⁾ 이후 병합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같이 가츠라와 고무라는 1909년 7월 하순 병합 단행에 대비한 사후조처의 세목에 대한 방침에 합의를 했고 그 합의가 이듬해 2월 일본 정부의 방침이 되었다.²²⁾ 따라서 일본 정부가 병합 실행에 즈음하여 조칙을 선포하려 한 첫 번째 목적은 불법적인 병합을 합리화하여 대내외적으로 알리려는 데 있었다. 가츠라가 「대강」의 전문에서 조약 체결에 따른 병합이든 조칙 선언에 따른 병합이든 병합을 실행할 즈음에는 조칙으로 병합을 선포한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Ⅲ. 헌법불시행론 방침과 식민통치의 시정방침

1_헌법불시행론 방침과 제령제정권²³⁾

병합조칙의 선포가 병합 사실을 내외에 알리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었다면 다

20) 倉知鐵吉 述, 1939, 앞의 책, 12쪽.

21) 오가와라 히로유키 지음, 최덕수·박한민 옮김, 2012, 앞의 글, 391쪽.

22) 가츠라와 고무라의 병합 방침 및 병합 방법의 합의 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윤대원, 2015, 「일제의 한국병합 방법과 식민 통치 방침」, 『한국문화』 70, 301~310쪽을 참조.

23) 제령(制令)이란 1910년 8월 29일 공포된 일본 황제의 긴급 칙령 제324호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에서 등장하는 용어로서 이 칙령에 따르면 법률의 효력을 갖는 조선총독의 명령(제1조)을 제령(제6조)이라고 했다. 統監府, 1910, 『韓國併合顛末書』, 34~35쪽.

음으로 병합조직에서 주목할 내용은 고무라의 「의견서」의 '제1 병합의 선포'에 있는 두 번째 항목이다. 즉 한반도의 통치는 완전히 천황 대권의 행동에 속하고 병합 후 한국 통치에 제국헌법을 시행치 않으며 이를 분명히 하여 “후일의 쟁의를 예방할 것”이라고 한 부분이다. 고무라가 우려한 ‘후일의 쟁의’란 무엇일까? 이것은 일본 육군성 참사관 아키야마 마사노스케(秋山雅之介)가 제3대 통감으로 내정된 데라우치의 지시로²⁴⁾ 작성한 두 문서에서 알 수 있다. 두 문서란 1910년 5월 작성한 ‘즉시 병합안’인 「한국합병에 관한 건」과²⁵⁾ ‘헌법불시행론’을 이론적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작성한 「합병 후 한반도 통치와 제국헌법과의 관계」이다.²⁶⁾

아키야마는 「한국합병에 관한 건」에서 제국의 법령·칙령·기타의 법규를 모두 반도에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이완 병합 당시와 마찬가지로 각의 결정으로 한반도를 제국헌법의 범위 밖에 두고 통치에 관한 사항은 칙령으로서 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²⁷⁾ 그런데 아키야마는 「합병 후 한반도 통치와 제국헌법과의 관계」에서는 “중래 타이완에 대해서는 각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 결정이 자연 소멸했던 선례도 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해서 대권 직접의 통치주의를 채택하는 데 있어 각의 결정의 형식으로는 불가하며 반드시 조서로서 이를 언명”해야 한다고 하였다.²⁸⁾

24) 小松緑, 1920, 『韓國併合之裏面』, 中外新論社, 81쪽; 小松緑, 1936, 『明治外交秘史』, 千倉書房, 437쪽.

25) 「韓國併合ニ關スル件」, 『韓國併合ニ關スル文書』.

26) 「合併後韓半島統治と帝國憲法との關係」, 『韓國併合ニ關スル文書』. 오가와라는 관심에 육군성이 인쇄된 이 문서는 아키야마가 작성한 「한국합병에 관한 건」과 종이 같고 필적도 흡사하며 내용 등에서 그가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오가와라 히로유키 지음, 최덕수·박한민 옮김, 2012, 앞의 글, 407쪽.

27) 「韓國併合ニ關スル件」, 『韓國併合ニ關スル文書』, 20쪽. 아키야마는 헌법불시행론과 대권에 의한 통치 방침이 1910년 5월 작성한 「한국합병에 관한 건」에서 이전에 “각의 결정”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한 각의 결정문을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1909년 7월 하순 가즈라와 고무라가 합의한 ‘즉시 병합론’이 정부방침으로 확정되는 1910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각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추측된다.

28) 「合併後韓半島統治と帝國憲法との關係」, 『韓國併合ニ關スル文書』, 19쪽.

아키야마는 두 문서에서 병합 후 한국에 적용할 헌법불시행 방침과 선포 사례로 타이완을 들었지만 이의 결정 및 선포 방식에는 의견을 달리하였다. 전자에서는 ‘각의 결정’과 ‘칙령’을 제시한 반면, 후자에서는 ‘각의 결정’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서로서 언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두 문서에는 헌법불시행방침과 관련하여 같은 타이완의 사례를 제시하면서도 그 처리 방식이 다르다. 후자가 전자의 방식을 부정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요컨대 두 문서의 작성에 시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전자의 방식을 ‘불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발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1910년 5월 「한국합병에 관한 건」이 알려진 후 이른바 고무라가 우려했던 ‘후일의 쟁의’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아키야마가 「합병 후 한반도 통치와 제국헌법과의 관계」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타이완의 사례로 여겨지는 ‘후일의 쟁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1910년 6월 육군성 안에 비밀리에 조직된 병합준비위원회의 일원이었던²⁹⁾ 고마츠 미도리[小松綾]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알 수 있다. 그는 병합준비위원회에서 크게 의논을 다룬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것은 제국헌법을 병합 후 새 영토에 시행할지 여부였고, 반대 주장의 지못 유력한 이론으로서 “헌법의 시행지역에는 하등의 제한도 없고, 오히려 새 영토가 제국의 판도에 편입된 이상 새로운 영토도 역시 제국이기 때문에 제국에 시행되는 헌법은 당연히 새 영토에도 미치는 것이다”라고 하며 꼼짝할 수 없는 반대의 선례로서 타이완을 예로 들었다고 하였다.³⁰⁾

‘후일의 쟁의’란 곧 타이완의 경우처럼 병합 후 한국에 헌법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대한 반대 논란을 가리킨 것이다. 이것은 고마츠나 아키야마가 지적했듯이 이미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 체결의 결과 청에서 할양받은 타이완의 통치와 관련하여 이미 겪은 문제였다.

사실 1895년 4월 일본이 타이완을 할양받은 뒤 총독정치를 실시하면서 법

29) 小松綾, 1920, 앞의 책, 89쪽; 日本外務省 編, 1966, 앞의 책, 846쪽.

30) 小松綾, 1920, 위의 책, 94~96쪽.

를 제63호 '타이완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율령이라는 법 형식을 도입하였다. 그런데 제국의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타이완 총독에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제국헌법 제5조, "천황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얻어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며 격렬한 논란이 벌어졌다. 그 결과 1906년 4월 법률 제31호에 의해 타이완 총독의 율령제정권이 제국헌법 제5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 타이완도 결국 헌법을 시행하게 되었다.³¹⁾ 타이완의 경우 할양 당시 각의 결정을 가지고 칙제를 거쳐 타이완 총독에게 법률의 효력을 갖는 율령제정권을 부여했으나 제국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헌법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아키야마가 '타이완에서 대권 직첩의 통치주의 채택이 각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연 소멸'했다거나 "타이완의 법률사항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갖고 통치권을 시행하게 된 것에 불과했다"³²⁾는 지적은 이런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고무라가 '후일의 쟁의를 예방'해야 한다고 한 것도 바로 이런 타이완의 선례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것은 병합 후 한국이 타이완의 선례처럼 되지 않는 방안 즉, 병합 후 조선총독에게 제국의회의 협찬 없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인 제령제정권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이 대권에 의한 통치를 조칙에 언명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곧 병합조치를 선포하는 두 번째 목적이었다.

그럼 「합병 후 한반도 통치와 제국헌법과의 관계」를 통해 헌법시행론을 비판하고 헌법불시행론을 주장한 아키야마의 논거를 살펴보자.

우선 아키야마는 한국을 병합할 경우 제국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반도의 사정이 제국 내지와 같지 않고 문화도 역시 내국인과 같지 않음은 물론, 한국의 민정과 풍속 및 관습 등의 문화 정도가 일본에 비해 뒤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며³³⁾ 당시 제국주의 침략의 구실이었던 문명론을 들어 합리화하였

31) 이상은 김창록, 2002, 「제수에 관한 연구」, 『法史學研究』 26, 115~118쪽 참조.

32) 「合併後韓半島統治ト帝國憲法トノ關係」, 『韓國併合ニ關スル文書』, 18쪽.

33) 「合併後韓半島統治ト帝國憲法トノ關係」, 『韓國併合ニ關スル文書』, 1쪽.

다. 그리고 뒤이어 “한국을 병합하여 제국의 영토 일부로 삼는 경우 제국헌법의 해석상 한반도에도 당연히 적용되도록 하고 그곳의 법률사항에 대해서는 제국의회에서 협찬권을 갖는 것이 마치 현재 타이완 및 사할린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거나 “영국, 프랑스, 독일 제국과 같이 식민지의 입법권은 제국의회가 최고권을 가지고 있다”³⁴⁾는 헌법불시행론 반대론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아키야마는 일본은 “헌법상 이들 제국(영국, 프랑스 독일 등-필자)과 완전히 그 정체(政體) 및 국체(國體)를 달리하고 제국의 주권은 완전히 천황 일인에게 수렴되어 제국주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국의 주권은 천황과 일체를 이루며 천황은 주권을 친히 장악하고 있고 제국의회는 단지 헌법에 규정된 권한 안에서 제국입법상의 협찬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제국헌법 제정 당시 헌법조항에 따라 통치해야 할 지역으로 타이완, 사할린, 관동주 및 한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국헌법의 “적용을 타이완, 사할린, 관동주 및 한국으로 확장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제국주권자가 그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여 내지 이외의 제국 영토에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다.³⁵⁾ 한 마디로 새 영토에 대한 제국헌법의 적용 여부는 유일 주권자인 천황의 대권 행사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을 병합할 경우 “조선반도는 제국의 영토가 되어 제국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³⁶⁾ “당연 천황의 대권에 의해 이를 통치하고 명령으로써 조선 총독부관제를 발표하여 조선반도에서의 법률사항 및 회계사항은 모두 명령으로써 규정하는 것도 제국헌법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였다.³⁷⁾ 그러면서 “본 견해와 같이 조선에 대해서 대권 직접의 통치주의를 채택하는데 있어서는 각의 결정의 형식으로는 불가하니 반드시 조서를 가지고 이를 언명”해야 한다고

34) 「合併後韓半島統治ト帝國憲法トノ關係」, 『韓國併合ニ關スル文書』, 11쪽.

35) 「合併後韓半島統治ト帝國憲法トノ關係」, 『韓國併合ニ關スル文書』, 13~14쪽.

36) 「合併後韓半島統治ト帝國憲法トノ關係」, 『韓國併合ニ關スル文書』, 15쪽.

37) 「合併後韓半島統治ト帝國憲法トノ關係」, 『韓國併合ニ關スル文書』, 16쪽.

결론지었다.³⁸⁾ 즉 병합 후 한국을 대권에 의해 직접 통치하는 데는 각의 결정으로는 불가능하고 유일 주권자인 천황의 조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조서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국 정부는 한국 인민 및 동 반도에서의 제국 신민 및 제 외국 인민의 생활을 안전하도록 확고히 하고 복리를 증진하여 동양 평화를 영원히 보지할 것을 기약하기 위해 한국 황제의 간청을 받아들여 동국을 제국에 합병할 것을 선언하고 동시에 동 반도의 민정 풍속 및 관습 등은 제국 내지와 그 내용을 달리하고 문화의 정도는 내지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동 반도의 통치에 대해서는 제국헌법의 조장을 적용치 않고 반도 인민의 생활을 안고(安固)히 하고 행복을 증진하는 데 적절한 시정을 할 필요에 기초하여 대권으로써 직접 이를 통치한다는 취지를 조서 중에 언명해 둘 필요가 있다.³⁹⁾

아키야마가 강조한 병합조치에 언명될 내용은 병합이 부득이한 사유로서 한국 인민과 제국 신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그리고 동양의 평화를 위해 한국 황제의 간청을 받아들인 것이고, 한국의 문화 정도가 내지와 달라 반도 통치에 제국헌법을 적용할 수 없어 대권으로 직접 통치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1909년 7월 하순 고무라와 가츠라가 병합조치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한 내용 그대로다. 이처럼 병합조치의 선포는 병합의 부득이한 사실을 내외에 알리고 조선총독에게 제령제정권을 부여하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불시행론 방침은 헌법시행 방침으로 바뀌었다. 1910년 7월 2일 각의에서 결정한 「헌법의 석의(釋義)」를 보면 “한국을 병합한 이상 제국헌법은 당연히 새 영토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렇지만 사실 새 영토에 대해 제국헌법의 각 조항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함으로써 헌법의 범위에서 제외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⁴⁰⁾ 고마즈가 헌법불

38) 「合併後韓半島統治ト帝國憲法トノ關係」, 『韓國併合ニ關スル文書』, 19쪽.

39) 「合併後韓半島統治ト帝國憲法トノ關係」, 『韓國併合ニ關スル文書』, 20~21쪽.

40) 「憲法の釋義」, 『韓國併合ニ關スル文書』.

시행론 방침이 반대에 부딪혀 “부득이 새 영토에는 이론상 당연히 헌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하고 실제에서는 그 조장을 실행하지 않고 헌법의 범위 내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⁴¹⁾고 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시행론은 명목상에 지나지 않았다. 즉 ‘해석’상은 한국에 헌법을 시행하지만 사실상은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한국 통치의 근거는 헌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천황의 대권에 의한다는 것이다.⁴²⁾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10년 8월 29일 긴급칙령 제324호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조선총독에게 제령제정권을 부여하였다.⁴³⁾

이처럼 병합조칙의 선포는 병합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일차적 목적 이외에 대권에 의한 한국의 직접 통치를 선포함으로써 조선총독에게 제국의회의 간섭 없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인 제령제정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2_ 식민통치 방침과 일본 군부

고무라라는 「의견서」 ‘제1 병합 선포’ 2항에서 병합 후 한국에 헌법을 시행하지 않고 천황의 대권에 의해 통치한다고 하고 또한 ‘제2 한국황실 처분’에서 “한국 황제는 이를 완전히 폐위시킨다”고 하였다. 이것은 곧 병합 후 한국을 완전히 폐멸시키고 제국헌법이 시행되지 않는 ‘외지’로 두어 제령제정권을 부여받은 조선총독이 통치한다는 식민통치의 대방침을 제시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헌법불시행론 방침을 두고 일어났던 논쟁의 핵심인 조선총독의 제령제정권 문제

41) 小松織, 1920, 앞의 책, 96쪽. 오가와라는 “헌법비시행이라는 6월 3일의 각의 결정이 7월 초순에 헌법시행론으로 전환”한 데는 6월 25일 이후 조선에 대한 헌법 시행 문제를 검토한 추밀원의 반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오가와라 히로유키 지음, 최덕수·박한민 옮김, 2012, 앞의 글, 414쪽.

42) 윤노 후쿠슈 지음, 정재정 옮김, 2008, 앞의 책, 429~430쪽.

43) 칙령 제324호는 이듬해 열린 제27회 제국의회에서 논쟁을 거친 후 3월 25일 법률 제30호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로 확정되었다. 전영욱, 2014, 앞의 글, 146쪽.

는 병합 후 식민통치 방침과 직접 연관된 것이었다. 이것이 일본 정부가 앞선 타이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에게 조직을 통해 제령제정권을 부여하려고 했던 이유다.

고무라가 「의견서」에 명시한 '제1 병합 선포'의 2항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식민통치의 시정방침으로 구체화되었는지 살펴보자.

'헌법불시행론'이 병합방침으로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은 1910년 5월 30일 육군대신 데라우치가 제3대 통감으로 정식 임명되기 직전이었다. 데라우치는 이미 통감으로 내정된 상태였던 5월 24일 가츠라에게 13개 항목으로 된 「조건」을 제시하였다.⁴⁴⁾ 이 「조건」은 5월 27일 가츠라 등 내각의 동의를 얻어⁴⁵⁾ 6월 3일 각의에서 자구하나 고치지 않고 「병합 후 한국에 대한 시정방침」으로 결정되었다. 이 방침에는 “조선에는 당분간 제국헌법을 시행치 않고 대권에 의해 통치할 것”(1항), “총독은 천황에 직예하며 조선에서의 일체의 정무를 통할하는 권한을 가질 것”(2항), “총독에게는 대권의 위임에 의해 법률사항에 관한 명령을 발하는 권한을 부여할 것”(3항) 등이 명시되어 있다.⁴⁶⁾

이와 같이 1909년 7월 하순 고무라가 병합조직에 명시할 것으로 제시했던 대권에 의한 한국통치와 헌법불시행론이 제3대 통감 데라우치의 요구에 의해 이듬해 6월 3일 각의에서 시정방침으로 확정된 것이다. 그것은 총독에게 입법권을 위임함으로써 조선을 이법(異法)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⁴⁷⁾ 총독이 한국통치에 관한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장악하고 초법적인 전제정치를 시행하는 '총독정치'였다.⁴⁸⁾ 결국 일본 정부가 헌법 해석을 통해 한국을 제국헌법의 외지로 규정하려고 한 것은 초법적으로 한국을 통치할 총독정치를 위한 것이

44) 「條件」, 『韓國併合ニ關スル文書』. 이 문서의 표지에는 “어람치상우후(御覽置相爲候) 24일”이란 난외의 주와 데라우치의 서명이 있다.

45) 「韓國併合實行ニ關スル方針」, 『韓國併合ニ關スル文書』.

46) 日本外務省 編纂, 1962, 「併合後韓國ニ對スル施政方針決定ノ件」, 『日本外交文書』 第43卷 第1冊, 巖南堂書店, 662쪽.

47) 전영욱, 2014, 앞의 글, 150쪽.

48) 전상숙, 2006, 「러일전쟁 전후 일본의 대륙정책과 데라우치(寺內正毅)」, 『사회와 역사』 제71집, 한국사회사학회, 141쪽.

었다.

이어서 7월 8일 일본 각의는 병합 실행에 즈음하여 선포할 조칙안을 결정했는데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조칙안을 결정하였다.⁴⁹⁾ 하나는 조약 체결에 의해 병합이 될 경우 선포할 ‘조칙안’이고 다른 하나는 ‘조약 체결이 없는 경우의 조칙안’이다. 조칙안이 두 가지인 것은 일본 정부가 조약 체결에 의한 병합과 그렇지 않을 경우의 두 가지 병합 방법을 준비했음을 뜻한다. 이것은 가쓰라가 「대강」에서 ‘한국의 뜻에 따라 조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병합을 실행하되 이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방적 행위에 의해 병합을 선언한다’고 한 병합 방법이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병합 단행 직전까지 최종적인 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채 한국의 현지 사정에 따라 적용할 두 가지 방법과 각각의 경우에 선포할 조칙안을 사전에 준비했던 것이다.

두 조칙안은 내용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안 모두 전반부에는 병합이 부득이한 사유를 적시하고, 후반부에는 병합 후 한국에는 천황의 명을 받아 제반 정무를 총괄할 총독정치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다른 점은 중반부인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조칙안의 가장 큰 차이는 병합의 방법에 관한 부분이다. 즉 ‘조칙안’은 ‘한국 황제의 희망에 의하여’ 조약 체결에 의해 병합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 반면 ‘조약 체결 없는 경우의 조칙안’은 동양 평화를 위해 부득이 ‘일본의 선언’에 의해 병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각각의 경우 병합 후 한국 황실과 한국민에 대한 처우도 전자의 경우는 우호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두 조칙안에는 언명해야 한다고 강조됐던 대권에 의한 통치와 헌법 불시행론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 대신 ‘조칙안’의 최종 수정안인 8월 29일에 공포된 일본 황제의 ‘병합조서’에서 한국 “민중은 직접 짐(천황-필자)이 위무하는 아래에 서서 그 강복을 증진할 것이며”, “짐은 특히 조선총독을 두고 짐

49) 「條約詔勅宣言案」, 『韓國併合ニ關スル文書』.

〈표 1〉 두 조칙안의 증반부 내용 비교

조약 체결이 있는 경우의 조칙안	조약 체결이 없는 경우의 조칙안
<p>한국 황제 폐하는 이 사태를 통감하고 한국을 들어서 일본제국에 병합하여 시세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 곤란하여 이번에 그 뜻을 짐에게 가져오니 짐 역시 현하의 형세에 비추어 병합이 부득이함을 생각하고 이에 한국 황제 폐하의 희망에 응하여 영구히 동국을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수락하느니라.(밀줄-필자) 병합 후 한국 황제 폐하 및 황실 각원은 항상 상당한 우대를 받을 것이고 한국인민은 직접 짐이 위무하는 아래에 서서 복리를 증진할 것이고 한국의 치안은 항상 보지되어 산업 및 무역은 현저한 발달을 보기에 이르고 동양 평화는 이에 따라 더욱 공고해짐은 짐이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바이니라.</p>	<p>이를 현하의 형세에 비추어 서상의 목적을 이루기 곤란한 이 때 전연 한국을 제국에 병합하는 것은 진실로 부득이한 바에 속하니 짐은 즉시 이 요구에 응하여 동양의 대국을 살펴서 영구히 동국을 제국에 병합하는 것은 선언한다.(밀줄-필자) 한국 황제 폐하 및 황실 각원은 병합 후에도 각자 새로운 지위에 적당한 존칭과 위엄 및 명예를 향유할 것이며 이를 보지하는데 충분한 비용은 짐의 정부로 하여금 특별히 지출케 할 것이니라. 짐은 항상 공훈이 있는 한국인에 대해 상당한 상창을 할 것이고 진실되고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인의 신체 재산에 대해서는 완전한 보장을 할 것이며 적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는 한국에서의 제국 관리로 채용할 것이니라.</p>

의 명을 받아서 육해군을 통솔하며 제반 정무를 모두 총괄케"한다고 하였다.⁵⁰⁾ 즉 '병합조서'의 핵심 내용인 '천황에 의한 민중의 직접적인 위무', '총독에 의한 통치'는 병합늑약에 없는 것으로 병합 후 한국의 통치형태와 통치방침의 기본을 명시한 것이다.⁵¹⁾ 이처럼 '병합조서'에서는 일본 황제의 직접 통치와 헌법불시행론을 일본 황제의 명을 받은 조선총독이 제반 정무를 총괄한다는 것으로 대체됐다.

이처럼 5월 24일 데라우치가 제의한 「조건」이 각의에서 그대로 결정되고 그 방침이 '조칙안'에 그대로 반영되었듯이 식민통치 방침을 구체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현직 육군대신이면서 제3대 통감으로 임명된 데라우치

50) 統監府, 1910, 앞의 책, 9~10쪽.

51) 糟谷憲一, 2013, 「〈한국병합조약〉의 무효성과 〈병합조서〉」, 『한일역사문제의 핵심을 어떻게 풀 것인가?』, 지식산업사, 236~237쪽.

였다. 일본 정부는 1910년 2월 한국의 ‘즉시 병합’을 결정하고 이를 전임할 제 3대 통감으로 데라우치를 내정한 후 병합 계획을 본격 추진하였다. 이후 병합 문제를 포함한 대한기본 구상은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츠라-데라우치의 라인을 축으로 진행됐다.⁵²⁾

당시 일본 육군성은 강력한 즉시 병합론자였던 야마가타계의 군부가 장악하고 있었다. 야마가타는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 육군을 창설하고 초대 육군대신을 역임했고 육군대신 출신의 첫 수상을 지낸 인물이었다. 야마가타에 이어 두 번째로 군인 출신 수상이 된 가츠라는 청일전쟁 이후 특히 발언권이 강화된 육군의 지도자였다.⁵³⁾ 데라우치는 러일전쟁 시기에 육군대신을 역임했던 대륙 팽창주의자로서 “야마가타를 비롯하여 가츠라-데라우치-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로 이어지는 야마가타계의 육군지도자였다.”⁵⁴⁾ 이처럼 병합 당시 일본 육군성은 야마가타계의 군부가 장악한 대륙침략의 본산이었다. 특히 8월 29일 공포된 ‘병합조서’에서 한국을 동양 평화를 위협하는 ‘화란(禍亂)의 연원’으로 규정한 데서도⁵⁵⁾ “한국을 거점으로 한 일본 국가의 대륙화”⁵⁶⁾를 실현하려는 일본 군부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일본 군부의 이런 의도는 병합 직전 데라우치에게 조선총독의 지위와 권한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극비’ 문서 「조선총독부관제발취병어위임사항(朝鮮總督府官制拔萃竝御委任事項)」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의 두 번째 내용인 ‘위임사항’은 천황이 조선총독에게 위임한 군통수권에 관한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총독은 “한국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선에 주둔하는 육군부대 및 해군방비대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 군속을 만주, 북청, 노령연해주에 파

52) 윤노 후쿠주 지음, 정재정 옮김, 2008, 앞의 책, 463쪽.

53) 전상숙, 2006, 앞의 글, 126쪽.

54) 마쓰다 도시히코, 2013, 「일본 육군의 중국대륙침략정책과 조선(1910~1915)」,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Ⅱ』,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99쪽.

55) 統監府, 1910, 앞의 책, 9쪽.

56) 전상숙, 2006, 앞의 글, 142쪽.

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⁵⁷⁾ 전자가 식민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을 군사력으로 강력하게 진압하기 위해 부여된 권한이라면⁵⁸⁾ 후자는 조선주둔 일본군의 만주 및 노령 진출을 가능케 한 것이다. 이것은 1906년 2월 야마가타, 데라우치, 다나카가 적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국을 근거지로 하여 주작전을 만주 방면으로 하되 함경도 방면에서 오소리(烏蘇里) 지방으로 이끌어 관동주(關東州)를 우리의 근거지로 한다”는 ‘육군작전계획’을 그대로 계승한 1907년 4월의 ‘일본 제국 국방방침’을 반영한 것이었다.⁵⁹⁾ 이것이 병합조칙의 선포를 통해 조선총독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려던 야마가타계 군부의 의도인 것이다. 또한 야마가타가 수상이던 1890년 한국을 일본의 ‘이익선’으로 규정하고 이를 ‘주권선’ 일본의 안보와 직결시켜 한국 ‘보호’를 천명한 이래 그것이 일본 육군의 지상과제가 되었듯이,⁶⁰⁾ 일본 정부가 타이완의 선례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에게 조칙을 통해 제령제정권을 부여하려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 군부를 대표하던 야마가타계인 가즈라, 데라우치가 병합조칙의 선포를 통해 조선총독의 초법적 통치를 가능케 하려 한 것은 병합 후 “군부가 내각과는 독립하여 한국을 전횡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자⁶¹⁾ 한국을 일본 군부의 독자적 지배영역으로 남겨두려는 것이었다.⁶²⁾ 병합 후 한국을 제국헌법이 시행되지 않는 외지로 규정한 병합조칙을 선포하게 한 데는 일본 군부의 대륙침략이라는 군사적 목적이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57) 「朝鮮總督府官制拔萃並御委任事項」, 『韓國併合ニ關スル文書』, 조선총독의 군통수권을 규정한 이 위임사항은 1910년 10월 14일 內令 제186호, 「朝鮮總督へ委任ノ件」, 1990, 『齋藤實文書』 2, 高麗書林, 31쪽으로 공표되었다.

58) 이승렬, 1994, 「역대 조선총독과 일본군벌」, 『역사비평』 통권 24호, 94쪽.

59) 모리야마 시게노리 지음, 김세민 옮김, 1994, 『近代韓日關係史研究』, 玄音社, 263쪽; 김익한, 2000, 「1910년 전후 山縣, 伊藤系의 對韓政策 기조와 종교정책」, 『韓國史研究』 114, 48쪽.

60) 전상숙, 2006, 앞의 글, 132쪽.

61) 박명규, 2013, 「1910년대 식민통치기구의 형성과 성격」,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 II』,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53쪽.

62) 박명규, 2013, 위의 글, 55쪽.

Ⅳ. 병합칙유의 동시 선포 경위

일본은 병합을 단행하면서 1910년 8월 29일 일본 황제의 ‘병합조서’뿐만 아니라 순종 황제의 ‘병합칙유’도 동시에 선포하였다. ‘병합칙유’와 관련해서는 이 칙유가 일본에 의해 ‘날조’되었고 이를 ‘날조’한 이유가 순종 황제가 병합을 거부하여 조약 절차상 필요한 비준서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왜 양국 황제의 조칙을 동시에 선포하기로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않았다. 아마 이 방침을 일본 정부가 병합 전 확정된 다른 방침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온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방침은 1910년 8월 22일 병합늑약이 조인된 직후 이완용과 데라우치가 서명한 「각서」에서 확정되었다. 이처럼 병합칙유와 관련하여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의문 즉 일본 정부는 왜 애초 방침에도 없었던 순종 황제의 병합조칙을 갑자기 선포하기로 결정했을까 하는 의문을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의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병합칙유를 선포하게 된 일본 정부의 의도와 병합칙유의 성격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에 대해 병합이 성사되어 일본 황제가 병합조칙을 선포하니 한국 황제도 상응하는 조칙을 선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근거 없는 부당 전제다. 왜냐하면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순종이 병합에 기꺼이 동의했을 때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1910년 8월 22일 이완용과 데라우치의 「각서」 전까지 일본의 대한방침 어느 곳에도 순종도 병합조칙을 선포한다는 방침은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병합을 준비하면서 이완용을 전권위원으로 임명하는 한국 정부가 작성해야할 전권위임장까지 사전에 준비했을 정도로 철저하였다.⁶³⁾ 만약 양국 황제의 병합조칙 동시 선포 방침이 사전에 결정됐다면 당연히 한국 황제의 병합조칙도 일본 정부가 미리 준비했을

63) 李鍾學 編著, 2000, 「朝鮮總督報告 韓國併合始末」, 『1910年 韓國強占資料集』, 史芸研究所, 31~32쪽.

것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선포하기로 한 병합조직은 애초 일본 황제에게만 해당될 뿐이며, 순종 황제의 병합조직 선포는 병합늑약이 체결되기 직전 어느 시점에 갑자기 결정된 것이다.

그럼 이 방침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구체화됐는지 알아보자. 현재까지 자료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10년 8월 22일 이완용과 데라우치가 서명한 「각서」가 유일하다. 이날 오후 2시 무렵 열린 어전회의에서 병합늑약의 전권위임을 받은 이완용은 농상공부대신 조중응과 함께 4시 무렵 통감 관저로 가서 병합늑약을 조인하고, 이어 데라우치가 제시한 「각서」에 각각 서명을 했다.⁶⁴⁾ 이 「각서」에는 “1. 병합조약 및 양국 황제 폐하의 조칙은 모두 쌍방이 합의하여 동시에 공포할 것, 2. 우 조약 및 조칙은 언제든지 공포할 수 있도록 즉시 필요한 수속을 해 둘 것”이라고 하였다.⁶⁵⁾ 이처럼 양국 황제가 병합조직을 동시에 선포한다는 방침은 8월 22일 병합늑약 조인 직후 데라우치의 요구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런 사실은 병합늑약의 공포일을 결정하기 위해 통감부와 일본 내각 사이에 있었던 논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합늑약의 공포일에 관한 논의는 1910년 8월 13일 이후 본격화됐다. 이날 데라우치가 고무라에게 “내명을 받은 시국 해결(한국병합-필자)은 다음 주부터 착수하고 별다른 지장이 없이 진행된다면 주말에 모두 완료될 것”이라고 전보하자⁶⁶⁾ 이튿날 고무라는 조약안 등을 추밀원에 보고하고 재가를 받는 등의 준비로 “출발 전에 협의해 둔 대로 조약의 조인과 공포 사이에 약간의 일차”가 필요하다며 약 일주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⁶⁷⁾ 이에 데라우치는 8월 15일, 조인과 공포 사이에 유예기간이 길면 비밀 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가능

64) 朝鮮總督府, 1918, 『朝鮮ノ保護及併合』, 334쪽.

65) 「韓國併合條約 및 兩國皇帝詔勅의 公布에 關한 覺書」(奎 23159).

66) 日本外務省 編纂, 1962, 「韓國併合條約開始及其完結期ノ豫定ニ關スル件」, 앞의 책, 675쪽.

67) 日本外務省 編纂, 1962, 「韓國併合實行ノ際外務省ガ執ルベキ手續ノ準備整ヒ旨回答ノ件」, 위의 책, 676쪽.

한 속히 공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4~5일이면 충분하다고 재촉하였다.⁶⁸⁾ 고무라는 데라우치가 제시한 4~5일의 유예기간으로는 조약안의 재가 등 병합에 필요한 문서를 준비, 정리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였다.⁶⁹⁾

통감과 고무라 사이에서 병합늑약의 공포일을 두고 설왕설래하던 중 병합늑약 조인 직후 공포일이 29일로 결정되었다. 고무라가 “오늘(22일 - 필자) 조약 조인이 될 때는 오는 26일 이를 공포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하자⁷⁰⁾ 데라우치는 먼저 병합늑약과 “이와 관련한 조치는 양쪽이 동시에 공포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린 뒤,⁷¹⁾ 8월 26일 다음날이 순종 황제의 즉위 3주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29일 공포하기로 한국 정부와 협의했다고 하며 제국 정부도 같은 날 공포해줄기를 요청한다고 통보하였다.⁷²⁾ 이에 대해 가즈라와 고무라도 8월 23일 “이의 없다”고 동의함으로써⁷³⁾ 8월 29일이 양국 황제의 병합조칙 공포일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와 같이 데라우치와 고무라가 주고받은 전보를 보면, 8월 22일 병합늑약 조인 직후 데라우치가 고무라에게 ‘병합조칙을 양쪽이 동시에 공포’하기로 한 사실을 처음 통보하고 있다. 이것은 양국 황제가 병합조칙을 동시에 공포한다는 방침을 일본 내각이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또한 순종이 선언할 병합조칙이 작성된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순종 황제의 병합조칙을 언제 누가 작성했는지 현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8월 27일 데라우치는 가즈라와 고무라에게 두 차례에 걸쳐 통감부에서 작성한 순종 황제의 병합조칙문을 보냈다.⁷⁴⁾ 이때 그는 “일한병합에 관한 한제(韓帝)

68) 日本外務省 編纂, 1962, 「韓國併合條約의 調印後速急公布ノ必要及條約發效日ニ關スル件」, 앞의 책, 677쪽.

69) 日本外務省 編纂, 1962, 「日韓條約ノ公布日及條約ノ發效日ニ關スル件」, 위의 책, 677쪽.

70) 日本外務省 編纂, 1962, 「韓國併合條約案御裁可アリタル旨電報ノ件」, 위의 책, 685쪽.

71) 日本外務省 編纂, 1962, 「韓國併合條約調印濟ノ件」, 위의 책, 685~686쪽.

72) 日本外務省 編纂, 1962, 「日韓條約公布日延期要請ノ件」, 위의 책, 686쪽.

73) 李鍾學 編著, 2000, 「韓國併合에 關한 書類·發電」, 앞의 책, 68쪽.

74) 순종 황제의 ‘병합칙유’의 작성 시기와 관련해서는 양국 황제의 조칙을 동시 공포하

의 조직문은 별지대로 결정하여 본일(8월 27일 - 필자) 재가를 거쳐서 오는 29일 병합조약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하였다.⁷⁵⁾ 그런데 8월 29일 당일 오전 11시 일본 내각에서는 "오늘 한국 황제께서 조직 또는 유고(諭告)를 발표하셨는가. 만약 발표되었다면 그 전문을 통지"바란다고⁷⁶⁾ 하며 순종 황제가 발표한 것이 '조직'인지 '유고'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 역시 양국 황제의 병합조직 동시 선포방침이 사전에 결정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의문은 8월 22일 사실상 병합을 완료하고도 데라우치는 사전에 계획에도 없던 양국 황제의 조직 동시 선포가 왜 갑자기 필요했을까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이 방침이 결정됐다는 사실 그 자체와 함께 8월 27일 순종 황제의 조직이 이틀 뒤인 29일 '칙유'로 돌변한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다.

먼저 1910년 8월 16일에서 22일까지의 병합 과정을 간략히 보면, 8월 16일 데라우치는 이완용에게 사실상 병합을 통보하면서 '위압으로 혹은 선언서를 공포'하는 강제적 병합을 위협하면서 합의적 조약을 강조하고⁷⁷⁾ '내각 합의-전권위원 임명-조인'의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하였다.⁷⁸⁾ 실제 병합늑약의 조인 과정에서 불법과 절차상의 결함이 많았지만 형식상으로는 데라우치의 요구대로 이완용은 8월 18일 내각회의를 열었고, 8월 22일 어전회의를 소집하여 전권위원장을 받아 당일 병합늑약에 조인하였다.

이제 병합늑약이 완전한 '합의적 조약'이 되려면 마지막 절차인 양국 황제

기로 한 날이 8월 22일이고 또한 데라우치가 8월 27일 본국에 '韓帝의 詔勅文'을 보고한 것으로 보아 8월 22~27일 사이에 데라우치의 지시에 의해 통감부에서 누군가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75) 日本外務省 編纂, 1962, 「併合ニ關スル韓帝詔勅文通報ノ件」, 앞의 책, 701~702쪽. 8월 27일 데라우치는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순종 황제의 조직문 초안과 수정안을 보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먼저 보낸 전보(초안)에 수정된 조직을 별첨으로 게재한 것으로 초안은 현재까지 확인할 수 없다.

76) 李鍾學 編著, 2000, 「韓國併合에 關한 書類·發電」, 앞의 책, 84쪽.

77) 李鍾學 編著, 2000, 「朝鮮總督報告 韓國併合始末」, 위의 책, 26~27쪽.

78) 李鍾學 編著, 2000, 「朝鮮總督報告 韓國併合始末」, 위의 책, 29쪽.

의 비준 절차만 남은 상태였다. 고마츠는 훗날 이에 대해 “국제조약에 대한 원수의 재가는 보통의 경우라면 조인 후에 양청하는 수속이 있지만 병합조약은 조인 후에 형식적 비준을 주청한 것이 아니라 조인하기 전에 이미 융희 황제의 재가를 받아 완료했던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절차인 비준이 필요치 않았다고 하였다.⁷⁹⁾ 그가 말한 ‘조인 전에 융희 황제의 재가를 받았다’고 한 것은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 폐하 및 한국 황제 폐하의 재가를 거친 것으로서 공포일부터 이를 시행한다”라고 한 병합늑약 제8조⁸⁰⁾를 지적한 것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병합은 이미 ‘합의적 조약’으로 완료되었다. 이제 원래 방침대로 일본 황제가 병합조치를 선포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된다. 더 이상 다른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데라우치는 자신이 의도한 대로 병합늑약이 조인되었는데도 그 직후 애초 방침에도 없던 순종 황제의 조칙 선포를 추가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는 병합의 마지막 절차로서 순종 황제의 병합조칙이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는 사정이 발생했음을 짐작케 한다.

이것은 먼저 8월 27일까지도 조칙이었던 순종 황제의 병합조칙이 29일 공포 당일 ‘칙유’로 돌변한 데서 짐작할 수 있다. 데라우치가 8월 27일 ‘이 날 순종의 재가를 받아 29일 발표하겠다’고 한 것은 분명 조칙이었다. 그런데 29일 당일 선포된 것은 조칙이 아니라 ‘칙유’였고 그것도 ‘날조된 것이었다.’⁸¹⁾ 조칙 또는 조서는 황제나 왕의 명령을 기록한 것이고 칙유는 임금의 훈유(訓諭)를 널리 백성에게 알리는 글로서 그 격식과 쓰임새가 다르다. 때문에 조칙이 칙유로 돌변했다는 것은 조칙을 선포하지 못할 이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데라우치는 「한국병합시말」에서 순종은 병합에 대해 “대세가 이미 정해진 이상 속히 실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고, 8월 22일 어전회의에서도 조약안에 대해 “일일이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재가(嘉納裁可)”했다고 하였다.⁸²⁾ 이 보고가

79) 小松綠, 1920, 앞의 책, 180~181쪽.

80) 「韓日合邦條約」(奎 23018).

81) 윤대원, 2011, 앞의 글, 133쪽.

82) 李鍾學 編著, 2000, 「朝鮮總督報告 韓國併合始末」, 앞의 책, 34쪽.

사실이라면 순종이 27일의 병합조치를 재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도 조치가 공포 당일 칙유로 돌변했다는 것은 결국 27일 순종의 재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데라우치의 보고와는 달리 순종이 병합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1926년 4월 순종이 붕어 직전 “지난날의 병합 인준은 강린(強隣: 일본-필자)이 역신(逆臣)의 무리와 더불어 제멋대로 하여 제멋대로 선포한 것이고, 모두 내가 한 바 아니다”라고 남긴 유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⁸³⁾

데라우치가 1910년 11월 7일 본국에 보고한 「한국병합시말」에서 병합이 “정속 원만히 해결”됐다고⁸⁴⁾ 보고했지만 사실은 순종이 병합을 거부하는 상황에 직면했던 것이다. 이처럼 병합에 결정적 하자가 될 수 있는 순종의 병합 거부 사태에 직면한 데라우치는 아마 이후 벌어질 수 있을 두 가지 상황을 상상했을 것이다. 하나는 을사늑약의 재현일 것이다. 을사늑약이 강제된 후 고종은 1906년 6월 9개국 정상에게 “짐은 정부의 조인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친서를 보냈고 1907년에는 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 비밀 특사를 파견하는 등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제기하며 일본을 외교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하였다. 다른 하나는 데라우치가 본국과 병합 공포일을 논의하면서 “조인과 공포 사이에 유예 기간이 길면 비밀 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속히 공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비밀리에 진행해 온 병합이 공포 전에 알려질 것을 우려한 점이다. 그가 우려한 것은 아마 병합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졌을 경우에 일어날지도 모를 한국 관민의 저항이었을 것이다. 데라우치가 병합늑약을 조인하기에 앞서 ‘만일의 사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에 일본군을 집중 배치하여 계엄 상태를 유지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⁸⁵⁾

83) 「전유희황제의 유조」, 『新韓民報』, 1926年 7月 8日. 소문이기는 하지만 병합 직후 이완용의 전권위임장에 찍힌 국새 즉 ‘대한국새’가 데라우치의 사주를 받은 시종원 경 윤덕영이 몰래 훔쳐 찍은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는 것도 순종의 병합 거부 사실을 뒷받침한다. 정교 저, 김우철 역주, 2004, 『大韓季年史』 9, 소명출판, 229쪽.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윤대원, 2011, 『데라우치 마사다케 통감의 강제 병합 공작과 ‘한국병합’의 불법성』, 소명출판, 207~213쪽 참조.

84) 李鍾學 編著, 2000, 『朝鮮總督報告 韓國併合始末』, 앞의 책, 36쪽.

85) 1910년 6월 이후 조선주차군의 서울 집결 및 배치에 대해서는 金正明 編, 1967, 『朝

이런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 황제가 스스로 병합을 청원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이었다. 즉 데라우치는 병합조치를 통해 순종 황제가 스스로 병합을 청원했다고 함으로써 순종 황제의 병합 거부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순종은 이런 병합조치의 재가마저 거부하였다. 데라우치가 8월 29일 ‘날조’된 ‘병합칙유’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또한 병합늑약 제8조의 ‘사전승인항’에 대한 고무라의 우려에서 병합칙유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1910년 8월 18일 고무라는 데라우치가 전날 보고한 조약안 원안과 관련하여 제8조에 대해 “조약은 전권 위임을 갖지 않고 조인된 것 같은 형식으로 된다”고 하며 병합 공포 전에 각국에 조인이 끝난 조약을 통지하는 관계상 한일 “양국 황제의 재가를 거친 것인지 조약 면에서 명료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불편이 적지 않다”고 우려하였다.⁸⁶⁾ 고무라는 병합 사실을 통보할 영국, 미국 등 서구 열강 등을 의식하여 조약안 원안 제8조에 ‘양국 황제의 재가를 거친 것’이라는 ‘사전승인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재가인 비준의 불명확성을 우려했던 것이다.

데라우치가 원래 방침에도 없던 병합칙유의 공포를 결정한 것은 이러한 고

鮮駐劄軍歷史, 『日韓外交資料集成 別冊』 1, 巖南堂書店, 339쪽, 341쪽 참조.

86) 『外務省マイクロフィルム』 The Archives in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kyo, Japan, 1868~1945, microfilmed for the U.S. Library of Congress, Telegraph, R. 128-No. 6887-6888, 50호. 운노 후쿠쥬 지음, 정재정 옮김, 2008, 앞의 책, 489쪽에서 재인용. 운노는 8월 18일 고무라의 전보에 대해 병합늑약 제8조는 8월 17일 데라우치가 보고한 ‘사전승인항’이 없는 조약안 원안에 ‘사전승인항’을 넣을 것을 지시한 조약안 수정안이라고 하였다. 운노 후쿠쥬 지음, 정재정 옮김, 2008, 앞의 책, 489쪽. 그러나 이는 조약안 원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1910년 7월 8일 일본 내각에서 결정한 조약안 원안 제8조를 보면, “본 조약은 조인에 앞서 일본국 황제 폐하 및 한국 황제 폐하의 열람에 공(供)하고 모두 재가를 경(經)한 것으로 조인일로부터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 ‘사전승인항’이 있다. 『詔勅條約宣言案』, 『韓國併合ニ關スル文書』. 따라서 병합늑약 제8조는 조약안 원안에 있던 “조인에 앞서”, “열람에 공(供)하고”를 삭제하고 조약의 효력 발생이 “조약일”에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함”으로 최종 수정한 것이다.

무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은 곧 조인된 조약에 대한 순종의 재가 즉 비준에 준하는 것이었다. 이는 제8조의 '사전승인항'에도 불구하고 일본 황제가 조약을 재가 즉 비준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 황제는 8월 29일 조약 전문이 첨부된 '조약 제4호'에 대해 “짐, 추밀고문의 자손을 거친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을 재가하고 이를 공포케 한다”고 하였다.⁸⁷⁾ 이때 재가란 곧 국내적인 조약 체결권자의 비준을 뜻한다.⁸⁸⁾ 이렇게 하여 29일 공포된 것이 '병합조서'이듯이 비록 순종의 거부로 재가를 받지 못한 '날조'된 것이지만 병합칙유 역시 비준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순종 황제의 병합칙유 선포는 순종의 병합 거부 사실을 은폐하여 마치 병합이 '합의적 조약'에 의해 '정숙, 원만히 해결'된 듯 가장하고 이를 통해 병합에 따른 한국 관민의 저항을 무마하려고 데라우치가 '날조'한 것이었다. 또한 한국병합에 대한 서구 열강의 비판을 회피할 목적으로 조약 제8조의 '사전승인항'에도 불구하고 일본 황제의 재가를 받아 '병합조서'를 공포했듯이 병합칙유도 동일한 의미에서 공포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병합칙유의 성격은 데라우치가 말한 '합의적 조약'이란 관점에서도 분명해 진다. 병합은 '통감의 제의-내각합의-전권위원 임명-조인'의 과정을 거쳐 양국 황제의 병합조치 선포로 완결된 셈이다. 그 결과 일본 황제의 '병합조서'와 순종 황제의 병합칙유는 자연히 조약 체결의 절차상 최종 단계인 비준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87) 「御署名原本・明治四十三年韓・條約第4號・韓國併合ニ關スル條約」,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 A03020879400, 内閣・御署名原本・明治・明治四十三年・條約(國立公文書館).

88) 비준은 외교행위로서의 비준(비준서의 교환 혹은 비준 통고)와 국내적인 조약체결권자의 비준(양국 황제의 재가)으로 구별되며 물론 양자는 관련이 있으며 조약 체결권자의 비준이 없으면 외교적 비준도 성립하지 않는다. 都時煥, 2010,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강제의 역사적 진실규명과 국제법적 조명」, 『國際法學會論叢』 第55卷 第4號(通卷 第119號), 22쪽.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일본 정부가 병합조치의 선포 방침을 결정하게 된 배경과 의도, 그리고 애초 대한방침에도 없던 순종 황제의 병합칙유를 8월 29일 일본 황제의 ‘병합조서’와 동시에 공포하기로 한 과정을 고찰해 보았다.

일본 정부는 1909년 7월 6일 대한방침을 결정하고 재가를 받았다. 이후 고 무라와 가츠라를 중심으로 병합에 필요한 절차나 방법 등 세부항목에 대한 방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병합할 때 일본 황제의 병합조치를 선포하기로 결정하였다. 병합조치를 선포하기로 한 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첫 번째는 대내외적으로 병합이 부득이하고 동양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불법적 병합을 합리화하려는 데 있었다. 또한 조선총독에게 제령제정권을 부여하면서 타이완 총독에게 법률의 효력을 갖는 올령제정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제국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과거 경험을 답습치 않기 위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데라우치의 지시로 육군성 참사관 이키야마가 작성한 「합병 후 한국 통치와 제국헌법과의 관계」에서 헌법불시행론 방침을 이론적 정책적으로 변호하면서 병합조서 선포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서 확인됐다.

병합조치의 선포 방침을 주도한 것은 제3대 통감이자 현직 육군대신인 데라우치를 중심한 육군성이었다. 당시 육군성은 1890년 이래 대륙팽창주의자이자 강력한 ‘즉시 병합론자’였던 야마가타계의 군부가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이 한국에 대한 천황 대권의 직접 통치주의와 헌법불시행을 채택, 이를 병합조치로 언명케 한 것은 곧 조선총독에게 제령제정권을 부여하여 제국의회의 간섭 없이 한국에 대한 초법적인 ‘총독정치’를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일본 군부가 한국 통치의 독자성을 확보하여 한국을 대륙침략의 거점으로 삼아 일본의 대륙국가화를 실현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한편 데라우치는 갑자기 병합 직전 애초 방침과 달리 양국 황제가 동시에 병합조치를 선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방침은 1910년 8월 22일 병합늑약을

조인한 뒤 데라우치의 제안으로 인해 결정되었다. 그 이유는 데라우치가 8월 27일 순종의 재가를 받아 조칙을 29일 공포하겠다고 한 약속과는 달리 '날조'된 '칙유'를 공포한 데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순종이 병합을 거부하는 예상치 못한 상태를 은폐하기 위해 급조된 것이었다. 또한 순종 황제의 재가 여부가 불분명한 조약 제8조의 '사전승인항'만으로는 한국병합에 대한 서구 열강의 의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써 병합칙유를 공포한 것이다. 이것은 데라우치가 이완용에게 강조한 '합의적 조약'의 절차의 최종 단계인 조약에 대한 황제의 재가으로써 비준서를 대신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저서

- 이태진 편저, 1995,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보호조약”에서 “병합조약”까지』, 도서출판 까치.
- 이태진 편저, 2001, 『한국병합, 성립하지 않았다』, 태학사.
- 이태진·사사가와 노리가즈 공편, 2009, 『한국병합과 현대-역사적 국제법적 재검토』, 태학사.
- 모리야마 시게노리 지음, 김세민 옮김, 1994, 『近代韓日關係史研究』, 玄音社.
- 오가와라 히로유키 지음, 최덕수·박한민 옮김, 2012,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 병합 구상과 조선사회』, 열린책들.
- 윤노 후쿠쥬 지음, 정재정 옮김, 2008, 『한국병합사연구』, 논형.

논문

- 김익한, 2000, 「1910년 전후 山縣, 伊藤系의 對韓政策 기초와 종교정책」, 『韓國史研究』 114.
- 김중식, 2011, 「1910년대 식민지 조선 관련 일본 국내 정치 논의의 한 양상-제국의회의 식민지 조선 제령 입법 과정을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38.
- 김창록, 2002, 「제령에 관한 연구」, 『法史學研究』 26.
- 都時煥, 2010,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강제의 역사적 진실규명과 국제법적 조명」, 『國際法學會論叢』 第55卷 第4號(通卷 第119號).
- 마쓰다 도시히코, 2013, 「일본 육군의 중국대륙침략정책과 조선(1910~1915)」,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Ⅱ』,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박명규, 2013, 「1910년대 식민통치기구의 형성과 성격」,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Ⅱ』,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윤대원, 2011, 「1910년 병합 ‘칙유’의 文書上的 結합과 불법성」, 『한국문화』 53.
- 윤대원, 2015, 「일제의 한국병합 방법과 식민 통치 방침」, 『한국문화』 70.
- 이승렬, 1994, 「역대 조선총독과 일본군벌」, 『역사비평』 통권 24호.
- 이승일, 2007,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통해 본 식민지배의 양상-조선총독부의 제령 제정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조선총독부 공문서: 일제시기 기록관리와 식민지

배』, 역사비평사.

전영욱, 2014, 「한국병합 직후 일본 육군 및 제국의회 의 '제국통합' 인식과 그 충돌의 의미 - 제27회 제국의회 의 制令權과 재조일본인 논의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57권 2호.

小川原宏幸, 2005, 「韓國併合と朝鮮への憲法施行問題 - 朝鮮における植民地法制度の形成科程」, 『日本植民地研究』 17.

자료

金正明 編, 1967, 『日韓外交資料集成 別冊』 1, 巖南堂書店.

李鍾學 編著, 2000, 『1910年 韓國強占資料集』, 史芸研究所.

日本外務省 編纂, 1961, 『日本外交文書』 第42卷 第1冊, 巖南堂書店.

日本外務省 編纂, 1962, 『日本外交文書』 第43卷 第1冊, 巖南堂書店.

日本外務省 編, 1966, 『小村外交史』, 原書房.

朝鮮總督府, 1918, 『朝鮮ノ保護及併合』.

統監府, 1910, 『韓國併合顛末書』.

倉知鐵吉 述, 1939, 『韓國併合の經緯』, 外務大臣官房文書課.

徳富猪一郎 編, 1917, 『公爵桂太郎傳』 坤卷, 故桂太郎公爵紀念事業會.

小松綠, 1920, 『韓國併合之裏面』, 中外新論社.

小松綠, 1936, 『明治外交秘史』, 千倉書房.

『新韓民報』.

『韓國併合ニ關スル書類』, 明治 四十二年~明治 四十三年 第一卷,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A03023677100, 公文別録(國立公文書館).

[국문 초록]

‘병합조칙’의 이중적 성격과
‘병합칙유’의 동시 선포 경위

윤대원

이 글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할 때 양국 황제가 동시에 ‘병합조칙’을 공포하기로 결정한 방침의 배경과 의도를 고찰하여 순종 황제의 ‘병합칙유’가 비준서를 대신했다는 사실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일본은 애초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일본 황제의 병합조칙을 공포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나는 내외적으로 병합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 총독에게 제령권을 부여하려는 것이었다. 특히 후자는 일본의 육군성 즉 군부가 주도하였다. 그리고 조선총독은 ‘병합조칙’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것은 한국을 대륙 침략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의도였다.

그런데 1910년 8월 22일 병합늑약을 조인한 뒤 데라우치는 갑자기 순종도 동시에 ‘병합조칙’을 공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순종 황제가 병합을 거부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양국 황제의 병합 조칙 동시 공포는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병합늑약의 제8조인 ‘사전승인’으로 비준을 대신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당시 국제법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합법을 가장하는 데 무리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일본 황제는 8월 22일의 각서대로 ‘병합조칙’을 공포했지만, 한국에서는 약속과는 달리 순종 황제의 ‘날조’된 ‘병합칙유’를 공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이 ‘병합조칙’과 ‘병합칙유’는 조약 체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비준서를 대신한 것이었다.

주제어

병합조치(併合詔勅), 헌법불시행론,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 일본 군부, 대륙팽창정책, 병합칙유(併合勅諭), 비준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Dual Nature of the “Imperial Edict for Annexation” and
the Simultaneous Proclamation Circumstances of
the “Imperial Instructions for Annexation”

Yun Daewo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background and intention to determine the declared policy of the “Imperial Edict for Annexation”(併合詔勅) when Japan annexed the Korean Empire. In addition, this paper seeks to grasp the fact that the “Imperial Instructions for Annexation”(併合勅諭) issued by Emperor Soonjong(純宗皇帝) took the place of an instrument of ratification.

Initially Japan had decided to declare the Emperor of Japan’s “Imperial Edict for Annexation” for two purposes. One purpose was to inform of the annexation both in the empire and abroad. The other was to give the right to establish command with the force of law in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In particular, the latter proclamation had been led by the Department of the Army, that is, by the Japanese military. And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was given a second legal authority in Korea through the “Imperial Edict for Annexation.” This was intended to establish Korea as a base for continental invasion.

As soon as Terauchi Masatake(寺内正毅) signed the treaty on August 22, 1910, he decided suddenly that Emperor Soonjong would declare the “Imperial Edict for Annexation” at the same time. Because Terauchi was confronted with Emperor Soonjong’s unexpected refusal to annex Korea to Japan, Emperor Soonjong’s “Imperial Instructions for Annexation”

was intended to conceal the unexpected events. In addition, Japan intended to substitute Article 8 of the Korea–Japan Annexation Treaty(併合勅約), namely, the “pre–approval” for Soonjong’s ratification. But because this was unparalleled in international law, it was unreasonable to feign legitimacy by “pre–approval.” For this reason, Japan declared the Emperor of Japan’s “Imperial Edict for Annexation” as the memorandum of August 22, 1910, but in Korea could not help declaring the Emperor Soonjong’s fabricated “Imperial Instructions for Annexation.” Eventually this “Imperial Edict” and the “Imperial Instructions” replaced the instrument of ratification, corresponding to the final stage of the Treaty in this procedure.

동북아역사재단

Keywords

Imperial Edict for Annexation(併合詔勅), Constitutional non-enforcement theory, Terauchi Masatake(寺内正毅), Japanese military, continental expansion policy, Imperial Instructions for Annexation(併合勅諭), ratification instrument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식민지기 조선인 1인당 소득과 소비에 관한 논의의 검토

허수열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I. 머리말

식민지근대화론의 주요 업적으로 식민지 시기의 조선의 GDP(국내총생산)를 추계한 것을 들 수 있다.¹⁾ 그리고 그 추계결과에 따르면 1911~1940년의 총생산 증가율은 연 3.70%이고, 인구증가율은 연 1.33%여서, 1인당 생산이 매년 2.37%의 속도로 증가한 것이 된다. 차명수는 이 성장률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 투고: 2015년 8월 10일, 심사 완료: 2015년 11월 4일, 게재 확정: 2015년 11월 23일

* 이 글은 2014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1) 식민지근대화론이란 낙성대경제연구소 중심의 학자들이 한국 근대사에 대해 갖고 있는 역사관을 말한다. 많은 연구 업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 식민지 시기 조선의 GDP를 추계한 김낙년 편, 2006,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 서울대학교출판부가 대표적이다. 2012년에는 개정판 형식으로 김낙년 편, 2012,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계정 1911-2010』,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을 출간하였다. 종전의 식민지 시기 조선의 GDP 추계를 남북한 별로 분할하고 약간의 사소한 오류를 바로 잡은 다음, 1953년 이후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GDP 계열과 연결시킴으로써 장기통계 계열을 구축하였다. 단 이 개정판에서는 1941~1952년의 GDP가 빠져 있다.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²⁾

Maddison에 의하면, 1913-50년 간의 세계 전체의 1인당 생산 증가는 한국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 0.91%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같은 시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에서의 1인당 생산은 연 0.02%의 속도로 하락하였다. Maddison을 믿는다면 지난 20세기 후반에 남한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룩한 나라의 하나였던 것처럼, 세계대공황이 휩쓸고 지나간 20세기 전반에 식민지 조선은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고도성장을 이룩한 지역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 앞서 지적한 것처럼, 20세기 초에 진행된 근대적 경제성장은 이전에는 한국 역사에서 한 번도 관찰된 적이 없는 대사건이었다.

나아가 총생산이 이토록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1인당 실질소비도 매우 빠르게 성장했고, 생활수준도 매우 빠르게 향상되었다고 주장한다.³⁾

이 기간(1912-39년) 중에 실질소비지출의 연간 증가율은 3.28%였다. 1인당 실질소비지출은 같은 기간 중 1.68배로 증가했고, 그 연간 증가율은 1.94%였다. 1인당 실질소비지출은 기간별로는 1912-20년에 19.2%, 1920-30년에 18.4%, 1930-39년에 19.1% 증가하여 1910, 1930, 1920년대의 순으로 증가속도가 빨랐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 전체 기간에 관한 추계 결과는 과거 溝口가 추계한 1912-37년의 25개년간 실질소비지출의 연간 증가율 3.19%, 1인당 실질소비지출의 연간 증가율 1.76%와 비슷하다.

그리고 조선인 1인당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조선인 1인당 소비도 증가하였기 때문에, 흔히 일본의 조선 지배에 대한 부정적 결과로 언급되는 식량소비량의 감소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보았다. 즉 조선인 1인당 총칼로리 섭취량

2) 김낙년 편, 2006, 앞의 책, 316쪽. 단 앵거스 매디슨(A. Maddison)의 자료에서 비교기간을 1913~1950년 간으로 동일하게 하여 남한의 1인당 GDP의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해 보면 -0.2%로 완전히 다르다.

3) 김낙년 편, 2006, 위의 책, 203쪽.

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식민지 시기에 조선인의 신장이 영양 상태의 악화로 감소했다는 주장도 부정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식민지근대화론은 식민지기의 GDP 추계라는 대작을 토대로 매우 치밀한 분석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석결과 역시 객관적 사실이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쉽다. 그리고 필자처럼 식민지기에 조선인 1인당 소득이 정체했다는 주장은 아무런 실증적 근거도 없는 엉터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

필자는 오랫동안 이 GDP 추계 중 1918년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대한 결함이 있고, 1941~1945년 간 즉, 식민지 조선경제의 몰락기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⁴⁾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 식민지기의 조선의 GDP 증가율은 식민지근대화론의 추계결과처럼 그렇게 높지 않았고, 따라서 조선인 1인당 GDP도 증가했다고 하기 어려우며, 조선인 1인당 총칼로리 섭취량은 악화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인들의 신장이 증가했다고 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었다. 식민지근대화론에서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였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 및 『한국의 장기통계』에서 민간소비지출 분야를 담당했던 주익종의 주장을 중심으로, 식민지기에 조선인 1인당 GDP가 증가했고, 총칼로리소비량이 증가했으며, 결국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비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익종의 주장은 앞의 두 책 이외에도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에 수록된 「식민지 시기의 생활수준」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⁵⁾ 이 논문에서 주익종은 조선 내 일본인의 소득이 일본의 1인당 소득의 2배라는 가정을 도입하여 1912~1939년 간에

4) 1910년대 조선경제의 개발 상태를 둘러싸고 필자와 이영훈 사이에 벌어진 논쟁에 대해서는 허수열, 2011,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 한길사; 이영훈, 2012, 『혼란과 환상의 歷史的 時空 - 허수열의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에 답한다』, 『경제사학』 제53호; 허수열, 2013, 「상상과 사실 - 이영훈교수의 비평에 답한다」, 『경제사학』 제54호; 이영훈, 2013, 「허수열교수의 비판에 다시 답한다」, 『경제사학』 제54호; 허수열, 2014, 「일제 초기 만경강 및 동진강 유역의 방조제와 하천의 제방」, 『경제사학』 제56호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5) 주익종, 2006, 「식민지 시기의 생활수준」,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책세상.

조선인 1인당 GDP가 70% 증가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소득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으니 당연히 소비도 증가했을 것이고, 생활수준이 향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한국의 장기통계』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 각각의 소비지출 수준 및 그에 따른 민족 간 소비격차도를 적절히 가정한다면, 1939년에 일본인 소비의 증가배율이 어떠한가에 따라 조선인 소비의 증가배율이 결정되고, 따라서 조선인의 소비수준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논할 수 있다”고 하였고,⁶⁾ “경제성장이 있으면 뭐하나, 일본인이 다 차지했는데……”식의 논의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며, 근대 경제성장이 진행되는 가운데 조선인의 소비지출 역시 증가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주장하였다.⁷⁾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에서 조선인 1인당 소득과 관련하여 도입하였던 방법을 『한국의 장기통계』에서는 조선인 1인당 소비에 적용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조선인 1인당 소득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II. 조선인 1인당 GDP

1_주요종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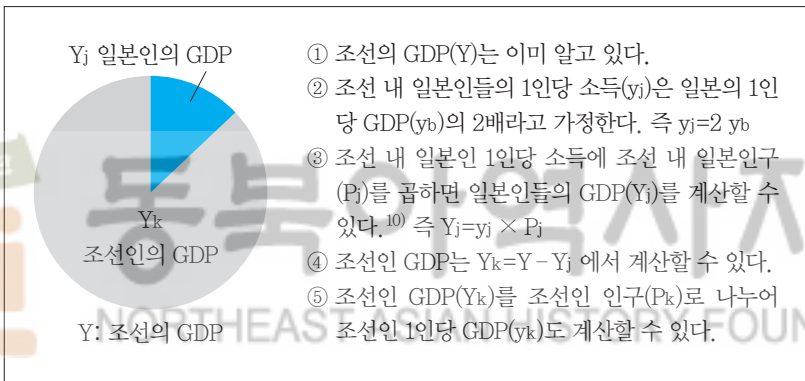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낙성대경제연구소에서는 1911~1940년 간 조선의 GDP를 추계하였다. 추계된 것이 조선의 GDP이고, 따라서 그 속에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구별 같은 것은 없다. 즉 이 추계로부터 조선의 1인당 GDP는 구할 수 있어도 조선인의 1인당 GDP는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6) 주익중, 2006, 앞의 글, 209쪽.

7) 주익중, 2006, 위의 글, 212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익종은 자신들이 추계한 조선의 GDP로부터 조선인들의 1인당 GDP를 계산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이하 ‘주익종 모델’이라 한다). 이렇게 민족별 구분이 없는 자료에서 민족별 구분을 해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의 가정이 들어가야 한다. 주익종이 도입한 가정은 조선 내 일본인들의 1인당 GDP가 당해 연도 일본의 1인당 GDP의 2배라는 것이었다.⁸⁾

주익종이 이 가정을 도입하여 어떤 연도(예컨대 1912년)의 조선의 GDP에서 조선인 1인당 GDP를 계산해 내는 과정을 설명해 보면 <그림 1>과 같다.⁹⁾



<그림 1> 주익종 모델의 개요

동일한 방법으로 1939년의 Y_k, Y_j, y_k, y_j를 계산해 낼 수 있다. 그리고 1912년을 '1'이라는 첨자로, 1939년을 '2'라는 첨자로 표기한다면, Y₂/Y₁, y_{k2}/

8) 반드시 2배일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조선 내 일본인의 1인당 GDP는 일본의 1인당 GDP의 몇 배인지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9) 낙성대경제연구소에서 GDP를 추계한 구간은 1911~1940년이다. 주익종은 1911~1913년 3년 평균값을 1912년 GDP로 보고, 1938~1940년 3년 평균값을 1939년 GDP로 보았다. 이하 편의상 1912년 GDP, 1939년 GDP로 지칭하기로 한다.

10)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인구에 대해서는 1925년 이후에는 인구조사(국세조사)에서 알 수 있고, 1924년 이전의 통계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서 알 수 있다. 다만, 통계연보의 인구는 모든 연도에서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y_{k1} , y_{j1}/y_{k1} , y_{j2}/y_{k2} , y_{j1}/y_{b1} , y_{j2}/y_{b2} 등의 여러 가지 값들을 계산해 낼 수 있다.

주익중이 이러한 방법으로 y_{k2}/y_{k1} (즉 1912~1939년 간의 조선인 1인당 GDP의 증가배율)을 계산해 보았더니 1.7(즉 70%의 증가)로 되었고, y_{j2}/y_{k2} (즉 1939년의 일본인 1인당 소득이 조선인 1인당 소득의 몇 배가 되는지)는 6.7(6.7배)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민족 간 소득 격차는 1912년보다 다소 커진다. 그렇지만 조선인 1인당 소득은 이 기간 중 70% 증가한다. 곧 경제성장 속에서 조선인의 소득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¹¹⁾

만약 조선인 1인당 소득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조선인 1인당 소득이 1912년과 1939년에 동일하면서도 조선의 GDP가 2.66배로 증가했다면, 일본인 총소득은 15.7배로 증가했고 전체 GDP에서도 51.8%를 차지하게 되며, 1939년의 일본인 1인당 소득은 1,991엔으로 1912년의 6.4배가 되고 1939년 일본 내 1인당 소득 306엔의 6.5배가 되며, 조선인 1인당 소득 53엔의 37배가 된다는 것이다.¹²⁾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산 결과가 나온 까닭은 조선인 1인당 소득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가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조선의 GDP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조선인 1인당 소득도 증가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종래의 조선인 소득 정제론에 실증적 근거가 없고”, “전체 경제가 성장하는 상황에서 조선인들의 소득과 소비도 증가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이익이 모두 일본인 몫으로 돌아갔다는 종래의 논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¹³⁾ 주익중에게 있어서 조선인 1인당 소득이 정제했다는 주장은 ‘허무한 이야기’거나 ‘엉터리’였다.

11) 주익중, 2006, 앞의 글, 119쪽.

12) 주익중, 2006, 위의 글, 116쪽.

13) 주익중, 2006, 위의 글, 142쪽.

2_주익종 모델의 일반화

주익종의 모델에서 어떤 데이터 값을 사용했는지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표 1>과 같은 값으로 대신하여 모델을 풀어 보았다. 주익종이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모델을 전개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가급적 그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한다. 일본인 인구나 조선인 인구에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그 나머지는 동일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필자의 계산 결과는 주익종의 계산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주익종 모델을 좀 더 일반화하기 위해 우선 조선의 GDP 증가 배율 k 라는 변수를 도입하기로 한다. 즉 $k=Y_2/Y_1$ 이다. 이 변수를 도입한 까닭은 낙성대경제연구소에서 추계한 1940년의 GDP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1911년의 GDP는 의문의 여지가 많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표 1>에서 1940년의 GDP가 밝혀져 있기 때문에 1911년의 GDP (Y_1)는 k 로 표현할 수 있다. 즉 $Y_1=2859065000/k$ 가 된다. 또 주익종의 경우에는 조선 내 일본인의

<표 1> 주익종 모델에서 사용될 기호의 의미와 데이터 값

기호	기호의 의미	시산에 사용된 값	
		1911년	1940년
Y	조선의 GDP	Y_1	2,859,065,000
P	조선의 인구	16,615,000	24,302,000
P_k	조선인 인구	16,404,000	23,547,465
P_j	일본인 인구	210,689	707,337
y_n	일본의 1인당 GDP	158	318
a	배율(= y_j/y_b)	a1	a2

* 주: 배율은 조선 내 일본인 1인당 GDP가 일본의 1인당 GDP의 몇 배인가를 의미한다. 일본의 1인당 GDP는 大川一司, 篠原三代平, 梅村又次 編, 1974, 『長期經濟統計 1 國民所得』, 東洋經濟新報社에서 채택하였다. 조선의 인구는 차명수가 추계한 인구이고, 일본인 인구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서 가져왔다. 일본인 인구에는 상당한 오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인 인구는 조선의 인구에서 일본인 인구를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단 조선인 인구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오차율은 매우 낮을 것이다. 조선의 GDP도 낙성대경제연구소에서 추계한 것을 따랐다.

1인당 GDP가 일본의 1인당 GDP의 2배라고 한정했지만, 매우 자의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변수로 취급하여 1911년에 a_1 , 1940년에 a_2 라고 하기로 한다.

이제 주익종의 모델에서 1911~1940년 간에 조선인 1인당 GDP가 몇 % 증가했는지 알아 보기 위해 $y_{k2}/y_{k1}-1$ 에 대해 식을 풀어 보면 다음과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다.¹⁴⁾

$$\frac{y_{k2}}{y_{k1}} - 1 = -1 + \frac{1093600(2859065000 - 224933166 \times a_2)}{1569831(-66577724 + \frac{2859065000}{k})}$$

이제 k 값의 범위를 0~4, a_2 값의 범위를 0~10으로 준 다음, 위의 수식으로 등고선 그래픽을 그려 보면 <그림 2>와 같이 된다. 등고선 그래픽을 그릴 때는 매스매티카(Mathematica)라는 수학 소프트웨어를 사용했고, 그 명령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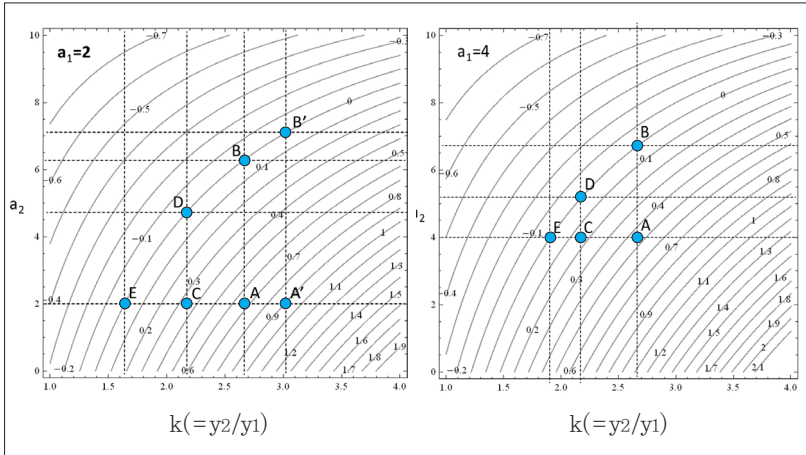
```
ContourPlot[-1 +  $\frac{1093600(2859065000 - 224933166 a_2)}{1569831(-66577724 + \frac{2859065000}{k})}$ , {k, 0, 4}, {a2, 0, 10},
```

```
ContourLabels → True, ContourShading → None, Contours → 27]
```

동일한 방법으로 $a_2=4$ 라는 가정하에서 등고선 그래픽을 그릴 수 있다.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우선 $a_1=2$ 인 경우(좌측 그림)부터 설명해 보겠다. 주익종은 $k=2.66$ 이었을 때 y_k 가 70% 증가한다고 하였다. A점이 그에 해당한다. A점은 0.7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는 등고선 가까이 위치한다. 만약 $y_{k1}=y_{k2}$ 라면, y_k 에 변화가

14) y_{k2}/y_{k1} 은 y_{k1} 에 대한 y_{k2} 의 증가 배율을 의미하고, $y_{k2}/y_{k1}-1$ 은 y_{k1} 에 대한 y_{k2} 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0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는 등고선은 $y_{k2}/y_{k1}-1=0$, 즉 $y_{k2}/y_{k1}=1$ 혹은 $y_{k2}=y_{k1}$ 이며, 따라서 y_k 의 증가율은 0이 되는 것이다. 이 식은 $a_1=2$ 라는 가정하에서 도출한 것이고, $a_1=4$ 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분모의 -66577724 가 -133155448 로 바뀌고 나머지는 모두 같다.



〈그림 2〉 a_1 , a_2 , k 값의 변화에 따른 y_k 의 증가율

없고 $k=2.66$ 이라면, $k=2.66$ 에서 수선을 세워 0 라벨이 붙은 등고선과 교차하는 B점이 그에 해당한다. a_2 값은 6.5 정도가 되어야 한다. 주익종의 1912년의 Y_1 을 1911~1913년의 평균값으로 잡고, 1939년의 Y_2 를 1938~1940년 평균값으로 잡아 계산하여 $k=2.66$ 이라고 하였다. 1911년과 1940년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k=3.01$ 이 된다. 그러면 $a_1=2$ 일 때, 조선인 1인당 GDP는 90% 증가하게 된다(A' 점). y_k 가 불변으로 되기 위한 조건은 $a_2=7$ 로 더 높아진다. 주익종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장이 한층 더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a_1=2$ 인 좌측 그림에서 이번에는 $k=2.18$ 인 경우를 살펴 보자. $k=2.18$ 은 1917년과 1940년 조선의 GDP에 대해 그 증가배율을 계산하여 얻은 값이다. 왜 이런 값을 택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이런 변화를 주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 보자.

$a_1=2$ 이고, $k=2.18$ 일때, y_k 의 증가율은 약 35% 정도로 줄어든다(C점). y_k 가 불변으로 되기 위한 조건은 $a_2=4.7$ (D점)로 앞의 경우보다 많이 줄어든다.

이번에는 $a_1=2$ 이고, $k=1.65$ 부근인 경우(E점)를 보면, E점 자체가 0이라는 라벨이 붙은 등고선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y_k 가 이미 불변임을 알 수

있다. 만약 k 값이 이것보다 적든가 아니면 a_2 값이 2보다 높다면 조선인 1인당 GDP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a_1=2$ 가 아니라 다른 값이면 분석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림 2>의 오른쪽 그래프는 $a_1=4$ 라는 가정하에서 그린 것이다.

$a_1=4$ 이고 $k=2.66$ 인 경우(A점)에는 교차점이 0.4 등고선과 0.5 등고선 중간에 위치한다. y_k 가 약 45% 증가한 것으로 된다. y_k 가 불변으로 되기 위해서는 $a_2=6.5$ 로(B점) 되어야 한다. $a_1=4$ 이고 $k=2.18$ 인 경우(C점)에는 y_k 가 약 15% 증가한 것으로 되고, y_k 가 불변으로 되기 위해서는 $a_2=5.5$ 가 되면 된다(D점). $a_1=4$ 이고 $k=1.90$ 인 경우(E점)에는 E점이 0 등고선상에 있기 때문에 y_k 는 이미 불변이다.

설명이 좀 복잡해졌지만 요점은 간단하다. 즉 조선인 1인당 GDP(y_k)의 증가율은 ① 조선의 GDP의 증가배율($k=Y_2/Y_1$), ② 1911년의 조선 내 일본인 1인당 GDP의 일본의 1인당 GDP에 대한 배율(a_1), ③ 1940년의 조선 내 일본인 1인당 GDP의 일본의 1인당 GDP에 대한 배율(a_2)의 값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y_k 의 증가율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k > a_1 > a_2$ 의 순서이고, 그 중에서 특히 k 값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주익종의 가정처럼 조선 내 일본인 1인당 GDP가 일본의 1인당 GDP의 2배($a_1=2$)라고 하더라도 조선의 GDP의 증가배율(k)이 낮아지면 조선인 1인당 GDP 증가율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k=1.65$ 정도가 되면 $a_1=a_2=2$ 에서 조선인 1인당 GDP 증가율은 0이 된다. $a_1=a_2=4$ 인 경우에는 $k=1.9$ 에서 조선인 1인당 GDP 증가율은 0이 된다. 주익종은 $a_1=a_2=2$ 이고, $k=2.66$ 인 경우를 상정하여 계산하였기 때문에, 조선인 1인당 소득이 70% 증가하는 것으로 되었고, 만약 그것을 부정하게 되면 a_2 , y_2/y_1 등등의 값들이 그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터무니 없이 큰 값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었지만, a_1 이 좀 더 큰 값을 취하거나 k 값이 좀 더 낮은 값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의 상식으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논의의 핵심은 결국 k 값이 어떠한가와 a_1 을 얼마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3_a1(일본의 1인당 GDP에 대한 조선 내 일본인 1인당 GDP의 배율)의 검토

주익중은 조선의 GDP에서 민족별 GDP를 끄집어 내면서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1인당 소득이 당해 연도 일본의 1인당 GDP의 2배이고, 그 배율이 지속되었다는 두 가지 가정을 도입하였다.

전자의 경우 즉 $a_1 = 2$ 라는 가정은 조선총독부 공무원들의 소득이 조선에만 고유하게 존재하는 각종 가봉제도 때문에 일본의 동종동급의 공무원들보다 약 2배인 것을 염두에 둔 것 같다.¹⁵⁾ 식민지 프리미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무릇 모든 고용관계가 그러하듯 공무원제도도 피라미드형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상급직은 수가 적고 하급직으로 내려갈수록 그 수가 많아진다. 그런데 조선의 경우에는 하급직의 상당 부분은 조선인으로 채워지고, 상급직으로 갈수록 일본인의 비율이 높아진다. 일본의 경우에는 하급직까지 모두 일본인들로 채워지는 것과 명백히 다르다. 흔히 식민지적 고용구조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식민지적 고용구조를 전제로 한다면, 조선에 근무하는 일본인 공무원들의 평균소득은 일본에 근무하는 일본인 공무원들의 평균소득보다 훨씬 많아야 한다. 그 차이의 상당 부분이 식민지적 고용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민지 프리미엄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후자와 관련하여 주익중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약 일본 내 일본인과 조선 내 일본인 사이에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면, 격차가 적정 수준으로 축소될 때까지 일본인들이 대거 조선으로 유입될 것이다. …… 조선 내 일본인 인구의 연간 증가율은 1910년대에 연 5.2퍼센트로 매우 높았으나, 1920~1940년에는 연 3.1퍼센트로 낮아졌다. 이것은 조선과 일본 간 일본인 소득의 격차가 전보다 축

15) 주익중은 “조선 내 일본인이 일본에 있는 동족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소득을 올렸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굳이 그들이 조선으로 건너올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한 예로, 총독부 관리의 경우 식민지 근무에 대해 가봉을 받아, 동급의 일본 내 근무자보다 봉급이 더 많았다”고 하였다. 주익중, 2006, 앞의 글, 115쪽.

소되었으리라는 점을 시사한다.¹⁶⁾

$a_1=2$ 인지, 또 만약 a_1 이 2의 값을 넘어서게 되면 일본에서 조선으로 일본인들이 대량으로 이주하게 되어 결국 $a_1=2$ 의 값으로 다시 수렴하게 되는지, 이런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좀 더 명백히 하겠다.

우선 1940년에 일본과 조선에서 각각 실시된 국세조사 자료를 토대로 직업별 인구구성을 비교해 보면 <표 2>와 같다. 조선 내 일본인 직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작업자임은 분명하지만(49.5%), 그 비중은 일본의 작업자(89.2%)와 비교하면 40% 포인트 낮다. 그 반면 경영자와 사무자 및 기술자 등 전문직 종사자의 비중은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다. 두 지역의 일본인들의 1인당 소득격차는 동일한 직업과 동일한 종사상의 지위에 대해 주어지는 식민지 프리미엄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배율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필자는 직업별 소득분포에 대한 통계자료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선과 일본 사이의 직업별 구성의 차이에서 오는 소득격차가 몇 배가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힐만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아 이런 요인으로 인한 소득격차가 매우 컸을 것이다.

<표 2> 1940년 국세조사에서 본 조선 내 일본인과 일본의 직업별(대분류) 유업자수

	일본		조선거주 일본인	
	인구	(%)	인구	(%)
I. 경영자, 사무자	2,096,769	(6.5)	71,582	(25.3)
II. 기술자	450,724	(1.4)	22,976	(8.1)
III. 작업자	28,958,490	(89.2)	140,069	(49.5)
IV. 공무자, 자유직업자, 기타 직업자	976,533	(3.0)	48,068	(17.0)
합계	32,482,516	(100)	282,695	(100)

* 자료: 朝鮮總督府, 『朝鮮昭和十五年 國勢調査結果要約』, 142~143쪽; 日本內閣統計局, 『昭和十五年 國勢調査報告』 제1권, 100~115쪽에서 작성.

* 주: () 속의 숫자는 구성비이고 단위는 %임.

16) 주익중, 2006, 앞의 글, 117~118쪽.

〈표 3〉 납세자의 산업구성과 산업별 소득격차 및 소득분포(기시와다 시, 1928~1934년)

산업	산업구성 (%)	소득격차 (8)=1	1호당 소득 (円)	상위 10%의 소득비율(%)
(1) 농림수산업	6,30	0,41	309	56,18
(2) 건설업	4,80	0,65	474	58,50
(3) 광공업	25,08	0,47	323	56,54
(4) 상업, 금융, 보험, 부동산업	24,28	1,24	923	56,48
(5) 운수, 통신, 공익사업	6,40	0,29	196	38,68
(6) 서비스업	13,50	0,89	579	44,08
(7) 공무, 기타	19,64	1,96	1,419	76,26
(8) 합계	100,00	1,00	699	64,96
(9) 인부[別掲]	3,24	0,18	135	40,82

* 자료: 小野旭, 南亮進, 1988, 「戦前日本の所得分布: 戸数割資料による産業別分布」, 『一橋大學研究年報, 經濟學研究』 29의 〈표2〉와 〈표5〉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였다.

* 주: 산업구성은 호주의 산업구성이고, 기재된 직업 중 ~傭, ~火夫, ~運搬夫, ~日傭, ~使丁, ~賃仕事, ~小使, ~番人 등의 명칭을 갖는 것을 (9)의 인부로 별게하였는데, 이것은 국제조사의 39 기타의 유업자(給仕, 番人, 掃除夫, 雜役夫, 日傭 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소득격차는 전체 1호당 소득에 대한 각 산업의 1호당 소득의 비율을 말한다.

이번에는 제2차 대전 이전의 일본의 소득분포가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밝힌 오노 아키라[小野旭]와 미나미 료신[南亮進]의 연구를 살펴 보겠다.¹⁷⁾ 그들의 연구 중에서 기시와다 시[岸和田市]의 경우를 예로 들면 〈표 3〉과 같다.¹⁸⁾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은 산업에서는 소득불평등이 발생할 여지가 적고, 모든 구성원이 한결같이 가난한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어떤 산업 중에서 높은 소득을 지불할 수 있는 직업이 나타나면 그 산업의 평균소득

17) 호별세[戸数割]란,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에게 부과한 지방세를 말하며, 1940년에 폐지되었다. 小野旭, 南亮進, 1988, 「戦前日本の所得分布: 戸数割資料による産業別分布」, 『一橋大學研究年報, 經濟學研究』 29, 3~36쪽.

18) 시라카와마치[白河町]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분량상 생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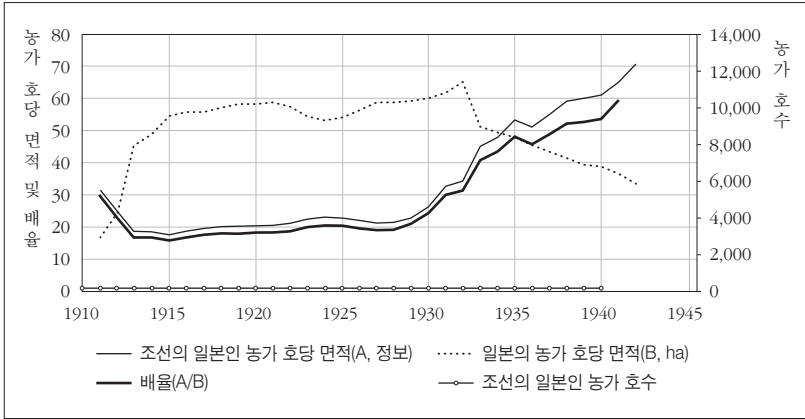
은 높아지지만 그것과 동시에 산업 내의 소득분포는 불평등하게 된다”¹⁹⁾고 하였다. <표 3>에서 (9) 인부와 (5) 운수, 통신, 공익사업의 경우 소득격차가 0.18과 0.29로 평균에 비해 매우 낮고, 동시에 상위 10%의 소득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즉 소득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7) 공무, 기타의 경우에는 소득격차가 1.96으로 매우 크고 동시에 상위 10%의 소득비율도 76.26으로 가장 높다. 이런 것들이 오노와 미나미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기시와다 시의 경우, (7) 공무, 기타의 평균소득은 (9) 인부의 10.5배에 달하고, (5) 운수, 통신, 공익사업 평균의 7.2배에 달한다.

기시와다 시와 같이 그다지 넓지 않은 지역 내에서도 산업별로 큰 소득격차가 존재하고, 산업 내에서도 소득분포에 심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현상이 제 2차 대전 이전의 일본에서 광범하게 나타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경제사에서는 이것을 이중구조(二重構造)라고 하고 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완전경쟁적 노동시장의 원리를 역사적 현장에 무차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가 하는 점을 그들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보자. 조선 내 일본인 농가 1호당 경지면적과 일본의 농가 1호당 경지면적을 비교해 보면, <그림 3>에서 보듯이 양자 간에 현저한 격차가 존재한다. 일본의 농가 1호당 경지면적은 1.1ha 부근에서 오르내리는 반면(1910~1940년간 평균 1.1ha) 조선의 일본인 농가의 1호당 경지면적은 가장 적을 때가 17.7정보이고 가장 많을 때가 65.2정보였다. 조선 내 일본인 농가 호수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 다소 오차가 있겠지만, 매 연도별로 조선의 일본인 농가가 일본의 농가에 비해 수십 배나 많은 경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조선의 일본인 농가 1호당 경지면적이 일본의 농가 1호당 경지면적의 수십 배가 되고, 그 배율이 후기로 갈수록 증가된 가장 큰 이유는 조선의 거대 일본인 지주 때문이었다. 당연히 조선 내에는 영세 일본인 농가도 존재하고 있었고, 일본인 농가 간에도 소득분포가 매우 불평등하였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

19) 小野旭·南亮進, 1988, 앞의 책, 10쪽.



〈그림 3〉 일본의 농가 1호당 경지면적과 조선거주 일본인 농가의 1호당 경지면적

* 자료: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허수열, 2005, 『개발 없는 개발』, 은행나무, 부표: 日本總務省統計局 홈페이지, 日本の長期統計系列 第7章 農林水産業 7-1-a 및 7-6 표에서 작성.

* 주: 호당 면적의 단위는 조선에서는 정보이고, 일본에서는 ha이다. 단 1ha=1,008333정보로 양자가 거의 같기 때문에 따로 환산하지 않았다.

면 조선과 일본의 농가가 소유하는 경지면적에는 엄청난 격차가 존재하고 있었고, 소득격차도 상당히 컸을 것이다. 주익종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인 농가의 평균 소득이 두 지역 간 2배 이상으로 벌어지면 일본의 농민들이 대거 조선으로 이동하여 다시 2배 수준으로 되돌아 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주익종의 생각과는 정반대였다. 특히 1932년 이후에는 조선 내 일본인 농가 1호당 면적이 크게 증가(즉 농가소득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일본인 농가 호수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주익종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²⁰⁾

20) 사실은 일본인 농가 소유 경지면적이 급증했다기 보다는 일본인 농가 호수가 급감하여 생긴 현상이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4_추계된 GDP가 가진 문제점

앞에서 조선인 1인당 GDP의 증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k 즉 조선 GDP의 증가배율(Y_2/Y_1)이라고 하였다. 1912~1939년 간에 조선인 1인당 GDP가 70% 증가했다는 그의 주장은 $k=2.66$ 이라는 전제하에서 도출된 것이다.

필자는 낙성대경제연구소에서 추계한 GDP가 현존하는 추계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충분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은 1918년 이전의 추계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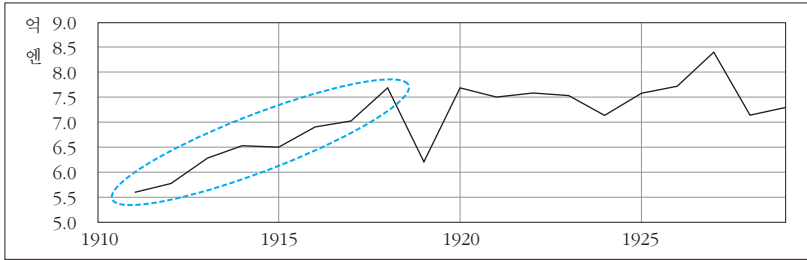
GDP를 추계할 때 사용한 조선총독부의 원자료는 초기로 갈수록 과소평가의 문제가 큰 것이었다. 이 문제는 조선총독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된 후 조선총독부는 1910~1917년 간의 농업생산과 관련된 통계를 『통계연보』 1918년판과 1919년판에서 두 번에 걸쳐 대대적으로 수정하였다. 낙성대경제연구소에서도 초기 과소평가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GDP를 추계하면서, 조선총독부가 수정한 통계를 또 다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²¹⁾ 필자는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이러한 추가 수정에도 불구하고, 1918년 이전까지 여전히 과소평가의 문제가 잔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식민지 초기 조선은 농업생산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농업 사회였다. 농업생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농업 사회에서 농업생산액에 대한 잘못된 추계는 추계된 GDP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장기통계』의 농업부문 실질 부가가치액(1935년 가격) 추계를 보자. <그림 4>는 그 책에 수록되어 있는 1911~1930년 간의 농업의 부가가치를 그래프로 옮긴 것이다. 1918년 이전의 변화가 그 이후의 변화와 판연히 구별된다. 필자는 이렇게 증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²²⁾

21) 후술할 <그림 8>에서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수정결과의 일부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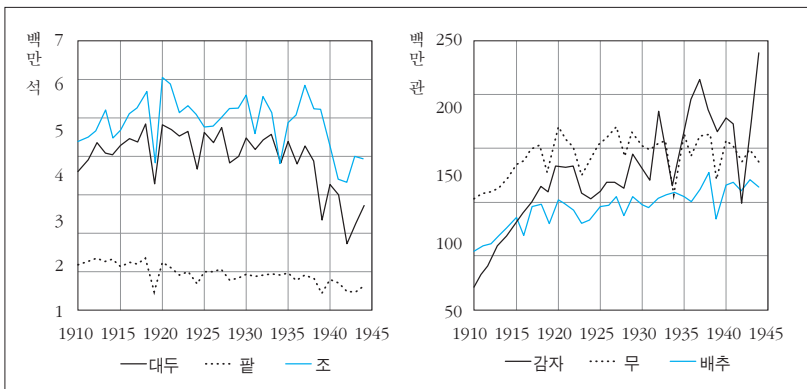
22) 이 글의 각주4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 4〉 농업 부문의 실질부가가치(1935년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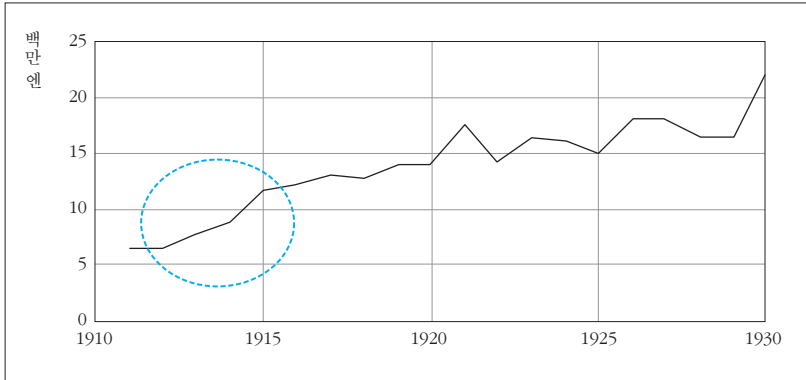
* 자료: 김낙년 편, 2012,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계정 1911-2010』,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451쪽,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1935년 가격)에서 작성.

농업 부문의 실질부가가치액이 〈그림 4〉와 같이 추계된 이유는 농업생산을 구성하는 각 작물의 생산액의 초기 과소평가 문제를 충분히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한국의 경제성장』 부표를 보면, 주요 농산물(쌀, 보리, 밀, 쌀보리, 대두, 팥, 조, 면, 감자, 무, 배추, 사과, 소, 누에고치 등)의 14 품목의 생산량에 대한 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이 생산통계가 GDP 추계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 중 일부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 과소평가가 여전히 불식되지 못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그림 5〉 초기 통계의 과소평가 문제

* 자료: 김낙년 편, 2006,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 서울대학교출판부, 410~411쪽에서 작성



〈그림 6〉 섬유·의복·가죽 산업의 부가가치(1935년 가격)

* 자료: 김낙년 편, 2006,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 서울대학교출판부, 427쪽에서 작성.

1918년을 경계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변화추세가 확연히 달라진다.

이번에는 의생활과 관련된 통계를 검토해 보자.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GDP를 추계하면서 사용하였을 섬유·의복·가죽 산업의 실질 부가가치액(1935년 가격)은 〈그림 6〉과 같았다. 그 추계에 따르면 식민지 초기의 경우 섬유·의복·가죽 산업의 부가가치가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2할 부근이었다. 역시 점선안 연도의 변화가 매우 도드라지게 급속하다. 1911~1929년 간의 증가액의 절반 가량이 이 3년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전년 대비 부가가치 증가율은 1913년이 19%, 1914년이 15%, 1915년이 33%였다. 식민지기 전체를 통틀어 이 보다 급속한 증가 구간은 없다. 이 무렵 조선의 섬유·의복·가죽산업은 주로 전통적인 가내수공업적 생산이 지배하던 시기였고, 이 산업의 생산이 급증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시기에, 실질 부가가치액이 3년 만에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다는 추계결과를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는 농업부문이나 섬유·의복·가죽 산업의 경우를 예로 들어, 1918년 이전의 『한국의 경제성장』의 추계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현상은 거의 모든 부문에서 나타난다. 1918년까지 조선의 GDP가 급증한 것은 식민지기 동안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통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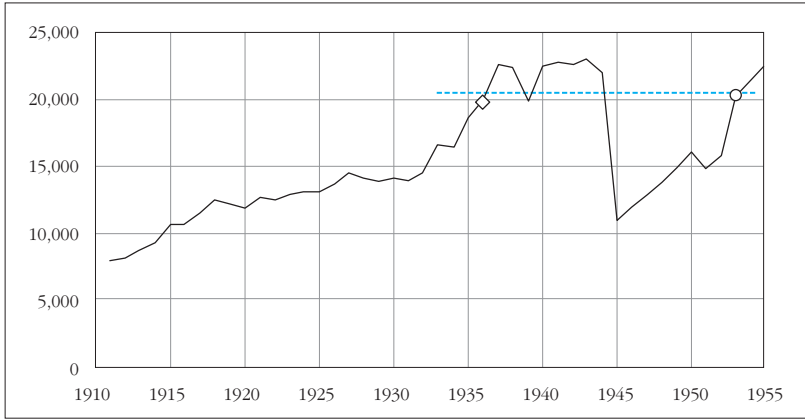
에서 특히 부정확했던 1910~1917년 간의 통계를 충분한 수정 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주익중은 1912~1939년 간에 조선의 GDP가 2.66배로 되었다고 보았지만, 필자의 생각이 옳다면 이 GDP 증가배율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림 2>에서 $k=2.18$ (1917~1940년 간의 GDP 증가배율)인 경우를 다루었는데, 초기값으로 1911년이 아니라 1917년을 잡았던 까닭은, 조선 총독부 통계의 초기 과소평가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낙성대경제연구소에서 추계한 1917년의 GDP가 오히려 1911년의 실제 GDP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다루지 않은 1941~1945년 구간은 일본 전쟁경제의 붕괴기에 해당하고, 이 시기 생산된 물자 중에서 상당부분이 민간 소비와는 관계 없는 전쟁물자였으며, 해방 무렵에는 경제가 급격히 쇠퇴했기 때문에, 식민지기 조선인 생활수준 변화에 있어 하나의 지표로서 1인당 GDP를 운운하려면 이 구간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이번에는 주익중의 모델에서는 분석대상이 아니었던 1941~1945년의 구간도 고려에 넣어 보자.

낙성대경제연구소의 GDP 추계는 1940년으로 끝난다. 해방 후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GDP의 최초의 연도는 1953년이였다. 말하자면 1941~1952년 간에는 GDP 추계에서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는 의미다. 메디슨의 자료에는 1941~1952년 간에 대한 GDP도 있지만,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고 단순한 변화양상 정도만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아무튼 메디슨이 추계한 남한의 GDP를 살펴 보면 <그림 7>과 같다.

메디슨의 자료는 1938년까지는 미조구치 토시유키[溝口敏行]의 추계를 기본으로 삼았고, 1953년 이후는 한국은행이 공표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남북 분할을 하고 구매력평가를 감안한 불변 달러가치(1990년)로 환산한 것이다. 메디슨의 자료에서 1945년 GDP는 1915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아주 온건하게 1953년 수준이었다고 가정해 보기로 한다. 이 수준은 식민지기의 경우 1936년 수준과 비슷하다.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1917년과 1936년의 GDP를 가져 와서 계산해 보면 $k=1.72$ 로 된다. $a_1=a_2=2$ 이고 $k=1.72$ 인



〈그림 7〉 메디슨이 추계한 남한의 GDP

* 자료: <http://www.ggdc.net/maddison/oriindex.htm>.

* 주: 세로축의 단위는 million 1990 International Geary-Khamis dollars.

경우에 조선인 1인당 GDP는 약 5% 증가하는 것이 된다. 1945년의 조선인 1인당 GDP가 1911년과 같아지기 위한 a_2 값은 2.5이다. 즉 $k=1.72$ 일 때, $a_1=2$, $a_2=2.5$ 라면 조선인 1인당 GDP는 불변이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a_2=3$ 이 되면 조선인 1인당 GDP는 약 5% 감소하게 될 것이고, $a_2=4$ 로 되면 15% 정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1942년 하반기에서 1945년 해방에 이르는 기간은 전선에서 일본의 패색이 완연해지는 기간이었고, 노동력 부족, 생산자재의 결핍, 일기 불순 등의 갖가지 요인이 겹쳐 생산이 급격히 붕괴되는 시기였다. 1942~1944년 간에는 메디슨이 추계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경제가 내려앉았을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 해방이라는 충격이 가해지면서 1945년 이후 몇 년간 GDP는 참담하게 무너졌을 것이다. 만약 1945년의 k 값이 1.6(즉 1945년 조선의 GDP가 1911년에 비해 약 60% 증가)이라면, $a_1=a_2=2$ 일 때, 조선인 1인당 GDP 증가율은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게 된다. 즉 조선인 1인당 GDP는 1911년 수준보다 낮아지게 된다.

주익중은 1912~1939년 간에 조선인 1인당 GDP가 70% 증가했다고 주장했

지만, 1918년 이전 통계의 과소평가 문제를 수정하고 1941~1945년 간의 조선 경제의 붕괴를 감안한다면 조선인 1인당 GDP는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Ⅲ. 식민지 조선의 생활수준

조선인의 1인당 소득에 관한 논의는 종종 조선인들의 생활수준 변화에 관한 논의와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 1인당 소비가 증가할 것이고, 식민지 시기와 같이 낮은 소득수준에서는 1인당 음식물 섭취의 증가 및 1인당 총칼로리 섭취량의 증가로 나타났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인 1인당 칼로리 섭취량의 증가 여부는 조선인 1인당 소득의 증가 여부를 판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주익중은 1912~1939년에 1인당 총 곡물소비량은 14% 가량 감소했다고 하였다.²³⁾ 그러나 여타 식품(예컨대 감자와 고구마)의 소비가 증가하여, 1인당 칼로리 섭취량은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나아가 그 밖에 1인당 육류 소비는 1.6배로, 야채와 과일은 2.3배로, 어패류는 3.3배로, 가공식품은 2.5배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보강된 칼로리를 더하면 1인당 총 칼로리 섭취량은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²⁴⁾

〈그림 8〉은 곡물의 생산량과 가계소비량을 정리한 것이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는 현미, 맥류(대맥, 소맥, 라맥, 라이맥), 잡곡류(조, 피, 서, 축서, 옥축서, 연맥, 교맥), 두류(대두, 소두, 땅콩, 채두, 완두, 기타) 등의 18개 품목의

23) 김낙년 편, 2012,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계정 1911-2010』,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7쪽.

24) 김낙년 편, 2012, 위의 책, 20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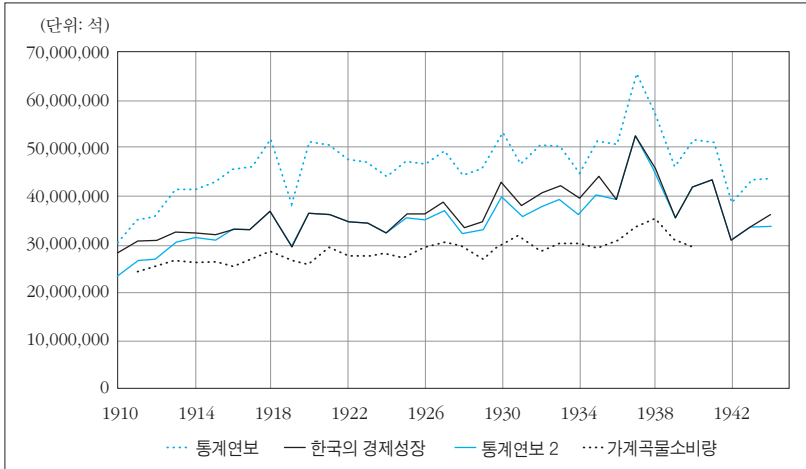
생산량에 대한 통계가 있다. 모두 석(石) 단위로 측량되기 때문에 곡물의 종류를 불문하고 합산하면 <그림 8>의 '통계연보' 곡선과 같이 된다. 1918년이 되기까지는 생산량이 급증하고, 그 이후에는 1937년과 1938년을 제외하면 대부분 1918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그것을 하회한다. 특히 1942년 이후의 생산량은 1918년 수준보다 훨씬 낮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서 보면 1918년의 곡물 생산량은 식민지기 곡물생산의 정점이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낙성대경제연구소에서는 초기 통계의 과소평가 문제를 잘 알고 있었고, 농업 부문의 추계를 담당했던 박섭은 신중하게 그것을 보정하였다.²⁵⁾ 현미의 경우에는 1910~1936년까지, 나머지 작물의 경우에는 1917년까지 조선총독부의 원 생산량에 수정을 가하였다. <그림 8>에서 '한국의 경제성장' 곡선은 그 중 일부 품목(위에서 밑줄 친 품목)에 대해 수정한 생산량을 합산한 것이다. '통계연보 2' 곡선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통계연보』의 원자료를 합산한 것이다. 이 두 곡선을 비교해 보면 1918년까지 낙성대경제연구소가 어떻게 수정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또 1918~1936년 간의 '한국의 경제성장' 곡선과 '통계연보 2' 곡선 사이의 차이는 현미생산량에 대한 수정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한편 『한국의 경제성장』에는 가계곡물소비량에 대한 추계도 수록되어 있다. 그것을 도시한 것이 <그림 8>의 '가계곡물소비량' 곡선이다. 이 경우에도 곡물생산량의 변화추세와 비슷하게 1930년대 말의 일시적인 증가를 제외하면 1918년 이후에는 대체로 1918년 수준을 오르내리고 있다. 1940년대의 가계곡물소비량은 추계되어 있지 않지만, 생산량의 변화추세에서 보았을 때 크게 감소하였음에 틀림 없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1914년과 1936~1944년 간의 9개년 평균의 곡물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의 경우(18개 품목) 증산률이

25) 그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초기 곡물 통계에는 여전히 과소평가의 문제가 잔존한다고 생각한다. <그림 5>에서 왼쪽 그림(낙성대경제연구소에서 수정한 생산량)을 참조.



〈그림 8〉 곡물 생산량과 가계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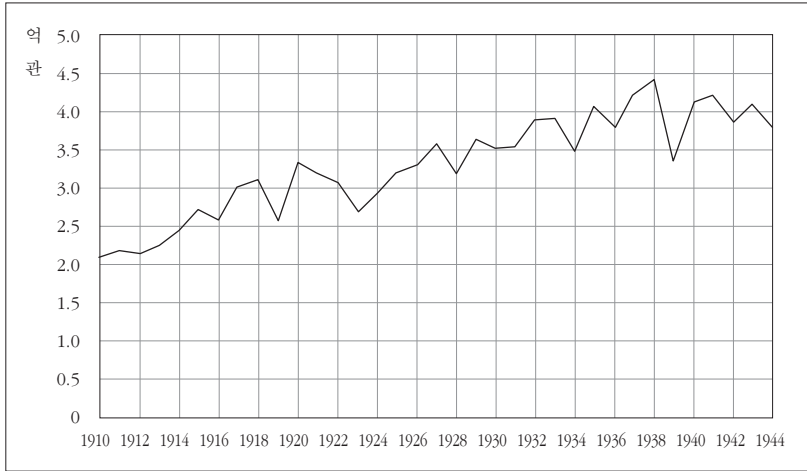
20.34%이고, 『한국의 경제성장』의 경우(6개 품목) 증산률이 22.65%였다. 차명수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1911~1944년 간에 인구증가율이 55.9%였기 때문에 1인당 곡물소비량(생산량 기준)은 33.3~35.6%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된다. 식민지기 1인당 곡물소비량의 감소는 주익종이 생각한 것처럼 14%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30%를 넘어서는 것이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²⁶⁾

야채와 과일이 2.3배로 증가했다는 주익종의 주장도 현존 통계로는 입증되지 않는다. 〈그림 9〉는 야채와 과일을 종류를 막론하고 모두 무게(관)로 합산한 것이다.²⁷⁾ 이 경우에도 조선총독부의 초기통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1918년까지의 급증이라는 현상이 뚜렷하다.²⁸⁾ 1910~1918년 간의 생산량의 증

26)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양곡(미곡과 잡곡)의 1인당 소비량은 1915~1919년 평균과 비교해 보았을 때, 1930~1936년에는 19.4% 감소하였고, 1942~1944 연도와 비교해 보면 37.2% 감소하였다고 한다. 한국은행, 1949, 『經濟年鑑』 VI, 34쪽. 이 통계 역시 필자의 계산과 크게 다르지 않다.

27) 합산된 야채와 과일의 종류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 무, 배추, 양배추, 파, 가지, 오이, 호박, 참외, 수박, 마늘, 곤약, 고추, 미나리 등 18종이다. 자료는 박섭이 정리한 자료에서 가져왔다. GDP 추계에서도 이 데이터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28) 앞의 〈그림 5〉에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조선인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무와 배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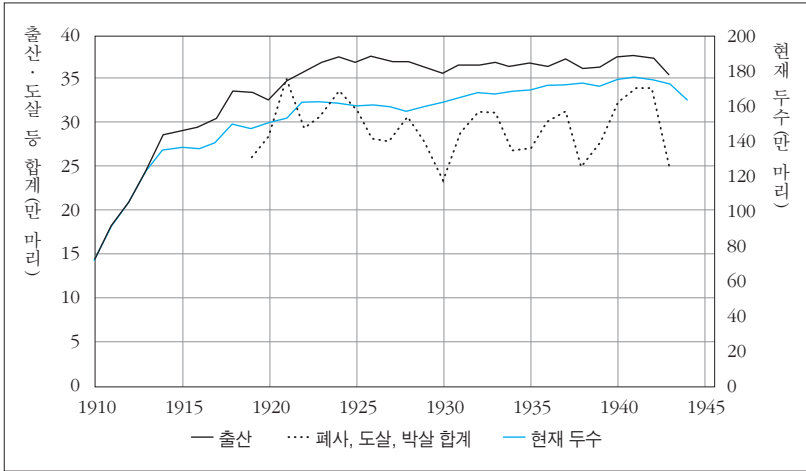


〈그림 9〉 야채와 과일 생산량

가가 식민지기 전체 증가량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 된다. 초기로 갈수록 생산량의 과소집계의 정도가 컸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식민지 초기의 야채와 과일 생산량을 1914년 수준이라고 가정하고, 식민지 말기의 생산량을 1936~1944년 9개년 평균값이라고 가정하여 생산량의 증가율을 구해 보면 62.39%가 된다. 1911~1944년 간의 차명수의 인구증가율이 55.9%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감해 주면 1인당 야채와 과일 소비량(생산량으로 대신하였다)은 6.5%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 만약 식민지 초기의 값을 1915년 수준으로 잡는다면 1인당 소비량의 증가율은 -8.0%가 되어 버린다. 야채와 과일의 소비량이 2.3배로 되었다는 주익종의 주장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렇다면 육류소비가 1.6배로 늘어났다는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 소에 관한 조선총독부의 통계로서는 현재 두수, 소의 동태(출산, 폐사, 도살, 박살)에 관한 통계가 주어지고 있다. 단, 출산과 폐사 통계는 1912년 이후, 박살통계는 1913년 이후, 도살통계는 1919년 이후의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모아 놓은 것

생산량(낙성대경제연구소의 수정치) 변화 추세가 1918년을 경계로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조선총독부의 소에 관한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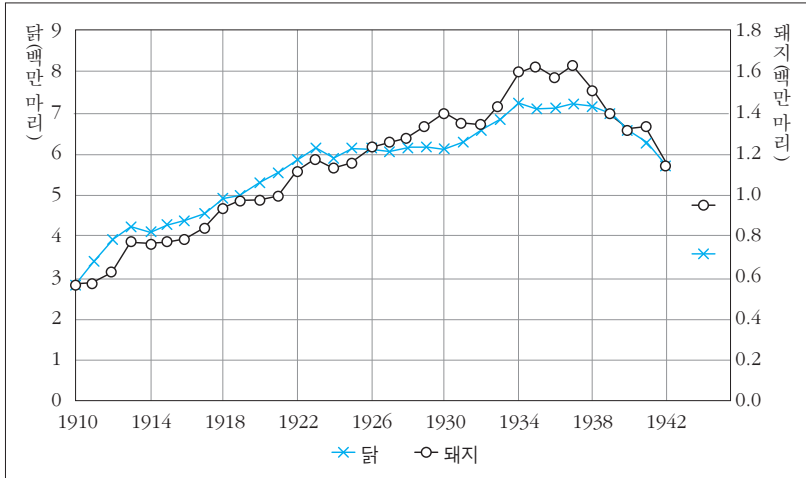
* 자료: 朝鮮總督府, 『統計年報』에서 작성.

이 〈그림 10〉이다.

현재 두수를 보면 1910~1914년까지 급증하고 그 후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준다.²⁹⁾ 1920년대 중엽 이후에는 출산 두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폐사·도살·박살된 소의 두수가 추세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현재 두수가 약간 증가한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상에서 소의 동태를 보면, 가계에서 소비되는 쇠고기(그 부산물과 가공식품 포함)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통계상으로 증가했다면 1910~1923년 사이에 특히 1910~1914년 간에 증가했을 것이지만 이것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만약 쇠고기 소비량을 소의 현재 두수와 일정한 비례관계에 있다고 가정한다면,³⁰⁾ 식민지기의 쇠고기 소비량은 27.9% 증가(1914년과 1936~1944년 평균의 비교)한 것으로 되고,

29) 소의 경우에는 1910년대 초에 우적조사(牛籍調査)를 실시하여 소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얻으려고 하였다. 1910~1914년의 급증은 실제로 사육 두수가 증가하였다고 보다는 이러한 우적조사 실시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소 이외의 가축이나 가금에 대해서도 우적조사와 같은 조사가 있었는지는 아는 바 없다.

30) 현재 두수에 대한 도살의 비율은 13~22%(평균 17%)이고 감소추세였다.



〈그림 11〉 닭과 돼지의 현재 두수에 관한 조선총독부의 통계

* 자료: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한국은행, 1949, 『經濟年鑑』, IV-37.

1911~1944년 간의 인구증가율 55.9%를 감안하면 1인당 소비량은 28.0% 감소한 것으로 된다.

돼지와 닭의 경우에는 동태통계가 부족하여 위와 같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없지만, 현재 두수로부터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림 11〉 참조). 닭의 경우에는 초기 두수를 1914년 수준으로 잡고 1936~1944년 9개년 평균값과 비교해 보았을 때, 현재 두수가 57.9% 증가한다. 1911~1944년 간의 인구증가율 55.9%를 차감하면 1인당 닭고기 소비량(현재 두수 기준)은 2% 증가에 그치게 된다. 돼지의 경우에는 초기 두수를 1914년경으로 잡고 1936~1944년 간 9개년 평균값과 비교해 보면, 현재 두수가 75.2% 증가하고, 여기에서 인구증가율 55.9%를 차감하면 19.32% 소비량(현재 두수 기준)이 증가하게 된다.

지금까지 소, 닭, 돼지에 대해 일정한 도살률을 전제로 현재 두수로부터 1인당 육류소비량을 계산해 보았다.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약 28% 감소했고, 닭고기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19% 정도 증가

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주익종은 1인당 육류소비량이 60% 증가했다고 하였지만, 필자의 계산으로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되었다.

주익종이 언급한 것 중에서 1인당 어패류 소비량이 3.3배로 되었다는 것을 받아 들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인당 식품소비량의 감소는 명백하다. 요컨대 농축산물의 경우, 1인당 소비량은 모두 감소경향이 뚜렷했고, 따라서 1인당 총 칼로리 섭취량도 감소경향이 뚜렷했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1인당 소비에 대한 계산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 등에서 차명수가 추계한 인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차명수가 추계한 조선의 인구는 1915~1924년 간의 인구증가율이 기존의 이시 요시쿠니[石南國], 김철, 미조구치 토시유키[溝口敏行] 등의 추계에 비해 매우 낮도록 책정되어 있다. 그 결과 식민지기의 인구증가율도 다른 추계에 비해 낮아진다. 차명수가 추계한 인구에도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이 글에서 다루기는 적절하지 않다. 만약 인구증가율이 차명수가 추계한 것보다 더 높다면, 1인당 소득과 1인당 소비의 증가율은 한층 더 낮아지게 된다. 즉 생활수준의 악화는 한층 더 뚜렷해지게 된다.

주익종은 식민지기 동안 조선인들의 1인당 GDP는 70% 증가하였고, 그것이 정체했다는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임을 계산을 통해 명백히 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선인 1인당 GDP의 증가라는 자신의 주장이 민간소비나 1인당 총 칼로리 섭취량 등의 변화 양상에서도 입증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주익종이 터무니 없는 것으로 보았던 조선인 1인당 GDP의 정체 내지 감소가 오히려 현실적이었던 것이다. 식민지근대화론에서 총 칼로리 섭취량이 증가했다는 주장도 자료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보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조선인 1인당 GDP의 정체 내지 감소라는 필자의 주장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IV. 맺음말

필자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일본의 조선강점을 옹호하는 발언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들 역시 일본의 조선 지배 자체는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의 조선 지배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조선이 개발되면서, 그 개발 이익의 일부를 조선인들도 공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생각은 조선인들의 소득과 생활수준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주익중은 식민지 시기(1932~1939년 간)에 조선인 1인당 GDP가 70% 증가하였다는 시산(試算)을 내어 놓았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증가를 부정하여 조선인들의 1인당 GDP가 정체했다고 가정하게 되면, 조선 내 일본인들의 1인당 소득과 일본 내 일본인들의 1인당 소득 간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가 발생하고, 조선 내 일본인들의 소득이 식민지 초기에 비해 후기에 역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소득격차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확대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 이유는 결국 조선인 1인당 GDP의 증가를 부정했기 때문이고, 따라서 그 증가를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았다. 『한국의 장기통계』에서는 1인당 소비를 대상으로 비슷한 맥락의 주장이 이루어진다.

주익중의 글은 실증적이라기 보다는 논리적인 것이다. 그의 주장 대부분이 수식을 풀어서 얻게 되는 결론이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토해 온 바와 같이, 주익중의 모델에서는 식민지 초기와 말기 간에 GDP 증가배율(본문에서는 이것을 k 라고 하였다)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식민지 초기의 조선 내 일본인들의 소득이 일본 내 일본인들의 소득의 몇 배인가(a_1), 그리고 식민지 말기의 조선 내 일본인들의 소득이 일본 내 일본인들의 소득의 몇 배인가(a_2) 등의 순서였다.

사실 a2 값의 변화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었다.

주익중은 가장 중요한 요인인 k값을 고율로 고정해 놓았기 때문에, 조선인 1인당 소득이 정체 혹은 감소할 수도 있다는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핵심은 식민지 시기 조선의 GDP 성장률이 낙성대경제연구소가 추계한 것처럼 높지 않았다는 데에 있는 것이었다.

주익중은 『한국의 장기통계』에서 1912~1939년인 27년 간 민간소비지출은 2.31배로 늘어났고, 1인당 소비지출은 64% 증가했는데, 그 증가의 “대부분을 일본인이 차지했고 조선인은 그것을 향유하지 못했다”는 식의 논의는 잘못된 것이다. 그 수가 급증했다고는 하나 일제 말까지도 전 인구 중에서 일본인 인구는 작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그들만이 소비지출 증가를 독차지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³¹⁾라고 하면서 “조선인 소비증가 배율의 범위를 추정함으로써 이를 입증”해 보려고 하였다. 조선인 1인당 GDP에 관한 그의 논의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민간소비에 관한 주익중 주장의 타당성 여부도 결국 민간 소비의 크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³²⁾

식민지 시기에 조선인들의 1인당 민간소비가 뚜렷이 증가했다면, 그 효과는 당장 음식물 섭취량의 증가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1인당 곡물 소비량, 육류소비량, 과일과 야채소비량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식민지 초기에 비해 후기에 그 소비량이 증가했다는 실증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1인당 어패류 소비량 정도만 다소 증가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선의 1

31) 김낙년 편, 2006, 앞의 책, 209쪽.

32) 낙성대경제연구소에서 추계한 민간소비지출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한국의 장기통계』에서 각각 다르다. 구간별 증가율을 계산해 보면 1926~1934년 간에는 전자가 25.1%, 후자가 25.7%이고, 1934~1940년 간에는 전자가 21.6%이고, 후자가 21.7%로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1911~1918년 간에는 전자가 35.6%였던 것이 후자에서 26.5%로 대폭 줄어들고, 1918~1926년 간에는 전자가 24.2%였던 것이 후자에서 28.4%로 다소 증가하였다. 구간별로 율통불통하던 것을 다림질을 한 것처럼 평평해지는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한 통계는 어차피 조선총독부 통계에 의존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고, 결국 디플레이터(deflator)를 새로 적용하여 발생한 변화였을 것이다.

인당 식품 소비량은 감소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득수준이 낮고, 따라서 엔겔계수가 높았던 식민지 초기 상태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가장 먼저 식품소비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증적인 제 결과에 의하면 1인당 식품소비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1인당 민간소비의 증가 혹은 1인당 GDP의 증가와 상반된다.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지배 기간 동안에, 1인당 소득이나 1인당 소비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조선인들의 생활수준은 결코 향상되지 않았다.

조선인들의 생활수준의 본격적인 향상은 조선이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시작되었다. 해방과 더불어 교육혁명이라고 불려도 좋을 정도로 근대교육이 급속히 보급되기 시작했고, 1950~1955년 간의 농지개혁으로 지주-소작관계가 청산되면서 1955~1975년 간에 농업생산이 농업혁명이라고 불려도 좋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런 토대 위에서 1960년대 중엽부터 공업발전이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실질임금과 1인당 소득도 1960년대 중엽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사이먼 쿠즈네츠(S. Kuznets)가 정의한 근대적 경제성장(modern economic growth)이 나타난 것, 혹은 아더 루이스(W. Arthur Lewis)의 전환점(Lewis turning point)이 발생한 시점은 모두 1960년대 중엽 이후였다.³³⁾

이 글은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의 주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장들이 비현실적인 주장임을 입증함으로써, 일제의 조선 지배가 정당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였다.

33)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변화추세에 대해서는 허수열, 2012, 「1945년 해방과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3권,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참조하기 바란다.

참고문헌

- 김낙년 편, 2006,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낙년 편, 2012,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계정 1911-2010』,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영훈, 2012, 「혼란과 환상의 歷史的 時空 - 허수열의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에 답한다」, 『경제사학』 제53호.
- 이영훈, 2013, 「허수열교수의 비판에 다시 답한다」, 『경제사학』 제54호.
- 주익중, 2006, 「식민지 시기의 생활수준」, 박지향, 김철, 김일영, 이영훈 엮음,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책세상.
- 한국은행, 1949, 『經濟年鑑』.
- 허수열, 2005, 『개발 없는 개발』, 은행나무.
- 허수열, 2011,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 한길사.
- 허수열, 2012, 「1945년 해방과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3권,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허수열, 2013, 「상상과 사실 - 이영훈교수의 비평에 답한다」, 『경제사학』 제54호.
- 허수열, 2014, 「일제 초기 만경강 및 동진강 유역의 방조제와 하천의 제방」, 『경제사학』 제56호.
- 大川一司, 篠原三代平, 梅村又次 編, 1974, 『長期經濟統計 1 國民所得』, 東洋經濟新報社.
- 小野旭, 南亮進, 1988, 「戰前日本の所得分布: 戶數割資料による産業別分布」, 『一橋大學研究年報, 經濟學研究』 29.
- 日本內閣統計局, 『昭和十五年 國勢調査報告』 제1권.
- 日本總務省統計局 홈페이지, 日本の長期統計系列 第7章 農林水産業 7-1-a 및 7-6 표.
-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 朝鮮總督府, 『朝鮮昭和十五年 國勢調査結果要約』.
- Angus Maddison, <http://www.ggdc.net/maddison/oriindex.htm>.

[국문 초록]

식민지기 조선인 1인당 소득과
소비에 관한 논의의 검토

허수열

식민지근대화론의 대표적인 저작인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과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계정 1911-2010』, 그리고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에서 생활수준 부분을 담당했던 주익종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인 1인당 GDP와 실질소비지출은 70% 가량 증가하였다고 한다. 일제의 조선 강점의 부당함과 는 별개로 조선인들의 물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의미고, 수탈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식민지근대화론의 핵심적인 주장의 하나인 조선인 1인당 GDP 및 실질소비지출이 주익종의 계산처럼 그렇게 증가한 것은 아니었음을 밝혔다. 그의 주장은 조선총독부의 부정확한 통계에 의존하는 바가 컸다. 따라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1941~1945년 간의 조선경제 몰락기를 고려하면, 조선의 GDP 증가율은 한층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 따라 주익종의 모델을 풀어보면, 그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결과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가 자신의 모델을 통해 얻은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해 덧붙인 조선인 1인당 소비에 대한 논의 역시 자료를 엄밀하게 분석해 보면, 거꾸로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인들의 1인당 소득이나 소비가 증가했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의 주장은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식민지근대화론, 1인당 GDP, 1인당 소비지출, 생활수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Critical Review of the Theory of
Colonial Modernity

Huh Sooyoul

Joo Ik-Jong was in charge of writing the sections regarding the standard of living in several books, including *Economic Growth in Korea 1910-1945*(2006), *National Accounts of Korea 1911-2010*(2012), and *New Understanding of Korean History around the Liberation Period*(2006). He argued that per capita GDP and per capita real consumption expenditures of Koreans increased by approximately 70%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physical standard of living of Koreans improved significantly, and directly refutes the theory of colonial exploit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fute Joo's argument by generalizing his model. In my generalized model, I show that the per capita GDP of Koreans depended mainly on the growth rate of the GDP and that his argument relies on inaccurately estimated growth rates of the GDP. If we modify the exaggerated growth rate from 1910 to 1917 and consider the Korean economy's collapse between 1941 and 1945, the GDP growth rate of Korea will decline significantly. And in this low growth rate, the per capita GDP of Koreans will be reduced.

The argument through the colonial modernity that per capita GDP and per capita consumption expenditures of Koreans increased substantially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is opposed to the facts.

Keywords

Colonial modernity theory, per capita GDP, per capita consumption expenditures, standard of living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의 패전과 천황의 전쟁 책임

- '성단'과 평화주의의 허구 -

박진우 | 숙명여자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2014년 8월 일본 궁내청은 쇼와 천황에 관한 방대한 기록과 공문서를 24년에 걸쳐 편찬한 『昭和天皇實錄』을 완료했다고 발표하였다.¹⁾ 또한 궁내청은 2015년 8월 1일 '종전의 조서'를 천황의 육성으로 녹음하여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라디오로 방송한 '옥음방송'의 녹음 원반을 공개하였다. 동시에 당시 포츠담선언 수락 문제를 둘러싸고 '어전화의'가 열리고 천황의 전쟁 종결, 즉 포츠담선언 수락에 대한 결정을 내린 장소였던 지하병커가 함께 공개되었다.

전후 70년을 앞두고 잇달아 히로히토 천황에 관한 자료가 공개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배경에는 전쟁 종결의 성스러운 결단, 즉 '성단(聖

※ 투고: 2015년 8월 12일, 심사 완료: 2015년 11월 5일, 게재 확정: 2015년 11월 23일

* 이 글은 숙명여자대학교 2014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 실록은 1만 2천 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본문 18권과 색인 1권을 포함하여 총 19권이 며 2015년부터 매년 3월에 4권, 9월에 2~3권 씩 간행하여 2020년에 출간을 완결하게 된다. 『産経新聞』, 2015. 3. 27.

斷)을 내린 천황의 평화주의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여 새로운 애국심의 구심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 더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과 일본 최대의 우파조직 '일본회의'의 지원하에서 출간된 이쿠호샤[育鵬社] 교과서가 인물 칼럼란에서 쇼와 천황을 평화주의자로서 입헌주의의 원칙을 관철했으며 패전에 즈음해서는 '성단'을 내리고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에게 직소하여 국민을 구한 숭고한 인물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의도는 더욱 분명해진다.²⁾ 금년 3월에 『昭和天皇実録』이 공간된 직후 『産経新聞』은 실록의 기술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쇼와 20년 8월 15일의 종전을 향하여 쇼와 천황이 리더십을 발휘한 모습이 궁중 측근과 각료들의 알현 내용 등으로 보아 새삼 분명해졌다. 쇼와 천황은 전시 중 육해군 상층부로부터 연일 보고를 받고 있으며 약화하는 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종전의 '성단'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당시는 육해군 모두 전쟁 계속의 의사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으나 쇼와 천황은 신중하게 종전으로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 쇼와 천황이 포츠담선언 수락을 결의하고 명확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은 소련 참전의 정보를 접한 8월 9일 오전부터다. 10일 새벽 어전회의에서 '성단'을 내리고 그 후에도 중신들을 모아 의견을 청취하거나 항전파 아나미[阿南] 육군 장관을 설득하기도 하는 모습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³⁾

『産経新聞』은 '옥음방송'의 녹음판 공개에 대해서도 “성단의 긴박감, 원반 첫 공개 70년 만에 재생”이라고 보도하고 지하병커에 관해서는 “어문고(御文庫) 부속실은 종전의 성단을 내린 어전회의가 열리는 등 종전 직전의 중요한 무대가 되었다”⁴⁾고 설명하는 등 천황의 리더십에 의한 '성단'으로 전쟁이 종결되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2) 増田都子, 2015, 『昭和天皇は戦争を選んだ!』, 社会批判社.

3) 『産経新聞』, 2014. 9. 9.

4) 『産経新聞』, 2015. 8. 1.

물론 화평파와 항전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천황의 결단이 전쟁의 종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평화주의자 천황의 '성단'으로 미화되는 것은 결코 역사적 진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7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천황의 '성단' 신화가 또다시 재생산되어 미화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역사인식에도 심각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패전의 시점에서 천황의 '성단'이 창출되고 천황이 평화주의자로 미화되는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국체호지', 즉 천황의 전쟁 책임을 회피하고 천황제를 존속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⁵⁾

II. 원폭 투하와 천황의 '성단'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인류 사상 최초로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었다. 이에 앞서 7월 26일 연합국이 발표한 포츠담선언 제13항에는 “일본국 정부는 즉시 전일본군대의 무조건항복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이 외의 일본국의 선택은 신속하고도 완전한 괴멸이 있을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이튿날 포츠담선언에 대한 일본 정부의 회답은 ‘묵살(ignore)’로 전달되었고, 바로 그 열흘 후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었다. 이어서 8월 9일 미명부터 소련군이 참전하여 북해도와 만주 방면으로 작전을 개시했으며 오전 11시 2분에는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폭이 투하되었다. 연합국이 경고한 ‘완전한 괴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5) 천황의 '성단' 신화 창출에 관해서는 千本秀樹, 1990, 『天皇制の侵略責任と戦後責任』, 青木書店; 纈纈厚, 2006, 『「聖断」虚構と昭和天皇』, 新日本出版社 등에서 지적되어 왔으나,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를 보완하는 형태로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최악의 사태에서 9일 밤 9시 55분경부터 개최된 어전회의에서는 포츠담선언 수락을 둘러싸고 찬성파와 반대파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이윽고 10일 오전 2시 30분 스즈키 간타로[鈴木貫太郎] 수상은 자신의 의견을 보류하고 천황의 재결을 청했고 천황은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른바 제1차 ‘성단(聖斷)’이다. 당시 어전회의에 참석했던 내각서기관장 사코미즈 히사즈네[迫水久常]는 천황의 발언 요지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방비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본토 결전에 돌입하면 어떻게 되는가. 짐은 심히 걱정이다. 혹은 일본 민족은 모두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무슨 방법으로 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는가. 짐의 임무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일본을 자손들에게 전하는 일이다. …… 이대로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세계 인류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물론 충성스러운 군대의 무장해체와 전쟁 책임자의 처벌 등이 있겠지만 그들은 모두 충성을 다한 자들로 그것을 생각하면 실로 견디기 어려운 바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참기 어려운 일을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한다. 짐은 메이지 천황이 삼국간섭을 받았을 때의 심정을 생각하면 나 자신은 아무래도 좋다. 견디기 어렵고 참기 어려운 것은 알지만 이 전쟁을 그만 둘 결심을 한 것이다.⁶⁾

천황의 ‘성단’ 이후 오전 3시경 각의가 열렸지만 천황 대권의 존속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아나미 고레치카[阿南惟幾] 육군대신의 강경한 주장을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천황의 국가통치 대권을 변경하는 요구를 포함하지 않는다”⁷⁾는 것을 조건으로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정부에 타전하였다. 천황의 통치대권을 유지하는 것, 즉 ‘국체호지’를 조건으로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제임스 번즈(James F. Byrnes) 국무장관이 기초하고 영국,

6) 鈴木貫太郎伝記編纂委員会, 1960, 『鈴木貫太郎伝』, ゆまに書房, 415~416쪽.

7) 外務省編, 1952, 『終戦史録』, 新聞月鑑社, 607쪽.

중국, 소련의 동의를 얻어 작성한 '번즈 회답'이 스위스를 통해서 일본 정부에 공식으로 전달된 것은 8월 12일 18시경이었다.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일본이 항복한 시점에서 천황 및 일본국 정부의 국가통치 권한은 항복 조항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는 연합군최고사령관의 제한하에 두는 것으로 한다. …… 최종적인 일본국 정부의 형태는 포츠담선언에 따라 일본국 국민이 자유롭게 표명하는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한다.⁸⁾

'번즈 회답'은 항복 후 일본에 대한 통치권은 연합군최고사령관의 '제한하'에 둔다는 것을 명시하고 천황의 통치대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패전 후 일본 정부의 형태는 '일본국 국민이 자유롭게 표명하는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 부분의 행간을 통해 볼 때 일본 국민이 천황제 폐지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존속시켜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 또한 외무성은 군 강경파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번즈 회답'에서 '예속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subject to'를 '제한하에 둔다'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군 강경파는 이를 '예속한다'로 해석하고 '국체호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본토결전을 주장하였다. 더구나 육군 내부에서는 소장파 장교들을 중심으로 한 쿠데타 계획의 소문이 나 돌고 있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포츠담선언 수락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8월 14일 오전 10시 50분부터 궁중 방공호에서 재차 어전회의가 소집되었다. 출석자는 천황을 비롯하여 최고전쟁지도자회의의 구성원(수상, 외무대신, 육군대신, 해군대신, 참모총장, 군령부총장 6명), 각료, 추밀원외장, 간사(내각서기관장, 육·해군성 사무국장) 등 23명이었다. 천황의 1차 '성단'이후에도 '국체호지', '천황대권'을 고집하는 사이에 전선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다.

8월 14일 어전회의에서 아나미 육군대신을 비롯하여 우메즈 요시지로[梅

8) 外務省 編, 1952, 앞의 책, 642쪽.

津美次郎] 참모총장, 도요다 소에무[豊田副武] 군령부총장 등은 ‘국체호지’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포츠담선언 수락을 반대하고 본토 결전을 고집하였다.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천황 이외에는 없었다. 이윽고 오전 11시경 천황은 재차 자신의 수락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른바 제2차 ‘성단’이다. 이때 천황의 발언 요지를 당시 국무대신 겸 정보국총재였던 시모무라 히로시[下村宏]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반대 의견은 각각 잘 들었지만 짐의 생각은 이전과 변함이 없다. 짐은 세계정세와 국내 사정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국체 문제에 대하여 이래저래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짐은 이 회담문의 문장을 볼 때 저쪽(미국)은 상당한 호의를 가진 것으로 해석한다. 저쪽의 태도에 일말의 불안이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짐은 그다지 의심하고 싶지 않다. ……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하면 결국 우리나라는 초토화되고 백성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도 나로써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조종(祖宗)의 영(靈)에 대해서도 면목이 없다. ……

지금까지 전쟁터에서 전사하거나 혹은 직장에서 비명에 쓰러진 자와 그 유족을 생각하면 비탄의 심정을 금할 수 없다. …… 이에 즈음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무엇이랴도 하겠다.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안이 좋다면 짐은 언제라도 마이크 앞에 서겠다. …… 국민과 장병을 설득하기 위한 조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테니 정부는 속히 그 기안을 작성하도록 하라.⁹⁾

천황은 발언을 하는 사이에 몇 번이고 흰장갑을 낀 손가락으로 안경과 볼을 닦고 있었다. 당시 외무대신으로 출석한 도고 시게노리[東郷茂徳]의 회고록에 의하면 출석자 전원이 천황의 발언을 들으면서 ‘통곡’했으며 회의를 마치고 궁중을 떠나는 차 안에서도 모두들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¹⁰⁾ 과연 그들이

9) 下村海南, 1985, 『終戦秘史』, 朝日文庫, 140~141쪽.

10) 保阪正康, 1989, 『敗戦前後の日本人』, 朝日文庫, 154쪽.

흘린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천황의 눈물은 그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패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대한 불안감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분명한 것은 자신의 대(代)에서 '만세일계'의 황통 = '국체'가 단절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한 불안이 더 컸을 것이다. 제1차 '성단'과 제2차 '성단'에서의 발언 내용을 보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일본을 자손에게 전해야 한다는 천황의 의사는 일관되고 있다. 천황이 얼마나 '국체호지'에 집착하고 있었는지는 본토 결전이 한창 논의 중이던 7월 25일 측근 기도 고이치[木戸幸一]에게 '3종의 신기(神器)'를 지킬 수 있는지 묻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¹¹⁾ 천황은 7월 26일 포츠담선언이 발표된 직후 측근 기노시다 미치오[木下道雄] 시종차장에 계도 '3종의 신기'를 지켜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토로하고 있다.

당시 짐의 결심은 첫째로 이대로 가면 일본 민족은 멸망해 버린다. 짐은 적자(赤子)를 보호할 수가 없다. 둘째로 국체호지라는 점에서 기도(기도 고이치 내대신)도 같은 의견이지만 적(敵)이 이세만 부근에 상륙하면 이세신궁과 아즈다신궁은 즉시 적의 제압하에 들어가 신기(神器)를 옮길 여유도 없고 그것을 확보할 방도가 없다. 이렇게 되면 국체호지가 어렵기 때문에 내 한 몸을 희생해서라도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¹²⁾

일본의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황실의 조상신 아마테라스 오미가미[天照大神] 이래 황위 계승의 상징적인 보물로 전해 내려온 '3종의 신기'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체호지'의 필수적인 요건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천황에게는 국민의 안위보다도 '국체호지'가 최우선의 지상과제였던 것이다.

한편 당시 정치지도자들이 흘린 눈물을 논픽션 작가 호사카 마사야스[保坂

11) 木戸幸一, 1966, 『木戸幸一日記』, 東京大学出版会, 1220쪽. 기도는 '3종의 신기', 즉 '국체'를 지키기 위해 화평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12) 木下道雄, 1990, 『側近日誌』, 文藝春秋社, 22쪽.

正康]는 이렇게 평가한다. 본토 결전을 주장하던 아나미 육군대신이 통곡을 하고 육군성으로 돌아가 “성단’에 불복하는 자는 내 시신을 밟고 가라”고 훈시한 후 자택에서 자결한 것은 군인으로써의 발상이 파탄되었을 때 책임을 지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지도자 측에 있다. 그들의 눈물에는 자신의 책임이나 앞으로 일본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은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이 전쟁이 패전이라는 결말을 가져온 것에 대한 분통함과 ‘국체’ = 천황제의 앞날을 걱정할 뿐이었다는 것이다.¹³⁾

천황과 정치지도자들이 흘린 눈물은 그야말로 전쟁에 대한 반성이나 국민에 대한 배려는 추후도 발견할 수 없는 ‘무책임의 체계’ 그 자체였다. 설령 미국이 포츠담선언의 시점에서 이미 원폭 투하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항복했더라면 적어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33만 명이나 되는 민간인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패전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직면해서도 그들은 오로지 ‘국체호지’를 지상과제로 삼고 변함없이 천황에 대한 충성을 다하여 고난을 극복하고 재기를 다짐할 것을 국민에게 요구했다. 그것은 8월 15일 정오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천황의 육성으로 발표된 ‘종전(終戰)의 조서(詔書)’와, 이어서 발표한 스즈키 수상의 내각고유(內閣告諭)와 대국민 라디오 방송에서, 그리고 8월 17일 ‘국체호지’의 사명을 안고 성립한 히가시쿠니노미야 나루히코[東久邇宮稔彦] 황족 내각의 ‘일억총참회론’에서도 일관되고 있는 지배층의 합의형성이었다.

13) 保阪正康, 1989, 앞의 책, 157~159쪽.

Ⅲ. 왜곡된 역사인식의 뿌리, '종전의 조서' = '옥음방송'

'종전의 조서' 초안은 8월 10일 제1차 '성단' 이후부터 내각서기관장이 천황의 발언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한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가필 정정을 가하고 있었다.¹⁴⁾ 여기에 14일 제2차 '성단'에서의 천황의 발언이 추가되어 각의에 원안이 제출된 것은 오후 4시경이었다. 결사 항전을 주장하던 군부도 천황의 '성단'은 거스를 수 없었다. 오후 8시 30분경 스키 수상은 조서 원본에 천황의 서명을 받고 퇴출하였다. 오후 11시경에는 모든 공식적인 절차가 완료되었다. 천황이 서명한 원본에 각료 전원이 부서(副書)하고 관보 호외도 준비되었다. 같은 시간에 외무성은 스위스와 스웨덴 주재 공사를 통하여 '미, 영, 중, 소 4국에 대한 8월 14일자 제국정부 통고'가 타전되었다. 포츠담선언 수락이 정식으로 통고된 것은 8월 14일이며, 따라서 대일본제국이 항복한 것은 8월 15일이 아니라 8월 14일이었다.

'종전'의 결정을 장병과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에 관해서는 천황의 라디오 방송으로 결정되었다. 유사 이래 최대의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국민과 장병의 충격과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권위는 천황의 카리스마 이외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천황이 자신의 집무실에 준비된 NHK 마이크 앞에 선 것은 오후 11시 20분경이었다. 첫 번째 녹음은 천황의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두 번째 녹음이 완료된 것은 11시 50분경이었다.

거의 같은 시간에 육군의 강경파 소장 장교들이 쿠데타를 거부하는 근위사단장을 살해한 후 근위사단을 움직여 황거를 점거하고 수상관저와 NHK 등을 습격했다. 그들의 목적은 천황의 옥성이 담긴 녹음판을 탈취하여 라디오 방송을 저지하는 일이었지만 끝내 녹음판을 발견하지 못하고 동부군 사령관에 의해 진압되었다. 주모자 두 명은 15일 오전 10시경 황거 앞에서 자결하였

14) 조서의 작성 과정에 대한 상세는 読売新聞社 編, 2012, 『昭和史の天皇4 玉音放送まで』, 中公文庫, 387~473쪽.

다. 8월 15일 오전 7시 20분경 쿠데타 부대가 철수한 NHK에서는 정오부터 중대 방송이 있다는 뉴스를 되풀이해서 흘려보냈다. 당일 조간신문은 배달되지 않았다. 정부가 14일 밤에 각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조간신문은 15일 정오 천황의 육성을 녹음한 '옥음방송' 이후 배달하도록 지시해 두었기 때문이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천황의 육성을 통해서 방송된 '중전의 조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전문을 번역하고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밑줄을 그었다.

짐은 깊이 세계의 대세와 제국의 현상에 비추어 비상조치로써 시국을 수습하고자 여기에 충성스러운 너희 신민에게 고한다. 짐은 제국 정부로 하여금 미, 영, 중, 소 4개국에 대하여 그 공동선언을 수락할 뜻을 통고했노라.

애초에 제국 신민의 안녕을 꾀하고 만방 공영의 즐거움을 함께 하고자 함은 황조황종(皇祖皇宗)이 물려준 유범(遺範)으로써 짐이 공손하게 받들어 지켜온 바다. 앞서 영미 2개국에 대하여 선전포고한 까닭도 또한 실로 제국의 자존과 동아시아의 안정을 기원했기 때문이지 타국의 주권을 배척하고 영토를 침략하는 것과 같은 것은 원래 짐이 뜻한 바가 아니다. 그런데 교전이 이미 4년을 경과하면서 짐의 육해군 장병이 용감하게 싸우고, 짐의 문무 관료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짐의 일억 백성이 하나같이 봉공하여 제각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천황은 반드시 호전되었다고 말할 수 없으며 세계의 대세 또한 우리에게 불리하다. 뿐만 아니라 적이 새롭게 잔학한 폭탄을 사용하여 몇 차례나 무고한 백성을 살상하여 그 참해가 미치느바 실로 예측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더구나 여전히 교전을 계속할 경우 끝내 우리 민족의 멸망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류의 문명까지도 파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짐은 무엇으로 역조의 적자를 지키고 황조황종의 신령(神靈)에 사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짐이 제국 정부로 하여금 공동선언에 응하게 한 까닭이다.

짐은 제국과 함께 시종일관 동아시아의 해방에 협력해 온 맹방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제국 신민으로써 전쟁터에서 전

사하거나 직장에서 순국하고 비명(非命)에 쓰러진 자 및 그 유족을 생각하면 오장육부가 찢어지는 것과 같은 심정이다. 또한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거나 재해를 입고 가업을 잃은 자들의 후생에 관해서는 짐이 깊이 마음 아파하는 바다. 생각하건대 금후 제국이 겪어야 할 고난은 더욱 험난할 것이다. 너희 신민의 충정(衷情)도 짐은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짐은 시운(時運)이 기우는 바 견디기 어려움을 견디고 참기 어려움을 참으며 만세(萬世)를 위해 태평을 열어가고자 한다.

짐은 여기에 국체를 지키고 충성스러운 너희 신민의 허울 없는 진심을 믿으며 항상 너희 신민과 함께 하노라. 만약 격분하여 함부로 일을 일으키거나 혹은 동포 간에 서로 배척하여 시국을 어지럽히고 이로 인하여 대도(大道)를 그르치고 세계에 신의를 잃는 것과 같은 짓은 짐이 가장 우려하는 바다. 부디 거국일가(舉國一家) 자손 대대로 전하여 확고하게 신국(神國) 불멸을 믿고 임무는 무거우며 길이 멀다는 것을 명심하여 장래의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도의를 두터이 하며 지조를 굳건하게 지켜 맹세코 국제(國體)의 정화(精華)를 발양하고 세계의 진운에 뒤떨어지지 않을 것을 기해야 할 것이다. 너희 신민은 부디 짐의 이러한 뜻을 체현하기 바라노라.

‘중전의 조서’로 불리는 이 ‘옥음방송’의 내용은 일본의 패전을 내외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일본의 전쟁을 ‘자존과 자위’를 위한 전쟁으로 정당화하고 나아가 ‘국체’를 지키려는 의도하에서 용의주도하게 작성된 것이었다.¹⁵⁾ ‘패전’이나 ‘항복’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고 일본이 ‘영미 2개국에 선전 포고한 까닭’은 ‘제국의 자존과 동아시아의 안정을 기원했기 때문이라고 한 것은 일본의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자위전쟁’이라고 강변하는 왜곡된 역사인식의 원형이 되었다.

또한 공동선언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천황이 일본에 불리한데다가 미국이 ‘잔혹한 폭탄’을 사용하여 ‘무고한 백성’을 살상하고 인류 문명까지도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 것은 천황의 ‘성단’으로 원폭에 의한 더 이상의

15) ‘중전의 조서’에 관한 구체적인 언설 분석에 관해서는 小森陽一, 2003, 『天皇の玉音放送』 제2장, 五月書房을 참조.

희생을 막고 국민을 구원한 '인자'한 군주로 정당화하는 새로운 이미지 창출의 토대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조서는 천황을 평화주의자, 반진주의자로서 완전히 수동적인 전쟁의 방관자로 재정의한 최초의 문서가 되었다.¹⁶⁾

그러나 이 조서의 주된 의도는 '자위전쟁'을 호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체호지', 즉 '천황제 계속선언'¹⁷⁾을 국민들에게 재차 확인시키고 변함없는 충성을 요구하는 데 있었다. 조서의 마지막 단락은 바로 그 압권이라고 할 수 있다. '신국 불멸', '국체의 정화를 발양하고'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패전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 공황상태를 최소화하고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면서 '국체'를 지키기 위해 변함없이 충성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천황의 '옥음방송'에 의한 '중전'은 '미화된 항복'¹⁸⁾이자 '왜곡된 항복'이었다. 천황의 '옥음방송' 직후 이어진 스즈키 수상의 내각 고유(告諭)도 '중전의 조서'의 연장선상에서 '국체호지'를 강조하고 있었다.

오늘 황송하게도 대조(大詔)를 받들다. 제국은 대동아전쟁에 종사한 지 실로 4년이 되어 끝내 성단이라는 비상조치로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 성단은 이미 내려졌으니 적자(赤子)들이 나아가야 할 방도는 명백하다.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제국의 앞길은 지금부터 더욱 곤란해지고 나아가 국민의 인고(忍苦)가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제국은 이 인고의 결실로 국가의 운명을 장래에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여기에 많은 눈물을 삼키면서 감히 이 난관을 동포에게 구하고자 한다.

지금 국민이 하나같이 지향해야 할 바는 국체호지에 있다. …… 정부는 국민과 함께 승조필근(昇詔必謹), 각고 분투하여 항상 폐하의 뜻을 받들고 반드시 국위를 떨치고 조상의 유훈에 보답할 것을 기한다. ……¹⁹⁾

16)ハーバート・ビックス 著, 岡部牧夫·川島高峰 訳, 2002, 『昭和天皇』下, 講談社, 148~150쪽.

17) 千本秀樹, 1990, 앞의 책, 134쪽.

18) ジョン・ダワー 著, 三浦陽一 外訳, 2001, 『敗北を抱きしめて』上, 岩波書店, 29쪽.

19) 外務省 編, 1952, 앞의 책, 763~764쪽.

천황의 '신민'을 대표하는 수상 스즈키가 전 국민에게 '종전의 조서'에 나타난 천황의 '성단'을 받들어 '국체호지'를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조서의 내용에서도 내각고유에서도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오로지 '국체호지'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더구나 조서에 '교전 이미 4년을 경과하여'라고 있듯이 그들이 말하는 전쟁은 1941년부터 시작된 영미와의 4년 간 전쟁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전의 1937년 중일전쟁, 1931년 만주사변, 나아가 메이지 시대 이후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가해 사실을 전적으로 외면하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의 뿌리는 바로 이 '종전의 조서'에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스즈키 내각은 8월 15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각의에서 총사직을 결정하고 사표를 제출했지만 패전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후계 내각의 수반이 될 수 있는 인물은 극히 한정되어 있었다. 전쟁과 총력전 체제를 주도해 온 군인이나 관료에게 자격이 있을 리가 없었고 정당 정치기는 이미 무력한 존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체호지'라는 지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황족을 수반으로 하는 내각의 출현이 불가피하였다. 천황의 최측근 기도 내대신이 8월 14일부터 스즈키 내각의 후임으로 타진하고 있던 인물은 황족 히가시쿠니노미야였다. 히가시쿠니노미야는 유서 깊은 황족의 후예로 황후 나가코[良子]의 숙부이자 천황의 장녀 시케코[成子]의 시아버지이기도 하며 히가시쿠니노미야의 아내는 메이지 천황의 9번째 공주였다. 히가시쿠니노미야는 천황과 깊은 인척관계에 있는 황족으로써 '국체호지'라는 역사적 사명을 안고 수상에 임명된 것이다.

한편 히가시쿠니노미야 내각이 출범하기에 앞서 정부는 패전의 책임을 전 국민이 함께 지고 가야 한다는 논리를 되풀이해서 전개하고 있었다. 8월 15일 정오의 '옥음방송'과 '내각고유'에 이어서 스즈키 수상은 오후 7시 라디오 방송에서 거듭 '국체호지'를 강조하고 동시에 "전쟁이 끝내 이러한 형태로 종결을 보기에 이르러 전선에 있는 황군 장병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의 통분은 견디기 어려운 것임에 틀림없지만 전 국민이 하나같이 진심으로 폐하에게 사죄드리는 바입니다"²⁰⁾라고 하여 패전의 책임을 전 국민이 함께 지고 가자는 억지논리를 펼쳤다. 이와 같이 국민 모두가 패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히가시쿠니

노미야 내각에서 ‘일억총참회’론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8월 17일 내각을 출범한 히가시쿠니는 8월 28일 수상관저에서 이루어진 내각기자단과의 기자회견에서 패전의 원인으로 전력의 급속한 괴멸, 원폭의 출현, 소련의 참전 등을 들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다.

사태가 이렇게 다다른 것은 물론 정부의 정책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또한 국민의 도의가 쇠퇴한 것도 원인 중 하나다. 따라서 나는 군, 관, 국민 전체가 철저히 반성하고 참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억총참회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재건의 제일보이며 국내 단결의 제일보라고 믿고 있다.²¹⁾

치모토 히데키[千本秀樹]는 ‘일억총참회’에 대한 지금까지의 비판은 전쟁 책임을 애매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해 왔지만 실은 ‘일억총참회’를 통해서 전쟁 책임의 소재는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한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²²⁾ 다시 말하자면 ‘일억총참회’론은 천황에 대하여 전쟁 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일본 국민이 천황의 절대적 권위에 복종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패전이라는 미증유의 파멸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모든 국민이 함께 지지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여기에 또 한 가지 무리수가 뒤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즉 천황은 처음부터 전쟁에 반대한 평화주의자로서 파국의 상황에서 천황 자신의 ‘성스러운 결단’으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았다는 것이며, 따라서 천황의 ‘성덕’과 ‘성은’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성단’ 신화의 창출이다.

20) 『朝日新聞』, 1945. 8. 17.

21) 『毎日新聞』, 1945. 8. 30.

22) 千本秀樹, 1990, 앞의 책, 146쪽.

IV. '평화주의자' 천황과 '성단' 신화의 허구

'평화주의자' 천황의 신화는 이미 패전 전부터 이른바 '종전 공작' 과정에서 준비되고 있었다. 특히 1945년 6월 오키나와 함락 이후 '국체호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종전' 시나리오와 '평화주의자' 천황의 '성단' 신화는 천황 측근의 '궁중그룹'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조작되고 있었다.²³⁾ 그것이 패전시에는 천황의 성스러운 결단으로 전쟁을 종결했다는 '성단' 신화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종전의 조서'로 이어졌다. '평화주의자' 천황의 '성단' 신화는 오늘날까지도 쇼와 천황에게 존경심을 가지는 일본인들에게는 '신화'가 아닌 '실화'로 기억되고 있다. 그만큼 '성단' 신화는 전후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재생산되어 왔다.²⁴⁾ 그

러나 '평화주의자' 천황의 '성단' 신화의 실체는 천황의 전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패전 전부터 준비되고 있던 주도면밀한 포석에 다를 아니었다.

패전 당시 지배층이 가장 우려한 것은 민심의 동요와 군부의 쿠데타로 인한 내적인 체제 붕괴와 이에 따른 공산혁명이었다. 공산혁명은 곧 '국체'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돌파하여 '종전' 공작을 성공시키고 '국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천황을 군국주의자들의 전쟁과 분리하고 권위를 최대한으로 고조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평화주의자' 천황의 주도에 의해 전쟁을 종결했다는 '성단' 신화가 창출된 것이다.

'성단'과 '평화주의자' 천황의 이미지는 패전 직후 지배층의 발언과 공식문서를 통해 되풀이해서 강조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앞서 '옥음방송' 직후의 내각각유에서도 천황의 '성단'이 강조되었으며 오후 7시 스키 수상 라디오 연설에서도 "폐하는 만민을 구함과 동시에 세계 일류의 행복과 평화에 공헌할 성단을 내려주셨습니다. 폐하의 자애로운 성은이야말로 국체유지 그 자체입니

23) 吉田裕, 1992, 『昭和天皇の終戦史』, 岩波新書, 11쪽.

24) 額綱厚, 2006, 『「聖断」虚構と昭和天皇』, 新日本出版社 참조.

다”²⁵⁾라고 하여 천황의 ‘성단’과 ‘평화’를 결부시켜 정당화하고 있었다.

‘평화주의자’ 천황의 ‘성단’ 신화는 천황의 전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천황은 입헌주의 군주로서의 원칙에 충실했다는 논의와 함께 되풀이해서 재생산되어 왔다. 예를 들면, 천황이 진정 평화주의자라면 또는 천황의 ‘성단’으로 전쟁을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다면 왜 처음부터 전쟁을 막지 못했는가 하는 천황제 비판론자들의 의문에 대해서는 대일본제국헌법 제55조의 국무대신 보필조항을 내세워 천황은 입헌주의적인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에 내각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반론하는 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실제로 천황은 국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해 왔으며 내각도 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 더구나 천황의 군통수권은 입헌주의의 원리조차도 미치지 않는 ‘성역’이었으며 천황 자신도 대원수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다하고 있었다.²⁶⁾

패전 이후 창출된 ‘평화주의자’ 천황의 신화는 천황의 전쟁 책임을 회피하고 ‘국체’, 즉 천황과 천황제를 지키기 위해 창출된 것이었지만 그것은 전후 일본의 역사인식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천황이 ‘평화주의자’였다는 신화는 ‘종전의 조서’에서 “영미 2개국에 대하여 선전포고한 까닭도 또한 실로 제국의 자존과 동아시아의 안정을 기원했기 때문이지 타국의 주권을 배척하고 영토를 침략하는 것과 같은 것은 본래 짐이 뜻한 바가 아니다”라고 변명하고 있듯이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논리와 연결되어 있으며, 천황의 ‘성단’에 의해 전쟁을 멈출 수 있었다는 논리도 그 연장선상에서 구성되고 있었다.

결국 전쟁도 평화도 모두 천황의 의지에 의한 것이며, 일단 ‘성단’이 내려진 이상 천황의 의지에 따라서 전 국민이 힘을 모아 ‘평화국가’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평화’는 어디까지나 천황의 의지와 결부되어 있는 ‘평화’이

25) 『朝日新聞』, 1945. 8. 17.

26) 천황의 비입헌적인 언동과 군사대권의 행사에 관해서는 藤原彰, 1991, 『昭和天皇の15年戦争』, 青木書店; 吉田裕, 1992, 앞의 책; 山田朗, 1994, 『大元帥・昭和天皇』, 新日本出版社.

며, 천황의 주도와 천황제의 온존에 의한 '평화국가' 신생일본의 건설을 표방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동시에 천황의 전쟁 책임 면책과 '국체호지'를 위한 '평화'와 표리일체로 전개되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평화주의자' 천황의 허구와 '성단' 신화는 자애로운 천황의 이미지와 결부되어 전후 일본의 역사인식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일본 낭만파를 대표하는 가메이 쇼이치로[亀井勝一郎]는 천황의 '성단'을 다음과 같은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현재 폐하에 의해 구원받은 몸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폐하의 성단이 없었다면 국내는 전쟁터가 되고 국민의 대부분은 죽었을 것이다. 설령 죽음을 면했다고 하더라도 반죽음의 상태는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근거는 폐하의 성단이다. 나는 그 은혜를 느끼고 있다.²⁷⁾

이와 같이 천황의 '성단'을 천황의 국민에 대한 은혜로 받아들이는 인식은 전후 70년이 지난 지금도 천황제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역사인식에 저류가 되어 흐르고 있다. '평화주의자' 천황의 허구와 '성단' 신화는 오늘날 일본의 역사인식이 갖는 한계의 가장 보이지 않는 깊숙한 부분에 가려진 채로 온존하고 있는 것이다.

27) 亀井勝一郎, 1947, 『陛下に捧ぐる書翰』, 十一祖出版社; 色川大吉, 1978, 『ある昭和史』, 中央文庫, 358쪽에서 재인용.

V. ‘현인신(現人神)’의 ‘인간선언’

1946년 1월 1일의 ‘연두(年頭) 국운 진흥에 관한 조서’는 천황이 스스로 신격을 부정한 ‘인간선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서의 본래 의도는 메이지 천황의 ‘5개조 서문’을 통하여 천황제에도 민주주의와 평화주의적인 전통이 있다는 것을 내외에 강조하여 천황의 전쟁 책임을 회피하는 데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인간선언’은 천황의 전쟁 책임을 회피하고 ‘국체’를 지키기 위해 ‘평화주의자 천황의 이미지를 고도로 미화(날조)한 결정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선언’의 문안은 천황과 천황의 측근,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 수상, 그리고 점령군과의 교감을 배경으로 1945년 12월 23일경부터 극비리에 작성되었다.²⁸⁾

그 전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편의상 알파벳 소문자를 표기하고 밑줄을 그었다.

여기에 신년을 맞이하노라. 되돌아 보건대 메이지 천황이 메이지 초에 국시로써 5개조 서문을 내리셨다. 이른바,

1. 널리 회의를 일으켜 만기 공론으로 결정할 것
2. 상하 합심하여 힘차게 국가의 경륜을 행할 것
3. 문무백관에서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그 뜻을 이루어 인심으로 하
여금 불만이 없게 할 것
4. 구래의 누습을 타파하고 천지의 공도에 의거할 것
5. 널리 지식을 세계에 구하여 크게 황기(皇基)를 일으킬 것

천자의 뜻이 이다지도 공명정대함에 무엇을 더 덧붙이리오. 짐은 여기에 각오를 새롭게 하여 국운을 열어 가고자 하노라. 당연히 이상의 취지에 입각하여 구래의 누습을 떨치고 민의를 창달하며 (a) 관민 일치하

28) ‘인간선언’의 구체적인 경과의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千本秀樹, 1990, 앞의 책, 제7장(178~182쪽)과 小森陽一, 2003, 앞의 책, 제4장 참조.

여 평화주의를 지키면서 교양이 풍부한 문화를 이룩하고 평등한 민생의 향상을 꾀하여 신일본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대도시가 입은 전화(戰禍), 재해자들의 고난, 산업의 정체, 식량 부족, 실업자 증가의 추세 등은 진심으로 마음이 아픈 바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현재의 시련에 직면하여 철두철미하게 (b) 문명을 평화에서 구하는 결의를 굳건히 하고 결속을 다하면 홀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해서도 빛나는 미래를 열어 가리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각별하다. 지금은 실로 이러한 마음을 확충하여 (c) 인류애의 완성을 지향하고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때다. 생각하건대 장기간에 걸친 전쟁이 패배로 끝난 결과 우리 국민은 자칫하면 초조와 실의의 늪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도를 넘는 격렬한 언행의 풍조가 점차 늘어나 (d) 도의심이 심히 쇠퇴하고 이로 인하여 사상혼란의 조짐이 엿보이는 것은 실로 깊이 우려하는 바다.

그러나 짐은 너희 국민과 함께 있으며 항상 이해를 함께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e) 짐과 너희 국민과의 유대관계는 시종일관 상호신뢰와 경애심으로 맺어져 있으며 단순한 신화나 전설에 의해 생긴 것은 아니다. 천황을 현인신이라 하고 또한 일본 국민으로 하여금 타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으로서 나아가 세계를 지배해야 할 운명을 가진다는 가공(架空)한 관념에 의거한 것도 아니다.

짐의 정부는 국민의 시련과 고난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시책과 경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짐은 우리 국민이 난관을 헤치고 당면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또한 산업과 문운 진흥을 위해 주저 없이 전진하기를 바라노라. 우리 국민이 그 공민생활에 있어서 단결하고 상부상조하며 상호 관용하는 기풍을 활발하게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능히 (f) 우리의 지고한 전통에 부끄럽지 않은 진가를 발휘하는 데 이를 것이다.

이와 같이 실로 우리 국민이 (g) 인류의 복지와 향상을 위해 크게 공헌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 해의 계획은 연두에 있다. 짐은 짐이 신뢰하는 국민이 짐과 그 마음을 하나로 하여 스스로 분발하고 스스로 격려하며 이로써 이 대업을 성취하기를 바라노라.

위의 내용을 면밀하게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첫머리에 메이지 천황의 '5개조 서문'을 넣은 것은 금후 일본이 민주주의국가로 나갈 방향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니라 메이지 천황부터 제시되고 있었다는 것을 내외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천황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었다.²⁹⁾ 즉 이 조서는 천황이 스스로 '신격(神格)'을 부정했다는 사실보다도 일본의 천황제에 민주주의적인 전통이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강조하여 천황의 전쟁 책임을 추궁하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 대내적으로는 '국체'가 유지되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재확인시키는 데 그 정치적 역할이 있었던 것이다.³⁰⁾

둘째로 천황제에 민주주의적인 전통이 있다는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평화주의자' 천황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a) "관민 일치하여 평화주의를 지키면서", (b) "철두철미하게 문명을 평화에서 구하는 결의 …… 전 인류를 위해서도 빛나는 미래를 열어 가리라", (c) "인류애의 완성을 지향하고 헌신적 노력을 다해야 할 때", (g) "인류의 복지와 향상을 위해 크게 공헌할 것" 등의 내용을 보면 명백히 천황의 평화주의적인 이미지를 고도로 미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주사변부터 패전까지만 보더라도 2천 만 명이 넘는 동아시아 민중의 죽음을 초래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서 '황군'의 '성전'에 정신적인 지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천황이 인류애 넘치는 평화주의자로 미화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 왜곡이자 날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로 패전 직후의 민심 수습을 위해 천황과 국민의 유대를 강조하고 천황제 계승을 선언하여 변함없이 '국체호지'를 위해 모든 국민이 더욱 분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d) "도의심이 심히 쇠퇴하고 이로 인하여 사상혼란의 조짐이 엿보이는 것은 실로 깊이 우려하는 바"라고 한 것은 정치적인 활동을 재개하면서 천황제 폐지를 주장하는 일본공산당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틀림없

29) 쇼와 천황은 1977년 8월 기자회견에서 '인간선언'의 주된 의도는 '5개조 서문'을 전하는 데 있으며 신격 부정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朝日新聞』, 1977. 8. 24.

30) 千本秀樹, 1990, 앞의 책, 180쪽. 치모토는 '인간선언'을 '종전의 조서'에 이은 '제2차 천황제 계승 선언'으로 규정하고 있다. 千本秀樹, 1990, 같은 책, 137쪽.

다. (f) “우리의 지고한 전통에 부끄럽지 않은 진가를 발휘”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전통’이란 천황과 국민의 유대관계가 (e) “시종일관 상호신뢰와 경애심으로 맺어져”있는 ‘전통’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공산당과 같은 외래사상으로 천황제를 비판하는 무리들을 ‘일본 국민’에서 배제하는 ‘비국민’의 논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넷째로 ‘인간선언’은 ‘중전의 조서’의 연장선상에서 천황제 계속을 선언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두 조서 사이에는 ‘신민’과 ‘국민’이라는 중요한 차이점 존재하고 있다. 즉 ‘황국신민’으로서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강요했던 식민지 피지배 민족을 배제하는 논리가 ‘인간선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천황과의 유대와 통합의 대상이 ‘신민’에서 ‘국민’으로 바뀐 것은 신 일본 건설에 즈음하여 천황을 정점으로 순수한 ‘일본 민족’만의 일치단결을 호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동시에 ‘일본 국민’ 속에서 제일조선인을 비롯한 식민지 피지배 민족을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³¹⁾

결국 ‘인간선언’은 ‘중전의 조서’의 연장선상에서 ‘국체호지’, 즉 ‘천황제 계속’을 내외에 알리고 평화주의자 천황의 ‘성단’을 과장되게 미화하여 천황의 전쟁 책임을 회피하고 ‘국체’를 지키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었다.

31) ‘중전의 조서’와 ‘인간선언’의 차이점에 관해서는 박진우, 2005, 6, 「패전 직후 천황제 존속과 제일조선인」, 『한일민족문제연구』 8, 60~61쪽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Ⅵ. 천황의 ‘도의적 책임’과 ‘국체호지’

패전 직후 빠른 시기에 천황은 전쟁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퇴위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8월 29일 내대신 기도에게 “전쟁책임자를 연합국에 인도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우며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내가 책임을 지고 퇴위라도 해서 수습할 수는 없을까” 하고 상의하고 있다. 기도는 “연합국은 그 정도로 그치지 않을 것이며 퇴위한다는 말이 나돌면 황실의 기초가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공화제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나오는 태도를 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진언하였다.³²⁾

과연 천황은 책임을 질 생각으로 퇴위를 생각했을까. 이후의 언동을 보면 모순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9월 12일 히가시쿠니노미야가 천황에게 전쟁범죄인 처벌을 일본 정부의 손에 맡기도록 연합국에 제의한다는 각의 결정을 보고했을 때 천황은 “전쟁범죄인, 특히 책임자는 모두 이전에는 오로지 충성을 다한 자들인데 이를 천황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것은 견딜 수 없다”³³⁾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히가시노쿠니노미야는 1945년 10월 4일 내각을 총사직한 직후 천황을 만나 전쟁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황적이탈과 천황의 퇴위를 제안하고 있지만 천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³⁴⁾ 4개월 후인 1946년 2월 27일자 『読売報知新聞』은 AP통신을 소개하는 형태로 히가시노쿠니노미야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궁내청 모 고관에 의하면 천황께서는 적당한 시기에 퇴위하실 의향을 비쳤다. 이것은 천황께서 자신의 전쟁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이지 결코 재위 중에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전쟁범죄 용의자로서의 체포에 선수

32) 木戸幸一, 1966, 앞의 책, 下卷, 1230쪽.

33) 木戸幸一, 1966, 위의 책, 1230쪽.

34) 木戸幸一, 1966, 위의 책, 1243쪽.

를 치기 위해서가 아니다. 천황의 퇴위에 찬성하는 자는 천황은 전쟁에 대하여 “도덕적, 정신적인” 책임이 있다고 한다.³⁵⁾

천황에게 자신의 제안을 거절당한 히가시쿠니노미야가 자신의 의견을 언론에 흘린 것이다. 1946년 2월은 도쿄재판을 앞두고 전범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월 13일에는 GHQ가 일본국헌법의 GHQ안을 일본 정부에 수용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천황의 퇴위 문제가 불거져 나왔으니 천황이 격노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때 천황은 자심의 불편한 심기를 측근 기노시다 시중차장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퇴위하는 편이 짐도 편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고경(苦境)을 맞보지 않아도 되겠지만 치치부노미야[秩父宮]는 병에 걸려있고 다카마쓰노미야[高松宮]는 개전론자로 당시 군의 중추에 있던 관계로 섭정에는 적합하지 않다. 미카사노미야[三笠宮]는 젊어서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씀. 히가시쿠니노미야의 이번 경거망동을 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시다.³⁶⁾

그런데 천황이 아직 젊어서 경험이 부족하다고 한 막내 동생 미카사노미야는 같은 날 추밀원 본회의 석상에서 천황이 퇴위하여 일본의 패전 책임을 질 것을 우회적으로 시사하는 이례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아시다 히토시[芦田均] 수상의 일기를 보면 당시의 가리앉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35) 『読売報知新聞』, 1946. 2. 27. 히가시쿠니노미야의 발언은 당시 GHQ의 주도하에서 진행 중에 있던 일본국헌법의 제정을 더욱 서두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언론에 보도되기 전날인 2월 26일에는 연합국의 대일정책 최고결정기관인 극동위원회 제1회 회의가 11개국의 참가로 개최되었다. 가능하면 극동위원회의 간섭을 배제하고 일본의 신헌법을 제정하고 싶은 맥아더의 입장에서 볼 때 히가시쿠니노미야의 발언은 천황제 폐지를 주장하는 국제여론에 영향을 미쳐 점령행정이 구속받을 우려가 있었다. 이 때문에 GHQ에서 작성한 헌법 초안을 일본 정부에 서둘러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다. 吉田裕, 1992, 앞의 책, 121쪽.

36) 木下道雄, 1990, 앞의 책, 165쪽(1946. 3. 6).

지금 정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후일 후환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 불철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극히 불행한 일이라는 의미였다. 듣는 사람들은 모두 깊은 생각에 사로잡힌 얼굴을 하고 있었다. 오늘 폐하의 모습은 과거에 본 적이 없는 창백한, 신경질적인 모습이었다.³⁷⁾

황족뿐만 아니라 평소 천황과 황실에 대한 경애심이 깊은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국체호지’의 입장에서 천황퇴위론이 거론되고 있었다. 1946년 4월 29일, 천황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천장절’ 기념식전에서 도쿄대학 총장 난바라 시게루[南原繁]는 천황의 도덕적, 정신적 책임을 언급하여 사회적 주목을 끌었다.

이번 전쟁에서 폐하에게 정치상, 법률상의 책임이 없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그 성대(聖代)에서 이러한 대전이 발생하고 더구나 조국(肇國) 이래 완전한 패배로 국민을 비참한 상태에 빠트린 점에 관해서는 조종(祖宗)에 대하여, 또한 국민에 대하여 도덕적, 정신적인 책임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것은 아마도 폐하이시리라고 나는 생각한다.³⁸⁾

저명한 시인 미요시 다쓰지[三好達治]도 같은 시기에 “사정이 허락하는 한 속히” 퇴위하지 않으면 “세상의 도의는 무너진다”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날 국민 도의의 퇴폐는 식자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지적하여 개탄하는 바다. ……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최고책임자가 깨끗하게 책임을 지고,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실천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인심을 고무하는 것보다 유력한 일은 없을 것이다.³⁹⁾

37) 芦田均, 1986, 『芦田均日記』 第1卷, 岩波書店, 82쪽.

38) 『朝日新聞』, 1946, 4, 30. 난바라 총장은 1948년 6월 13일 아사히신문과의 담화에 서도 천황의 자발적 퇴위를 주장하였다.

39) 三好達治, 1946, 『陛下は速やかに御退位になるがよろしい』, 『新潮』 1, 3, 4, 6월

물론 당시 퇴위론은 천황을 비판하고 '천황제 타도'를 주장하는 공산당과는 차원이 달랐다. 대부분 천황에 대한 경애심과 황실에 대한 존숭심에서 '국체호지'를 위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오구마 에이지[小熊英二]의 말을 빌리면 내셔널리즘의 부정이 아니라 새로운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모색하여 출현한 것이었다.⁴⁰⁾

1946년의 천황퇴위론은 천황의 전쟁 책임을 면책하고 천황을 상징으로 규정하는 일본국헌법의 제정·공포 과정에서 주류를 이루지 못하고 파묻혀 갔지만 여전히 전쟁 책임 문제와 연동하여 돌출될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특히 1948년 도쿄재판 판결 막바지 단계에서 천황퇴위론이 다시 분출되면서 정점에 달하였다. 5월 16일자 『週間朝日』에 게재된 정담에서 최고재판장관 미부치 다다히코[三淵忠彦]가 “중전 당시 폐하는 왜 자책의 조칙을 내지 않았는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⁴¹⁾”고 하여 우회적으로 천황의 퇴위 문제를 논한 것을 계기로 외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5월 26일 멜버른 방송에 이어 로이터 통신과 INS통신 등은 도쿄발로 “A급 전범이 유죄가 되면 천황은 퇴위한다”, “황통 유지를 위해 황태자에게 양위” 등의 소식을 전하였다.⁴²⁾ 동시에 『뉴욕타임즈』가 사설에서 천황제 폐지론을 주창하고 『타임』과 『뉴스위크』에서도 천황의 퇴위 문제를 다루었다.⁴³⁾ 도쿄재판의 A급 전범 판결 문제와 얽혀 천황 퇴위에 관한 내외의 여론이 압력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내 여론은 반드시 천황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었다. 1948년 8월 15일 『読売新聞』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천황 퇴위 반대’가 68.5%이며, ‘황태자에게 양위’는 18.4%, ‘퇴위하고 천황제 폐지’는 4%에 지나지 않았다.⁴⁴⁾ 더구나 정치지도자들의 경우 압도적 다수가 퇴위 반대였다. 일본 여론조사연

에 연재된 「なつかしい日本」의 한 편. 鶴見俊輔·中川六平 編, 1989, 『天皇百話』 下, ちくま文庫, 323~331쪽에 수록.

40) 小熊英二, 2002, 『民主と愛国』, 新曜社, 122쪽.

41) 『週間朝日』, 1948. 5. 16.

42) 高橋紘, 1987, 『象徴天皇』, 岩波新書, 52쪽; 『朝日新聞』, 1948. 5. 29.

43) 丸山照雄ほか, 1986, 『戦後史の天皇』, 自由国民社, 59쪽.

44) 『読売新聞』, 1948. 8. 15.

구소의 조사에서 중의원의원의 퇴위 찬성은 6.2%, 참의원에서는 21.4%에 불과하였다.⁴⁵⁾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천황 퇴위에 찬성하면 소박하게 천황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잃을 우려가 있었다. 나아가 천황이 퇴위로 전쟁 책임을 지게 되면 정계와 재계, 지방 유력자들에게까지 전쟁 책임 추궁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었다.⁴⁶⁾

그러나 무엇보다도 맥아더가 천황의 퇴위에 반대하였다. 점령정책의 효율성을 우선하는 맥아더가 이를 저지한 셈이다. 1948년 6월 10일 맥아더의 군사 부관 보너 펠러스(Bonner Fellers)의 뒤를 이어 궁내청 어용괘(주로 통역에 종사) 데라사키 히데나리[寺崎秀成]와 접촉을 계속하던 GHQ의 그린 대좌는 궁중의 동향을 탐지하여 맥아더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천황 자신도 퇴위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천황은 황족 중의 장모와 그 밖에, 전쟁 책임을 지고 퇴위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전범이 가혹한 판결을 받으면 개인적인 죄악감이 고조될 것이며, 특히 측근이었던 기도 내대신에 대한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천황이 퇴위한다면 그 시기는 전범 판결의 시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천황의 최종 결정은 금후의 내외 여론, 국내의 정치상황, 공산주의자의 선전 등의 제반 요소에 좌우될 것이다.⁴⁷⁾

6월 12일에는 비슷한 내용의 정보를 주일 영국 대표가 맥아더에게 전했을 때 맥아더는 천황의 퇴위를 인정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뜻을 밝혔다.⁴⁸⁾ 7월에는 미국으로 돌아간 펠러스가 데라사키에게 천황 퇴위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

미국에서는 천황의 퇴위에 관하여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이런 소문

45) 吉田裕, 1995, 『日本人の戦争観』, 岩波書店, 46쪽.

46) 小熊英二, 2002, 앞의 책, 148쪽.

47) 東野真, 1998, 『昭和天皇 二つの独白録』, NHK出版, 171~172쪽.

48) 東野真, 1998, 위의 책, 172쪽. .

은 일본을 싫어하는 무리의 소행이라고 무시해 왔지만 만에 하나 천황이 진심으로 퇴위를 검토하고 있다면 신일본에 대하여 부동의 신뢰를 안고 있는 나로서는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를 필히 폐하에게 전해 주기 바란다. …… 맥아더는 천황의 위신과 개인적 지도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점령정책을 성공시켰다. 천황의 퇴위는 맥아더의 점령정책에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다. …… 내가 보는 한 퇴위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⁴⁹⁾

10월 28일에는 GHQ의 정치고문 윌리엄 시볼드(William Sebald)가 맥아더를 만나 천황 퇴위 문제를 상의했을 때 천황의 퇴위는 “정치적으로 완전한 파탄”을 초래한다는 데 두 사람은 의견일치를 보았다. 당시 맥아더는 시볼드에게 “이번에 천황을 만나면 퇴위와 같은 일은 매우 어리석은 일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충고하지”라고 말했다고 한다.⁵⁰⁾ 천황을 점령정책에 최대의 협력자로 이용하려는 맥아더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단계에서 천황이 퇴위해 버린다면 이제까지 천황의 전쟁 책임 면책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온 보람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맥아더는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수상을 통하여 천황에게 퇴위를 단념할 것을 종용하고 천황은 맥아더의 영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친서’를 맥아더에게 전달하였다.

저는 각하가 지난날 요시다 수상을 통하여 저에게 전하신 간곡하고 후의 넘치는 메시지에 두텁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저는 국민의 복지와 안녕을 꾀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힘을 다하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하는 바입니다.

지금 저는 한층 더 결의를 다져 갖은 고난을 극복하고 일본의 국가재건을 신속하게 이룩하기 위해 국민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⁵¹⁾

49) 東野真, 1998, 앞의 책, 173쪽(펠러스문서, 1948. 7. 8).

50) 高橋紘, 1987, 앞의 책, 54쪽.

51) 東野真, 1998, 앞의 책, 174쪽.

1978년 여름 다쿠쇼쿠대학[拓殖大学] 교수 하타 이쿠히코[秦郁彦]가 ‘맥아더기념관’에서 발견한 이 서한의 일자는 1948년 11월 12일이었다.⁵²⁾ 도쿄재판에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이하 7명의 사형을 포함하여 A급 전범 25명에 대하여 전원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로 이날에 천황은 퇴위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하고 맥아더의 점령정책에 마지막까지 협력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이로써 법정 기소, 증인 환문, 그리고 퇴위의 가능성을 두고 동요하던 천황의 전쟁 책임 문제는 패전부터 3년 여의 세월을 거쳐 한 가닥의 결착을 보게 되었다. 천황 사후 1990년에 공개되어 주목을 모았던 천황의 ‘독백록’은 이러한 과정에서 천황의 전쟁 책임을 면책하기 위해 맥아더, GHQ와 궁중그룹의 막후공작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그러나 천황이 퇴위하지 않기로 결착을 보면서 ‘독백록’은 공개되지 않은 채 오랜 세월 동안 파묻혀 왔던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VII. 맺음말: 천황의 변명, ‘독백록’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쿄재판이 개정되는 1946년 4월 26일 단계에서 천황이 전쟁 책임을 면책 받았다는 확증은 아무것도 없었다. 1945년 9월 11일 제1차 전범 체포 명령 이래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90명에 가까운 전범 용의자들이 체포되었으며, 12월 2일에는 히로다 고키[広田弘毅] 외상을 포함한 59명의 전범 체포령 속에 황족 나시모토노미야 모리마사[梨本宮守正]의 명단이 들어있어 일본 정부와 궁중을 경악케 했다. 당연히 황족의 체포는 전범 추궁의 손길이 천황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한 것이다. 또한 호주 대표단이 제출한 전범 리스트에는 천황 ‘히로히토’의 이름이 7번째에 올라있었다.

이와 같이 긴박한 상황에서 도쿄재판 개정을 앞두고 GHQ의 맥아더 측근

52) 高橋紘, 1987, 앞의 책, 54쪽.

과 일본 정부, 궁중그룹과의 사이에서 천황의 전쟁 책임 면책을 위한 정치공작이 수면하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⁵³⁾ 1991년에 공개된 천황의 ‘독백록’은 이러한 과정에서 맥아더의 군사부관 펠러스와 데라사키의 물밑작업을 배경으로 천황이 도쿄재판에 소환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은밀하게 작성된 것이었다.⁵⁴⁾ 당시 궁내청 어용과로써 천황의 통역에 임하고 있던 데라사키는 독백록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본편은 쇼와 21년(1946) 3월 18일, 20일, 22일, 4월 8일(2회), 합계 5회, 총 8시간에 걸쳐 대동아전쟁의 원인(遠因), 근인(近因), 경과 및 종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성상 폐하의 기억을 마쓰다이라 요시타미[松平慶民] 궁내대신, 기노시다 시종차장, 마쓰다이라 야스마사[松平康昌] 종실료 총재, 이나다 슈이치[稲田周一] 내기부장 및 데라사키 어용과의 5명이 배정한 내용의 기록이다. 폐하는 아무 메모도 가지고 있지 않으셨다. 앞의 3회는 감기로 인하여 집무실에 침대를 가져와 막을 치고 누우신 채로 말씀하시고, 마지막 2회는 하이파 별장에서 휴양 중에 5명이 찾아뵙고 배정한 내용이다.⁵⁵⁾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천황이 감기에도 불구하고 집무실로 침대를 옮겨와 3차례에 걸쳐 ‘대동아전쟁’ 당시 자신의 입장을 술회해야 할 정도로 ‘독백록’의 작성이 급박했다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는 ‘독백록’과 함께 간행된 데라사키의 일기를 보면 그 이유가 명백해진다. 데라사키가 궁내청에 발탁된 것은 1946년 2월 20일이며 이날부터 ‘독백록’이 마무리 되는 4월까지 펠러스의 이름이 데라사키의 일기에 거의 매일같이 등장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맥아더는 이미 도쿄재판이 개정되기 전부터 천황을 전범으로 소환하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천황의 전쟁 책임에 대한 국내외의 엄격한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53) 천황의 전쟁 책임 면책을 위한 정치공작에 관해서는 高橋紘·鈴木邦彦, 1981, 『天皇家の密使たち』, 現代史出版会; 吉田裕, 1992, 앞의 책 등에 상세히 나와있다.

54) 寺崎秀成·M. T, ミラー 編, 1991, 『昭和天皇独白録/寺崎秀成·御用掛日記』, 文芸春秋 참조.

55) 寺崎秀成·M. T, ミラー 編, 1991, 위의 책, 19~20쪽.

맥아더는 하루라도 빨리 천황이 ‘결백’하다는 증거를 입수하고 싶었던 것이며 그것을 맥아더의 군사부관 펠러스가 데라사키에게 계속해서 재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곧 천황의 감기에도 불구하고 ‘독백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⁵⁶⁾

쇼와 천황 사후 1991년에 ‘독백록’이 공개되었을 때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정치적인 배경이 없는 내부의 이야기로 단정했다. 그러나 하타 이쿠히코[秦郁彦]는 ‘독백록’은 도쿄재판에서 천황이 전범으로 기소될 경우에 대비하여 GHQ에 제출하기 위한 ‘변명서’이며 따라서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영어판이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⁵⁷⁾ 이후 1996년 5월 NHK기자 히가시노 마고토[東野真]가 NHK스페셜 ‘비록(秘録) 다카마츠노미야 일기의 쇼와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펠러스의 외동딸 낸시 펠러스(Nancy J. Fellers)를 방문하여 펠러스가 남긴 방대한 문서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독백록’의 영어판을 우연히 발견함으로써 하타의 주장이 입증되었다.⁵⁸⁾

‘독백록’에서 쇼와 천황이 말하는 기본적인 논점은 자신이 일관해서 입헌군주로서 행동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이었다. 당시 미국의 여론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던 문제는 천황에게 전쟁을 그만두게 할 정도의 힘이 있었다면 왜 처음부터 전쟁을 멈추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독백록’은 시종일관 이러한 의문에 대응하여 자신의 입헌주의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41년 9월 도조 내각의 출범에 대하여 ‘헌법을 준수할 것’, ‘평화를 구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명령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개전 당시에는 “만약 내가 주전론을 억제했다면 육해군에서 다년간 훈련받아 정예화된 군을 가지면서 호락호락 미국에 굴복한다고 국내의 여론이 들끓고 쿠데타가 일어났을 것”이며, “내각은 숫자를 내세워 전쟁을 주장했기 때문에 유감이지만 전쟁론을 억제할 힘이 없었다”고 한다. 또한 “나는 입헌군주로서 정부와 통수부의

56) 寺崎秀成·M. T, ミラー 編, 1991, 앞의 책, 201쪽의 ‘주’ 참조.

57) 伊藤隆·児島襄·半藤一利·秦郁彦, 1991, 『『独白録』を徹底研究する』, 『文藝春秋』1月号.

58) 東野真, 1998, 앞의 책.

일치된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하여 어디까지나 자신은 입헌주의의 원칙에 따르려고 노력했으며 전쟁보다도 평화를 추구했다는 것을 반복해서 변명하고 있다.⁵⁹⁾

그러나 천황이 자신의 입헌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백록에는 군주로서의 정치성이 농후하게 드러나고 있다. 천황이 미국과의 전쟁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일단 전쟁이 시작된 후에는 내외의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으며 천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전쟁 종결보다도 “한 차례 어디선가 적을 물리친 후에 신속하게 강화의 기회를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1945년 2월에는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가 ‘상주문’을 올려 공산혁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전쟁을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천황은 고노에를 ‘극단적인 비관론자’라며 비난하고 있다.

역사에서 만약은 금물이지만, 이 단계에서 천황이 고노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면 3월부터 시작된 오키나와 전투의 비극은 물론이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미국이 원폭실험에 성공한 것은 포츠담회담이 진행되고 있던 1945년 7월 하순이었다. 더구나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소련의 참전으로 인하여 한반도가 분단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결국 천황의 지나치게 뒤늦은 결단으로 전쟁의 마지막 반년 간에 수백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의 희생뿐만 아니라 한반도까지 분단되는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그럼에도 ‘독백록’은 전쟁에 대한 반성이나 후회가 아니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천황 자신도 전쟁 책임을 면책하는 정치공작의 중심에 있었다. 다만 연합국의 점령하에 있던 당시로서는 천황이 자신의 의지만으로 전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연합국의 일본 점령에 주도권을 잡고 있던 미국과 점령통치에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받은 맥아더의 역할이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59) 이상의 인용문은 寺崎秀成·M. T, ミラー 編, 1991, 앞의 책, 68쪽, 71쪽, 74쪽, 76쪽을 참조하였다.

참고문헌

저서

- 박진우, 2013, 『천황의 전쟁책임』, 제이앤씨.
- 小森陽一, 2003, 『天皇の玉音放送』, 五月書房.
- 纈纈厚, 2006, 『「聖断」虚構と昭和天皇』, 新日本出版社.
- 高橋紘・鈴木邦彦, 1981, 『天皇家の密使たち』, 現代史出版会.
- 高橋紘, 1987, 『象徴天皇』, 岩波新書.
- 丸山照雄ほか, 1986, 『戦後史の天皇』, 自由国民社.
- 増田都子, 2015, 『昭和天皇は戦争を選んだ!』, 社会批判社.
- 下村海南, 1985, 『終戦秘史』, 朝日文庫.
- 山田朗, 1994, 『大元帥・昭和天皇』, 新日本出版社.
- 小熊英二, 2002, 『民主と愛国』, 新曜社.
- 読売新聞社 編, 2012, 『昭和史の天皇4 玉音放送まで』, 中公文庫.
- 吉田裕, 1992, 『昭和天皇の終戦史』, 岩波新書.
- 吉田裕, 1995, 『日本人の戦争観』, 岩波書店.
- 色川大吉, 1978, 『ある昭和史』, 中央文庫.
- ジョン・ダワー 著, 三浦陽一 外訳, 2001, 『敗北を抱きしめて』上, 岩波書店.
- 千本秀樹, 1990, 『天皇制の侵略責任と戦後責任』, 青木書店.
- 東野真, 1998, 『昭和天皇 二つの独白録』, NHK出版.
- ハーバート・ビックス 著, 岡部牧夫・川島高峰 訳, 2002, 『昭和天皇』上・下, 講談社.
- 阪正康, 1989, 『敗戦前後の日本人』, 朝日文庫.
- 藤原彰, 1991, 『昭和天皇の15年戦争』, 青木書店.

논문

- 박진우, 2004. 5, 「패전 직후의 천황제 존속과 민중」, 『대구사학』, 제75집.
- 박진우, 2005. 6, 「패전 직후 천황제 존속과 재일조선인」, 『한일민족문제연구』 8.
- 伊藤隆・児島襄・半藤一利・秦郁彦, 1991, 「『独白録』を徹底研究する」, 『文藝春秋』 1月号.

자료

木下道雄, 1990, 『側近日誌』, 文藝春秋社.

木戸幸一, 1966, 『木戸幸一日記』, 東京大学出版会.

寺崎秀成·M. T. ミラー 編, 1991, 『昭和天皇独白録/寺崎秀成·御用掛日記』, 文藝春秋.

鈴木貫太郎伝記編纂委員会, 1960, 『鈴木貫太郎伝』, ゆまに書房.

鶴見俊輔·中川六平 編, 1989, 『天皇百話』 下, ちくま文庫.

芦田均, 1986, 『芦田均日記』 第1卷, 岩波書店.

外務省 編, 1952, 『終戦史録』, 新聞月鑑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 초록]

일본의 패전과 천황의 전쟁 책임
- ‘성단’과 평화주의의 허구 -

박진우

패전을 전후하여 일본에서는 쇼와 천황에 관한 두 가지 신화가 창출되었다. 하나는 천황은 원래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주의자였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천황의 성스러운 결단, 즉 성단으로 비극적인 전쟁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신화는 전후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되풀이해서 재생산되어 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일본의 우익교과서, 천황의 실록 공개, 옥음방송의 원반 공개 등을 통하여 쇼와 천황을 미화하는 움직임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천황의 성단 신화와 평화주의자 이미지는 패전 당시 천황제 존폐가 가로놓인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천황제를 존속시키고 천황의 전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창출된 신화에 다름 아니었다. 이 글에서 검토한 내용의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전을 앞두고 천황과 일본 지배층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집착한 것은 ‘국체호지’, 즉 천황제를 유지하는 일이었다. ‘성단’은 ‘국체호지’를 위한 최후의 결단이었던 것이다.

둘째, ‘성단’의 결과 일본의 전쟁을 자존과 자위를 위한 전쟁으로 정당화하고 나아가 국체를 지키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종전의 조서’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왜곡된 역사인식의 뿌리가 되었다.

셋째, 1946년 1월 1일 천황의 ‘인간선언’은 평화주의자 천황의 이미지를 고도로 미화한 결정판이었다. 그것은 또한 천황이 입헌군주로서의 원칙에 충신했다는 논의와 함께 자애로운 천황의 이미지와 결부되어 전후 일본의 역사인

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쇼와 천황의 전쟁 책임에 관해서는 특히 천황이 사망한 1989년 이래 새로운 사료의 발굴, 공개 등을 배경으로 1990년대부터 연구가 심화되어 왔다. 필자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패전 직후 천황제가 전쟁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고 면책되었던 배경에 천황, 천황제를 일본의 점령정책으로 이용하려는 미국, 특히 맥아더 사령관의 역할과 패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황에 대한 존송심을 버리지 않았던 일본 민중의 동향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논한 바 있다. 또한 이제까지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후 일본 사회에서 천황의 전쟁 책임 문제가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지를 일본 정부와 궁내청, 언론의 역할, 그리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분석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패전 직후 천황과 일본 지배층이 천황제 존속을 피하고 천황의 전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성단' 신화와 평화주의자 천황의 이미지가 창출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추적한 이 글은 앞선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쇼와 천황, 천황의 전쟁 책임, 성단, 역사인식, 종전의 조서, 인간선언

[ABSTRACT]

The Defeat of Japan in World War II and the War
Responsibility of the Emperor of Japan

Park Jinwoo

During the post-war period in Japan, there were two myths fabricated regarding the Showa Emperor. One myth posits that the Japanese Emperor was a peace-loving pacifist; the other myth relates that the termination of war was made possible with the Emperor's sacred imperial decision. These two myths have persisted and been reproduced to date. It is notable that the glorification of the Emperor's achievements has been revived at this time through the publication of information about the Emperor during the post-war period.

This study aims to reveal that these widely held myths were introduced so to maintain the Emperor system and save the Emperor himself from being accountable for his actions during the war. The following points will be addressed in this study.

First, the Emperor and the elites prioritized the safeguarding of the Emperor system toward the end of the war. The propaganda of the "imperial decision" served as a last resort in order for them to save their ruling system.

Second, this paper argues that the decision made by the Imperial leader offered the basis of the self-satisfying justification of the war as well as the root cause of the distorted view of history that continues to endure.

Third, the Emperor's Humanity Declaration on January 1, 1946, was the most crystallized form of the propaganda of the Showa leadership by claiming him to be a noble pacifist. As the Emperor's fallible role as a constitutional monarch was associated with the image of the benevolent Emperor, such a belief is found to have had great influence on the historical view of the post-war Japan.

Keywords

Showa Emperor(쇼와 천황), war responsibility of the emperor(천황의 전쟁 책임), imperial decisions(성단), historical recognition(역사인식), the end of the war decree(종전의 조서), humanity declaration(인간선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국과의 어업협정 교섭을 위한 1952년 일본 측 기본방침에 관한 연구

최영호 ■ 영산대학교 일본비즈니스학과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이 글의 과제는 일본 정부가 공개한 공식문서 자료를 통해서 제1차 한일회담 어업협정 교섭에 임하는 일본 측의 기본방침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고 이러한 기본방침이 어떠한 배경하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비판적으로 논증하는 것이다. 한일회담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로서는 일본국회의 의사록과 일본외무성의 회담기록을 들 수 있다. 일본국회의 의사록은 한국의 연구자들에 의해 특히 독도 영유권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이미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¹⁾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본외무성이 공개한 회담기록을 주된 분석 대

※ 투고: 2015년 8월 19일, 심사 완료: 2015년 11월 2일, 게재 확정: 2015년 11월 23일

* 이 글은 한국연구재단 2014년 한국사연구지원사업(중견연구) [2014-S1A5A2A01-063258]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이다. 시모노세키 시립대학 기무라 겐지 [木村健二] 교수의 교시와 자료제공,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 실시한 발표와 초고에 대한 코멘트와 심사의견을 주신 여러 연구자들에게 감사사를 드립니다.

1) 현대승, 2007, 『일본 국회에서의 독도 논의에 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형식, 2009. 11, 「일본의 국회이사록을 통해서 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대응

상으로 하여 일본의 행정부, 특히 외무성과 수산청의 동향을 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제1차 회담 직전에 한국 정부가 선언한 어업전관수역 범위를 한국은 ‘평화선’이라고 부르고 일본은 ‘이승만라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글에서는 ‘평화선’이라고 칭한다.

일본외무성 자료는 한국의 한일회담 자료 전면 공개 이후 ‘일한회담문서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의 공개요청 운동에 따라 이제까지 부분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말한다. 해당 모임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2007년 3월 제1차 공개[開示] 결정문서로부터, 2008년 11월 제6차 공개결정문서, 그리고 그 후에 2011년 12월까지 추가로 공개가 결정되어 추가 공개와 공개방식의 변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 홈페이지에는 제6차 공개결정문서까지의 총 1,916건 자료에 관한 목록이 게재되어 있고 일본 측 공개 문서와 함께 한국 측 공개 문서의 일본어 번역본도 함께 게재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²⁾

한국 정부가 2005년 8월에 총 35,354장에 이르는 한일회담 관련 문서를 모두 공개한 것과는 달리, 일본 정부는 아직도 관련 문서를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 2008년까지 총 59,763장에 달하는 문서 중 1,369건을 공개했을 뿐이며 나머지는 ‘부분 공개’ 또는 ‘공개 불가’를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위의 시민 모임은 계속하여 추가 공개 또는 공개방식의 변경을 일본 정부에 대해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일회담 자료를 공개함에 있어 북한 관련 부분, 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내용에 관한 부분, 민간 문화재의 목록, 당사자 개인 정보가 기재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먹질을 하여 독자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³⁾

(1950~1956)』, 『일본공간』 6권; 최장근, 2014, 『(일본 의회 의사록이 인정하는) ‘다케시마’가 아닌 한국영토 독도』, 제이앤씨.

2) 「日韓會談文書・全面公開を求める会」, <http://www.f8.wx301.smilestart.ne.jp/> (2015년 8월 25일 열람).

3) 淺野豊美, 2010, 「日韓国交正常化問題資料集紹介」, 淺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 編, 『日韓国交正常化問題資料』(基礎資料編) 第1卷, 現代史出版, p. iv.

이러한 ‘부분 공개’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일본 정부가 한일회담 자료를 세상에 내놓게 되자, 한국의 국민대학교 일본연구소는 서둘러 문서작성 시기를 순서로 하여 해당 문서들을 정리하였고 한국에서 총 103권에 달하는 자료집을 출판하기에 이르렀다.⁴⁾ 또한 2009~2012년까지 동북아역사재단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대강의 해제 작업에 돌입하고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동시에 일본에서는 상기 모임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과 일본 양국의 외교자료를 상호 비교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2010년부터 한일 회담에 관한 일본어 자료집 발간에 돌입하였다.⁵⁾ 이러한 형태로 오늘날 한일 회담에 관한 일차적인 공식 자료가 거의 공개되었고 이를 활용한 연구들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외무성의 공개자료를 이용하여 한일 어업교섭에서 일본 측 전략을 연구한 선형 연구로는 2009년 12월 동북아역사재단에 제출한 국민대학교 일본연구소의 연구보고서를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장박진은 ‘전후 일본 공문서에 나타난 독도 관련 내용에 대한 총괄 분석’을 주제로 하여 일본 외무성 공개자료를 이용한 최초의 한일 어업협정 연구를 담당하였다.⁶⁾ 장박진의 연구는 2011년에 연구논문으로 독립 보완되었는데, 여기서 그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전후하여 일본의 대응양상에서 비교적 독도 영유권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고 하는 점을 입증하였다.⁷⁾ 이 연구는 독도 문제에 치중하고 있지만, 어업협정에

4)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동북아역사재단 편, 2010,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목록집』, 선인;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동북아역사재단 편, 2010,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제1권~제103권, 선인.

5) 浅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 編, 2010a, 『日韓国交正常化問題資料』(基礎資料編) 第1卷~第5卷, 現代史出版; 浅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 編, 2011b, 『日韓国交正常化問題資料』(基礎資料編) 第6卷~第11卷, 現代史出版; 浅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 編, 2010b, 『日韓国交正常化問題資料』 第1期 第1卷~第8卷, 現代史出版; 浅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 編, 2011a, 『日韓国交正常化問題資料』 第2期 第1卷~第12卷, 現代史出版; 浅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 編, 2013, 『日韓国交正常化問題資料』 第3期 第1卷~第5卷, 現代史出版.

6)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09, 『2009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지원과제 연구결과보고서』(전후 일본 공문서 조사분석 연구사업).

7) 장박진, 2011. 9, 『대일평화조약 형성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영토 인식과 대응 분

관한 외교 사료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어업협정에 임하는 일본 정부의 전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가 되고 있다. 아울러 장박진은 2015년 청구권협정에 관한 논문에서 일본 측이 나포당한 자국 어선에 대한 청구권을 인식해 오다가 1965년 4월 3일 가조인 막바지 단계에서 이에 대한 주장을 포기했다고 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⁸⁾

다만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일본 측 공식문서 분석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일본보다는 한국 측 연구자의 분석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산업 문제보다는 독도 영유권 문제나 개인청구권 문제에 연구관심이 쏠려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방대한 일차적 자료 가운데서 외무성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선행연구를 참고하는 한편, 선행연구와의 차별을 위하여 시기적으로 제1차 회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집중 분석하고 일본 외무성의 공개 문서와 일본 수산업 관련 자료를 대조하면서 당시 일본 정부의 교섭 방침 내용과 배경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밝히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 측 1차적 외교자료에 의존하지 않은 어업협정 연구는 한일 양국에서 무수히 진행되어 왔다. 일찍이 가토 하루코[加藤晴子]는 1979년과 1980년에 발표한 논문을 통하여 주로 일본의 신문기사와 국회의회의록을 이용하여 현대 한일관계사 연구의 일환으로 어업협정 교섭 과정과 그 배경을 정리하였다.⁹⁾ 그 후 한국과 일본에서 나온 2차적인 자료들을 상호 대조하면서 한일 교섭에서 나타난 양국 입장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후지이 겐지[藤井賢二],¹⁰⁾ 오제연,¹¹⁾ 정인섭¹²⁾, 박진희¹³⁾ 조

석], 『영토해양연구』 창간호, 34~85쪽.

8) 장박진, 2015. 6,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의 형성 과정(1965. 3~6) 분석: 개인청구권 문제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48호, 300~310쪽.

9) 加藤晴子, 1979. 3, 「戦後日韓関係史への一考察(上)」, 『日本女子大学文学部紀要』 28号, 19~41쪽; 加藤晴子, 1980. 3, 「戦後日韓関係史への一考察(下)」, 『日本女子大学文学部紀要』 29号, 9~31쪽.

10) 藤井賢二, 2002. 10, 「李承晩ライン宣布への過程に関する研究」, 『朝鮮学報』 185号, 73~112쪽; 藤井賢二, 2004. 10, 「李承晩ラインと日韓会談: 第一次~第三次会談における日韓の対立を中心に」, 『朝鮮学報』 193号, 111~146쪽.

11) 오제연, 2005. 6, 「평화선과 어업협정」, 『역사문제연구』 14호, 11~46쪽.

윤수,¹⁴⁾ 스투어트 케이(Stuart Kaye)¹⁵⁾ 등으로 이어지는 논문과 저서를 꼽을 수 있다. 나아가 미국 국무성 자료를 이용한 ‘평화선’ 문제에 관한 미국 정부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¹⁶⁾, 대일 점령당국의 자료를 활용하여 대일 점령기에 한일 간 어업협력정책이 좌절되어 가는 과정을 다룬 연구도 나왔다.¹⁷⁾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함께 어업 문제가 함께 다루어졌기 때문에 대체로 일본 측의 대응방식보다는 한국 측이나 점령당국 측의 대응방식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이 쏠려 있었다.

II. ‘평화선’ 선포 이전의 일본 측 대응

한국 정부는 다자간 대일강화회담에서 영유권 문제와 전후배상 문제를 논의하고자 노력했지만, 일본과 영국의 반대, 그리고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51년 7월 한국이 대일강화회담의 서명국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는 것을 정식으로 통보받게 되었다.¹⁸⁾ 그 후 한국은 미국의 중재 아래 재

12) 정인섭, 2006. 12, 「(특집)국제법 발전에 대한 한국 외교의 기여: 1952년 ‘평화선’ 선언과 해양법의 발전」, 『서울국제법연구』 13권 2호, 1~28쪽.

13) 박진희, 2008, 『한일회담: 제1공화국의 대일정책과 한일회담 전개과정』, 선인, 99~158쪽.

14) 조운수, 2008, 「‘평화선’과 한일 어업 협상: 이승만 정권기의 해양질서를 둘러싼 한일간의 마찰」, 『일본연구논총』 28호, 199~223쪽.

15) 스투어트 케이, 2012. 12, 「해양법의 발전에서 평화선이 지니는 의의」, 『영토해양연구』 4권, 36~58쪽.

16) 박진희, 2014. 9, 「미국 국무부 재외공관문서(RG 84)와 한일회담」, 『사학연구』 115호, 440~447쪽.

17) 히구치 도시히로, 2010, 「동지나해·황해 수산자원 질서재편에서 GHQ-SCAP 천연자원국과 한일관계」,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 『의제로 본 한일회담: 외교 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 2』, 선인, 447~470쪽.

18) 1951년 7월 9일 양유찬 주미대사는 존 딜레스(John F. Dulles) 미국무장관 고문을

일한인 법적지위협정을 비롯하여 일본과의 양자 협상을 통한 국교정상화 회담에 힘겹게 임해야만 하였다. 한국 정부는 수립 이후 맥아더라인을 어기고 한국 근해에 몰려와 남획하는 일본의 어로 문제를 일본과의 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기게 되었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을 앞두고 한국 정부는 ① 맥아더라인 확장에 대한 반대, ② 맥아더라인 월경 어선의 나포, ③ 일본 어선의 남획 반대를 위한 국민궐기 대회, ④ 과거 총독부에 의한 트롤 어업 금지구역 설정을 선례로 하는 전관수역 설정에 주력하였다.¹⁹⁾

반면에 일본의 수산업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이전부터 점령 후 국제어장에 대한 ‘복귀’를 준비해 왔다. 일찍이 일본의 수산업계는 1949년 12월 ‘해양어업대책연구회’를 설립하고 각종 조사연구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 연구회는 특히 한반도 주변 어장과 관련하여 1950년 5월 18일 ‘동해와 황해에서 어업조업 구역제한의 완화에 관한 탄원’을 점령당국에 제출하고 맥아더라인을 통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였다.²⁰⁾ 하지만 일본의 어선들이 맥아더라인을 어기고 어로에 임하는 사태에 직면하자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일본어선의 단속에 나섰고 자국의 연안 어장을 지키고자 하는 강경한 대응을 보였다.²¹⁾ 특히 중화민국(타이완)은 1948년 5월부터 시작하여 1949년 8월까지 저인망 어선 29척을 나포했고 그 중에 2척을 격침시키기도 하였다. 중국공산당 정부도 1950년 12월부터 나포를 시작하여 1952년 말까지 총 107척을 나포했으며 그 중에 단 한 척만을 일본에 반환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따라 한국 정부는 1950년 1월에 들어 맥아더라인 위반 어선에 대한 대량 나포를 개시했고, 1952년 말까지 총 130척에 달하는 일본 어선을 나포하고 그 중에 20척만을 일본에 반환하였다.²²⁾

만났을 때, 대일강화회의에 서명국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정식으로 통고 받았다. 박진희, 2008, 앞의 책, 73쪽.

19) 지철근, 1989, 『한일어업분쟁사』, 한국수산신보사, 63~70쪽.

20) 日韓漁業協議會, 1968, 『日韓漁業對策運動史』, 日韓漁業協議會, 13쪽.

21) 신용욱, 2012, 5, 「『평화선』 획정 과정의 논리 전개와 그 성격」, 『史叢』 76권, 101쪽.

22) 水産新聞協會, 1982b, 『大日本水産會百年史(後編)』, 大日本水産會, 81~82쪽.

대일강화조약 체결의 움직임이 분명해지자 일본의 수산업계는 1951년 2월 연구회의 명칭을 협의회로 바꾸어 더욱 더 국제어장 ‘복귀’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왔다. 때마침 딜레스 특사가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에 맞추어 협의회는 2월 6일 ‘어업 문제에 관한 요망서’를 그에게 제출하였다. 요망서는 ① 공해 어업에 관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국제어업 관계의 실현, ② 과거에 일본인들이 개척한 어업 기지와 어장의 최대한 회복, 두 가지를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이 요망서 제1항의 (一)을 통해 협의회는 “연합국군이 설정한 일본어업구역 제한을 조속히 철폐할 것”을 요청하였다.²³⁾

한반도 어장에 대한 ‘복귀’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가 한국과 어업협정 교섭을 앞두고 어떠한 대응 방침을 갖고 있었는지 살펴보자. 일본 정부는 「일한회담 문제별 경위(2)」에서 어업 문제에 관하여 맥아더라인이 점령정책의 일환인 까닭에 점령종결과 함께 효력을 상실할 것이며, 공해상에서 자유조업이 가능해질 것을 전제로 하여, 강화조약 체결 이전이라도 한국 측과 어족자원 보호에 관하여 논의할 용의가 있었다고 하는 기본자세를 밝혔다.²⁴⁾ 또한 만약 한국 측이 맥아더라인의 존속과 같은 주장을 해 오게 되면 일본 측으로서는 가능한 “회담을 끝어서 principle(원칙)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며 강화조약 발효를 기다리는” 등 충분히 연구를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²⁵⁾ 결국 어족 자원의 보호 문제에 있어서 일본 측은 한국에 비해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그 해 9월 8일 일본은 강화조약 체결을 통해 점령종결을 기정사실화 했고, 10월 20일 SCAP(연합국군최고사령부) 외교국장의 중재에 따라 한국 측과 SCAP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예비회담을 가졌다. 윌리엄 시볼드(William Joseph Sebald) 외교국장은 우선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와 국적 문제를 다루기

23) 日韓漁業協議會, 1968, 앞의 책, 12~13쪽.

24) 外務省アジア局北東アジア課, 「日韓会谈問題別経緯(2)(漁業問題)」, 浅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 編, 2010a, 앞의 책, 第1卷, 12쪽.

25) 外務省アジア局北東アジア課, 「日韓会谈問題別経緯(2)(漁業問題)」, 浅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 編, 2010a, 위의 책, 第1卷, 12쪽.

로 하고, 어업협정 문제를 비롯하여 선박반환 문제, 통상항해협정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대표가 결정하여 양자 간 교섭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였다.²⁶⁾ 일본 측은 가능한 한 강화조약 발효 시기 이후까지 어업협정 교섭을 미루고자 했고 한국 측은 서둘러 교섭을 시작하려고 하여, 결과적으로 이듬해 2월에 들어서 실질적인 교섭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 측 ‘평화선’ 선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본 측이 한국과의 교섭에 어떻게 대응하고자 했는지는 외무성 공개 자료 속의 협의회[打合會] 자료를 근거로 하여 추론해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 공식 자료로 1952년 1월 8일 오후 1시부터 외무성에서 개최된 외무성과 수산청 고위실무자 측의 ‘제1회 협의회’ 회의록을 들 수 있다. 외무성은 한 달 후에 열릴 한국과의 어업협정 교섭을 앞두고 수산청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서부터 교섭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 자리에는 후지타 이와오[藤田巖] 수산청장이 사고를 이유로 하여 불참했고 그 대신 수산청 조사연구부장, 수산부 해양과장, 어정부 조정제1과장과 기술관, 생산부 해양 사무관과 기술관이 각각 참석하였다.²⁷⁾ ‘제1회 협의회’ 회의록에는 ‘제2회 협의회’ 이후의 회의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발언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고 협의 결과만을 정리했기 때문에 외무성과 수산청 각 부서의 의견을 정확하게 짚어내기가 어렵다. 이러한 자료적 제한을 무릅쓰고 이 시기 일본 정부가 갖고 있던 어업 문제에 관한 인식을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_ 일본 어업의 곤경에 관한 인식

다분히 수산청 관계자의 견해를 인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회의록은 “일본의 고등어 건착망(巾着網) 업자, 저인망 업자들이 도산하기 일보직전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맥아더라인 철폐로 자유로운 출어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며

26) 박진희, 2008, 앞의 책, 73쪽.

27) 「日韓漁業協定に関する第一回打合會」(1952年 1月 8日), 淺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 編, 2010b, 앞의 책, 第1期 1945年~1953年 第7卷 漁業問題, 1쪽.

협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업자들의 대부분은 예전에 한반도에 기지를 가지고 있었고 어획물을 일본 본토로 운반하여 판매했던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에 진출했던 일본인 어민에 대해 당시 한국 측이 오로지 '제국 침략의 앞잡이'라고 보고 있었고 일본의 어업 현실에 대해서도 1949년이 되면 이미 일본 어업이 전쟁 전의 수준을 회복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일본 정부는 과거 한반도 진출 어민을 '가엾은 귀환자'로 보고 있었고 일본 어업의 현실에 대해서도 비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당국자 견해는 서로 궤를 달리하고 있었다.

한반도 주변 해역은 1900년대부터 1910년대에 걸쳐 일본인 어민에 의해 개발되어 일본 어업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어장이 되었다. 쓰시마 해협의 고등어 채낚이 어업을 비롯하여, 전갱이와 고등어의 그물 어업, 트롤, 저인망 어업 등을 중심으로 하여 1920년을 전후하여 연간 2,000척 가까운 일본 어선들이 한반도 연안 어장에서 조업했으며 여기에는 4만 명에 달하는 일본인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었다. 어획물은 당시 130억 엔에 달했고 수산물 공급 지역도 교토[京都]·오사카[大阪]·고베[神戸] 지구를 비롯하여 나고야[名古屋] 지구 서쪽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하고 있었다. 따라서 서일본 지역의 어업 업자에게 있어서 한반도 어장은 그들 사업 성공의 기초가 되고 있었다.²⁸⁾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39년 시점에, 한반도에 기지를 둔 저인망 선박으로 총 114척이 일본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였다. 한반도 해역에서 일본인 저인망 어업이 성행한 것은 선박 기술의 우위, 어장의 광대함, 풍부한 어족 자원이 있었기 때문이다.²⁹⁾ 여기에 조선총독부에 의한 규제도 그다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인 저인망 업자에게 있어서 한반도 주변 해역은 황금어장이 되었다.³⁰⁾ 이들이 패전 후 일본으로 귀환하자 곧바로 한반도 연안 어장에서 어업

28) 水産新聞協會, 1982b, 앞의 책, 138쪽.

29) 岡田仁弘, 1949. 6, 「日韓漁業の交流について」, 『朝水』 14号, 15~16쪽.

30) 和田長三, 1938, 『漁のしるべ』, 協同印刷社, 245~252쪽; 한국경제개발연구소, 1966, 『한국 수산업의 현황(상권)』, 藝林社, 450~451쪽.

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허가를 요청하였다.³¹⁾ 그러나 점령당국의 어족 자원보호 정책과 상충하는 결과를 낳아 일본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감선(減船) 정책을 취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로 인한 어업 종사자의 대량 해고를 방지해야 하였다.³²⁾

2차 대전을 통한 일본 어업 노동력의 손실도 막대했지만, 패전에 따른 거대한 어장의 손실과 점령당국에 의한 조업 해역의 규제에 인하여 일본 어민들로서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패전 후 이들의 피해는 어획량의 격감 문제와 함께 다른 산업으로부터 어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노동력 과잉 문제, 어업 종사자들의 일본 귀환에 따른 일부 어업에 대한 집중적인 조업 문제 등으로 인하여 더욱 심각해져 갔다. 일본 패전 직후 일본의 어업을 연안 조업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적용된 맥아더라인은 이러한 일본의 열악한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점차 일본 열도 동남부 해역으로 조업금지구역을 해제해 갔다.³³⁾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해와 쓰시마 서쪽 해역의 어장에서 점령기간 내내 조업이 불가능해진 것은 일본 열도 서쪽의 어장을 무대로 하여 어로활동을 해 온 일본 어민들에게 불만을 안겼으며, 따라서 이들에게 점령 종결 후의 맥아더라인 철폐만을 학수고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일본 서해안 조업 어선들이 패전 후에 곤궁에 빠진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다이세이[大成]수산주식회사의 경우는 점령기에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일본 서역 근해와 홋카이도 어장을 개발함으로써 회사 규모

31) 일본으로 귀환한 일본인 어업관계자들은 1946년 7월 「조수회(朝水會)」를 결성하고 시모노세키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였다. 1947년 6월 시점에서 이 단체에는 1,136명의 개인 회원이 가입하고 있었고 이것은 당시 일본인 귀환 수산업자의 5분의 1 정도였다고 한다. 藤井賢二, 2007, 「朝鮮引揚者と韓国: 朝水會の活動を中心に」, 崔吉城·原田環, 『植民地の朝鮮と台湾: 歴史·文化人類学的研究』, 第一書房, 4~12쪽. 일본 점령군 자료 중 일부를 찾아볼 수 있는 기관지 『朝水』를 통하여 이들이 동해 서측 어장에서 어로활동을 금지 당하자 저인망 어업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자신들의 '특별 사정'을 호소하고 점령당국과 일본 정부에 대해 선처를 요구했음을 알 수 있다. 『朝水』 13号, 1949년 4·5月, 3쪽.

32) 水産新聞協會, 1982a, 『大日本水産會百年史(前編)』, 大日本水産會, 492쪽.

33) 水産新聞協會, 1982b, 앞의 책, 6~17쪽.

를 성장시키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한반도 어업과 가공수산업을 통제하는 기구였던 조선수산개발주식회사는 해방 이후 미군정에 접수되었지만 여기에 종사하던 일본인 사원들은 일본으로 귀환하여 1946년 10월 자본금 300만 엔으로 다이세이를 설립하였다. 일본 정부는 설립 경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회사에 일본 대륙 서쪽 근해 어장에 5척의 저인망 어업을 우선적으로 허가하고 3,500만 엔 정도의 용자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다이세이는 점령기 사이에 저인망뿐 아니라 건착망, 정치망 등의 어업은 물론 운수업으로까지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점령 말기에는 자본금을 1,000만 엔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³⁴⁾

2. 한국의 낙후된 어로 인프라에 관한 인식

‘제1회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비교적 큰 자본이 소요되는 건착망, 선망, 저인망 어업에 대해서는 전쟁 전부터 일본인 회사가 조선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한국의 경우 해방된 이후에도 증유, 어선, 어업자재 등에서 퇴보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일본 외무성과 수산청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 측은 자국 어업의 발전을 위해 일본과 서둘러 어업협정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으며 협정을 통해서 일본 어업을 ‘억제’하려고 할 것으로 파악하였다.³⁵⁾ 한국의 열악한 어업 실태에 관한 인식에서는 비록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희미하게나마 상호 접근이 가능한 공통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인이 보유한 선박은 한국인의 것에 비해 규모가 크고 성능이 뛰어났

34) 大成水産株式会社의 사장, 전무, 상무는 모두 일제강점기에 朝鮮水産開發의 임원이었고 일본패전 후 일본으로 귀환한 사람들이었다. 水産新聞協會, 1982b, 앞의 책, 125쪽.

35) 「日韓漁業交渉第一回打合會」(1952年 1月 8日), 淺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編, 2010b, 앞의 책, 第1期 1945年~1953年 第7卷 漁業問題, 1쪽. 1953년 12월에 창설된 한국의 해양경비대는 낡은 경비정 6척을 가지고 해양 순찰을 실시하고 있었다. 「해양경찰 60년, 든든한 ‘바다 지킴이’」, KTV10, 2013년 9월 24일 방영.

다. 해방 직후 남한의 어선 수를 보면, 일본인이 남기고 간 선박의 영향으로 일제강점기에 비하여 나아진 편이기는 했어도 1946년 총 45,970척으로 파악되었고 이 가운데 동력선은 2,003척(18,622톤)에 불과하였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의 조선업은 대일의존도가 심하여 어선을 일본에서 많이 수입해 왔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는 새로운 어선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 상공부 수산국의 자료에 따르면, 1951년 10월 말 당시 남한 전체에 조선공장이 총 115개소 있었는데, 대부분 영세업자들이었고 종업원 50명 이상의 공장은 6개에 불과했고 100명 이상의 공장은 단 한 개뿐이었다. 게다가 조선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박재료의 부족, 제조기술의 취약함, 자금난, 한국전쟁 등으로 한국의 조선업은 낙후 상태를 면치 못하였다.³⁶⁾

특히 일본 정부는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한국의 어업발전이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미국의 원조 아래 한국이 1949년부터 제1차 경제부흥 5개년 계획을 추진했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이 계획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었고 1952년부터 다시 5개년 계획을 추진해야 하였다. 1952년 한국의 어선보유 상황은 동력선이 3,361척(32,033톤)에 불과했고 비효율적인 무동력 어선이 37,882척(80,105톤)에 달했다. 같은 해 일본의 어선 수를 보면 동력선만 해도 129,048척(860,645톤)으로 한국 어선의 38배에 달하는 규모로서 양국 간에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같은 시기 일본의 무동력 어선조차도 280,721척으로 한국에 비해 7.5배 많았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한국의 열악한 어선 상황을 인식하고 “일본 어선의 세력은 한국 어민들을 위협하기에 충분했는지 모른다”고 인정하였다.³⁷⁾ 어선 이외에도 한국에는 항해 기기도 충분하지 않았고 그물도 면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일본 어선은 각종 항해 기기나 어군탐지기 등을 사용하고 있었고 합성섬유 재질에 의한 어망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만큼,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사이

36) 지철근, 1998, 『시련기의 수산업사』, 한국수산신보사, 51~73쪽.

37) 日韓漁業協議會, 1968, 앞의 책, 30~31쪽.

에 “어업 능력에 차이가 크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다.³⁸⁾

한국에 비하면 일본은 이미 점령 시기부터 대폭적인 어선 건조 실적을 보였다. 전후부터 일찍이 일본 국민의 영양실조 해결을 위하여 점령당국에 대해 철강선을 중심으로 하여 건조 허가를 요청했으며 점령당국도 이를 적극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1946년에 5월, 8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철강선 776척(92,995톤)과 목선 19척(2,177톤)을 건조하도록 하는 허가를 받았고, 1946년 말까지 철강선 590척과 목선 709척(약 12만 톤)을 새로 준공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2년 만에 새로운 어선이 매월 54척씩 준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본의 전반적인 경제가 허탈 상태에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점령기 일본의 어업 재건이 얼마나 급속도로 추진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1946년 5월의 제1차 허가를 받은 선박 가운데 73%가 서일본 해역의 저인망 어업을 위한 어선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어선들이 한국의 어장을 호시탐탐 노리게 되었다는 점이다.³⁹⁾

1947년에 들어서 일본에서는 더욱 더 어선 건조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급기야 미리 선박의 건조에 착수하고 나중에 허가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급기야 점령당국은 이제까지 허가를 받은 어선으로도 일본 근해 조업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1947년 6월에 100톤 미만의 소형 목선 이외에는 더 이상 어선 건조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점령정책의 변화는 제4차 허가를 예상하고 이미 건조를 시작한 어업 관계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특히 배 한 척을 소유하고자 하여 갖은 용자금을 투입한 일본인 귀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까지 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합동으로 점령당국에 대해 어선 건조에 대한 추가 허가를 요청하는 한편, ‘자숙안’을 제출하고 노후 선박에 대한 대체 건조에 그치겠다고 하는 의향을 표명함으로써 그 해 11월 제4차 허가를 받아내기에 이르렀다.⁴⁰⁾ 이리하여

38) 日韓漁業協議會, 1968, 앞의 책, 31쪽.

39) 水産新聞協會, 1982b, 앞의 책, 13~15쪽.

40) 水産新聞協會, 1982b, 위의 책, 15~17쪽.

1948년 2월 말에는 어선 건조 허가 척수가 총 947척(78,000톤)에 달하여 전쟁 전과 같은 규모를 회복했고, 그 해 연말에는 총 1,146척(95,000톤)으로 급증하여 전전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성장하였다.⁴¹⁾

이러한 어선 증강은 전후 참치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주된 원인이 되었지만, 서일본 해역에서 어로 활동이 증가한 것도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 어획량에서 볼 때 점령 시기 일본의 어획량은 해마다 증가했으며 1950년에는 337만 톤으로 전쟁 전 수준을 회복했고, 1952년 일본의 어획량은 사상 최대인 482만 톤을 기록하였다. 이 가운데 한반도 근해에서 남획한 것에 힘입어 한반도 연안 수역에서 연간 약 23만 톤을 어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것은 2,600만 달러 상당의 어획량으로 추산되는 것이었다. 해방 이후 한국의 총 어획량이 연간 30만 톤 내외였던 것에 비추어보면, 한국과 일본의 어로 규모의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⁴²⁾

3_ 맥아더라인의 한시적 성격에 관한 인식

1952년 1월 8일의 '제1차 협의회'에서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점령 종결과 함께 맥아더라인도 종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만약 맥아더라인을 침범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 처벌을 일본 국내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맥아더라인의 한시적 성격과 국내법적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수산청과 외무성이 모두 이를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⁴³⁾ 1945년 9월 2일 연합국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서명한 항복문서에는 모든 일본 어선에 대한 통행금지 조치가 규정되어 있었다.⁴⁴⁾ 따라서 원칙상 항복문서에 서명한 이상 점령 통치하에서

41) 水産新聞協會, 1982b, 앞의 책, 20~21쪽.

42) 박진희, 2008, 앞의 책, 132~133쪽.

43) 「日韓漁業交渉第一回打合せ」(1952年 1月 8日), 浅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編, 2010b, 앞의 책, 第1期 1945年~1953年 第7卷 漁業問題, 1쪽.

44) データベース『世界と日本』, 日本政治・国際関係データベース(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田中明彦研究室), [文書名] 降伏文書,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docs/19450902_O1J.html, 「一切ノ船舶, 航

일본의 모든 어선은 기본적으로 어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군사적인 점령을 위하여 취해진 조치이기는 하지만 일본 어민의 생활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조치가 되었다. 이와 같은 가혹한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점령당국은 9월 14일 일본 연안 12해리 이내에서 어로활동을 하도록 허가하기 시작했으며, 다만 이때에도 항해하고자 하는 일본 선박은 일일이 미국 극동해군이 설치한 SCAJap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패전 직후 일본에 대한 점령 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 어민의 어로활동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점령당국은 맥아더라인을 설정하게 되었다.

1945년 9월 27일에 처음 설정된 맥아더라인은 번잡한 수속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이날 점령당국의 각서(SCAPIN) 제80호에 따라 조업 범위 약 63만 제곱 해리 이내에서는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고, 다만 100톤 이상의 철강선과 어류 운반선만은 SCAJap에서 번호를 받아 이것을 배에 부착해야 하였다. 이때 허가받은 출어구역은 홋카이도 노삿푸[納紗布]를 기점으로 하여 최북단 45도 30분, 남쪽은 오키나와[沖繩] 남쪽 북위 26도 선, 동쪽은 113도에 이르는 범위로 제한되었다. 모두 일본 본토의 연안과 홋카이도 연안 3해리 이내의 수역에 국한된 것으로 톤수에 관계없이 모든 어선에 적용되었다.⁴⁵⁾ 당초에 점령당국은 엄중한 해양 단속을 통해 맥아더라인을 준수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본 정부의 요청과 일본 국내 사정을 감안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규제 해역을 완화시켜 갔으며 점차 해양 단속도 완화시켜 갔다. 특히 유류 연료나 출어에 대한 허가, 어선 건조에 대한 점령당국의 허가는 비교적 관대하게 이루어졌다.⁴⁶⁾

일반적으로 맥아더라인은 다음과 같은 방침 아래에서 운용되었다.⁴⁷⁾ A. 목

空機竝ニ軍用及非軍用財産ヲ保存シ之ガ毀損ヲ防止スルコト及聯合國最高司令官又ハ其ノ指示ニ基キ日本国政府ノ諸機關ノ課スベキ一切ノ要求ニ応ズルコトヲ命ズ」.

45) 水産新聞協會, 1982b, 앞의 책, 9~10쪽.

46) 水産新聞協會, 1982b, 위의 책, 7~8쪽.

47) 水産新聞協會, 1982b, 위의 책, 8~9쪽.

적을 국내 소비 수요에 대응한다고 한정하고, 이를 위해서 ① 일본이 보유한 어선 어구와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할 것, ② 필요한 경우 어선에 충분한 연료 공급에 필요한 수단을 강구할 것, ③ 일본 정부에 대해 어업과 수산 처리가공업 관련 여러 시설과 생산물 배급 시설의 재건을 요구할 것, ④ 점령 목적을 고려하는 가운데 해산 식량을 최대한 배려하며 필요에 따라 이에 대한 원조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B. 연안 어업과 양식업으로 최소한의 국내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허가 범위 내에서 심해 어업 등을 위해 수역으로 이용하게 할 것을 채용하였다. 다만 이때에도 ① 미국과 미국의 위임통치 지역에 가까운 장소에서는 심해 어업을 허가하지 말 것, ② 연합국 관리하에 있는 지역의 근처 해역에서는 관계국의 사전 허가가 없을 때에는 허가하지 말 것, ③ 이상의 금지 사항은 이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유지할 것 등을 채택하였다. 또한 C. 예전에 일본인에 의해 개발된 태평양 어업구역에서 어업자원의 조사와 자료를 받을 것. D. 일본 어업은 미국을 체약국으로 하는 자원 보호에 관련되는 협약 조항들, 그리고 연안 어업에 관하여 미국 기타 정부가 발표한 특정 어업관리 정책 또는 법규를 엄수할 것. E. 일본의 국내 소비에 맞지 않으며 미국 국민에게 동물성 단백질과 기름을 공급하는 경우, 그리고 필요한 수입을 위하여 각국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어업 생산품은 수출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 차원의 점령규칙 설정에 있어서 최대한의 해산 식량을 획득하도록 배려할 것 등을 채택하였다.

일본 정부는 점령이 종결되면 자연스럽게 맥아더라인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런데 한국과의 예비회담을 거치고 나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점령 종결 이후에도 맥아더라인이 존속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지극히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였다. ‘제1차 협의회’ 자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과거 몇 년 동안 한국 측에게 맥아더라인이 어업에 종사하는 해역을 분할하는 것인 양 ‘오해’를 제공했다”고 본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일본 정부는 한국의 어업능력이 일본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을 이유로 하여 ‘공해 어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허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⁴⁸⁾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맥아더라인을 넘은 어선에 대해 나포 조치를 강행하는 데 대해, 이것은 일본 국내법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를 일방적으로 한국이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조치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사례라고 지적하였다. 당시 일본 어선들이 실제로 맥아더라인을 넘어 북한 어장에서도 어로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식의 처리방식이라면 북한에서 나포하고 처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며 일본 측은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1952년 1월 8일 “현재까지 일본 어선 가운데 나포 구류중인 것 8척, 좌초 5척, 어선 탈취 22척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비록 한국의 영해(3해리) 안에 들어갔다고 해도 몰수당하는 일이 없이 일본 측에 곧바로 인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장하였다.⁴⁹⁾ 이것은 수산청 관계자에 의한 문제제기였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맥아더라인을 어기고 한반도 근해에 들어와 ‘불법’ 조업하는 일본 어선 문제로 한국의 어민들은 자국 어장의 보호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일본 정부와 점령당국의 허술한 통제로 인하여 국내법적인 처리방식으로는 한반도 연안 어장을 보호할 수 없다고 하며 항의하고 나섰다. 예를 들어 1949년 6월부터 남해안 일대의 어민대표들이 부산에 모여 맥아더라인 침범을 규탄하는 어민결기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이를 받아들여 한국 국회는 대일 점령당국의 ‘목인’ 조치에 항의하는 결의문을 일본점령당국, 미국무성, 미국의회 상원위원회 등에 발송했고, 한국 정부는 주일대표부에 훈령을 내보내고 맥아더라인 완화에 따른 어장의 확장을 적극 저지하도록 지시하였다.⁵⁰⁾ 또한 한국 정부는 해군에 대해 맥아더라인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을 나포하도록 명령하고 저인망 어선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나포하기 시작했으며, 1951년 9월에는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第二京丸]이 일본 어선의 맥아더라인 월경을 감시하기는커녕 오히

48) 日韓漁業協議會, 1968, 앞의 책, 31쪽.

49) 「日韓漁業交渉第一回打合せ」(1952年 1月 8日), 淺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編, 2010b, 앞의 책, 第1期 1945年~1953年 第7卷 漁業問題, 1쪽.

50) 지철근, 1989, 앞의 책, 63~64쪽.

려 자국어선을 묵인하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 선박까지 나포하기에 이르렀다.⁵¹⁾ 한국 정부의 입장은 한국에 나포된 어선은 극히 일부뿐이며 일본어선의 맥아더라인 침범은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적인 처리방식이 어선 통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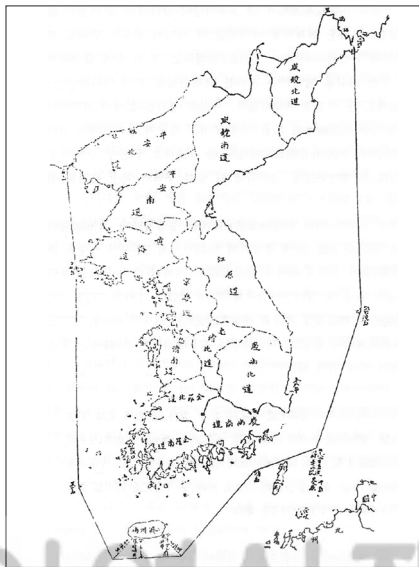
4_ 어족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제1차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 당국자는 “한국 측이 어족 자원의 보존을 위한 방책으로 한국과 일본 쌍방의 어선 척수를 제한함으로써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일본 측의 견해로서는 어족 보호는 중국공산당 정권이나 북한이 함께 참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어족 보존을 위한 조치는 산란 해역을 고려하여 수역을 제한해 가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고등어나 조기와 같은 해저 서식 어류에 대해 어종별로 협정을 맺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당시 고등어 등은 어종이 번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원이 고갈될 우려는 없다고 단언하였다.⁵²⁾ 즉 어족보호는 관련국 모두의 협의와 함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최소한의 어장 출입 통제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일본 측이 협의 대상국으로 중국과 북한을 언급한 것은 한국과의 우선적인 교섭을 회피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다만 일본 측이 앞으로의 교섭을 통하여 한국 측이 (어장을 제한하지 않고) 어선 척수를 제한함으로써 어족 자원을 보호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한 것은 일본 측이 한국과의 어업협정 교섭에 대해 매우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51) 지철근, 1998, 앞의 책, 155~158. 이 책에 따르면 맥아더라인 침범 어선에 대한 나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부터 시작되어 1947년 2월 4일에 저인망 어선 幸漁丸을 처음 나포했으며, 1947년에 9척, 1948년에 15척, 1949년에 14척, 1950년 13척, 1951년에 46척에 달했다고 한다.

52) 「日韓漁業交渉第一回打合せ」(1952年 1月 8日), 浅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編, 2010b, 앞의 책, 第1期 1945年~1953年 第7卷 漁業問題, 1쪽.

이러한 일본 측의 예상과는 달리 한국 정부에서는 상공부 수산국을 중심으로 일본과의 어업 교섭을 앞두고 일본 어선의 어장을 대폭 규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적용했던 트롤 어업 금지조치를 참고하여 일본 어선에 대한 관할수역을 구상하고 있었다. 일찍이 조선총독부는 트롤 어선의 폐해를 인정하고 1911년 6월에 트롤 어업 금지지역을 설정하는 어업단속규칙을 공포하고 이듬해 4월부터 이를 시행해 왔다. 이어 조선총독부는 1912년 12월에 어업단속규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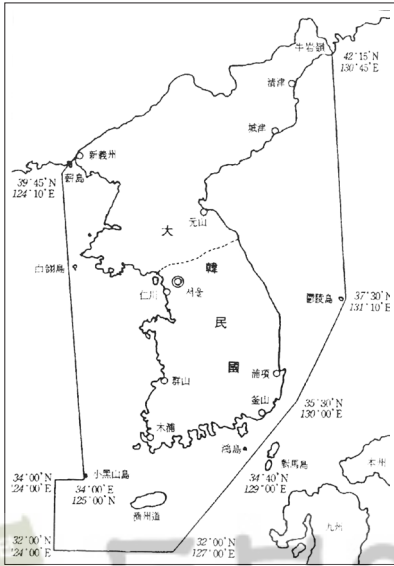


〈그림 1〉 1912년 12월 확대된 트롤 어업 금지지역 (지철근, 1998, 『시련기의 수산업사』, 한국수산신보사, 122쪽)

개정하고 금지지역을 확대하였다. 이때 트롤 어업 금지지역으로 설정된 범위는 〈그림 1〉과 같다. 두만강 입구 중앙으로부터 경상북도 울릉도 동쪽 끝, 동경 130도 북위 35도 해상. 경상북도 거제군 흥도 남쪽 끝, 전라남도 제주도 내 어곶 동남 30해리 해상. 제주도 모슬포 남서 30해리 해상. 전라남도 흑산도 서쪽 끝. 황해도 백령도 서쪽 끝. 그리고 평안북도 신도 서쪽 끝을 지나 압록강 입구 중앙에 이르는 해역이었다.⁵³⁾ 다만 조선총독부의 트롤 어업 금지지역은 그 후에도 수차례 소폭적으로 변경되다가 1944년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 식량증산의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금지지역을 대폭적으로 감소했으며 제주도 연안을 금지지역에서 제외시키기도 하였다.⁵⁴⁾

53) 지철근, 1998, 앞의 책, 121쪽.

54) 지철근, 1998, 위의 책, 124쪽.



〈그림 2〉 1951년 한국 정부의 어업관할수역안
(지철근, 1998, 『시련기의 수산업사』, 한국수산
신보사, 126쪽)

1950년부터 한국에서 어업관할 수역(안) 작성에 관여한 지철근은 그의 책에서 획정안 마련을 위해 서해안 어장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막상 관할수역에 대한 획선작업을 시작하고 보니 동해안은 과거 트롤 어업 금지구역 등 참고할 만한 충분한 자료와 어장도가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으나 서해안에 대해서는 정밀한 어장도가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등장하였다. 당시만 해도 서해안은 조기나 도미와 같은 비교적 고급 어종이 많이 서식하는 황금어장이었는데도 어장도가 국내에 없었다. 그런데 1950년 6월 미국의 원조자금을 어선과 자

재구매를 위해 도쿄에 머무르고 있을 때 홋카이도대학 수산학부 1년 후배로 일제강점기 조선의 수산업계를 주름잡았던 다이요[大洋] 어업⁵⁵⁾의 트롤 부장 나가이 지사쿠[永井次作]를 만나 지나가는 말로 서해안 어장도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더니 마침 갖고 있다면서 며칠 후 선뜻 건네주는 것이 아닌가.”⁵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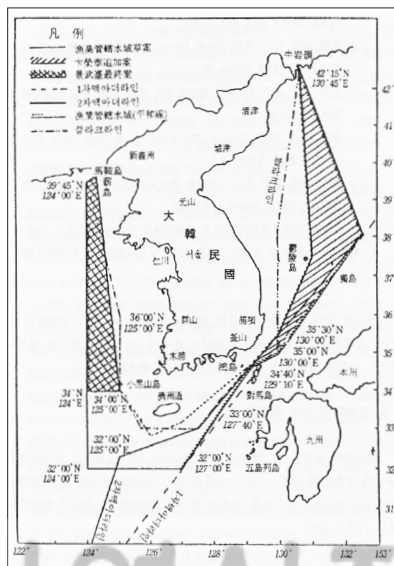
지철근은 이렇게 입수한 어장도를 참고로 하여 1951년 초 〈그림 2〉와 같은 어업관할수역안을 성안하게 되었다. 그는 어업관할수역안에서 일제강점기 트롤 어업 금지구역과 달리 한반도 남서쪽 해역이 돌출되어 있는 것은 이곳이 주요 어류의 산란 해역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⁵⁷⁾

55) 大洋漁業의 연혁에 대해서는, 「日本 Wikipedia」, <http://ja.wikipedia.org/wiki/「マルハ」>를 참고함(2015년 8월 25일 열람).

56) 지철근, 1989, 앞의 책, 67~68쪽.

57) 지철근, 1998, 앞의 책, 124쪽.

지철근의 어업관할수역안은 외무부를 거치면서 독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수역으로 확대되었다(변영태 추가안).⁵⁸⁾ 어업자원의 보호라고 하는 명목에다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명목이 하나 더 얹혀진 셈이다. 이를 두고 지철근은 “본래의 참 뜻을 알리기에 매우 불리했으나 국익차원에서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회고하였다.⁵⁹⁾ 1951년 9월 7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외무부의 어업관할수역안이 통과되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이를 보류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의 관할수역안이 일본에 알려지지 않았고 일본 측이 한국 측의 대응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 대통령은 외무부의 어업관할수역안에 「대륙붕의 해상(海床) 및 지하자원의 보호, 보전과 개발」 등의 문구를 추가해, 1952년 1월 18일에 4개 항에 이르는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국무원고시 제 14호)을 통해 전격적으로 ‘평화선’을 선포하였다(〈그림 3〉 참조).⁶⁰⁾



〈그림 3〉 ‘평화선’과 기타 경계선

(지철근, 1998, 『시련기의 수산업사』, 한국수산신보사, 131쪽)

58) 박진희, 2008, 앞의 책, 127쪽.
 59) 지철근, 1989, 앞의 책, 69~70쪽.
 60) 지철근, 1989, 위의 책, 74~75쪽.

Ⅲ. ‘평화선’ 선포 직후 일본 외무성의 대응

‘평화선’ 선포는 한반도 연안에서 어로활동에 종사하는 일본인 어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무엇보다도 제주도 부근 해역이 전갱이와 고등어 어획을 위한 일본인 어선에 중요한 어장이 되어 있었고 특히 제주도 동쪽 끝 우도에서 25~30해리 정도 떨어진 해역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곳으로 풍부한 어류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서일본 지역 어선이 잡는 고등어 대부분은 ‘평화선’ 선포 해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1952년의 경우만 해도 일본 어선은 ‘평화선’ 수역 안에서 고등어를 중심으로 연간 22만 톤 혹은 23만 톤을 잡아 올리고 있었고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30억 엔 가량 되는 것이었다. 당시 ‘평화선’ 수역 안에서 어로활동을 하는 일본 어선과 어민은 ① 고등어 채낚이 어선 270척과 어민 9,600명, ② 선망 어선 450척과 어민 10,000명, ③ 저인망 어선 1,030척과 어민 12,300명에 달했으며, 이 밖에도 청새치[かじきまぐろ]나 고래를 잡는 어선과 어민도 있었다.⁶¹⁾

‘평화선’ 선포 직후 일본 정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본 외무성이 1월 25일 정보문화국장 발언의 형태로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평화선’ 선언이 ① 해양자유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 ② 공해 어업자원의 개발과 보호를 위한 국제어업협력의 이념과 배치되는 것, ③ 국제사회의 통념에서 용인할 수 없는 것, ④ 곧 재개될 한일 어업회담 성공의 기초를 뒤엎는 것, ⑤ 한국 측의 회담 자세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⁶²⁾ 아울러 1월 28일에는 외무성이 주일한국대표부에 대해 “대통령의 선언은 공해자유의 원칙 및 공해에서의 수산자원 보호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에 반하는 것이며, 일본 정부로서는 이 선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한국은 이 선언에서 다케

61) 日韓漁業対策本部, 1953, 『李ライン問題と日本の立場』, 日韓漁業対策本部, 7~8쪽.

62) 日韓漁業協議會, 1968, 앞의 책, 33~34쪽.

시마[竹島]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의 문서를 전달하였다.⁶³⁾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1월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평화선’은 ① 트루만 대통령 선언이나 멕시코·아르헨티나·칠레·페루·코스타리카 정부에 의한 성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분히 확립된 여러 국제 문제의 선례를 가지고 있다, ② 맥아더라인은 대일 점령당국의 일방적인 지령에 의해 설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여타 국제적 합의로 대체될 때까지는 당연히 유효하게 존속되어야 한다, ③ 맥아더라인은 일본 어선의 행동 허가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지만 ‘평화선’은 고갈되기 쉬운 천연자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본인뿐만 아니라 한국인에 대해서도 제한을 부가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⁶⁴⁾ 이어 한국 정부는 2월 8일 공보부 발표를 통해 ① ‘평화선’은 한일회담에서도 제기할 것이며, ② 획정선은 양국 간의 불행한 사건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취한 것이고, ③ 한일 양국의 합의에 의한 공평한 획정선이 필요하다고 하며, ‘평화선’이 한일회담과 배치되지 않고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⁶⁵⁾

1월 23일 오후에 외무성 아시아국장실에서 열린 ‘제2차 협의회’에는 외무성 아시아국과 조약국의 과장과 참사관·사무관이 참석하였다. 이 모임은 ‘평화선’ 대책 문제와 어업교섭의 기본방침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 논의된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평화선’에 대한 외무성의 항의 성명은 호들갑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비교적 minor한 직위, 예를 들어 농림대신이나 국무대신이 담화를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았다.⁶⁶⁾ 즉 ‘평화선’이 국제법을 어긴 조치인 만큼 외무성이 나서 성토했을 필요는 없고 관련 정부 부처에 맡겨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하고 반박하지는 것이었다. ② 아직 점령 시기인 만큼 SCAP의 외무국(DS)의 양해를 얻고 외국 신문에 널리 보도되도록 하자. 즉, 절차를 중시하고 국제적 여론을 이용하지는 것이었다. ③ 한국 측이 주장하는 국

63) 日韓漁業協議會, 1968, 앞의 책, 36쪽.

64) 日韓漁業協議會, 1968, 위의 책, 34~35쪽.

65) 日韓漁業協議會, 1968, 위의 책, 35쪽.

66) 결과적으로 외무성의 정보문화국장 발언 형태로 공식적인 항의 발표를 내보냈다.

제적 선례에 관하여 연구하자. 즉 1945년의 트루만 대통령 선언을 연구하고 한국 측 주장을 국제법적으로 반박하지는 것이었다.

1952년 1월 29일 오전에 외무성은 아시아국장실에 수산청 장관과 수산청 고위 간부를 불러들여 한국과의 어업교섭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협의를 실시하였다. 이 협의회에서는 주로 수산청 관계자가 질문하고 외무성 관계자가 답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회의 초두에서는 국제적인 정세와 한국의 정세, 그리고 점령당국의 중재 능력 등을 묻고 이제 한국과의 직접적인 교섭이 필요해졌음을 상호 확인하였다. 일본 외무성은 ‘평화선’에 대해서 한국이 일본에 대한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고, 미국의 대일 원조, 행정협정에 대한 반발 혹은 질시(嫉視)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폄하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평화선’ 선언이 ‘어업교섭의 전초전’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한국 측에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일본 측 교섭방침을 정해가고 싶다고 하였다.⁶⁷⁾ 이때 수산청 장관은 한국 측이 주로 고등어를 잡기 위해 일본에 건착망 어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트롤 어선이나 건착망 어선을 한국 측에 제공했다가는 당시 일본 각지의 어선들이 고등어 잡이를 위해 쓰시마[對馬]에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언젠가 일본 측이 한국 측 어선과 경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⁶⁸⁾

이 회의에서는 외무성이 중심이 되어 어떠한 절차로 앞으로 한국과의 교섭을 진행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외무성 오노 가쓰미[大野勝巳] 참사관이 정리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교섭 전권단 단장은 마쓰모토 슌이치[松本俊一] 고문이 담당하고 관련 부처의 차관이 각각 대표를 맡기로 하였다. 이때 어업분과위원회는 시오미 도모노스케[塩見友之助] 수산청 장관을 일본 측 대표로 하여 교섭을 시작하며, 외무성의 치바 히로시[千葉浩] 참사관과 수산청의 나가노 세이지[永野正二] 차장이 각각 표면에 나서 교섭을 주도하기로 하였다. 만약

67) 「日韓漁業交渉第三回打合せ会」(1952년 1월 29일), 浅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 編, 2010b, 앞의 책, 第1期 1945年~1953年 第7卷 漁業問題, 5~6쪽.

68) 「日韓漁業交渉第三回打合せ会」(1952년 1월 29일), 浅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 編, 2010b, 위의 책, 第1期 1945年~1953年 第7卷 漁業問題, 7쪽.

분과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공동 보고서를 작성해 전권단체에 제출하여 훈령을 요청하고, 전권단체에서는 이들 보고서를 취합하여 우호조약으로 한다든지 어업협정으로 한다든지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가능한 한 오는 2월 첫 주까지 일본 측 교섭안으로서 이상적인 안을 만들어 보고 3월 중에는 모두 정리해 보겠다고 했으며, 만약 이때까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정부 최고위층과 상담하여 교섭을 연기하겠다고 하였다.⁶⁹⁾

또한 이 회의에서는 수산청 장관이 한국과의 교섭에서 일본·미국·캐나다 어업협정의 정신으로 추진하자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에 반하여 외무성은 “전반적으로 미국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추진해 가야한다”고 주장하였다.⁷⁰⁾ 외무성에서는 미국·캐나다와의 어업협정이 일본 측이 인식하고 있는 ‘공해자유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한국과의 교섭에는 결코 유리한 협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협정은 일본이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처음으로 임한 국제교섭으로서, 비록 3국이 통행의 자료로서의 ‘공해자유의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연안국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히 미국과 일본 사이에 서로 다른 견해가 대두되어 합의문 도출을 위해서 마라톤 협상을 실시해야 하였다.⁷¹⁾ 교섭 결과 일본이 주장한 ‘평등한’ 제재 원칙의 적용이 합의문에 실리기는 했지만, 북태평양 원양 어업 진출을 해야만 했던 일본로서는 실질적으로 북태평양 넙치(halibut) 잡이에 대해 일방적인 ‘자발적 억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제적 협정이 되었다. 이처럼 미국이나 캐나다에 대해서는 자유경쟁의 원칙을 포기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자유경쟁의 원칙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하고 하는 것을 외무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이 협정에서 자유경쟁의 원칙을 포기한 이유로서, 일본은 미국·캐나다에 대해서는 실질

69) 「日韓漁業交渉第三回打合せ会」(1952年 1月 29日), 浅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 編, 2010b, 앞의 책, 第1期 1945年~1953年 第7卷 漁業問題, 7쪽.

70) 「日韓漁業交渉第三回打合せ会」(1952年 1月 29日), 浅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 編, 2010b, 위의 책, 第1期 1945年~1953年 第7卷 漁業問題, 8쪽.

71) 日本海洋漁業協議會 編, 1952, 『日米加漁業条約の解説: 北太平洋の公海漁業に関する国際条約締結の意義と逐条解説』, 内外水産研究所, 59~74쪽.

적으로 특정 어업이나 특정 어종의 보호에 관하여 ‘실적을 가진 국가’에 대해 포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연안국의 우위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궁색한’ 논리를 전개한 일본인 연구자도 있다.⁷²⁾

대일강화조약 제9조에 따른 어업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본의 농림성, 미국의 국무성, 캐나다의 어업성 대표자들은 자국의 수산업 관계자들을 대동하고 도쿄에서 1951년 11월 5일에 첫 회합을 가졌으며 일본의 북태평양 해역 어업 문제와 관련하여 40일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3국은 공해자유의 원칙을 인정하면서 자원의 보호조치는 평등한 입장에서 협력한다”는 취지의 협정문에 합의하고 12월 가조인에 들어갔다. 이 회의에서는 ① 어획이 한계에 달한 것이 분명해진 어종, ② 어획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규제되어 있는 어종, ③ 과거 25년간 실질적으로 어획이 이루어진 곳이나 3국 이외의 국가들이 대부분 어획하고 있는 곳, 또는 조업의 분리나 단속이 곤란한 곳을 제외하고, 역지 또는 제한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⁷³⁾ 수산청은 이 협정이 국제적 합의와 상호 평등에 입각했다는 이념론을 바탕으로 한국과의 교섭에서 그 정신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에 비추어, 외무성은 이 협정이 어족 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어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자유 원칙을 훼손하고 일본 측이 ‘양보’해야 했던 현실론에 입각하여, 한국과의 교섭에서 국제적 선례로서 굳이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IV. 어업협정 교섭을 위한 일본 측 기본방침안

여기서는 협의회 자료를 통해 ‘평화선’ 선포 직후에 일본 외무성이 마련한 「일

72) 近藤康男, 1975, 『近藤康男著作集 第11卷』, 農山漁村文化協會, 267~269쪽.

73) 日本海洋漁業協議會 編, 1952, 앞의 책, 79~81쪽.

한어업교섭의 기본방침(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1월 23일의 외무성 내부 협의회에서 처음으로 기본방침안에 관한 설명이 작성자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에 의해 이루어졌다.⁷⁴⁾ 그는 당시 외무성 정무국 특별자료과에서 사무관직을 담당하고 있었고 미국·캐나다와의 어업조약 교섭에서도 사무직을 담당하였다. 그가 협의회에 제시한 초안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공해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어업활동에 대한 필요한 제한 및 규제는 언제나 양국 평등의 입장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하여, 국제적 원칙과 평등한 입장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협정의 주된 목적으로, ①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생산성 확보, ② 어업분쟁 방지, ③ 어업협력을 들었다.

첫째, ‘지속적 생산성’을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장래의 제한이나 규제를 위해 생물학적 조사연구를 행할 ‘공동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는 데 그칠 필요가 있으며, 동중국해와 황해 방면의 해저 어류자원에 관하여 가능한 한 보존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업분쟁 방지’를 위해서 양국은 각각 상대국의 연안 3마일(해리) 이내에 자국어업 출입을 금지하기로 한다. 각 도서에서 원둘레를 그리는 것은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판별하기 쉬운 한계선을 결정하여 단속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때 영국과 노르웨이의 어업분쟁에 대한 1951년 12월 28일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은 유력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해난시 어선의 피난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데, 만약 쌍무적인 규정을 허용하면 한국으로부터의 불법 입국과 밀무역을 조장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셋째, ‘어업협력’을 위해서 한국에 일본의 어업근거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한국의 일본 어업근거지는 앞의 이유 때문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다만 한국에 대한 일본의 기술 원조는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⁷⁵⁾

74) 가와카미는 1972년에 편찬한 저서에서 한일 어업회담의 경과를 정리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기본방침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川上健三, 1972, 『戦後の国際漁業制度』, 大日本水産会, 237~283쪽.

75) 「日韓漁業交渉の基本方針(案)」(1952년 1월 23일), 浅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編, 2010b, 앞의 책, 第1期 1945年~1953年 第7卷 漁業問題, 3~4쪽.

가와카미의 초안에서는 일본 측이 여전히 3해리 전관수역을 고집하고 한국의 일본 어업기지 반대를 주장했지만, ‘평화선’ 선포 이전에 가지고 있는 완강한 자세에서 물러나, 어장 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방침으로 선회하고 “한국 측 희망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평화선’ 선포가 일본 정부에 끼친 영향이 지대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 한국 정부가 ‘평화선’을 선포하기 훨씬 이전부터 「한일수산협정에 관한 건」을 작성하고 일본과의 교섭을 준비해 온 것에 비하면, 일본 측의 대응은 지극히 소극적이었다.⁷⁶⁾ 점령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일본 측에 있어서 ‘평화선’ 선포는 이처럼 한국과의 교섭(안)을 서둘러 마련하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록은 아직 외무성 내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었다. 그것은 이날 외무성 내부 협의회에서 전반적으로 한국 정부의 ‘평화선’ 선포를 무시하고 어장의 제한보다는 어선의 제한 가능성에 중심을 두고 논의가 진행된 것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즉, ① 해저 어류에 관하여 보존 조치를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② 트롤 어선이나 저인망 어선에 대해서도 조업 금지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③ 양국이 가능하다면 어선 척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가와카미 초안에서는 한국과의 어업교섭에서 어느 정도 조업 금지 구역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 회담이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무성은 앞으로 기본적으로 어선 척수를 제한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여 교섭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종래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⁷⁷⁾

가와카미는 초안을 수정 및 보완하여 1월 29일 외무성에 검토 자료로 내놓았다. 이 자료는 ‘극비’ 문서로 분류되어 ①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공해자유의 원칙을 고수한다, ② ‘평화선’ 선언이나 맥아더라인 존치를 전제로 하는

76) 신용욱, 2012, 5, 앞의 글, 104~108쪽.

77) 「日韓漁業交渉のための部内打合 第二回」(1952年 1月 23日), 浅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 編, 2010b, 앞의 책, 第1期 1945年~1953年 第7卷 漁業問題, 2쪽.

교섭에는 응하지 않는다, ③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평등한 입장에서 어업공동 위원회를 설치하고 동해·황해의 해저어류를 보호한다, ④ 어업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연안 3해리 이내의 영해권을 인정하며 해난시의 대피소를 상호 마련하며 이때 한국 측의 불법입국과 밀무역에 대해서는 일본의 국내 조치를 강구한다, ⑤ 한국 측이 기술원조나 어류수입을 요청해 올 경우 응할 수 있으나, 이때 일본 측도 그 댓가로 포경선과 고등어 건작망 어업 기지를 요구해야 하며 다만 일본 측이 먼저 나서서 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⁷⁸⁾ 이 「기본방침(안)」에는 별지(1)로서 ‘일한어업공동위원회’,⁷⁹⁾ 별지(2)로서 ‘동해·황해 해저어류 자원의 보존조치’,⁸⁰⁾ 그리고 별지(3)으로서 ‘일한어업의 분쟁방지’⁸¹⁾ 문서가 각각 첨부되어 있었다.

이 「기본방침안」을 설명자료로 하여 외무성은 1월 31일 수산청 관계자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외무성은 나가노 차장을 비롯한 수산청 고위 간부를 불러 아시아국장실에서 협의회를 가졌다. 해저어류 보호를 위한 어장 제한에 대해서, 수산청 해양제2과장 마스다 마사이치[栴田正一]는 과거 조선총독부에 의한 보호수역 제한 조치가 있었고 자신도 어장도 작성에 관여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 본토의 어민이 이를 어겼다고 해서 처벌을 받은 일은 없었다고 하면서 애써 총독부 조치의 의미를 축소시켰다. 산란지구 보호와 치어육성을 위해 조선총독부는 대충 어림짐작으로 보호지구를 설정한 것이며 만약 앞으로 한일 양국 간에 보호수역을 설정해야 한다면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과학적인 조사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전갱이나 고등어는 회유성 어류이기 때문에 현재의 선망 어업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제주

78) 「日韓漁業交渉の基本方針(案)」(1952년 1월 29일), 浅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 編, 2010b, 위의 책, 第1期 1945年~1953年 第7卷 漁業問題, 12~18쪽.

79) 「(別紙一)日韓漁業共同委員会」, 浅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 編, 2010b, 위의 책, 第1期 1945年~1953年 第7卷 漁業問題, 18~19쪽.

80) 「(別紙二)東海·黃海底魚資源の保存措置」, 浅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 編, 2010b, 위의 책, 第1期 1945年~1953年 第7卷 漁業問題, 19~20쪽.

81) 「(別紙三)日韓漁業の紛争防止」, 浅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 編, 2010b, 위의 책, 第1期 1945年~1953年 第7卷 漁業問題, 20쪽.

도 북부 전역을 산란 보호수역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具合いが悪い)고 하였다. 어선 제한에 있어서도 한일 간 어선 규모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가 외무성 수산청 관계자 모두에게서 나왔다.⁸²⁾

한편 수산청 관료와의 협의회와 병행하여 외무성 아시아국 2과는 1월 하순에 사무관을 시모노세키[下関]와 도바타[戸畑]에 파견하여 한일 해역에서 어로활동을 하고 있는 어민 단체로부터 어업협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어선 종류와 척 수, 어획 어종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어민 단체들은 중앙의 수산청 관료들과 같이 동해와 황해에서 공해자유의 원칙에 따라 저인망 어선의 활동이 가능하게 하라고 요청하였다. 수산청 관료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한국으로부터 고가의 생선이 수입되고 있고 여기에 일본의 운반선 업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일본에 한국 어업 관련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에는 개방적으로 임해도 좋다. 제주도 연안 전관수역을 3해리로 정하기를 희망하지만 이에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5해리 정도로 물러설 수 있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⁸³⁾ 이처럼 현지 어민 단체들이 정부 관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관대한 자세를 보인 것은 어업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어장 진출에 대한 현실적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2월 8일에는 한일 양국의 대표단이 상견례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무성 아시아국 2과는 그때까지 기본방침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가와카미의 초안을 보완한 교섭안을 간략하게 정리한 후 여기에 설명을 붙여 방안을 정리하였다. 2월 5일 초안을 마련하여 수산청에 보내어 의견을 묻자, 이에 '각국 평등한 입장에서'라는 문구를 넣을 것을 요구했고, '예를 들어 산란 및 치어 육성 구역에 대한 조치' 부분을 생략할 것을 요구하였다.⁸⁴⁾ 이에 따라 외무성은 수산청

82) 「日韓漁業交渉第四回打合せ会」(1952年 1月 31日), 浅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 編, 2010b, 앞의 책, 第1期 1945年~1953年 第7卷 漁業問題, 8~11쪽.

83) アジア局二課, 「下関・戸畑出張報告書」, 浅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 編, 2010b, 위의 책, 第1期 1945年~1953年 第7卷 漁業問題, 21~25쪽.

84) 「日韓漁業交渉事務担当者打合せ会」(1952年 2月 4日), 浅野豊美·吉澤文寿·李

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수정을 가한 후, 다음과 같이 2월 6일에 「일한어업협정교섭에 대한 일본 측 기본방침」을 확정지었다.⁸⁵⁾

1. 공해 자유의 국제적 원칙을 관철함과 동시에 어업자원 보존을 위한 각국 평등의 입장에서 공동 조치를 강구한다.
 - (가) 이 대통령의 해양주권에 관한 선언 및 맥아더라인 존속을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이것을 전제로 하는 교섭에는 응하지 않는다.
 - (나) 어업자원의 더욱 유효한 이용과 과학적 기초에 입각한 보존조치를 공동으로 조사연구하는 것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일한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 (다) 일한 양국은 어업자원보존을 위한 평등한 입장에서 각 어업활동에 필요한 제한 또는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하며 우선 동해·황해의 해저어류에 대해 공동보존 조치를 강구한다.
2. 양국 어업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조치를 강구한다.
 - (가) 영해 및 금지구역 침범에 대한 양국의 처리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나) 해난의 경우 어선의 피난 및 구조에 관하여 규정한다.
3. 한국 어업의 기술적 원조 등 경제제후에 대해서는 한국의 움직임에 따라 고려하지만, 일본 측이 먼저 이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는 않는다.

외무성은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어업협정 문안을 작성하고 이를 다듬어갔다. 협정안을 확정해 가는 과정에서 외무성은 수산청 관료들과 또 다시 2월 8일과 2월 9일에 협의회를 가졌다. 2월 8일 오후에 열린 협의회에서는 일본·미국·캐나다 3국 협정은 ‘국제법상 이례적 조치’인 임검나포(臨檢拿捕)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선례로서 제시할 필요는 없고, 만약 한국 측 연안 3해리 이내에서 일본 어선이 나포될 경우에도 곧 바로 일본 측에 인도할 수

東俊 編, 2010b, 앞의 책, 第1期 1945年~1953年 第7卷 漁業問題, 28쪽.

85) アジア局二課, 「日韓漁業協定交渉に対する日本側基本方針案」(1952年 2月 6日), 淺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 編, 2010b, 위의 책, 第1期 1945年~1953年 第7卷 漁業問題, 26~27쪽.

있도록 하여 일본 어민을 보호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어업협정안 초안을 제1조에서 제7조까지 축조(逐條) 심의하였다.⁸⁶⁾ 그리고 2월 9일 오전과 오후에 열린 협의회에서는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를 심의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수산청이 한국 연안에서 나포될 경우, 항해일지·어로일지·바다지도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어민이나 어선이 억류되는 일은 없도록 교섭할 것을 요청하였다.⁸⁷⁾ 이렇게 해서 정리된 일본 측 협정안은 2월 16일 한국 측에 미리 제시되었고,⁸⁸⁾ 2월 20일의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양국 대표는 이 협정안을 중심으로 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게 되었다.⁸⁹⁾

동북아역사재단 V. 맺음말

이상으로 어업협정 교섭을 위한 일본 측 기본방침이 생성되는 과정을 일본 외무성 공개문서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평화선’ 선포 이전에 일본 외무성이 ① 일본 어업의 곤경에 관한 인식, ② 한국의 낙후된 어로 인프라에 관한 인식, ③ 맥아더라인의 한시적 성격에 관한 인식, ④ 어족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86) 「日韓漁業協定案審議のため水産庁との打合せ」(1952年 2月 8日), 浅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 編, 2010b, 앞의 책, 第1期 1945年~1953年 第7卷 漁業問題, 39~41쪽.

87) 「日韓漁業協定案審議のため水産庁との打合せ」(1952年 2月 9日), 浅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 編, 2010b, 위의 책, 第1期 1945年~1953年 第7卷 漁業問題, 41~42쪽.

88) 「日韓漁業交渉に関する水産庁との打合せ」(1952年 2月 19日), 浅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 編, 2010b, 위의 책, 第1期 1945年~1953年 第7卷 漁業問題, 42쪽.

89) 박진희, 2008, 앞의 책, 141쪽. 일본 측 협정안은 다음과 같다. 「漁業に関する日本国政府と大韓民国政府との間の協定案」, 「PROPOSED AGREEMENT FOR FISHERIES BETWEEN THE GOVERNMENT OF JAPAN AND THE GOVERNMENT ON THE REPUBLIC OF KOREA」, 浅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 編, 2010b, 위의 책, 第1期 1945年~1953年 第7卷 漁業問題, 29~38쪽.

인식 등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과의 교섭 방침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평화선’ 선포 직후에 외무성이 이에 대해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 논의했던 것, 1월 23일에 처음으로 제시된 가와카미 사무관의 「기본방침안」의 내용, 그리고 2월 6일까지 「일한어업협정교섭에 대한 일본 측 기본방침」에 이르는 수산청과의 협의 내용 등을 밝혔다.

1952년 2월 15일에 제1차 한일회담이 일본 외무성에서 시작되었다. 제7차 회담에 이르기까지 양국은 ① 기본관계문제, ② 재일한인 법적지위 문제, ③ 선박 문제, ④ 청구권 문제, ⑤ 어업 문제 등 5개 의제를 중심으로 하여 각각 분과위원회별로 교섭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초기 회담 과정에서 ①에서 ③까지의 의제는 비교적 순조롭게 교섭이 진행되는 듯 하였지만, ④와 ⑤의 의제에 대해서는 양국의 견해가 근본적으로 대립하여 회담 개시부터 끝까지 난항에 난항을 겪었다. 특히 어업 문제에 관하여, 일본 측은 기본적으로 ‘공해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① 어족보존을 위해 양국이 평등한 입장에서 공동 조치를 취할 것, ② 일정 수역에서는 필요한 기간 동안 저인망이나 트롤 어업을 금지할 것, ③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어족보호와 개발을 위한 과학적 조사와 연구를 실시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하여 한국 측은 기본적으로 ‘관할 수역’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자국 어선만이 조업할 수 있는 인접 관할 수역을 폭넓게 설정하고 그 외의 동해·황해·동중국해 등에서 어족보존 조치를 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근본적인 의견 대립을 처음으로 노정하게 된 제1차 회담은 2개월 만에 중단되기에 이르렀다.⁹⁰⁾

그 후 ‘평화선’ 침범과 나포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차례에 걸쳐 회담의 결렬·중단·재개를 반복했으나 한국의 군사정권에 이르러 청구권 교섭이 타결되자 어업교섭도 힘을 받게 되었다. 제7차 회담에서도 제주도 등의 해역에서 전 관수역 기선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의 의견이 대립하여 회담 막바지까지 난항을 거듭했지만,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은 외교적 타협안을 제시하여 1965년 6월 22일에 전문과 총 10조에 이르는 어업협정을 제

90) 中川融, 1957, 『日韓問題』, 商工財務研究会, 8~13쪽.

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이승만 정권에 의한 ‘평화선’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⁹¹⁾

끝으로 일본의 기본방침이 결과적으로 어업협정을 통하여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자.

- ① 공해자유 원칙에 관한 일본 측의 방침: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서 일본은 애초 3해리 전관수역 제한 방침에서 12해리 전관수역 제한으로 후퇴하였다. 어업협정 제1조는 “자국 연안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수역을 자국이 어업에 관하여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으로 설정하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상호 인정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1958년의 제1차 해양법회의와 1960년의 제2차 해양법회의에서 전관수역 12해리설(說)이 다수설이 된 것을 일본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기본방침에 비추어 본다면 가장 중요한 원칙에서 일본 측이 대폭 물러선 것이며, 국제적 상황이 일본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분쟁 해결을 위한 일한어업공동위원회 설치 방침: 이 방침은 제6조와 제7조에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임무를 규정함으로써 일본 측이 이를 관철시켰다.
- ③ 동해·황해의 해저어류에 대한 보호 방침: 협정 제2조의 공동규제 수역 설정과 제5조의 공동자원조사수역 설정을 통해 일본 측은 이를 실현하였다. 협정 제3조는 “충분한 과학적 조사에 기초하여 실시될 때까지 저인망 어업, 쌍끌이 어업, 60톤 이상의 어선에 의한 고등어 채낚이 조업에 대해 잠정적 규제를 실시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협정 제5조는 “공동자원조사수역의 범위와 조사에 대해서는 공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결

91) 한일어업협정문과 관련 법령, 그리고 협정 체제 아래에서의 어로요령에 대해서는 水産庁, 1965, 『日韓漁業協定關係出漁の手引き』, 水産庁, 21~315쪽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정된다”고 규정하였다.

- ④ 자국 어선의 영해 및 금지구역 침범에 대한 자국 처리 방침: 소위 ‘기국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일본 측은 이 방침을 관철시켰다고 할 수 있다. 협정 제4조는 “어업에 관한 수역 외측의 단속이나 재판관할권은 어선이 속한 계약국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⑤ 해난의 구조 시설에 관한 소극적인 방침: 협정문에 관련 규정을 두지 않았음으로써 일본 측은 이를 실현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협정 제7조 위원회의 임무에서 양국 어선 간의 사고에 대해 일반적으로 조치를 권고한다는 데 그쳤고, 제8조에서도 양국 어선 간의 사고에 대해 양국이 원활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치를 취한다는 데 그쳤다.
- ⑥ 한국에 대한 기술 원조에 관한 소극적인 방침: 어업협정 조항에 관련 규정을 두지 않았고, 대신 청구권협정을 통해 10년 간 제공되거나 대부(貸付)되는 ‘일본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서비스’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체로 일본 측의 기본방침이 관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저서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09, 『2009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지원과제 연구결과 보고서』(전후 일본 공문서 조사분석 연구사업).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동북아역사재단 편, 2010,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목록집』, 선인.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동북아역사재단 편, 2010,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제1권~제103권, 선인.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 2010, 『의제로 본 한일회담: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 2』, 선인.
- 박진희, 2008, 『한일회담: 제1공화국의 대일정책과 한일회담 전개과정』, 선인.
- 지철근, 1989, 『한일어업분쟁사』, 한국수산신보사.
- 지철근, 1998, 『시련기의 수산업사』, 한국수산신보사.
- 최장근, 2014, 『(일본 의회 의사록이 인정하는) '다케시마'가 아닌 한국영토 독도』, 제이앤씨.
- 한국경제개발연구소, 1966, 『한국 수산업의 현황(상권)』,藝林社.
- 현대승, 2007, 『일본 국회에서의 독도 논의에 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히구치 도시히로, 2010, 「동지나해·황해 수산자원 질서재편에서 GHQ-SCAP 천연자원국과 한일관계」,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 『의제로 본 한일회담: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 2』, 선인.
- 淺野豊美, 2010, 「日韓国交正常化問題資料集紹介」, 淺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編, 『日韓国交正常化問題資料』(基礎資料編) 第1卷, 現代史出版.
- 淺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編, 2010a, 『日韓国交正常化問題資料』(基礎資料編) 第1卷~第5卷, 現代史出版.
- 淺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編, 2010b, 『日韓国交正常化問題資料』 第1期 第1卷~第8卷, 現代史出版.
- 淺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編, 2011a, 『日韓国交正常化問題資料』 第2期 第1卷~第12卷, 現代史出版.
- 淺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編, 2011b, 『日韓国交正常化問題資料』(基礎資料編) 第6卷~第11卷, 現代史出版.

浅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 編, 2013, 『日韓国交正常化問題資料』 第3期 第1卷～第5卷, 現代史出版.

川上健三, 1972, 『戦後の国際漁業制度』, 大日本水産会.

近藤康男, 1975, 『近藤康男著作集第11巻』, 農山漁村文化協会.

水産新聞協会, 1982a, 『大日本水産会百年史 (前編)』, 大日本水産会.

水産新聞協会, 1982b, 『大日本水産会百年史 (後編)』, 大日本水産会.

水産庁, 1965, 『日韓漁業協定関係出漁の手引き』, 水産庁.

崔吉城·原田環, 2007, 『植民地の朝鮮と台湾: 歴史·文化人類学的研究』, 第一書房.

中川融, 1957, 『日韓問題』, 商工財務研究会.

日韓漁業協議會, 1968, 『日韓漁業對策運動史』, 日韓漁業協議會.

日韓漁業對策本部, 1953, 『李ライン問題と日本の立場』, 日韓漁業對策本部.

日本海洋漁業協議會 編, 1952, 『日米加漁業条約の解説: 北太平洋の公海漁業に関する国際条約締結の意義と逐条解説』, 内外水産研究所.

和田長三, 1938, 『漁のしるべ』, 協同印刷社.

논문

박진희, 2014. 9, 「미국 국무부 재외공관문서(RG 84)와 한일회담」, 『사학연구』 115호.

스튜어트 케이, 2012. 12, 「해양법의 발전에서 평화선이 지니는 의의」, 『영토해양연구』 4권.

신용욱, 2012. 5, 「'평화선' 획정 과정의 논리 전개와 그 성격」, 『史叢』 76권.

오제연, 2005. 6, 「평화선과 어업협정」, 『역사문제연구』 14호.

이형식, 2009. 11, 「일본의 국회이사록을 통해서 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대응 (1950~1956)」, 『일본공간』 6권.

장박진, 2011. 9, 「대일평화조약 형성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영토 인식과 대응 분석」, 『영토해양연구』 창간호.

장박진, 2015. 6,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의 형성 과정(1965. 3~6) 분석: 개인청구권 문제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48호.

정인섭, 2006. 12, 「(특집)국제법 발전에 대한 한국 외교의 기여: 1952년 '평화선' 선언과 해양법의 발전」, 『서울국제법연구』 13권 2호.

조윤수, 2008, 「'평화선'과 한일 어업 협상: 이승만 정권기의 해양질서를 둘러싼 한일 간의 마찰」, 『일본연구논총』 28호.

- 岡田仁弘, 1949. 6, 「日韓漁業の交流について」, 『朝水』 14号.
- 加藤晴子, 1979. 3, 「戦後日韓関係史への一考察 (上)」, 『日本女子大学文学部紀要』 28号.
- 加藤晴子, 1980. 3, 「戦後日韓関係史への一考察 (下)」, 『日本女子大学文学部紀要』 29号.
- 藤井賢二, 2002. 10, 「李承晩ライン宣布への過程に関する研究」, 『朝鮮学報』 185号.
- 藤井賢二, 2004. 10, 「李承晩ラインと日韓会談: 第一次~第三次会談における日韓の対立を中心に」, 『朝鮮学報』 193号.
- 藤井賢二, 2007, 「朝鮮引揚者と韓国: 朝水会の活動を中心に」, 崔吉城・原田環, 『植民地の朝鮮と台湾: 歴史・文化人類学的研究』, 第一書房.

자료

- 「해양경찰 60년, 든든한 '바다 지킴이」, KTV10, 2013년 9월 24일 방영.
- 『朝水』 13号, 1949年 4・5月.
- 「日本 Wikipedea」, <http://ja.wikipedia.org/wiki>.
- 「日韓会談文書・全面公開を求める会」, <http://www.f8.wx301.smilestart.ne.jp>.
- データベース『世界と日本』, 日本政治・国際関係データベース(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田中明彦研究室), [文書名] 降伏文書.

[국문 초록]

한국과의 어업협정 교섭을 위한
1952년 일본 측 기본방침에 관한 연구

최영호

이 글은 어업협정 교섭을 위한 일본 측 기본방침이 생성되는 과정을 일본 외무성 공개문서를 중심으로 하여 밝히고 있다. ‘평화선’ 선포 이전에 일본 외무성이 ① 일본 어업의 곤경에 관한 인식, ② 한국의 낙후된 어로 인프라에 관한 인식, ③ 맥아더라인의 한시적 성격에 관한 인식, ④ 어족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등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과의 교섭 방침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실증하였다. 그리고 ‘평화선’ 선포 직후에 일본 외무성이 이에 대해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 논의했던 것, 1952년 1월 23일에 처음으로 제시된 가와카미 사무관의 기본방침안 내용, 그리고 2월 6일까지 일한 어업협정 교섭에 대한 일본 측 기본방침에 이르는 수산청과의 협의 내용 등을 밝히고 있다.

1952년 2월 15일에 제1차 한일회담이 일본 외무성에서 시작되었다. 어업 문제에 관하여 일본 측은 기본적으로 ‘공해자유’의 원칙에 입각해 ① 어족보존을 위해 양국이 평등한 입장에서 공동 조치를 취할 것, ② 일정 수역에서는 필요한 기간 동안 저인망이나 트롤 어업을 금지할 것, ③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어족보호와 개발을 위한 과학적 조사와 연구를 실시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하여 한국 측은 기본적으로 ‘관할 수역’의 필요성에 입각해 자국 어선만이 조업할 수 있는 인접 관할 수역을 폭넓게 설정하고 그 외의 동해·황해·동중국해 등에서 어족보존 조치를 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근본적인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제1차 회담은 2개월 만에 중단되었다.

주제어

한일회담, 외교문서 공개, 맥아더라인,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평화선, 이승만라인, 어선 나포, 어족보호, 저인망 어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Japan's Basic Policy for the Negotiation of the Fisheries Agreement with Korea in 1952

Choi Youngho

This paper outlines the processes by which Japan established the Basic Policy for the negotiation of fisheries agreement with Korea soon after the conclusion of the San Francisco Treaty in 1951 mainly through the recently released official documents. I reveal that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 had perceived that (1) Japan's fishery situation was in trouble, (2) Korea's fishery infra-structures were falling behind, (3) the MacArthur Line was temporary, and (4) fishery resources deserve to be protected in facing the first negotiation with Korea in 1952. Further, the Ministry had in-depth internal discussions regarding how to respond to Korea's declaration of maritime sovereignty. Kawakami Kenzō, an assistant junior official, presented a draft of the Basic Policy for the first time on January 23, 1952. The Foreign Ministry had several meetings with the Fisheries Agency to discuss the draft until February 6, 1952.

The first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began in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 on February 15, 1952. In the fisheries negotiation, Japan stated the opinions (1) that both parties should engage in common actions equally for the preservation of resources, (2) that both parties should prohibit dragnet fishing boats or trawling fishing in an area during an appropriate period, and (3) that both

parties should establish a joint commission to promote scientific investigation for the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resources under the principle of “freedom of the seas.” On the other hand, Korea argued for widening the exclusive zone where a nation’s ship can exclusively operate and for protecting the resources in such areas of the East Sea, the Yellow Sea, and the East China Sea under the necessity of an “exclusive offshore zone.” This conflict of fundamental opinions stopped the first negotiation in less than two months.

Keywords

Korea–Japan talks, release of diplomatic documents, the MacArthur Line, the San Francisco Treaty, the Peace Line, the Rhee Syngman Line, seizure of fishing boats, preservation of fish, dragnet fishing boats



야스쿠니신사 문제의 현황과 연구 동향

남상구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2015년 8월 1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야스쿠니[靖國]신사에 공물료를 보냈고 각료 3명은 동 신사를 참배하였다. 한국 정부는 “식민침탈과 침략전쟁의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신사에 아베 총리가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고, 일부 현직 각료와 정치인들이 참배를 강행”한 것을 비판하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¹⁾을 발표하였다. 중국 정부도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력한 반대와 강렬한 불만을 표시”하였다.²⁾ 이렇듯 일본 총리와 각료의 참배가 외교 현안이 되다보니 야스쿠니신사 문제라고 하면 총리나 각료의 참배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렇다면 일본 총리나 각료가 참배하지 않으면 야스쿠니신사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

※ 투고: 2015년 8월 7일, 심사 완료: 2015년 10월 30일, 게재 확정: 2015년 11월 23일

1)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공물료 봉납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main/index.jsp>).

2) 『연합뉴스』, 2015. 8. 15.

한국 입장에서 보면 총리나 각료의 참배와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 군인이나 군속으로 강제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한국인 약 21,000명이 유족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었다는 사실이다. 총리나 각료 참배와 한국인 무단합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야스쿠니신사가 일본 패전 이전(이하 전전)에 식민침탈과 침략전쟁에 국민을 동원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A급 전범 합사에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듯이 이러한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 입장에서 보면 야스쿠니신사 문제란 국가에 의한 전사자 추도(시설), 헌법의 정교분리원칙, 유족의 감정이 얽히고설킨 문제다.³⁾

야스쿠니신사와 관련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한국인 무단합사, 총리 참배, 새로운 국립 추도시설, 역사인식을 둘러싼 문제다. 이를 사안별로 쟁점, 문제점, 문제의 성격, 현황을 개관하면 <표 1>과 같다.

야스쿠니신사 문제는 동아시아 역사 갈등의 핵심적인 문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 글의 목적은 첫째, <표 1>에서 제기한 4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야스쿠니신사 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현황,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둘째,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⁴⁾

3) 다카하시 데쓰야[高橋哲哉]는 야스쿠니신사에 의한 전몰자 현창·추도는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면서 유족 감정, 역사인식, 종교, 전통문화, 새로운 추도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야스쿠니신사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高橋哲哉, 2005, 『靖國問題』, 筑摩書房.

4) 일본에서 야스쿠니신사에 관한 선행연구는 야스쿠니신사 국영화와 공식참배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강하게 반영하면서 이루어졌다. 즉 일본에서의 선행연구는 단순한 학문의 영역을 벗어나 현실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이루어졌다. 대표적 연구로는 야스쿠니신사 국영화 반대운동의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한 무라카미 시게요시[村上重良]의 『慰靈と招魂—靖國の思想』(岩波書店, 1974), 충혼비 소송에서 원고 측에 관여했던 오에 시노부[大江志乃夫]의 『靖國神社』(岩波書店, 1984), 피고 측에 관여했던 오히라 야스오[大原康男]의 『忠魂碑の研究』(暁書房, 1984), 총리 참배를 지지하고 야스쿠니신사에 긍정적인 고보리 게이이치로[小堀桂一郎]의 『靖國神社と日本人』(PHP研究所, 1998), 총리 참배를 반대하고 야스쿠니신사에 비판적인 다카하시의 『靖國問題』(筑摩書房, 2005), 고야스 노부쿠니[子安

〈표 1〉 야스쿠니신사 문제 개요

사안	쟁점	문제점	문제의 성격	현황
한국인 무단 합사	무단합사	식민지에서 병력동원 수단	식민침탈 역사	일본에서 한국인 합사 철회 소송(1건) 진행 중 - 2건 일본 대법원에서 기각 당함
		유족의 인격권 침해	인권 침해	
		식민침탈의 역사 긍정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인식	
	일본 정부 관여	헌법 정교분리원칙 위배	헌법 해석	
일본 총리 참배	A급 전범합사 (1978. 10)	침략전쟁 미화(도쿄재판 부정)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	새로운 국립추도시설 건설, A급 전범 분사 등이 해결방안으로 제기됨
		동북아 외교 갈등 초래	외교 갈등	
	위헌 여부	정교분리원칙 위배	헌법 해석	일본에서 아베 총리 참배 위헌 소송(2건) 진행 중
새로운 국립 추도 시설	총리 참배로 인한 갈등	유족회 등 야스쿠니신사 지지 세력이 적극 반대	국가에 의한 전사자 추도	일본 안보관련 법안 개정으로 새로운 전사자 발생 가능성 대두
	국립 전사자 추도시설 건립	평화헌법 개정 기반 구축		
역사 인식	A급 전범합사	식민침탈, 침략전쟁의 역사를 긍정·미화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인식	야스쿠니신사 역사인식이 일부 역사교과서에도 반영됨

국내에서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 참배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총리 참배에 대한 비판이라는 시각에서 일본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한국인 무단합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야스쿠니신사 자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연구 성과의 축적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요 학술회의 자료집도 대상으로 하였다.

宣邦]의 『国家と祭祀：国家神道の現在』(青土社, 2004)를 들 수 있다. 일본 패전 이후의 야스쿠니신사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로는 다나카 노부마사[田中伸尚]의 『靖國神社の戦後史』(岩波書店, 2002)가 있다. 일본의 연구성과가 한국어로 소개되는 것은 2001년 고이즈미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후로 무라카미, 오에, 다카하시, 고야스의 저서가 출판되었다.

II. 한국인 무단합사 문제

1_역사적 경위와 현황

야스쿠니신사의 합사 대상은 기본적으로 내전과 대외 침략전쟁에서 사망한 일본군의 군인과 군속이다.⁵⁾ 이러한 신사에 한국인이 합사된 것은 1910년 강제 병합 이후다. 전전에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은 415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 야스쿠니신사는 육·해군성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적인 추도시설이었다. 일본 패전 이후(이하 전후) 야스쿠니신사를 관리하던 육·해군성은 해체되었고 야스쿠니신사는 종교 법인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육·해군성의 업무를 인계한 후생성이 한국인 합사를 야스쿠니신사와 공동으로 모의하고 한국인 전사자 신상자료를 동 신사에 제공하였다.⁷⁾ 야스쿠니신사 합사는 후생성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데 후생성이 야스쿠니신사에 제공한 한국인 자료는 20,727명 분이었다. 연도별로는 1959년 19,650명, 1964년 82명, 1972년 66명, 1973년 385명, 1975년 509명의 자료가 야스쿠니신사에 제공되었다.⁸⁾ 일본 정부는 한국의 유족들에게는 전사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야스쿠니신사도 한국인 유족에게는 합사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협력으로 한국인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었다는 사실은 선행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졌다.⁹⁾

5) 야스쿠니신사의 합사 대상에 대해서는 남상구, 2006, 「야스쿠니신사 합사 문제에 관한 고찰」, 『일본사상』 제10호를 참조.

6) 남상구, 2006, 위의 글, 169쪽.

7) 国立国会図書館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2007, 『新編 靖国神社問題資料集』.

8) 厚生労働省, 『朝鮮人靖国神社合祀に関する情報提供について(回答)』(2006. 11. 16).

9) 남상구, 2014, 「해방 후 한국인이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경위」, 동북아역사재단 편, 『야스쿠니신사에 묻는다 - 야스쿠니신사 무단합사 철폐소송』, 212~230쪽.

〈표 2〉 야스쿠니신사 합사 철폐 소송 개요

제소 법원	제소 연월	원고	판결			주요 청구내용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도쿄 [東京] 1	2001. 6	한국인 피해자, 유족 416명	기각 (2006. 5)	기각 (2009. 10)	기각 (2011. 12)	· 일본 정부는 야스쿠니신사 합사통지를 철회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할 것
오사카 [大阪]	2006. 8	일본인 유족 8명	기각 (2009. 2)	기각 (2010. 12)	기각 (2011. 12)	· 야스쿠니신사는 제신명표, 제신부, 영세부에서 원고 유족의 기록을 삭제할 것 · 일본 정부는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합사 통지를 철회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것
도쿄 [東京] 2	2007. 2	한국인 유족 10명, 생존자 1명	기각 (2011. 7)	기각 (2013. 10) * 상고하지 않음		
오кина와 [沖縄]	2008. 3	일본인 유족 5명	기각 (2010. 1)	기각 (2011. 9)	기각 (2012. 6)	
도쿄 [東京] 3	2013. 10	한국인 유족 10명	진행 중			

일본 정부는 1952년 4월 19일 법무부 민사국장의 ‘평화조약 발효에 따른 한국인·타이완인 등에 관한 국적 및 호적 사무 처리에 관하여’라는 통지를 근거로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일본 국적을 일괄적으로 ‘박탈’하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렇게 국적이 ‘박탈’된 한국인 전사자 신상자료를 야스쿠니신사에 제공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원호법(이하 원호법)과 은급법 등 보상에서는 국적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문제는 유족이 합사 철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 동 소송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 합사 철폐 소송은 일본인 유족을 포함하여 5건이 제기되었는데 그 개요는 〈표 2〉와 같다.

5건의 소송에서 원고는 합사 철폐와 합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다. 도쿄 소송 1(2001. 6)은 야스쿠니신사 합사 철폐뿐 아니라 강제동원 피해자의 ‘생사 확인, 유골 반환, 미불금과 군사우편저금 반환, BC급

전범과 시베리아 억류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포함한 소송이었다. 도쿄 소송 2(2007. 2)에는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생존자 1명¹⁰⁾이 원고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오사카 소송의 경우, 타이완 유족 1명도 원고로 참가했었으나 친족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소송을 철회하였다. 도쿄 소송 3(2010. 10)은 일본 정부가 유족에게 정식으로 전사를 통보하고 유골을 반환할 것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합사 철폐 소송 3건은 대법원에서 기각되었고, 1건은 고등법원 기각 후 상고를 하지 않아 재판이 종료되었다. 도쿄 소송 3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 쟁점

한국인 무단합사 문제는 야스쿠니신사 합사 철폐 소송을 통해 법적인 다툼을 하고 있는데, 쟁점별로 원고의 주장과 사법부의 판결의 개요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첫째, 한국인 피해자가 침해당한 인격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다. 도쿄 소송 2에서 원고는 가족을 자기 의사에 반하는 종교적 방법으로 위령을 받지 않을 이익이 침해당했는데, 이것은 개인의 사적 영역을 문제로 삼는 사생활권이 아니라 “일본국에 의한 조선 지배 및 피항소인 야스쿠니신사가 그 정신적 지주로 행한 역할 등 역사적 사실 및 동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가해와 피해의 구조를 요소

10) 야스쿠니신사는 전쟁에서 사망한 일본인 군인과 군속 등을 합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 산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2006. 12. 30 현재)에 따르면 생존자로 야스쿠니신사의 합사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은 60명에 이른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신사에 제공한 자료에는 사망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살아있었던 사람들이다. 생존자 합사에 대해 야스쿠니신사는 생존한 사람은 처음부터 초혼·합사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영생부에서 이름을 삭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영생부가 종교 의식에 사용되는 명부이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거부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 답변서, 2006. 11. 20.

〈표 3〉 야스쿠니신사 합사 소송 쟁점 개요

구분	사안	원고 주장	피고의 주장과 사법부 판결
1	종교적 인격권	자신의 방법으로 추모하는 권리를 침해 당하였음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이익이 아니며, 합사는 종교적 교의에 관한 문제로 법률 로 판단할 대상이 아님
2	경애 · 추모 인격권	가족적이고 인격적인 유대 가운데 친족 을 경애·추모하는 권리를 침해당하였음	종교 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불쾌한 감정 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법적 이익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야스쿠니신사 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3	민족적 인격권	친족이 자신을 침략한 국가 고유의 종교 에 의해 침략한 국가에 충성을 다한 자로 모셔지고 있는 것은 피해 민족으로서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원 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아짐 * 민족적 인격권이란, 누구라도 자기가 속한 민족의 일원으로 그 민족 고유의 문화, 풍습, 전통 등을 자신의 생활방식 으로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권리(도 쿄 소송 3, 2013, 10, 22)	법적 이익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합사 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낮아졌다고 볼 수 없음
4	일본 정부 개입	국가가 특정의 종교단체에 전몰자의 개 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의 정교분 리 원칙에 반함	합사는 야스쿠니신사의 판단에 의한 것 으로 일본 정부가 전몰자 정보를 제공한 것은 일반적인 행정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

로 하는 특수한 인격권¹¹⁾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식민지 피해라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한 것은 1988년 야마구치 호국신사 자위대원 합사 소송¹²⁾에 대한 일본 대법원의 판결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다. 1988년 6월 1일 대법원은 상기 소송 판결에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타자의 신앙에 기초한 행위에 대해 관용적이어야 한다며 종교상의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

11) 東京高等裁判所, 2011, 「平成 23年(ネ) 第5515号 平成 25年 10月 23日 判決言 判決要旨」.

12) 1968년 1월 12일 순직한 자위대원을 자위대원 OB조직이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야마구치 현 호국신사에 합사한 것에 대해, 유족(부인)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합사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하였다.

았다. 즉 타자의 종교 행위로 인해 감정을 상하거나 불쾌감 혹은 혐오감을 갖는 것은 법으로 보호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쿄고등법원(2013. 10)은 1988년 대법원 판결(‘종교적 관용’)을 내세워 한국인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를 부정하였다. 도쿄지방법원(2011. 7)도 “한국 국적을 가진 원고들이 식민지 시대에 일본국에 징병·징용되어 제2차 세계대전의 전장에 가 사망한 자의 유족임을 감안할 때 피고 야스쿠니신사에 의한 본건 합사 행위 등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역사인식 등을 전제로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다”¹³⁾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1988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한국인 유족이 종교적인 문제로서가 아니라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적 역할과 역사인식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음에 불구하고 사법부는 종교의 문제를 내세워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둘째, 일본 정부가 한국인 야스쿠니신사 합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문제다. 일본 정부는 야스쿠니신사에 한국인 전사자 신상자료를 제공한 것에 대해, 일반적인 행정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합사는 야스쿠니신사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오사카고등법원은 2010년 12월 “국가가 개인정보를 신사 측에 제공한 것은 종교 행위의 원조·조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합사에 국가의 협력이 불가피했다고까지 얘기할 수 없으나 합사의 원활한 실행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결하였다.¹⁴⁾ 앞에서 기술했듯이, 선행연구를 통해 일본 정부의 협력 없이는 한국인의 야스쿠니신사 합사가 불가능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셋째,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강제 동원된 한국인 합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신사에 전사자 신상자료를 제공한 것

13) 남상구, 2014, 앞의 글, 274쪽.

14) 大阪高等裁判所, 「平成 21年(ネ) 第792号 霊壘簿からの氏名抹消等請求控訴事件」の判決(2010. 12. 21).

에 대해 도쿄고등법원은 “전후처리 문제의 하나로 당시 국회 답변에서 찾을 수 있듯이 전쟁에서 순직한 자 또는 그 유족이 피항소인 야스쿠니신사 합사를 바라고 있었다고 충분히 믿을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던 상황에서”¹⁵⁾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유족이 야스쿠니신사 합사를 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도쿄 소송 3 소장에서 “일본의 침략전쟁에 의해 사랑하는 가족을 강제적으로 빼앗겨 전사를 당한 고통을 맞보며 고통스러운 인생을 강요당한 원고들에게, 그 침략전쟁의 정신적 지주이자 침략자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사랑하는 아버지·형제가 합사된 것은 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¹⁶⁾라고 야스쿠니신사 합사를 비판하였다.

3_연구 성과와 과제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한국인 숫자, 합사 범위, 합사 경위, 합사자 명부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사실¹⁷⁾만이 알려졌을 뿐 체계적인 연구는 없었다. 가장 큰 원인은 야스쿠니신사 합사자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와 종교적 이유라는 명목으로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A급 전범합사 문제와 일본 총리의 참배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한국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1년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을 계기로 한국인 합사 문제에 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합사 문제에 관한 연구로는 2001년 8월 13일 개최된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한국인 합사 무엇이 문제인가?’

15) 東京高等裁判所, 「平成 23年(ネ) 第5515号 平成 25年 10月 23日 判決言渡 判決要旨」(2013. 10. 23).

16)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 「訴狀」(2013. 10. 22), 41쪽

17) 國立國會圖書館調查立法考査局, 1976, 『靖國神社問題資料集(調査資料: 76-2)』에는 1976년 한국인 합사자 수가 20,636명이라는 사실과 개략적인 야스쿠니신사 합사 경위가 기술되었으며, 『도쿄신문[東京新聞]』, 1995. 8. 26에는 한국인 합사자 수가 21,181명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라는 공청회 자료집, 한국인의 합사 경위를 조사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책임자: 남상구)의 『진상조사보고서(VII-1):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합사 경위 및 합사자 명부 조사』(2007), 남상구의 「한국·한국인과 야스쿠니 신사 문제」(『한일관계사연구』 제35집, 2010), 식민지기 한국인 합사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노기 가오리[野木香里]의 「야스쿠니신사의 한국인 합사에 관한 연구」(『2008년도 동북아역사재단 국내외 신진연구자 육성 사업 연구결과보고서』, 2009), 장신의 「일제하 조선에서 야스쿠니신사의 표상과 조선인 합사자」(『역사문제연구』 통권25호, 2011)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야스쿠니신사에 한국인이 합사된 경위와 일본 정부의 관여, 합사 대상과 숫자, 명단 등이 밝혀졌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진상보고서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병행한 결과 생존자 60명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카자와 시로[赤澤史朗]의 『戦没者合祀と靖国神社』(吉川弘文館, 2015)는 일본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新編靖国神社問題資料集』 등을 참고로 합사 기준의 변천을 검토했는데, 이는 한국인 합사 문제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야스쿠니신사 합사 철폐 소송에 대해서는 1차 도쿄 소송의 소송 경과, 원고와 일본 정부 및 시민단체의 주장을 비교·검토한 김광열의 「전쟁 책임에 대한 현대 일본 사회의 인식-야스쿠니신사 한국인 합사 문제를 중심으로」(『근현대 일본의 한국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2009), 제2차 도쿄 소송 1심과 도쿄지방법원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강경민의 「야스쿠니 소송의 경과와 쟁점」(『역사와 책임』 제3호, 2012)이 있다. 상기 연구는 재판의 쟁점을 원고 측의 논리에 따라 정리하고 일본 사법부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편 의 『야스쿠니신사에 묻는다-야스쿠니신사 무단합사 철폐 소송』(2014)은 도쿄 소송 2와 관련하여 도쿄고등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일본 법정에서 한국인 유족과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진술한 적은 있었으나 한국 측 견해를 종합적으로 일본 재판부에 전달한 적은 처음이었다. 의견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야스쿠니신사는 침략신사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제2의 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무시

하고 있는 야스쿠니신사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의견서가 비록 일본 재판부의 판결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야스쿠니신사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연구 성과와 논의를 총괄하여 일본 법원에 제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동서에서 주목할 연구는 일본 재판부의 판결 논거인 '종교적 관용론'의 문제점을 법리에 중점을 두면서 다각적으로 비판한 이석태의 글과, 한국의 전통적인 추도 문화라는 관점에서 야스쿠니신사 합사가 한국인 유족의 추모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지영임의 글이다. 지영임의 연구는 야스쿠니신사 합사로 인해 유족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민속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고 할 수 있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문제는 동 신사가 영생부에서 한국인들의 이름을 삭제하고 더 이상 한국인들을 야스쿠니신사의 신으로 모시지 않아야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야스쿠니신사는 종교법인의 외피를 쓰고 종교적 교의를 내세워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야스쿠니신사가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¹⁸⁾

앞으로 야스쿠니신사와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를 정치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인 합사 문제를 '제2의 가해'와 탈식민지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야스쿠니신사의 한국인 합사가 식민지기 전시동원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후 유족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에 대한 연구도 과제다. 그리고 야스쿠니신사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약 28,000명의 타이완인도 합사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타이완인이 어떤 경위로 합사되었는지에 대한 비교연구는 한국인 합사 문제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최근 타이완에서 야스쿠

18) 2004년 당시 A급 전범을 야스쿠니신사에서 분리하자는 의견에 대해 아베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합사 취하를 요청하면 헌법에 정해진 신교(信教)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발언하였다. 『산케이신문[産経新聞]』, 2004. 4. 11.

19) 타이완인의 야스쿠니신사 합사 문제를 다룬 연구로는 위나이밍, 2008, 「타이완의 야스쿠니신사 문제: 역사 인식과 충돌」, 『동북아역사논총』 제28호가 있다.

니신사 합사 문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타이완과의 공동연구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Ⅲ. 총리 참배 문제

1_역사적 경위와 현황

먼저 전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현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 직후부터 재개되었으나 이것이 외교 문제가 된 것은 1985년 8월 15일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가 공식 참배를 내걸고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면서부터였다. 나카소네 총리의 참배에 대한 비판의 근거는 야스쿠니신사에 A급 전범이 합사되었다

<표 4> 전후 일본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 현황

이름	재임 기간	참배 횟수	참배 일자	비고
히가시쿠니노미야 나루히코[東久邇稔彦]	1945. 8. 17~1945. 10. 9	1	1945. 8. 18	
시데하라 기쥬로 [幣原喜重郎]	1945. 10. 9~1946. 5. 22	2	1945. 10. 23, 11. 20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1946. 5. 22~1947. 5. 24	0		
가타야마 데쓰[片山哲]	1947. 5. 24~1948. 3. 10	0		
아시다 히토시[芦田均]	1948. 3. 10~1948. 10. 15	0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1948. 10. 15~1954. 12. 10	5	1951. 10. 18, 1952. 10. 17, 1953. 4. 23, 10. 24, 1954. 4. 24	
하토야마 이치로 [鳩山一郎]	1954. 12. 10~1956. 12. 23	0		

이름	재임 기간	참배 횟수	참배 일자	비고
이시바시 탄잔 [石橋澁山]	1956. 12. 23~1957. 2. 25	0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1957. 1. 31~1957. 2. 25	0		임시 대표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1957. 2. 25~1960. 7. 19	2	1957. 4. 24, 1958. 10. 21	
이케다 하야토 [池田勇人]	1960. 7. 19~1964. 11. 9	5	1960. 10. 10, 1961. 6. 18, 11. 15, 1962. 11. 4, 1963. 9. 22	
사토 에이사쿠 [佐藤栄作]	1964. 11. 9~1972. 7. 7	11	1965. 4. 21, 1966. 4. 21, 1967. 4. 22, 1968. 4. 23, 1969. 4. 22, 10. 18, 1970. 4. 22, 10. 17, 1971. 4. 22, 10. 19, 1972. 4. 22	
다나카 가쿠에이 [田中角栄]	1972. 7. 7~1974. 12. 9	5	1972. 7. 8, 1973. 4. 23, 10. 18, 1974. 4. 23, 10. 19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1974. 12. 9~1976. 12. 24	3	1975. 4. 22, 8. 15, 1976. 10. 18	사적 참배임을 처음 명시
후쿠다 다케오 [福田赳夫]	1976. 12. 4~1978. 12. 7	4	1977. 4. 21, 1978. 4. 21, 8. 15, 10. 18	
오히라 마사요시 [大平正芳]	1978. 12. 7~1980. 6. 12	3	1979. 4. 21, 10. 18, 1980. 4. 21	
이토 마사요시 [伊東正義]	1980. 6. 12~1980. 7. 17	0		임시 대표
스즈키 겐코 [鈴木善幸]	1980. 7. 17~1982. 11. 27	9	1980. 8. 15, 10. 18, 11. 21, 1981. 4. 21, 8. 15, 10. 17, 1982. 4. 21, 8. 15, 10. 18	
나카소네 야스히로 [中曾根康弘]	1982. 11. 27~1987. 11. 6	10	1983. 4. 21, 8. 15, 10. 18, 1984. 1. 5, 4. 21, 8. 15, 10. 18, 1985. 4. 22, 8. 15	85. 8. 15 공식 참배임을 명시
하시모토 류타로 [橋本龍太郎]	1996. 1. 11~1997. 9. 11	1	1996. 7. 29	사적 참배임을 명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小泉純一郎]	2001. 4. 26~2006. 9. 26	6	2001. 8. 13, 2002. 4. 21, 2003. 1. 14, 2004. 1. 1, 2005. 10. 17, 2006. 8. 15	
아베 신조[安倍晋三]	2013. 12. 26~현재	1	2013. 12. 26	

는 것이었는데, A급 전범이 합사된 것은 1978년 10월 17일이고 이러한 사실이 여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1979년 4월이었다. A급 전범들의 합사 후에도 20회에 걸친 총리의 참배가 있었으나 나카소네 총리의 공식 참배 전까지는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일본 보수파는 한국과 중국이 야스쿠니 신사 문제를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반발하자 나카소네 총리는 1986년부터는 “A급 전범 합사는 침략당한 상대방 국민의 감정을 자극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참배를 중단하였다. 1985년 8월 15일 나카소네 총리의 공식 참배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견해를 발표하지 않았다. 동년 10월 29일 이원경 외무장관이 일본인 기자단과 가진 회견에서 “우리로서는 한일 간의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더욱이 근린 제국에 대해 불필요하게 바람직하지 않은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일본 측이 대처할 것을 희망한다”라고 발언하는 데 그쳤다.²⁰⁾ 하지만 이원경 외무장관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야스쿠니신사 문제를 역사인식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총리 참배가 다시 문제가 된 것은 고이즈미 총리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재임기간 내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면서였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인한 외교 갈등을 해결한 것은 그 후임인 아베 총리였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음으로써 냉각되었던 한일, 중일 간 외교관계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그는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함으로써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아베 총리 참배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친구이지만 일본 지도자가 주변 국가와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한 것에 실망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국 정부는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역사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 주변 국가와의 갈등 관리라는 차원에서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할 수 있다.²¹⁾

20)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夕刊)』, 1985. 10. 29.

21) 야스쿠니신사와 미일관계를 다룬 연구로는 마크 셸든, 2008, 「전쟁과 역사의 기억 그리고 아태지역의 미래 -미일과 야스쿠니 문제」, 『동북아역사논총』 제28호.

한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계기로 2005년 10월 20일 한국, 타이완, 일본, 오키나와 4개 지역의 야스쿠니신사 관련 단체의 대표단이 타이완에서 ‘야스쿠니 반대 공동행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국제공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²²⁾ 고이즈미와 아베 총리 야스쿠니신사 위헌 참배 소송에는 한국과 타이완의 유족과 활동가들도 원고로 참여하였다.

2_쟁점

총리 참배 문제의 쟁점은 첫째 총리 참배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국가 지도자가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용인되는 일인가하는 점이다.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노예제도를 유지하려고 한 남군(南軍) 병사도 모셔져 있지만, 대통령은 노예제도를 긍정해서 (참배하러) 가는 것은 아니다. 국가를 위해 돌아가신 숭고한 영혼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²³⁾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야스쿠니신사를 알링턴과 같은 전사자 추도시설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총리 참배를 지지하는 세력은 2012년 8월 15일 다카이치 사니에[高市早苗] 총무상이 “어떻게 위령하고 참배하느냐는 각 나라의 국민의 문제”라며 “외교 문제화할 일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듯이,²⁴⁾ 총리 참배는 외교 문제가 아니라 내정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8월 15일 일본 정부가 주최하는 전국전몰자추도식에서 총리가 전사자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가 자국의 전사자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하고 추도하는 것 자체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야스쿠니신사

22) 야스쿠니신사 반대 운동의 성과에 대한 자료로는 2014년 8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일본의 우경화와 야스쿠니 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회의의 자료집, 2014, 『동아시아 평화와 야스쿠니신사』가 있다.

23) 중의원 예산위원회, 2013. 4. 13.

24) 『연합뉴스』, 2015. 8. 15.

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A급 전범 합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A급 전범은 포츠담선언에 기초하여 일본의 침략전쟁을 심판한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서 침략전쟁을 주도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일본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제11조)에서 도쿄재판의 판결을 수락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하였다. A급 전범도 신으로 모시고 있는 곳에 정치적 상징성을 갖고 있는 총리나 각료가 참배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것으로, 일본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1985년 5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이 나치 SS 친위대 대원도 매장된 독일 비트부르크 묘지를 참배했다가 미국 의회는 물론 유럽의 거센 비판을 받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지도자가 전범이 포함된 시설을 방문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용인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총리 참배가 일본 헌법 20조²⁵⁾와 89조에 규정된 종교 활동에 해당되는지, 즉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을 위배했는지 여부다.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그것이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참배 위헌소송이 제기되어 왔는데, 그 개요는 <표 5>와 같다.

총리 참배를 헌법의 정교분리원칙과 연계해 비판하는 주장은 1985년부터 일본 국내에서 제기되었다. 하지만 2001년 고이즈미 총리 참배 당시에는 위헌 여부보다도 총리 참배로 인한 외교문제가 쟁점이 되었다.²⁶⁾ 일본 국내적으로도 총리 참배가 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²⁷⁾ nihonkeizai

25) 일본 헌법 제20조를 보면, '1항 종교의 자유는 누구에게라도 이것을 보장한다. 어떤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 특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2항 누구라도 종교상의 행위, 축전(祝典),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당하지 않는다. 3항 국가 및 기관은 종교 교육 기타 어떤 종교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26) 浅野健一, 2007, 「靖国問題と日本のマスコミ動向」, Anti-Yasukuni U.S Campaign 자료집 『인권, 문명, 평화의 눈으로 야스쿠니신사를 본다』.

27) 2013년 12월 26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요미우리신문(2014. 1. 13)은 참배를 평가한다 45%, 평가하지 않는다 47%, 아시히신문[朝日新聞](2014. 1. 28)은 찬성 41%, 반대 46%로 참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표 5〉 야스쿠니신사 관련 소송과 판결 개요

	소송명 (제소 연월)	판단(정교분리 위헌 여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1	나카소네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 위헌 소송			
	① 하리마[播磨](1985. 11)	기각(1990. 3)	기각 확정(1993. 3)	
	② 간사이[關西](1985. 12)	기각(1989. 11)	기각/위헌소지 강함 확정(1992. 7)	
	③ 규슈[九州](1986. 6) - 피고: 나카소네, 국가	기각(1988. 2) 기각(1989. 12)	기각 확정(1988. 11), 기각/계속하면 위헌 확정(1992. 2)	
2	고이즈미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 위헌 소송			
	① 규슈[九州] · 야마구치[山口] (2001. 11)	기각/위헌 확정 (2004. 4)		
	② 시고쿠[四国](2001. 11)	기각(2004. 3)	기각(2005. 10)	기각(2006. 6)
	③ 오사카[大阪](2001. 11)	기각(2004. 2) 기각(2004. 5)	기각(2005. 7) 기각/위헌 확정 (2005. 9)	기각(2006. 6)
	④ 도쿄[東京](2001. 12)	기각(2005. 4)	기각(2005. 9)	기각(2006. 3)
	⑤ 지바[千葉](2001. 12)	기각(2004. 11)	기각(2005. 9)	기각(2006. 6)
	⑥ 오키나와[沖縄](2002. 9)	기각(2005. 1)	기각(2005. 10)	기각(2007. 4)
3	아베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 위헌 소송			
	① 간사이[關西](2014. 4)	소송 진행 중		
	② 도쿄[東京](2014. 4)	소송 진행 중		

신문[日本經濟新聞]이 2006년 7월 20일 조간 1면에 “쇼와 천황, A급 전범 야스쿠니 합사에 불쾌감”이라는 제목으로 궁내청장관이었던 도미타 도모히코[福田朝彦]의 메모를 공개한 것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의견보다 높았다.

3_연구 성과와 과제

총리의 참배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전후 총리의 참배 문제를 역사적 흐름에 따라 검토한 노길호의 『일본의 굴레 야스쿠니신사』(문창출판, 1996), 총리 참배 문제를 신국가주의(neo-nationalism)이라는 일본의 우경화 경향과 침략전쟁의 망각이라는 역사인식의 문제와 결부시켜 검토한 이규수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논란과 동아시아 근대사 인식」(『사람』 제26호, 2006)이 있다. 그리고 총리 참배에 대한 일본 내 견해 차이를 민족주의와 연계하여 검토한 곽진오의 「글로벌화와 일본 민족주의: 야스쿠니신사의 사례를 중심으로」(『일본학보』 제68집, 2006), 총리 참배와 유족회와의 정치적 관계에 주목한 이상훈의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소고」(『일본연구』 제43호, 2010), 고이즈미 총리 참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후쿠오카 지방법원 판결(2004. 4. 7)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조진구의 「일본의 과거 역사인식과 야스쿠니신사 문제」(『한국과 국제정치』 제21권 제4호<통권 제51호>, 2005)가 있다. 상기 연구들은 일본에서의 야스쿠니신사 연구 성과를 적극 수용하면서 야스쿠니신사는 침략신사라는 점을 중심으로 총리 참배에 대한 비판 논리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총리 참배 문제를 한국적인 시각에서 비판한 논문으로는 박진우의 「한국에서 본 야스쿠니 문제」(『일본역사연구』 제30집, 2009)가 있다. 박진우는 총리 참배 문제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1985년 나카소네 총리 참배에 대해 한국이 비판한 것을 민주화운동으로 궁지에 몰렸던 전두환 정권이 상황 돌파를 위해 반일 내서널리즘을 이용한 것이라고 분석한 점이 독창적이다. 하지만 한국이 나카소네 총리 참배에 대해 비판을 한 것은 10월 이원경 외교부장관이 일본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한 것이 처음으로, 전두환 정부가 나카소네 총리의 참배를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박진우는 A급 전범 합사 문제를 천황의 전쟁 책임 문제를 상기시킨다는 점과 연계해 검토하고 있는데, 일본 천황제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야스쿠니신사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돋보인다.

총리 참배에 관한 연구는 총리 참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 졌다. 일본의 연구 성과에 의존하다 보니 한국적인 시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일본적인 시각이 아닌 한국적인 시각에서 총리 참배를 비판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야스쿠니신사 자체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연구는 일본에서의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총리 참배 문제를 논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총리 참배가 추진된 정치적 배경과 이에 대한 한국과 주변 국가의 비판이 시기별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에 대한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V. 새로운 전사자 추도시설 건립 문제

1_역사적 경위와 현황

전후 야스쿠니신사가 종교법인으로 바뀌면서 국가와의 공적인 관계는 단절되었다. 이로 인해 공적인 추도시설을 갖지 못하게 된 일본에서는 새로운 국립 전사자 추도시설을 건립하자는 주장이 1952년 강화조약 발표 직후부터 제기되었다.²⁸⁾ 이러한 흐름 속에서 후생성은 1959년 신원불명의 전사자 유골을 안치

28) 새로운 추도시설을 건립하는 논리는 도카노 사토코(戸叶 里子) 사회당 의원이 국회에서 “이대로는 야스쿠니신사에 국비를 지출하는 것은 당연히 헌법 위반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유족을 위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외국에 있는 것과 같은 무명전사의 묘지를 만들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가”(25회 중의원 특별위원회, 1956. 11. 18)라고 발언한 것에 나타나 있듯이, 국립 추도시설이 필요한데 야스쿠니신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하고 추도하기 위한 시설로 지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을 건립하였다. 하지만 이 시설은 야스쿠니신사 지지 세력의 반대²⁹⁾로 일본을 대표하는 공적인 전사자 추도시설로는 자리매김하지 못하였다.³⁰⁾ 야스쿠니신사와 지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을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1956~1974년까지는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에 의해 단절된 야스쿠니신사와 국가의 공적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야스쿠니신사 국영화운동이 있었으나 사회당을 비롯한 야당, 신도계열을 제외한 종교계(신흥종교단체), 진보적 시민

<표 6> 지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과 야스쿠니신사 비교

	지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	야스쿠니신사
건립 연도	1959년	1869년
대상	해외에서 사망한 군인·군속 등 유골 중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유골 358,260위	1853년 이후 내전과 침략전쟁에서 사망한 군인·군속·준군속 등 약 246만 명(A급 전범 14명 포함)
목적	유골 안치·위령/추도	전몰자 현창·위령
성격	국가시설(후생노동성, 환경성) * 일본 정부는 국가를 대표하는 공적인 추도시설로 평가하지 않음	종교법인
주요 행사	5월 후생노동성 주최 배례식(유골 안치), 10월 위령제	4월 춘계예대제, 8·15 종전기념일, 10월 추계예대제
문제점	총리·각료 참배에 대한 비판 없음	총리·각료 참배는 침략전쟁 정당화
공통점	국가를 위해 희생된 군인·군속을 국가가 추도하는 것은 당연(의무)하다는 것이 전제로, 기본적으로 민간인 희생자는 대상이 아님	

29) 새로운 추도시설 건립 반대 논리는 아이자와 간[逢澤寛] 자민당 의원이 국회에서 “야스쿠니신사를 국가가 관리하지 않게 되면 그 중심은 무명전사의 묘지로 옮겨져, 한 쪽은 국가가 관리해 집중적인 추도가 가능하게 된다. 다른 한 쪽은 참배자도 점차 줄어들 것이다. 지금은 육친이 있으니 어떻게든 유지가 되겠지만 나중에는 풀이 무성해질 것이다”(25회 중위원 특별위원회, 1956. 11. 28)라고 발언한 것에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듯이, 새로운 추도시설은 야스쿠니신사의 위상을 저하시킨다는 것이었다.

30) 전후 일본에서의 전사자 추도시설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연구로는 남상구, 2005, 「전후 일본에 있어서의 전몰자 추도시설을 둘러싼 대립: 야스쿠니신사와 지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학회』 제22집이 있다.

단체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야스쿠니신사 국영화운동은 결과적으로 국가가 종교법인 야스쿠니신사와 공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론화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추도시설 건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8월 고이즈미 총리 자신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야스쿠니신사와 지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국내외 모든 분들이 거리낌없이 추도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다. 2001년 12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은 ‘추도·평화 염원을 위한 기념비 등 시설 문제를 생각하는 간담회’를 설치하고, 2002년 12월 무종교의 국립 추도시설 건설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005년 11월에는 자민·민주·공명 3당 의원 약 130명이 새로운 국립 전몰자 추도시설 건설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국립 추도시설 건설을 생각하는 모임’을 결성하였다. 민주당은 2009년 8월 중의원선거에서 ‘아시아 중심 외교’ 표방의 일환으로 ‘국립 추도시설’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권을 잡았다. 하지만 새로운 국립 추도시설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은 없었다. 일본 정부가 국가 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지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을 확대하고 그 위상을 국가의 공적인 전사자 추도시설로 하지는 방안도 제기되었으나 제안에 그치고 있다.

2013년 10월 3일에는 미일 안전보장협의회위원회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던 존 케리(John Kerry) 미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Chuck Hagel) 국방장관이 지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을 참배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야스쿠니신사 총리 참배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새로운 전사자 추도시설 건립 문제는 총리와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외교 갈등을 초래하고, 일본 정부가 안보관련 법안을 개정함에 따라 전쟁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부터 다시 대두되고 있다.³¹⁾

31) “(戦争のリアル: 3)近づく靖国と自衛官 戦後70年・第2部”, “戦闘での死, 定まら

2_쟁점

새로운 전사자 추도시설 건립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대립구조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새로운 추도시설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국가에 의한 전사자 추도시설이 없다는 것 자체가 국제적 관점에서 볼 때 비정상이고, 천황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증지로 발생한 천황의 전사자 추도시설 참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

<표 7> 새로운 추도시설을 둘러싼 대립 구조

	새로운 추도시설 건설	지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 위상 강화	야스쿠니신사 국가 관리 (A급 전범 분사)
세 력	민주당, 시민당, 공명당, 공 산당, 자민당 일부	요미우리신문	자민당 일부, 유족회 일부
지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 추도시설이 없는 것 자체가 국제적 관점에서 볼 때 비정상적 상황임 · 천황이 참배 가능한 추도시설 필요 · 새로운 전사자 발생 시, 추도시설 역할 수행 · 야스쿠니 총리 참배로 인한 외교적 갈등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설의 확대를 통한 조속한 추진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급 전범 분사 후 야스쿠니를 비종교법인으로 만들어 국가가 관리 · 야스쿠니의 추도시설로서의 역사성과 유족의 감정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시설은 야스쿠니 및 지도리가후치 묘원과 다른 성격의 시설로 공존이 가능 		
세 력	자민당, 유족회, 야스쿠니신사, 신사 본청, 우익단체, 일 부 평화운동 단체(관계자)		자민당, 유족회
반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중심적 추도시설은 야스쿠니로 새로운 추도시설이나 지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 확대는 야스쿠니의 존재 의미를 크게 훼손 ·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평화운동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급 전범 분리 반대 - 교리상 불가능 - 식민지 합사자 문제와 연계 - 도쿄재판을 인정하는 결과 초래

고,³²⁾ 향후 자위대가 전쟁 지역에 파견되어 사망할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적인 추도시설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³³⁾을 내세운다. 한국이나 중국은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인한 외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추도시설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으로³⁴⁾ 국립 추도시설 건립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추도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측은 야스쿠니신사의 전사자 추도시설로서의 역사성과 유족의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운다. 이들은 야스쿠니신사의 공격 성격을 확보하기 위해 A급 전범을 분리 후 동 신사를 비종교 법인으로 만들어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A급 전범만을 야스쿠니신사에서 분리하자는 제안에 대해 야스쿠니신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분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본래 교의(敎義)와 교전(敎典)을 갖고 있지 않는 신도에서는 신앙상의 신령(神靈)관념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예전부터 분령(分靈)을 해서 다른 신사에 모시는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분령이라고 해도 본래의 신령도 분령한 신령도 각자가 전 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스쿠니신사는 246만 6천 여 주의 신령을 모시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신령을 분령한다고 해도 본래의 신령은 존재합니다”³⁵⁾라고 분사론과 합사취하

32)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는 2009년 8월 12일 기자회견에서 “천황폐해도 야스쿠니신사는 참배하지 않는다. 매우 괴로운 심정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폐하가 마음 편히 참배하실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산케이신문』, 2009. 8. 12, 23: 24) 하는 등 천황이 참배 가능한 시설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하였다.

33) 일본의 평화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와 관계자들 일부는 새로운 추도시설이 새로운 전사자 추도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여 새로운 추도시설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34) 전사자 추도시설로 적당한 장소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아사히신문』, 2006. 5. 2)를 보면 야스쿠니신사(37%), A급 전범을 제외한 야스쿠니신사(19%), 국립시설(19%), 지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15%), 기타(10%) 순이었다.

35) 야스쿠니신사 사무소 의견서, 2004. 3.

자체가 신도의 교리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민당은 A급 전범 분사 문제는 신사 측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정부가 이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야스쿠니신사는 향후 자위대원이 전사할 경우엔 합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³⁶⁾

A급 전범 분사론에 대해서는 A급 전범을 야스쿠니신사에서 분리해도 야스쿠니신사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시설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나 언론이 먼저 A급 전범을 분리하는 것이 마치 야스쿠니신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인 것처럼 언급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3 연구 성과와 과제

일본에서의 전사자 추도와 국립 추도시설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연구로는 지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을 중심으로 전후 일본에 있어서 추도시설을 둘러싼 대립을 다룬 남상구의 「전후 일본에 있어서의 전몰자 추도시설을 둘러싼 대립: 야스쿠니신사와 치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을 중심으로」(『한일관계사학회』 제22집, 2005)가 있다. 새로운 국립 추도시설을 검토한 연구로는 ‘추도·평화 염원을 위한 기념비 등 시설 문제를 생각하는 간담회’ 보고서가 자위대 해외 파견의 원인이 되는 국제공헌 활동으로 인한 사망자도 그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지적한 광진오의 「글로벌화와 일본 민족주의: 야스쿠니신사의 사례를 중심으로」(『일본학보』 제68집, 2006), 새로운 국립추도시설 건설에 대한 일본 종교계의 의견을 검토한 박규태의 「야스쿠니의 신화: 현대일본의 종교와 정치」(『종교연구』 제50호, 2008)가 있다. 최영호는 2009년 12월 4일 고려대학교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가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대체 추도시설 건립 문제를 검토하고,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가 일본 사회 쟁점으로 부상하게 되거

36) 『교도통신[共同通信]』, 2015. 8. 13.

나 외교적 차원에서 무종교적 참배의 필요성이 요구될 경우 일본 정부가 국립 추도시설 건설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였다.³⁷⁾

일본의 새로운 전사자 추도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야스쿠니신사 문제로 인한 외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에 따른 전사자 발생 시 공적 추도시설로서의 역할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적인 전사자 추도시설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근대국가의 보편적인 문제라는 관점에서 근대국가와 전몰자 추도(시설)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야스쿠니신사 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동북아역사재단

V. 역사인식 문제

1_역사적 경위와 현황

야스쿠니신사는 전전에는 일본의 침략전쟁을 성전(聖戰)으로 미화하고, 전사자를 천황과 국가를 위해 죽은 영령으로 위령·현창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전사자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패전 이후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1978년 10월 A급 전범 합사와 1986년 다시 개관한 부속 전시관인 유슈칸[遊就館]의 전시내용이다.

야스쿠니신사는 1978년 10월 17일 A급 전범 14명을 ‘소화순난자(昭和殉難者)’라는 명목으로 합사하였다. 동 신사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발효 이후 일본 정부가 A급 전범을 일본 국내법상으로는 ‘공무사(公務死)’로 취급하여 은급

37) 최영호, 2009, 「21세기 일본정부의 야스쿠니 정책」, 고려대학교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야스쿠니의 역사적 재조명』.

법의 대상으로 한 점을 근거로 A급 전범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5년에는 야스쿠니신사 경내에 도쿄재판에서 재판관 중 유일하게 피고단 전원 무죄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펄 박사 현창비가 건립되는데, 야스쿠니신사의 침략전쟁에 대한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유슈칸은 청일전쟁에서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근대 일본의 모든 대외 침략전쟁을 일본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전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을 강제로 병합한 것도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일본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 태평양전쟁 이후 아시아 각국의 독립에 대해서는 일본의 공적이라고 직접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군의 눈부신 승리 이후였다”고 기술, 일본의 전쟁이 아시아 해방을 위한 전쟁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2001년 고이즈미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한일, 중일 간의 갈등을 고조시킨 것을 계기로 동 신사의 역사인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졌다. 2006년 9월 14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개최된 청문회에서 헨리 하이드(Henry Hyde) 위원장이 “우리 세대는 도쿄의 유슈칸이 일본의 젊은 세대에게 아시아에서 제2차 세계대전은 아시아와 태평양의 여러 민족을 서방제국주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시작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는 한국, 필리핀, 싱가포르, 솔로몬 군도를 방문하여 그들과 비참한 기억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일본의 황군이 해방자였다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 이 박물관에서 가르치고 있는 역사는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³⁸⁾고 발언한 것은 국제사회가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인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38) 미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청문회 자료집, 2006, 『JAPAN’S RELATIONSHIP WITH ITS NEIGHBORS: BACK TO THE FUTURE?』;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http://www.nahf.or.kr/data/야스쿠니%20미하원%20청문회.pdf>.

2_쟁점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인식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일본의 대외전쟁이 침략이었던가 아니면 일본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가라는 점이다. 일본 헌법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참화를 반성한다는 것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역사인식으로 평가받고 있는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 담화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친 것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였다. 아베 총리 담화 준비를 위한 21세기 구상 간담회 보고서도 1931년 이전의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조류였다는 것을 내세워 정당화했지만, 1931년 이후의 전쟁에 대해서는 침략이었다고 명기하고 있다. 아베 총리 담화도 침략이라고 명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1931년 이후의 전쟁에 대해서는 잘못된 전쟁임을 인정하고 반성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모든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이것을 일본의 자위자존을 위한 전쟁으로 정당화하는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인식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역사인식과 헌법의 이념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인식이 중학교 역사교과서(이쿠호샤[育鵬社], 자유샤[自由社]) 기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_연구 성과와 과제

1978년 10월 A급 전범 14명 합사와 1985년 8월 나카소네 총리 야스쿠니신사 공식 참배를 계기로 야스쿠니신사는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시설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야스쿠니신사가 구체적으로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려고 하는지, 이러한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해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다. 장세윤의 「일본 야스쿠니신사 유슈칸의 한국 관련 전시 내용 검토」(『한국근현대사연구』 제45집, 2008)는 유슈칸의 한국 관련 전시를 중심으로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인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전후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인식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을 축으로 하여 검토한 연구로는 아카자와의 『靖国神社－せめぎあう〈戦没者追悼〉のゆくえ』(岩波書店, 2005)가 있다. 동 연구는 야스쿠니신사 기관지 등을 통해 동 신사가 기본적으로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시설이나 한시적으로 평화주의를 반영하기도 했었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인식 문제를 비판할 때는 A급 전범 합사 문제가 주로 거론되고 있는데, 한국 침략 과정에서 전사한 자들이 야스쿠니신사에 어떻게 합사되었는지를 검토한 연구로는 송경섭·김광열의 「開港期 朝鮮에서 死亡한 日本軍의 야스쿠니[靖國]神社 合祀: 江華島事件부터 清日戰爭까지」(『한일민족문제연구』 제24호, 2013)가 있다.

유슈칸의 전시내용과 그 변화를 통해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인식을 검토하고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는 동 신사의 역사인식의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자들이 한국 침략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야스쿠니신사가 조선에서의 강제동원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인식의 문제점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 우경화의 흐름 속에서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독일이 침략전쟁과 전사자 및 전쟁희생자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는 것도 야스쿠니신사 역사인식의 문제점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VI. 맺음말

야스쿠니신사 문제는 1985년 나카소네 총리의 공식 참배 이후 한일, 중일 간 외교현안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외교 과제다. 그리고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약 21,000명이 무단으로 합사되었고 유족이 '2차 피해'를 당하고 있

다는 점에서 식민지 청산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야스쿠니신사와 관련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인 무단합사, 총리 참배, 새로운 국립 추도시설, 역사인식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역사적 경위와 현황, 쟁점,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논리 전개에 편의를 위해 야스쿠니신사 문제를 4가지로 나누어 검토했으나 이 문제들은 서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총리 참배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인 무단합사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역사인식이 문제이고, 한국인 무단합사가 문제가 되는 큰 이유는 총리 참배와 역사인식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국립추도시설 건립 문제도 일본의 침략전쟁과 전사자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야스쿠니신사와 일본 정부가 침략전쟁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 무단합사가 가능했던 것도 피해자가 아닌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일본 국가의 논리를 앞세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해결방안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일본의 침략전쟁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15년 8월 14일 발표된 아베 총리 담화는 1931년 만주사변 이전의 침략전쟁이 시대의 조류였다는 논리를 내세워 정당화하고 있다. 침략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사자에 대한 모독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왜곡된 역사인식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아베 담화는 야스쿠니신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베 담화에서 언급한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고 가족의 행복을 빌면서 전쟁터에서 산화한 분들”, 즉 일본의 전사자들을 ‘국가를 위한 죽음’으로 현창하는 시설이 야스쿠니신사다. 아베 담화의 역사인식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19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가 아니라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자국의 전사자를 현창하는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인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야스쿠니신사 문제의 쟁점은 식민지 지배를 비롯한 일본의 침략전쟁과 그로 인한 희생자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의 문제다. 자민당은 2015년 11

월 29일 총재 직속기구로 청일전쟁 이후의 역사를 검증하는 ‘역사를 배우고 미래를 생각하는 본부’를 설치하였다.³⁹⁾ 동 기구가 어떠한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자민당의 검증에 대한 재검증도 포함해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의 실태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야스쿠니신사 문제를 ‘제2의 가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야스쿠니신사 문제는 근대국가가 안고 있는 공적인 전사자 추도라는 보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식민지와 침략전쟁 피해라는 일본만의 특수한 문제이기도 하다. 식민지 청산과 유족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야스쿠니신사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유신 직후인 1869년(메이지 2년)에 건립된 시설로 일본이 근대국가 건설 과정과 침략전쟁에서 전사자 추도(위령)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전전과 전후를 관찰하는 역사인식이 무엇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연구의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적 시각에서 야스쿠니신사와 동 신사를 둘러싼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근대국가 일본의 성립과 침략전쟁에 동 신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연구를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뿐 아니라 야스쿠니신사 자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넓은 시야에서 야스쿠니신사 문제를 통찰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⁴⁰⁾

39) 『동아일보』, 2015. 11. 30.

40) 야스쿠니신사와 신도에 관한 연구로는 박규태, 2000, 「야스쿠니[靖國] 신사와 일본의 종교문화」, 『종교문화연구』 2권; 박진우, 2007, 「국가신도와 야스쿠니신사, 초혼사의 통합과정에 대한 재검토」, 『일본사상』 12권; 전성근, 2009,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와 문화 이데올로기 습합의 문제: 예대제(例大祭), 제식(祭式), 친배(親拜)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제30집이 있다. 그리고 2015년 5월 7일에 개최된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5, 『야스쿠니에 다가서다』에서 발표된 박규태, 「감정의 야스쿠니: 모노노아와레의 르상티망」; 조규현, 「야스쿠니신사 예대제와 봉납스모」; 박삼현, 「야스쿠니신산의 공간적 변용: 유흥의 공간에서 국체의 공간으로」; 김용철, 「야스쿠니신사 유수칸의 건립과 동시대 전쟁박물관으로의 성격 변화」는 야스쿠니신사 자체에 대한 연구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참고문헌

논문

- 강경민, 2012, 「야스쿠니 소송의 경과와 쟁점」, 『역사와 책임』 제3호.
- 곽진오, 2006, 「글로벌화와 일본 민족주의: 야스쿠니신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제68집.
- 김광열, 2009, 「전쟁 책임에 대한 현대 일본 사회의 인식-야스쿠니신사 한국인 합사 문제를 중심으로」, 함동주·김광열·임현순, 『근현대 일본의 한국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 남상구, 2005, 「전후 일본에 있어서의 전몰자 추도시설을 둘러싼 대립: 야스쿠니신사와 치도리카후치 전몰자 묘원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학회』 제22집.
- 남상구, 2006, 「야스쿠니신사 합사 문제에 관한 고찰」, 『일본사상』 제10호.
- 남상구, 2010, 「한국·한국인과 야스쿠니신사 문제」, 『한일관계사연구』 제35집.
- 노기 가오리, 2009, 「야스쿠니신사의 한국인 합사에 관한 연구」, 『2008년도 동북아역사재단 국내외 신진연구자 육성 사업 연구결과보고서』.
- 마크 셸든, 2008, 「전쟁과 역사의 기억 그리고 아태지역의 미래-미일과 야스쿠니 문제」, 『동북아역사논총』 제28호.
- 박규태, 2000, 「야스쿠니[靖國] 신사와 일본의 종교문화」, 『종교문화연구』 제2권.
- 박규태, 2008, 「야스쿠니의 신화: 현대일본의 종교와 정치」, 『종교연구』 제50호.
- 박진우, 2007, 「국가신도와 야스쿠니신사, 초혼사의 통합과정에 대한 재검토」, 『일본사상』 제12권.
- 박진우, 2009, 「한국에서 본 야스쿠니 문제」, 『일본역사연구』 제30집.
- 송경섭·김광열, 2013, 「開港期 朝鮮에서 死亡한 日本軍의 야스쿠니[靖國]神社 合祀: 江華島事件부터 淸日戰爭까지」, 『한일민족문제연구』 제24호.
- 위나이밍, 2008, 「타이완의 야스쿠니신사 문제: 역사 인식과 충돌」, 『동북아역사논총』 제28호.
- 이규수, 2006, 「야스쿠니 신사참배 논란과 동아시아 근대사 인식」, 『사림』 제26호.
- 이상훈, 2010, 「고이즈미 수상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소고」, 『일본연구』 제43호.
- 장세운, 2008, 「일본 야스쿠니신사 유슈칸의 한국 관련 전시 내용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5집.
- 장신, 2011, 「일제하 조선에서 야스쿠니신사의 표상과 조선인 합사자」, 『역사문제연

구』 통권 25호.

전성근, 2009, 「야스쿠니신사[靖国神社]와 문화 이데올로기 습합의 문제: 예대제(例大祭), 제식(祭式), 친배(親拜)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제30집.

조진구, 2005, 「일본의 과거 역사인식과 야스쿠니신사 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21권 제4호(통권 제51호 2).

지영임, 2013, 「야스쿠니제판을 통해 본 한일 종교관의 쟁점과 해결방안」, 『일본문화연구』 제46호.

단행본

노길호, 1996, 『일본의 굴레 야스쿠니신사』, 문창출판.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4, 『야스쿠니신사에 묻는다-야스쿠니신사 무단합사 철폐 소송』, 동북아역사재단.

赤澤史朗, 2005, 『靖国神社-せめぎあう〈戦没者追悼〉のゆくえ』, 岩波書店.

赤澤史朗, 2015, 『戦没者合祀と靖国神社』, 吉川弘文館.

大江志乃夫, 1984, 『靖国神社』, 岩波書店.

国立国会図書館調査立法考査局, 1976, 『靖国神社問題資料集(調査資料: 76-2)』.

国立国会図書館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2007, 『新編 靖国神社問題資料集』.

小堀桂一郎, 1988, 『靖国神社と日本人』, PHP研究所.

子安宣邦, 2004, 『国家と祭祀: 国家神道の現在』, 青土社.

高橋哲哉, 2005, 『靖国問題』, 筑摩書房.

田中伸尚, 2002, 『靖国神社の戦後史』, 岩波書店.

田中伸尚, 2007, 『靖国訴訟-戦死者の記憶は誰のものか』, 岩波書店.

村上重良, 1974, 『慰霊と招魂-靖国の思想』, 岩波書店.

학술회의 자료집

고려대학교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9, 『야스쿠니의 역사적 재조명』.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5, 『야스쿠니에 다가서다』.

일본의 우경화와 야스쿠니 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회의 자료집, 2014, 『동아시아 평화와 야스쿠니신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7, 『진상조사보고서(Ⅶ-1):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합사경위 및 합사자 명부 조사』.

Anti-Yasukuni U.S Campaign 자료집, 2007, 『인권, 문명, 평화의 눈으로 야스쿠니신사를 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 초록]

야스쿠니신사 문제의
현황과 연구 동향

남상구

야스쿠니신사 문제는 1985년 나카소네 총리의 공식참배 이후 한일, 중일 간 외교현안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외교 과제다. 그리고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약 21,000명이 무단으로 합사되었고 유족이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식민지 청산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야스쿠니신사와 관련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한국인 무단합사, 총리 참배, 새로운 국립 추도시설, 역사인식을 둘러싼 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현황, 쟁점,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논리 전개와 편의를 위해 야스쿠니신사 문제를 4가지로 나누어 검토했으나 이 문제들은 서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야스쿠니신사와 일본 정부가 침략전쟁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 무단합사가 가능했던 것도 피해자가 아닌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일본 국가의 논리를 앞세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인식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의 실태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야스쿠니신사 문제는 '제2의 가해'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야스쿠니신사 문제는 근대국가가 얹고 있는 공적인 전사자 추도라는 보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식민지와 침략전쟁 피해라는 일본만의 특수한 문제이기도 하다. 식민지 청산과 유족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아스쿠니신사 문제, 총리 참배, 한국인 무단합사, 역사인식, 새로운 국립추도
시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Current Status and Research Trends of
the Yasukuni Shrine Issue

Nam Sanggu

The Yasukuni Shrine issue has significance in two aspects. First, the issue is a diplomatic challenge for Korea. The Yasukuni Shrine issue has been a pending issue among Korea, China, and Japan since Nakasone Yasuhiro, the former prime minister of Japan, officially visited the shrine in 1985. Second, it is also a historical challenge to solve the remaining problems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More than 21,000 Korean people, who were forcibly mobilized by Japan, were enshrined in Yasukuni Shrine together with Japanese war criminals without any notice. The bereaved families of the mobilized Koreans insist upon receiving their ashes, but their requests have been ignored. The families are still suffering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this paper, I focus on controversial issues related to Yasukuni Shrine: 1) the enshrining of Koreans in Yasukuni Shrine; 2) the prime minister's visit to the shrine; 3) the new national memorial facilities; and 4) the Japanese view of history. I present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each issue, controversies regarding each issue, results of earlier studies related to each issue, and tasks to be solved.

Even though I dealt with the four issues separately in this paper for logical convenience, they are, in fact, closely related.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how Yasukuni Shrine and the Japanese government

view the history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the war of invasion. Enshrinement of Koreans in Yasukuni Shrine reflects Japan's recognition of a history that justifies its war of invasion. Before criticizing Japan's view of history, analysis of the history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the war of invasion should proceed further. The Yasukuni Shrine issue can be seen from two perspectives: honoring the fallen soldiers, and disregard for damages from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the war of invasion. We should focus on the second view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elimination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human rights of the bereaved.



동북아역사재단

Keywords

Yasukuni Shrine Issue, the prime minister's visit, the enshrining of Koreans, the new national memorial facilities, view of histor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구제에 관한 일고(一考)

김관원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현안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공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 등이 일본에서 희생자 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1991년부터다. 이때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위안부' 동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을 표명한 고노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보상'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 정부가 피해 여성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해야 했음에도 민간모금 형태로 조성된 위로금으로 인도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 할머니들에게 거부당해 실패하였다.

2005년 8월 한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구제와 관련해서 '한일청

※ 투고: 2015년 8월 10일, 심사 완료: 2015년 11월 6일, 게재 확정: 2015년 11월 23일
* 이 글은 2015년 9월 18일 도쿄가쿠게이대학[東京学芸大学]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화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심사를 하여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청구권협정 제3조의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이 결정은 한국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2년 4월 일본 정부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양국 정부 간 견해 차이와 일본의 정권이 갑자기 교체되는 시기와 맞물려 실패하고 말았다. 2014년 4월 이후부터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이와 같이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또 일본 정부 또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에 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 정부와 일본인은 물론 한국 국민 중에도, 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해결을 요구하는지, 왜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법적사죄와 배상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실은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상호이해 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해결요구에 정당성이 있으며, 또한 일본 정부에도 이에 응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양국 국민에게 알려, 이해를 구하고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음을 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사안을 제시하고 분석한다. 즉 일본에서 있었던 피해자 구제 소송을 통해 일본의 법원이 인정한 국제법상 일본의 국가 책임은 무엇인지, 관련자를 처벌해 피해자 구제의 근거로 삼아야 했던 극동국제군사재판과 일본군‘위안부’ 문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청구권협정은 어떤 성격을 가지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알아본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해결을 요구하는 데 직접적인 계기가 된 헌법소

원과 후속조치 등에 관해 분석한다.

II. 일본의 국가 책임과 '위안부' 소송

1_위안소 제도와 일본의 국가 책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중국 대륙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각지에 위안소를 설치하였다. 일본군 위안소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된 이후인데, 일본이 전쟁 지역을 확대해 가자 그 설치 지역도 점차 확대되어 갔다. 일본군'위안부'로 동원되는 여성들도 일본 여성들보다는 식민지였던 조선과 타이완의 여성들이 강제로 동원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는¹⁾ “위안부의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맡았으나, 그 경우에도 감언·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고,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했던 경우도 있었으며”, 또 한국은 일본의 통치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일본군'위안부'가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는 국가의 법적 책임이 따른다.²⁾

1) 慰安婦關係調査結果発表に關する河野内閣官房長官談(1993. 8. 4)이 정식 명칭이다.

2) 고노 담화에서 인정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이며, 여성에 대한 모독이자 인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국제법적 국가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노 담화를 검증하여 흠집을 내고, 궁극적으로는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위안소의 설치, 운영 등 위안소 제도에 대해서도 민간업자의 소행이라고 하며, 국가의 가해 행위와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은 그 의사에 반해서 일본 국내외로 끌려와,³⁾ 전지에서는 항상 일본군의 관리하에 있었으며 군과 행동을 함께하면서 위안소에서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하였다.⁴⁾ 위안부 생활을 강요받은 사람들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비참한 생활을 했으며,⁵⁾ 노예상태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받았다.⁶⁾ 위안소 제도는 철저한 여성차별·민족차별 사상의 표현이며 여성 인격의 존엄을 근거에서부터 침해하고 민족의 긍지를 유린한 전쟁범죄다.⁷⁾ 당시의 강제노동조약, 부녀자매매금지조약(추업조약) 및 인도에 반하는 죄 등 국제법을 위반했으므로 국가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⁸⁾

유엔인권위원회 보고서도 일본의 국가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Coomaraswamy Report)⁹⁾는 제2차 대전 당시 강제연행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국의 인권침해는 명확히 국제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법적

- 3)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 소송 2심 판결(東京高裁, 2003. 7. 22), 『判例時報』 1843호.
- 4) 송신도 소송 1심 판결(東京地裁, 1999. 10. 1), 『訟務月報』 48권 3호; 송신도 소송 2심 판결(東京高裁, 2000. 11. 30), 『判例時報』 1741호;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 소송 1심 판결, http://www.zephyr.dti.ne.jp/~kj8899/izokukai_hanketsu.html.
- 5) 송신도 소송 1심 판결, 위의 책 참조.
- 6)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 소송 2심 판결, 위의 책 참조.
- 7) 부산 일본군‘위안부’·여자정신대 공식사죄청구 소송 1심 판결(山口地裁下関支部, 1998. 4. 27), 『判例タイムズ』 1081호 참조.
- 8) 송신도 소송 2심 판결, 위의 책 참조;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 소송 2심 판결, 위의 책 참조. 이러한 조약 등을 근거로 항소인 등 개인이 피항소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내지 보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 국제관습법이 성립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 9) 1996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여성에 대한 특별보고자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그 원인 및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말한다. 정식 명칭은 Report on the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1996)이다.

책임을 지라고 하였다. 맥두갈 보고서(McDougall Report)¹⁰⁾도 일본군의 요청으로 위안소를 경영한 것과 이익을 얻은 민간인이 한 행위로 위안부가 받은 피해를 방지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한 것에 일본 정부에 국가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이들 보고서는 강제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엔의 공식입장으로 간주되어 앞으로 일본 정부에 큰 압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

다음은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인 관련 3건의 위안부 소송에서¹¹⁾ 일본의 법원이 일본 국가나 군인 등이 위반했다고 인정한 국제법규에 관해 아베 교수의 견해를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하였다.¹²⁾

1) 노예제 및 노예매매 금지에 관한 조약

1926년 체결된 노예금지조약은 조약상의 의무만이 아니라 국제관습법으로 정착되어 있는 개념으로서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고 생각되므로 이 조약의 체결국이 아닌 일본도 구속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

10) 1998년 8월 유엔인권위원회 차별방지·소수자보호소위원회에서 채택된 게이 맥두갈 전시성노예제특별보고자의 '무력분쟁하의 조직적 강간·성노예제 및 노예제 유사 관행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말한다. 정식 명칭은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1998)이다.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부속문서는 일본군 위안소에 대해 성노예 제도로서 여성의 인권을 현저히 침해한 전쟁범죄라고 했으며, 책임자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였다.

11) 한국인 '위안부' 소송의 최대 장애는 국가무담책과 시효·제척기간의 문제였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 국내의 민법규정을 사용하지 않고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법에 의한 전쟁피해의 배상규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1912년 일본이 비준한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헤이그협약 부속규칙에 "여성은 전시에 강간 및 강제매음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쟁 지역이 아닌 한국의 경우에는 헤이그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란이 있어 한국인 '위안부' 소송에서 이 규정은 주장하지 않았다. 藍谷邦雄, 2014, 「韓国人「慰安婦」を振り返って」, 瑞慶山, 『法廷で裁かれる日本の戦争責任: 日本とアジア・和解と恒久平和のために』, 高文研, 41쪽.

12) 阿部浩己, 1993, 「軍隊「慰安婦」問題の法的責任」, 『法學セミナー』 10호, 64~66쪽.

태에 있었으며, 군의 소유물로서 성적 폭력의 대상이었다. 위안소 생활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지배의 대상이 되어 계속적으로 성적 폭력을 겪었다. 일본국의 이와 같은 행위는 노예제를 금하는 관습법규에 위배된다.

2)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일본 정부도 1932년에 이미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29호인 강제노동조약에서의 강제노동 처벌 위협 아래 강요된 일체의 노동을 말한다. 일본군 ‘위안부’의 성노예 생활을 노무로 본다면,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군에 의해 강요된 ‘노무’는 강제노동에 해당하며 이 조약을 위반한 것이 된다.

3) 부녀자 매매금지 조약

1925년 일본이 비준한 이 조약은 추행을 목적으로 미성년인 여성을 권유·유괴한 자 및 사기·폭행 등 모든 강제수단을 동원해 성년의 여성을 권유·유괴한 자에 대한 처벌을 계약국에 의무로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에게 추행을 강요한 자를 처벌해야 하는 국제적 의무를 일본은 전시 중에도 명확히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동원한 자를 처벌하지 않았으므로 부녀자 매매금지 조약을 위반하고 있었다.

4)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 전 또는 전쟁 중에 민간인에 대한 살해, 절멸, 노예적 흡사, 추방 기타 비인도적 행위 또는 범행 지역 국내법 위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떤 범죄의 수행과 관련되었거나, 그와 관련하여 행해진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이유에 근거한 박해행위이다. 성적학대 등 추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인도에 반하는 죄를 근거로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유엔에서도 1968년 유엔 결의 제2391에서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일본군'위안부' 범죄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궁해야 한다.¹³⁾

2_ '위안부' 소송과 일본 법원의 판단

일본에서의 한국인 '위안부' 소송은 1991년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소송, 1992년 부산 일본군'위안부'·여자정신대 공식사죄 청구 소송, 1993년 재일동포 송신도(宋神道) 소송 등 3건이다. 결과적으로 3건 모두 원고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패소하였다. 다음에서는 위안소 제도의 범죄성에 대해 일본의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소송이 끝난 순서로 분석한다.

1) 부산 일본군'위안부'·여자정신대 공식사죄 청구 소송

1998년 4월 27일 1심 판결에서¹⁴⁾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침해가 중대하고 구제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국회가 입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법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일본군 위안소 제도에 대해 “철저한 여성차별·민족차별 사상의 표현이며 여성 인격의 존엄을 근거에서부터 침해하고 민족의 긍지를 유린하는 것”이라며, “배상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 각 30만엔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였다.

이 판결은 전시의 '위안부'에 대하여 성적 강제를 한 행위 자체를 위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¹⁵⁾ 전후 피해회복 의무를 다하지

13) 지난 2015년 7월 '위안부' 피해자 2명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을 상대로 각각 2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집단 소송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기하였다.

14) 부산 일본군'위안부'·여자정신대 공식사죄 청구 소송 1심 판결, 앞의 책 참조.

15) 재판소가 이와 같은 직접 전시의 행위를 위법으로 해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예들러 말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 '위안부' 소송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 중의 군의 행위는 그것이 위법한 것이라도 손해배상을 의무화한 법률이 아니었

않으므로 생긴 손해를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로서,¹⁶⁾ 세계 곳곳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던 일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러나 2심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심 판결은¹⁷⁾ “일할 양국은 일한협정에서 자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 ‘청구권’에 관한 외교적 보호권을 상호 포기함에 따라 소위 전쟁손해 보상·배상 등의 문제에 대해 국제법상 양 국가 간에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있으며, “개인이 타국의 가해 행위에 의해 피해를 받은 경우에 당해 피해자 개인이 가해국의 국내법에 따라 실제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의 존부에 관계없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또한 전후보상을 위한 입법행위는 종합적인 정책판단에 따라 하는 것으로 사법에 의한 규제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헌법의 해석상 전 위안부 등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위한 입법 의무의 존재가 명백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입법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 전후에는 국가배상법이라는 법률이 만들어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위가 위법이라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법률은 ‘전전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위법을 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의 불법 행위라는 규정에 의해 군의 행위 즉, 국가에 배상 책임을 요구한 것이 이 재판의 근거였다. 또 전전에는 ‘국가 한 행위는 위법이라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법적 이론이 엄연히 있었다. 이것을 ‘국가무답책’이라고 한다. 재판소는 이 이론을 회피하기 위해 전후에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것에 국가의 책임과 위법성의 근거를 찾아내어 배상을 인정했던 것이다. 매우 정지한 법이론이었으나 이런 판결을 한 것은 ‘위안부’의 피해가 인류에 반한다고 하는 강렬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藍谷邦雄, 2014, 「韓國人「慰安婦」を振り返って」, 瑞慶山茂 責任編集, 『法廷で裁かれる日本の戦争責任: 日本とアジア・和解と恒久平和のために』, 39쪽.

16) 환런 급료를 받지 못하고 강제 노동을 당한 정시대원의 청구는 기각됐다.

17) 부산 일본군‘위안부’·여자정신대 공식사죄청구 소송 2심 판결(広島高裁, 2001. 3. 29), 『判例時報』 1759호.

2) 재일동포 송신도 소송

1999년 10월 1일 1심 판결은¹⁸⁾ “원고는 각지의 위안소에서 자신의 뜻에 반한 상태로 종군위안부로서 군인을 상대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인정했으나 “개인이 직접 국가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국제관습법이 당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20년의 민법상 청구권도 이미 소멸했다”고 하였다.

또 “국제법은 국가 간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이다”라고 하며, “노예를 금지한 국제관습법과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등의 국제법에 위반한다”고 한 원고 측의 주장을 부정하였다. 보상입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안부 생활을 강요받은 사람들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비참한 생활을 했다고 추측되며 국가가 어떠한 구제수단을 만드는 것은 국회 입법재량의 하나의 선택지”라고 하면서도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2000년 11월 30일 2심 판결은¹⁹⁾ 위안소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당시 강제노동조약, 취업조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국제법상의 국가책임을 인정했으나 개인에 대한 배상의무는 부정하였다. 또 “송신도 씨는 일상적으로 장기간 일본군에게 강제로 성적으로 상대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개개의 성적 강제 행위는 군이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므로 국가의 직접적인 위법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나 업자를 감독하고 위안소의 실질적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은 군이었으므로 군은 업자의 사용자로서 관리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 그 결과로 군과 국가는 ‘위안부’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법 이론을 구사한 판결로서 ‘위안부’에 대한 심정적 이해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²⁰⁾ 이 판결은 군의 사용자 책임을 물음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국가무담책의 법리’를 회피한 것이 특징이나 시효·제척기간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 청구를 기각하였다.

18) 송신도 소송 1심 판결, 앞의 책 참조.

19) 송신도 소송 2심 판결, 앞의 책 참조.

20) 藍谷邦雄, 2014, 앞의 글, 39~40쪽.

3)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 소송

이 소송은 1991년 12월 6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소송으로 이후 다수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²¹⁾ 2001년 3월 26일 1심 판결은²²⁾ 동종의 전후보상 소송에서 보여준 사법 판단을 답습하고 헌법과 국제법에 근거한 보상, 민법상 손해배상 등의 청구권 존재를 부정하였다.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서 전지에서는 항상 일본군 관리하에 있어 군과 행동을 함께하면서 위안소에서 강제로 성을 접대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는 인도상 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도에 반하는 죄는 국가에 대해 개인을 국제재판소의 처벌에 복종하게 하는 의무를 지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국가에 민사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2003년 7월 22일 2심 판결은²³⁾ 사실 인정을 상세히 다루었으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일본 국가의 가해 행위와 책임을 인정하였다.

일본군‘위안부’ 실태에 대해 “노예상태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가 있다”고 인정했으며, 항소인 등은 미성년 시기 조선에서 “그 의사에 반해서” 일본 국내외로 끌려와 “그 곳에서 매일 다수의 군인·군속과 성행위를 강요받았으므로 추업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추업을 강제당했다고 인정할 수가 있다”고 했으나 개인보상 의무는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국제법 및 국제관습법에 의한 청구에 대해서는 “헤이그육전조약 및 헤이그육전규칙,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조례 6조 등 및 극동군사재판소 조례 5조, 노예조약, 강제노동조약, 카이로선언 및 포츠담선언 그리고 국제법상의 평

21)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외에도 군인, 군속 등이 원고로 되어 있으며, 이후 필리핀, 중국, 네덜란드 등의 원고가 10여 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22) http://www.zephyr.dti.ne.jp/~kj8899/izokukai_hanketsu.html.

23)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 소송 2심 판결, 앞의 책 참조.

등원칙에 의해 항소인 등 각 개인이 피항소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보상청구권이 취득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러한 조약 등을 근거로 항소인 등 개인이 피항소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내지 보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 국제관습법이 성립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해서도 그 국제관습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강제노동조약 및 추업조약에 위반했을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피항소인에게는 이런 조약상의 의무위반에 따른 국제법상 국가 책임의 해제 방법으로서 일본 국내의 보상입법을 하는 것도 가능한 하나의 시책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고 하면서도 국회의 재량에 속하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민법의 불법 행위에 의한 청구에 대해 “군대위안부 관계의 항소인 등 군대위안부를 고용한 고용주와 이것을 관리감독하고 있었던 구일본군인의 개개의 행위 중에는 군대위안부 관계의 항소인 등이 군대위안 행위를 강제함에 있어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다고 추인되어,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피항소인은 민법 715조 2항에 의해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여지가 있다”.

결국에는 국가배상법 시행 전의 공권력 행사의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국가무담책의 법리는 부정했지만, 제척기간의 경과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되었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였다.

이들 소송을 통해 당시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던 일본군 위안소 제도의 실태가 많은 부분 알려졌으며, 피해 사실의 심각성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피해 실태가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제법을 위반한 일본 정부에 국가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국제법의 기본 문제에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의 학설 등을 참조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최근 국제사회는 중대한 국제인권법·국제인도법 위반에 의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개인에게는 구제받을 권리가 있고, 가해자는 소추되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지금까지 국가 간의 이해를 조절해 왔던 국제법

규범은 지금은 개인 차원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²⁴⁾ 유엔총회도 2005년 12월 16일 채택한 ‘중대한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위반의 피해자가 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어도 1907년의 헤이그육전조약 이후 국제인도법 위반의 피해자는 구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²⁵⁾

따라서 일본 정부는 법원이 국제법상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는 입법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원고의 불신과 울분을 누그러뜨려 가해자와 화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Ⅲ. 극동국제군사재판과 ‘위안부’ 문제

1_인도에 반하는 죄의 성립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5년 8월 미영프소 연합국은 런던에서 조인된 유럽 추축국 주요 전쟁범죄인 추궁 및 처벌에 관한 협정과 그에 부속하는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을 채택하는데, 여기에 인도에 반하는 죄의 개념이 정식으로 성립된다. ‘인도에 반하는 죄’는 ‘평화에 반하는 죄’, ‘통례의 전쟁범죄’와 함께 헌장 제 6조에 의해 국제군사재판소 관할에 속하는 범죄 행위로 인정됐다.

‘인도에 반하는 죄’는 국제군사재판에서 유대인 대학살 죄를 심판하기 위해 신설한 범죄로, 민간인에 대한 살인, 절멸 등의 비인도적 행위, 또는 정치적, 인종적 내지 종교적 이유의 박해 행위를 말한다. 나치 독일의 유대인에 대한 살인, 절멸, 학대 등 비인도적인 정책은 제도적, 계획적인 체제 범죄이며 전쟁

24) 五十嵐正博, 2007, 「最高裁は国際法の発展に寄与できるか」, 『世界』 4호, 72쪽.

25) 五十嵐正博, 2007, 위의 글, 71쪽.

지역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다든가 전쟁수행을 위해 위법임을 알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전쟁 범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²⁶⁾

다시 말하면 '인도에 반하는 죄'는 유대인 학살을 비롯한 전쟁 전, 전쟁 중의 나치 범죄를 표적으로 한 것으로 나치에 의한 '독일 국내에서의 독일인에 대한 폭력범죄'도 연합국의 국제군사재판에서 심판하려 한 점에서, 이전의 전쟁 범죄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은 새로운 범죄 개념이었다.²⁷⁾ 즉 '인도에 반하는 죄'는 전시만이 아니라 전쟁 전의 행위, 자국 및 타국의 민간인에 대한 가해도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본래의 전쟁범죄와는 확연히 다르다. 그러나 본래의 전쟁범죄 행위는 인도에 반하는 죄의 일부분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도 재판소 자신의 법적 권한은 평화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의 실행 혹은 그와 관련해서 행해진 범죄에 한정하며, 전쟁 개시 이전에 나치가 독일 국내에서 시행한 인도범죄는 재판소의 관할 밖이라고 하였다.²⁸⁾ 또 이러한 범죄의 대부분이 용서할 수 없는 잔학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침략전쟁 혹은 전쟁범죄와 관련해서 실행된 것이라고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다.²⁹⁾ 이에 대해 국제재판의 권한을 연합국 각

26) 이미 전쟁 전부터 국내의 유대인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박해해 왔으며 결국에는 국가로서 유대인을 유럽에서 절멸하는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木佐芳男, 2001, 『戦争責任とは何か』, 120쪽.

27) 清水正義, 1998, 「ニュルンベルク裁判の成立と「人道に対する罪」」, 『現代史研究』 44호, 1쪽.

28) 芝健介, 2002, 「ホロコーストとニュルンベルク裁判」, 『史論』 55, 27쪽. 판결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관해서만 본다면, 대전 발발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군사재판소의 관할인 점은 승인하였으나 이러한 행위가 '평화에 반하는 죄' 등과 관련해서 행해진 것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결국 1939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전쟁 발발 이후에 대해서는 '인도에 반하는 죄'는 동시에 '전쟁범죄'로서도 단죄되었으며, 어떤 행위와 관련해서 그것이 '인도에 반하는 죄'로서 유죄를 선고받았는지, '전쟁범죄'로서 선고받았는지 확실치 않다. 판결은 '인도에 반하는 죄'가 본래 표적의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전전의 독일인에 의한 독일인에 대한 폭력범죄'를 사실상 국제군사재판소로서는 심판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했는데, 이는 한계 중 하나였다. 清水正義, 1998, 위의 글, 15쪽.

29) 芝健介, 1988, 「ニュルンベルク裁判小考」, 『國學院雜誌』 89(4)호, 29~30쪽; 1944년 9월 30일자 연합국전쟁범죄위원회(UNWCC)의 연합국법정안 이래 나치

점령국에 위임하기로 한 연합국 대독일 관리이사회 법률 제10호는 ‘인도에 반하는 죄’ 항에서 희생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또 전쟁 중임을 한정하지 않고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였다.³⁰⁾ 점령 미군 정부에 의한 몇몇의 뉘른베르크 계속재판에서는 침략전쟁 내지는 전쟁범죄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인도에 반하는 죄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계속재판은 이 법에 의거해 시행됐다.³¹⁾ 이리하여 인도에 반하는 죄를 사후에 심판하는 일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초석이 놓여졌을 뿐만 아니라 인도적 개입의 원칙 자체를 주장함으로써 중대한 인권 침해국에서도 주권은 중시되어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국가주권론에 제한을 가했다고 할 수 있다.³²⁾

‘인도에 반하는 죄’가 평화에 반하는 죄와 달리 보편적 관할권의 승인을 얻은 것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의 중요한 유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사실은 인도에 반하는 죄의 중시화라고 하는 현대의 경향 그 자체로서, 많은 비판을 받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져온 것은 이 죄의 개념이 그렇게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의 근거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 되었을 것이다.³³⁾

‘인도에 반하는 죄’에 의해 처음으로 심판을 받은 나치의 반인도적 범죄는

주요 범죄를 헤이그조약에 담겨있는 ‘인도의 법칙’에 위배하는 국제범죄로서 심판하려는 자세는 재판 추진론자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清水正義, 1998, 위의 글, 14쪽.

30) ‘인도에 반하는 죄’의 개념은 일부 변경되어 ‘평화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와의 관련을 요건으로 하지 않게 됐다. 즉 국제군사재판소 현장의 ‘인도에 반하는 죄’가 전쟁 중의 범죄 행위와의 관련을 요건으로 한 것인데 반해, 본 법률은 그 요건을 제거해, 나치의 비인도적 행위를 ‘인도에 반하는 죄’로서 심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木佐芳男, 2001, 앞의 글, 120쪽.

31) 芝健介, 1988, 앞의 글, 29~30쪽.

32) 芝健介, 2002, 앞의 글, 27쪽.

33) 清水正義, 2005, 「ニュルンベルク裁判成立史研究の動向」, 『白鷗法学』 25호, 200~203쪽; 1946년에 개최된 제1회 유엔총회가 ‘뉘른베르크재판소 조례에 의해 인정된 국제법의 제원칙’을 확인하는 결의를 전일일치로 채택하고 그 후 제노사이드조약, 제네바 조약, 제네바조약 관련 2개의 추가의정서,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시효부작용조약(1968)’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林博史, 1998, 『裁かれた戦争犯罪: イギリスの対日戦犯裁判』, 300쪽.

처벌로는 해소될 수 없는 인간의 조건 자체에 대한 범죄라는 특이한 것으로 전쟁과는 기본적으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통례의 전쟁범죄'와 구별되어야 하며 그보다도 훨씬 무거운 죄악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2_극동국제군사재판과 일본군'위안부'

극동에서의 중대 전쟁범죄인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 및 처벌을 위해³⁴⁾ 도쿄에 국제군사재판소를 설립하였다. 이 재판소 설립 근거가 되는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현장의 제5조에는 국제군사재판소 현장 제6조와 같은 '평화에 반하는 죄', '통례의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등 3가지의 죄가 규정되어 있다. 이 중 '인도에 반하는 죄'의 정의도 국제군사재판소의 것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국제군사재판소에서는 반인도적 행위의 대상이 민간인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렇다고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현장이 제시한 반인도적 행위의 대상에 당시 일본 국적을 갖고 있었던 한국 출신 민간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³⁵⁾ 인도에 반하는 죄의 규정은 연합국 영역에서 또는 연합국 국민에 대한 위반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추축국 영역에서 연합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³⁶⁾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실체화되는 인도에 반하는 죄의 큰 특징은 자국민에 대한 것도 포함해 민간인에 대한 반인도적 행위도 전쟁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³⁷⁾ 따라서 “일본이 당시 조선은 일본의 일부이고 조선인은 일본인이므로 자국민에 대한 전시

34)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현장 제1조.

35) 김명기 교수는 국제군사재판소 현장은 자국민에 대해서도 '인도에 반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현장은 그러하지 않다. 김명기, 2001, 「국제인도법상 여자정신대에 대한 일본의 비인도적 행위와 국가책임의 성립」, 『인도법논총』 21호, 12쪽.

36) 岡田泉, 1995, 「『人道に対する罪』処罰の今日的展開」, 『世界法年報』 15호, 51쪽.

37) 荒井信一, 1995, 『戦争責任論』, 岩波書店, 165~166쪽.

의 동원은 문제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고 하겠다.”³⁸⁾

뉘른베르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많은 범죄자가 ‘인도에 반하는 죄’에 의한 것이었으나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인도에 반하는 죄’인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물론 ‘인도에 반하는 죄’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³⁹⁾ 그 어떠한 ‘인도에 반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범죄도 심리 대상이 되지 않았다.⁴⁰⁾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한 데에는 당시 미국이 일본 점령정책을 냉전정책과 동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일본 제국주의의 구 지도자를 부활시켜 국내 정치를 보수적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으며,⁴¹⁾ 또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의 일환으로 일본의 공산화를 막고 경제부흥을 이룩하기 위해 개인배상의 법리를 제공해주는 ‘통례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⁴²⁾

극동국제군사재판은 뉘른베르크재판과 거의 같은 법리에 의해 제정된 ‘인도에 반하는 죄’가 일체 무시된 형태로 진행되어,⁴³⁾ 일본 제국주의가 나치 독일

38) 李載坤, 1992, 「일본의 중군위안부이용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 『법학연구』 제3권 1호, 8쪽.

39) 1943년 10월 20일 런던연합국전쟁범죄위원회(UNWCC)에서의 논의를 보면 나중에 ‘인도에 반하는 죄’로서 정식화되는 잔학 행위는 유대인에 대한 범죄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일본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林博史, 2004, 「連合国戦争犯罪政策の形成 - 連合国戦争犯罪委員会と英米 (上), (下) 自然・人間・社会」, 『関東学院大学経済学部総合学術論叢』 36~37호, 73쪽. 단, 인도네시아의 바타비아(Batavia) 네덜란드 전법재판에서는 35명의 네덜란드 여성을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한 일본군을 심판하였다.

40) 아라이 신이치[荒井信一]는 ‘인도에 반하는 죄’를 심판하지 않은 점 외에 재판기간이 짧은 점, 식민지종주국 출신의 판사가 주를 이루어서인지 아시아의 현지 민중에 가해진 피해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荒井信一, 1995, 앞의 책, 164~166쪽.

41) 荒井信一, 1995, 위의 책, 170쪽.

42) 이장희, 2009, 「도쿄국제군사재판과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비교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5호, 224쪽.

43) 뉘른베르크재판은 새로운 폭력범죄의 유형인 나치 폭력범죄를 심판하는 근거로 ‘인도에 반하는 죄’를 적용함으로써, 역사적 대규모 폭력범죄의 단죄라는 20세기적 과제를 선구적으로 완수했다는 점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清水正義, 2005, 앞의 글, 200~203쪽.

보다 인종주의적인 측면에서 철저했음에도,⁴⁴⁾ 반인도적 범죄를 심판하지 않았다. 이처럼 일본의 전쟁지도자가 '인도에 반하는 죄'에 의해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청구권협정에 의해 모두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인도에 반하는 죄'에 의해 관련자를 처벌했다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이제라도 일본 정부는 일본의 전쟁범죄를 심판한 '평화에 반하는 죄', '인도에 반하는 죄' 등의 법리를 규정한 극동국제군사법정 및 연합국군사법정의 재판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11조에 따라 일본이 받아들였으므로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되는 위안소 제도의 피해자들에 대해 공식사죄 및 배상과 미래세대에 대한 역사교육 등의 구제의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IV. 한일청구권협정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1_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하 대일평화조약)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연합국으로부터 배제됨으로써, 한일 양국은 피해보상 교섭을 14조에 의한 '배상' 요구로서가 아니라 제4조에 따른 1951년부터 1965년까지 '재산 및 청구권'의 처리 문제로서 교섭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을 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그러나 올해로 50년이 되었지만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여러 '과거사' 문제는 아직도 한일 양국의 무거운 현안으로 남아 있다.

44) 芝健介, 2002, 앞의 글, 22쪽.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재산 및 청구권’의 범위와 동 협정에 의해 외교적 보호권만이 포기된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우선 해결된 범위에 관하여 논한다. 대일평화조약 제14조(a)에는 일본과 교전상태에 있었던 연합국 측에 대한 배상 규정이 있다. 한편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한국과 ‘재산 및 청구권’ 처리의 근거가 되는 이 조약 제4조(a)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청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이나 언급도 없다. 마찬가지로 이 조항에 근거해 체결된 청구권협정의 교섭 과정에서도 식민지 지배의 청산을 상정한 교섭은 한 번도 없었다.⁴⁵⁾ 따라서 대일평화조약 제4조(a)의 ‘재산 및 청구권’이나 청구권협정 제2조 1항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한 ‘재산 및 청구권’은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 책임과는 무관한 것이다. 청구권협정은 한반도가 일본으로부터 분리·분할됨으로써 발생한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해결된 범위도 한국 측이 제시한 대일청구 8항목에 한정된 것일 뿐이다.⁴⁶⁾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으로 한일 간의 보상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청구권협정 제2조 1항에 따라 한국 및 한국인이 일본에 대해 갖는 “재산 및 청구권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 정부도 식민지 지배의 법적 책임을

45) 太田修, 2006, 「日韓財産請求權問題の再考—脱植民地主義の視角から」, 『文學部論集』第90号, 6~7쪽.

46) 吉澤文寿, 2012, 「日韓請求權協定と戦後補償問題の現在—第2条条文化過程の検証を通して」, 『平和研究』 38号, 50쪽; 전쟁배상 포기에 관한 규정인 평화조약 제14조는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성질의 문제’인 국가의 분리·분할에 따른 재산처리를 위한 교섭이었던 한일교섭 및 그 결과 체결된 청구권협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가령 한일교섭에서 일부 손해배상적인 성격의 권리 취급에 관해 논의되었다고 하더라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은 ‘전쟁상태’가 아니었던 이상, 어떠한 점에 있어서도 전쟁배상 포기가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五十嵐正博, 2008, 「不二越勤勞挺身對損害賠償等請求控訴事件意見書」(平成 19年(ネ)第150號) 참조.

부인하고 있음에도, '식민지 지배와 직결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일본의 책임도 청구권협정으로 인하여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⁴⁷⁾

다음으로 청구권협정에 의해 포기된 것이 외교적 보호권만인지, 아니면 개인청구권까지도 포기된 것인지에 관해 확인한다.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포기된 것은 양국이 국가로서 갖고 있는 외교적 보호권만이라고 하였다. 1991년 8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당시의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조약국장이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된 것은 국가 간의 외교보호권이 아닌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답변하는 등 일본 정부의 견해는 1990년대 초까지 외교적 보호권만이 소멸된 것이며 개인의 청구권 자체는 소멸되지 않았다고⁴⁸⁾ 편의적으로 해석해 오면서 개인청구권은 남아있다는 입장이 확립되어 있었다.⁴⁹⁾ 그러나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로 적용해 온 제척기간·시효 및 공권력무책임원칙의 적용이 거부되자 2001년쯤부터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도 소멸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안이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조약교섭에 의해 보상청구권을 포기하게 한 것을 추인하는 법원의 입장에는 비판적 재검토가 필요하다.⁵⁰⁾

그렇다면 과연 국가는 평화조약 등을 체결할 때 무제한으로 국민의 권리를

47) 김창록, 2015,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권리’-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을 소재로, 『법학논고』 49집, 815쪽; 일본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1965년 11월 25일의 일본 참의원 ‘일한조약 등 특별위원회’에서 청구권협정에 대해 1959년 5월에 체결된 ‘일본국과 베트남공화국과의 배상협정’과 청구권협정과의 차이점에 대한 기우치 시로[木内四郎] 참의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 후지사키 마사토[藤崎萬里] 외무성 조약국장은 “배상과 청구권의 문제는 법률적으로 성질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배상은 평화조약에 근거해 패전국으로서 전승국에 지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만, 청구권의 경우는 서로의 재산청구권 관계의 정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第50回国会参議院 日韓条約等特別委員会會議録」 第4号.

48) 김창록, 2009, 「일본군 '위안부' 헌법소원」, 『法學論叢』 제31집, 351~353쪽.

49) 小畑郁, 2006, 「請求權放棄事項の解釈の変遷」, 芹田健太郎, 棟居快行, 藥師寺公夫, 坂元茂樹 編集代表, 『國際人權法と憲法』, 378쪽.

50) 吉田邦彦, 2007, 「戦後補償の民法的諸問題(下)-補償理論及び掘り起こし被害者の視点からの再検討」, 『判例時報』 1977호, 35쪽.

처분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가? 이에 대해 오바타 가오루[小畑郁]는 “적어도 대일평화조약의 청구권 포기 조항에 관해서는 ‘사인의 권리자체 포기’설이 동 규정의 해석으로서는 타당할 것이다. 그런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손해에 대한 보상의무를 일본 국가의 의사에 의해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였다.⁵¹⁾ 게다가 제네바 4조약의 공통규정에 의거해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대일평화조약 등에 의해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으며, “최근에는 인도에 반하는 죄의 개념 자체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도 포함하는 것으로 발전해 왔다”고 하였다.⁵²⁾ 이제 국제관계의 처리에서 국민의 개인적 권리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다는 논리가 증가하고 있으며, 더반선언이나 마우마우 소송이 보여주듯이 식민지 지배·전쟁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의 책임도 면제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⁵³⁾

2_ 청구권협정과 ‘위안부’ 문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청구권협정에 의해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동 협정문으로는 해결되었다고 하는 청구권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도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한일외교문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장박진도 5차 한일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대일청구 8항목 요구가 “재한일본인 재산의 취득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논리를 지키기 위해 그 재산을 교전관계에 따른 배상으로서가 아니라 ‘reparation’으로서 받았다는 해석을 천명했”기 때문에 일본군‘위안부’를 포함한 식민지 지배에서 연유하는 모든 피해가 청산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할 가능

51) 小畑郁, 2006, 앞의 글, 381쪽.

52) 小畑郁, 2006, 위의 글, 381쪽.

53) 太田修, 2013, 10, 「もはや“日韓請求権協定で解決済み”ではすまされない」, 『世界』, 194~195쪽.

성을 열었으며, 이는 “자기 스스로 식민지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이미 끝난 문제라고 인정한 셈이었다”고 한다.⁵⁴⁾

그러나 한일회담 과정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의 전쟁범죄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상정되지 않아⁵⁵⁾ 문제로 삼지 않은 것을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빨라야 1992년 “위안소 설치나 운영·감독 등에 일본 정부가 관여했다”고 인정한 가토 담화를 낼 때다. 따라서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위안부'는 사실로서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문제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⁵⁶⁾

또 장박진은 개인의 청구권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국가는 국제법상 개인의 권리를 없앨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었음”에도, “각 개인에게 가해진 피해에 기초한 개인청구권 문제는 그것을 해결시켰다고 하는 막판 제2조 기초 교섭에서도 한 번도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채, 사실상 해결 범위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다”고 하였다.⁵⁷⁾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개인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바로 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 정부가 전후처리 문제를 모두 한일회담에서 매듭지으려는 의도로 제시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는 데 합의를 해준 한국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⁵⁸⁾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14년 간의 회담에서 단 한 번도 의제로서 따로 논의가 된 적이 없으나 회담 과정에서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한일 양측의 한일회담 외교문서에는 대일청구권 항목으로 ‘전쟁 지역에 남기고 온 예금 및 재산의 미수금’이라는 내용이 기술

54) 장박진, 2015, 『미완의 청산』, 역사공간, 562~563쪽.

55) 吉澤文寿, 2012, 앞의 글, 48~49쪽.

56) 「慰安婦問題の解決とは何か」, 『世界』, 2015년 7월호 좌담회에서 김창록 교수, 164~165쪽.

57) 장박진, 2015,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의 형성 과정(1965. 3~6) 분석-개인청구권 문제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48, 337~338쪽.

58) 장박진, 2015, 위의 책, 780쪽.

되어 있다.⁵⁹⁾ 또 1953년 4월 15일 개시된 2차 한일회담에서 한국은 기탁금과 관련된 논의에서 돈이나 재산을 남기고 귀국한 일본군·위안부'가 있다고 언급하였다.⁶⁰⁾

이 내용만 본다면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언급 내용은 피해자가 남긴 채권의 미수금 문제 등 기탁금 반환 문제에 한정된 것이지, 반인도적이고 불법적인 범죄 행위 차원의 새로운 범주를 연 것은 아니었다.⁶¹⁾ 다시 말해 한일회담 초기부터 확실히 그 존재가 감지되었던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존엄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⁶²⁾

경제협력 방식에 따라 청구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협력은 청구권 해결을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으나 일본 정부는 배상이나 청구권과는 관계가 없는 경제협력이라고 주장한 것을 보면,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구제나 식민지 지배 책임을 완수하려 했다고는 볼 수 없다.

유엔인권소위원회의 맥두걸 보고서도⁶³⁾ 한일협정 체결 당시 위안소 설치에 대한 일본군의 직접적 관여가 드러나지 않은 채 은폐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조약이지 일본의 인권법 위반 행위를 다루는 조약은 아니었다고 지적하였다. 즉, 일본군·위안부', 강간, 성노예 등 어떤 언급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한일협정 체결 당시 일본이 한국에 지불한 금액에는 일본의 잔학 행위 피해자에 대한 개인배상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 개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5년 8월 26일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합동

59) 조운수, 2014,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한일관계: 1990년대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6집 1호, 73~75쪽.

60) 장박진, 2015, 앞의 책, 434쪽.

61) 장박진, 2015, 위의 책, 434~435쪽.

62) 장박진, 2015, 위의 책, 334쪽.

63) 부속문서는 일본군 위안소에 대해 성노예 제도로서 여성의 인권을 다루고 있다.

위원회에서 회담문서 등을 토대로 검토해 온 청구권협정의 법적 효력 범위 등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조약 제4조에 근거해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하였다.⁶⁴⁾ 이와 같이 판단한 것은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의한 문제로서 한일회담의 의제였던 대일청구 8항목의 범위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 판단 이전까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적 청구권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판단 이후에는 외교적 보호권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⁶⁵⁾

또한 후속 조치로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 인정 등 지속적인 책임 추구를 하는 한편, 유엔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등 외교적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⁶⁶⁾ 한국 정부가 이와 같이 결정한 것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 진행 당시의 의제였던 '대일 8항목 요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⁶⁷⁾ 이것은 2006년 7월 한국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64)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05. 8. 26. 협상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의 법적 배상·보상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고통 받은 역사적 피해 사실”에 근거, 정치적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한 것이며, 무상 3억 달러는 개인재산권(보험, 예금),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한국 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65) 김창록, 2009, 앞의 글, 354쪽.

66)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05. 8. 26.

67) 장박진, 2015, 앞의 책, 777쪽.

V. 헌법재판소 결정과 양국 정부의 대응

1_헌법재판소 결정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1965년 청구권협정 체결 이후에도 한국 정부에는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작위의 무가 있음에도,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청구권협정에 의해 포기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⁶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잇따라 패소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2005년 8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구제와 관련해 ‘일본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한 한국 정부의 견해를 근거로 2006년 7월 한국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쟁점은 일본국에 대해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의 분쟁을 청구권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다.⁶⁹⁾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모두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고, 이에 반해 한국 정부는 2005년 8월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이므로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해 일본의 법적 책임이 소멸하지 않고 남아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는 후속 조치로서 ‘위안부’ 문제가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 인정 등 지속적인 책임 추궁을 하는 한편, 유엔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

68) 김창록, 2009, 앞의 글, 350~351쪽.

69) 현재 2011.8.30. 2006헌마788 결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

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등 외교적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⁷⁰⁾ 따라서 한일 양국 간에는 일본군'위안부'의 배상청구권에 관한 해석상의 분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는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라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인 한국 정부는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그 귀속 주체는 국가이고 국가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개인이 자국 정부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국가도 구체적인 외교적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하였다.⁷¹⁾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재산권 등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 가능성, 구제의 절박성과 가능성 등을 널리 고려할 때,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재량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⁷²⁾ 결국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갖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의 분쟁을 위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다.⁷³⁾ 즉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반인권적 범죄를 행하고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교섭을 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것이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한일 정부의 협상이 답보상태인 것이 배경으로 작용해, 2013년 8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⁷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국내 법

70) 한일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05. 8. 26) 참조.

71)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결정.

72)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결정.

73)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결정 주문.

74) 『연합뉴스』, 2013. 8. 13. 일본 정부가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민사조

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_한일 양국 정부의 대응

한국 정부는 2005년 8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구제와 관련해서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으며 일본에 법적 책임이 남아있으므로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 인정 등 지속적인 책임 추구를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으면서도 일본 정부에 대해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⁷⁵⁾ 또 2011년 8월 헌법재판소가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작위무위의 위반이라고 했음에도, 정부는 일본 정부에 청구권 협정 제3조 1항에 따른 외교협의를 정식 요청했으나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2011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은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2012년 4월 노다 정부에서는 사이토 쓰요시[齋藤 勁] 국방부장관이 청와대를 방문해 일본 정부의 해결책이 담겨 있는 노다 총리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⁷⁶⁾ 이때 일본 정부가 제시한 안이 일본 총리의 사죄편지를 주한일본대사가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인도적 조치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른바 ‘사사에 안’⁷⁷⁾이다. 그러나 노다 정부의 뒤를 이은 아베 정부는

정법에 따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배상 결정을 받더라도 일본 법원에 집행을 위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한다.

75) 김창록, 2009, 앞의 글, 358~359쪽.

76) 노다 총리는 지난 2012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반성한 1993년의 고노 담화와 관련해 “강제연행을 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고, 일본 측 증언도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77) 2012년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郎] 당시 외무성 사무차관이 방한해 제시한 안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커녕 과거 일본 정부의 노력마저도 노골적으로 헛되게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07년 3월 총리 재임 중,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에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였다.⁷⁸⁾ 아베 총리는 자신의 발언이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되자, 4월 미국 방문 도중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일본군'위안부'의 강제성은 부정하였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4년에도 아베 총리는 고노 담화 자체는 계승한다고 하면서, '당시 주변국들을 배려하여 강제 동원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과의 외교적 측면을 고려해 강제동원을 인정했다'는 검증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또다시 고노 담화를 흔들더니, 2015년 3월 미국에서는 일본군'위안부'는 인신매매의 희생자이지 강제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런 와중에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한일 양국은 국장급 회의를 열 차례 개최하는 등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11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을 갖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⁷⁹⁾ 그러나 두 정상은 각각 '피해자의 수용 및 국민의 납득'과 '미래지향'을 강조하고 있어 아직도 인식의 차이가 여전함을 알 수 있다.

78) “강제성에 대해서는 종래로부터 논의가 있어 왔다. 당초 정의되어진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 아닌가”(3.1 기자단 질문에 답변), “미국 하원이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더라도 사죄할 의향은 없다”, “협의를 강제성과 관련 근거 있는 증언은 없다”(3.5 參議院豫算委員會).

79) 『조선일보』, 2015. 11. 3.

VI. 맺음말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지에 관해 논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 있었던 피해자구제 소송을 분석하고 위안부 제도의 국제법 위반으로 성립된 일본의 국가 책임은 무엇인지, 관련자를 처벌해 피해자 구제의 근거로 삼아야 했던 극동국제군사재판, 이미 해결했어야 함에도 해결할 기회를 놓쳐버린 한일청구권협정을 재조명하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해결을 요청하는 데 직접적인 계기가 된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헌법소원과 후속조치 등에 관해서도 고찰하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의한 것으로 그 유례를 발견할 수 없는 특수한 인권침해의 문제이기 때문에 명백히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포괄적인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⁸⁰⁾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구 일본 정부와 군대에 의한 ‘위안부’ 강제동원과 위안소 설치·운영 등의 국제법 위반과 이에 따른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법적사죄와 배상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 상황은 만만치 않다. 일본 정부가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 일본이 범죄국가가 되고 법적 배상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해결을 위해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기준이라고 강조해왔듯이, 설령 한일 양국이 외교적으로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최선의 방법은 일본 정부가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사죄 및 배상과 미래세대에 대한 역사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들에 의해 역사의 아픔을 겪은 한국·중국 등 이웃 나라들과 공존·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믿는다.

80) 김창록, 2009, 앞의 글, 341쪽.

참고문헌

저서

- 장박진, 2015, 『미완의 청산』, 역사공간.
 荒井信一, 1995, 『戦争責任論』, 岩波書店.
 木佐芳男, 2001, 『戦争責任とは何か』, 中公新書.
 林博史, 1998, 『裁かれた戦争犯罪: イギリスの対日戦犯裁判』, 岩波書店.

논문

- 김명기, 2001, 「국제인도법상 여자정신대에 대한 일본의 비인도적 행위와 국가책임의 성립」, 『인도법논총』 21호.
 김창록, 2009, 「일본군 '위안부' 헌법소원」, 『法學論攷』 31집.
 김창록, 2015,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권리' -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을 소재로」, 『法學論攷』 49집.
 이상희, 2009, 「도쿄국제군사재판과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비교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5호.
 李載坤, 1992, 「일본의 중군위안부이용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 『법학연구』 3권 1호.
 장박진, 2015,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의 형성 과정(1965. 3~6) 분석 - 개인청구권 문제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48호.
 조운수, 2014,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한일관계: 1990년대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6집 1호.
 阿部浩己, 1993, 「軍隊「慰安婦」問題の法的責任」, 『法學セミナー』 10号.
 五十嵐正博, 2007, 「最高裁は国際法の発展に寄与できるか」, 『世界』 4号.
 五十嵐正博, 2008, 「不二越勤労挺身対損害賠償等請求控訴事件意見書」(平成 19年(ネ)第150号).
 太田修, 2006, 「日韓財産請求権問題の再考 - 脱植民地主義の視角から」, 『文學部論集』 90号.
 太田修, 2013, 「もはや「日韓請求権協定で解決済み」ではすまされない」, 『世界』 10号.
 岡田泉, 1995, 「「人道に対する罪」処罰の今日的展開」, 『世界法年報』 15号.
 小畑郁, 2006, 「請求権放棄条項の解釈の変遷」, 芹田健太郎, 棟居快行, 薬師寺公夫, 坂元茂樹 編集代表, 『国際人権法と憲法』, 信山社.

- 芝健介, 1988, 「ニュルンベルク裁判小考」, 『國學院雜誌』 89(4)号.
- 芝健介, 2002, 「ホロコーストとニュルンベルク裁判」, 『史論』 55号.
- 清水正義, 2005, 「ニュルンベルク裁判成立史研究の動向」, 『白鳩法学』 25号.
- 清水正義, 1998, 「ニュルンベルク裁判の成立と「人道に対する罪」」, 『現代史研究』 44号.
- 林博史, 2004, 「連合国戦争犯罪政策の形成－連合国戦争犯罪委員会と英米(上), (下) 自然・人間・社会」, 『関東学院大学経済学部総合学術論叢』 36~37号.
- 吉澤文寿, 2012, 「日韓請求權協定と戦後補償問題の現在－第2条条文化過程の検証を通して」, 『平和研究』 38号.
- 吉田邦彦, 2007, 「戦後補償の民法的諸問題(下)－補償理論及び掘り起こし被害者の視点からの再検討」, 『判例時報』 1977号.

자료

- 2006헌마788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 결정(2011. 8. 30).
- 한일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05. 8. 26).
- 釜山從軍慰安婦・女子挺身隊公式謝罪請求訴訟1審判決(山口地裁下関支部, 1998. 4. 27), 『判例タイムズ』 1081号.
- 宋神道訴訟1審判決(東京地裁, 1999. 10. 1), 『訟務月報』 48卷 3号.
- 宋神道訴訟2審判決(東京高裁, 2000. 11. 30), 『判例時報』 1741号.
- アジア太平洋戦争韓国人犠牲者補償請求訴訟1審判決, http://www.zephyr.dti.ne.jp/~kj8899/izokukai_hanketsu.html.
- アジア太平洋戦争韓国人犠牲者補償請求訴訟2審判決(東京高裁, 2003. 7. 22), 『判例時報』 1843号.
- 「第50会 国会参議院 日韓条約等特別委員会会議録」 第4号.
- Coomaraswamy Report, Report on the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1996).
- McDougall Report,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1998).

[국문 초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구제에 관한 일고(一考)

김관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주요현안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공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희생자 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1991년부터다. 이때 일본 정부는 '위안부' 동원에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을 표명한 고노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 정부가 피해 여성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해야 했음에도 위로금으로 인도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 할머니들에게 거절당해 실패하였다.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청구권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하였다. 이 판결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2012년 4월 일본 정부도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해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2014년 4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일 양국은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왜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법적사죄'와 '배상'을 해야 하는지, 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해결을 요구해야 하는지, 한국인은 물론 일본인들도 알아야 한다. 그러면 한국 정부의 조치에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양국 국민은 이해할수 있을 것이며 오해도 해소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음을 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사안을 제시하고 분석한다.

주제어

일본군‘위안부’, 극동국제군사재판, 한일청구권협정, 일본의 국가 책임, 헌법 소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The Consideration of the Resolution for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Kim Gwanwon

The issue of the Comfort Women who suffered from the Japanese military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has been magnified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and recently has become pressing since comfort women demanded an official apology and compensation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in 1991.

At that time, the Japanese government acknowledged that the Japanese military had been directly and indirectly involved in compulsory mobilization of comfort women and issued the Kono Statement as an apology for the Japanese military's involvement in the use of women as sex slaves. In addition to this, the Japanese government created the Asian Women's Fund and tried to resolve the issue through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However, even though the Japanese government had to apologize and provide compensate officially for the women, the Asian Women's Fund only tried to take moral responsibility toward the comfort women from a humanitarian standpoint. Therefore, it was rejected by the victims and failed.

In August 2005,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ts official position: "It was not involved in the text of the 1965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of relevance to the relief of comfort women." And the government requested an apology from Japan and compensation at the

government level. In August 2011, the South Korean court arrived at a decision that it was unconstitutional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id not make proper efforts regarding the issue of comfort women.

In accordance with this decision, the Korean government strongly urged Japan to settle the issue. In April 2012, the Japanese government also made a compromise plan, but a settlement was not reached. Both South Korea and Japan have tried diplomatic efforts for the comfort women by holding meetings at the director level since April 2014.

Japanese as well as Koreans should know why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apologize and compensate legally, and wh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call for a resolution on the basis of this issue. Then the two nations will understan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ok appropriate measures, and the misunderstandings between the two nations will be solved to some ext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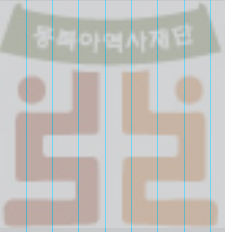
The purpose of this paper thus is to explain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bears the responsibility for settling the comfort women issue. For this, I review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the 1965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Japan's national responsibility, and the South Korean court's decision, and analyze them in relation to the comfort women.

Keywords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1965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Japan's national responsibility, constitutional complaint

서평

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지혜의 모색

- 和田春樹, 『慰安婦問題の解決のために:
アジア女性基金の経験から』(平凡社, 2015) -

최희식 |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의 노력은 저자인 와다 하루키(和田春樹)가 분류한대로 제3라운드에 접어들었다. 1라운드에는 고노 담화의 발표와 그 후속조치로써 아시아여성기금, 2라운드에는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사이토 즈요시[齋藤勤] 관방부장관과 이동관 특사와의 4개항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1라운드와 2라운드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리고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수립이후 이런 저런 갈등 끝에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국장급회담이 개최되며 제3라운드에 접어든 것이다.

피해자 할머니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는 지금 3라운드야말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이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일 것이다. 이러한 절박함은 위기감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 이 책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야부나가 미토지[藪中三十二] 전 외무차관은 자신의 책에서 “고노 담화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 위안부에 대해서 마음으로 사죄하고 위로금[見舞金]도 지불하였다. 정부 보상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모두 해결되었다는 국제적 스탠다드에 따른 입장을 일본 정부가 견지만 한다면 미국으로는 더 이상 일본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마도 일본 내 많은 전략가들의 본심일지도 모른다. 저자는 이러한 ‘시간에 흘러보내

기라는 태업전략이 일본 내 만연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누구보다도 직감하고 있다.

저자는 제3라운드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1라운드와 2라운드, 특히 1라운드의 아시아여성기금이 어떻게 해서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하며, 그 교훈을 가지고 3라운드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저자는 아시아여성기금이 왜 실패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첫 번째 문제는 피해자에게 지급될 일시금[償い金]의 명목 문제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가령 1994년 8월 19일자에서 『아사히신문』은 “위안부에 見舞金, 민간기금 구상, 정부는 사무비만”이라는 제목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아시아여성기금 구상을 특종으로 보도하였다. 한국에서는 이 ‘見舞金’이 위로금으로 번역되어 보도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보도는 민간기금 형태로 일본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위로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며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한 격렬한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저자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키고자 했던 보수 그룹이 자신들의 구상을 언론사에 흘린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물론 실제로는 달랐다. 실제 피해자에게 지급된 일시금은 한국어로는 보상(1996년 8월 3일 아시아여성기금 한국어 설명문)과 사과금(1998년 1월 6일 한국 신문광고), 영어로는 사죄(atonement, 속죄)의 이름으로 제공되었다. 문제가 되는 것은 1994년 『아사히신문』 보도 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위로금 보도를 강력하게 부인하지 않아서 오해를 증폭시켰다는 점이다. 아시아여성기금을 둘러싼 국내적 갈등에만 신경 쓴 나머지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서툴렀던 것이다.

저자는 보상과 사과금이라는 단어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은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없기에 보상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償い金を 지불한다. 이것은 법적 책임에 대한 보상은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의 인식과 사죄에 기반하는 지불이다”라는 논리 하에서 진행

되었기 때문에 ‘속죄금’ 혹은 ‘사죄금’이 훨씬 적당한 번역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보상으로 번역됨으로써, 보상을 할 수 없는데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모순적인 상황을 스스로 자초했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일본의 사죄를 표명하기 위해 지불된 일시금이 일본 정부의 공적 자금이 아니라 민간모금액에서 충당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일본 정부는 1995년 6월 사무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료복지지원을 위해 정부자금을 거출하기로 결정하면서 공적 자금을 투여하였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전달된 일시금에는 일본 정부의 자금이 포함되지 않았다.

저자는 일시금 금액을 둘러싼 일본 내 조정과정을 소상하게 전달하고 있다. 아시아여성기금 측이 300만 엔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2차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 수용소 입소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가 피해자에게 지불한 200만 엔과 같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문제는 1인당 200만 엔일 경우 3억 3천만 엔 정도 모금된 국민기금으로 충당이 가능할지 여부였고, 결국 부족분에 대해서는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수상이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는 양해를 받았다. 결국 일본 정부는 공적 자금을 사용할 의사가 존재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통해 저자는 처음부터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지불한 일시금을 속죄금 혹은 사죄금의 이름으로 정부의 공적 자금을 사용했다라면 피해자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었다며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일본 정부가 도의적 책임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해 법적 청산이 끝났다는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 도의적 책임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했으며, 이와 연관성 속에 아시아여성기금이 민간기금이라는 명목논리를 전면화하였다. 그러나 한국 사회 및 피해자들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반성하고 사죄한 것과 도의적 책임론은 모순된 것으로 비쳤으며, 일부 언론은 위로금 보도를 연상하며 도의적 책임론은 일본 정부가 ‘말로만’ 반성과 사죄를 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일본 정부의 도의적 책임론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책임론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는 1996년 쿠라스와미 보고서 및 1999년 맥두걸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명기되면서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이로써 역사화해의 증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아시아여성기금은 오히려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의 화해하기 힘든 대결만 남긴 채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이러한 1라운드의 실패는 법적 논리 혹은 형식 논리에 집착하지 말고 피해자와 공감하며 이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요구를 최대한 배려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겨주었다. 그리고 2라운드에 있어 그 교훈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0월 28일 사이토 관방부장관과 이동관 특사는 4개항을 합의했다고 한다. 이 4개항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협의하고 그 합의내용을 공동성명으로 발표한다. 일본 수상은 새로운 사과문을 낭독하고 그 속에서 도의적 책임이 아닌 책임을 인정하는 문구를 포함시킨다. 주한일본대사가 피해자 할머니를 방문하고 수상의 사죄문과 사죄금을 전달한다. 제3차 한일역사공동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산하에 위안부문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한일 공동연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일본 정치일정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수상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제3라운드는 결국 1라운드와 2라운드의 실패와 그 교훈을 바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저자는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연대회의가 2014년 6월에 발표한 「일본 정부에의 제언: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를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주장했던 법적 책임의 구체적 내용을 밝힌 위 제언은 고노 담화와 유엔보고서 등의 인식을 바탕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위에서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죄, 배상, 진상규명,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저자는 피해자 및 피해자 지원단체가 법적 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예전과는 달리 상당히 완화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있는 듯하다.

이렇듯 본 저서는 아시아여성기금에 관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의 활동을 객관화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방향에 있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밝혀내고자 했으며, 이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다.

다만 이 책에서 학문적으로 매우 논쟁적인 지점이 아쉽게도 짧게 언급되고 끝나버렸다. 역사 문제를 둘러싼 전후 한일관계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확대복원하는 것은 연구사적 관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보여진다. 저자는 고노 담화와 아시아여성기금이 1965년 체제의 ‘첫 수정’이라고 평가하였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첫 수정이라고 말하는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나,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법적 청산이 모두 끝났다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있어 남겨진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에서 첫 수정이라고 보는 것 같다.

반면 기무라 간[木村幹] 교수는 1992년 1월 21일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상을 요구한 것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저자는 기무라 교수가 말한 1월 21일의 방침전환은 사실로 확인할 수 없었으며, 그 전후의 한국 정부 발언을 보면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의 의사를 알아보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며 사실관계를 수정하였다. 어찌되었든, 기무라의 논법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대두와 이에 따른 한국 정부의 보상 문제 거론으로 인해 1965년 체제의 중대한 전환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어찌 보면 ‘골 포스트를 옮겼다’라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기실 1965년 체제의 변동이 일본의 과거사 정책 변화 때문인 것이지, 한국의 보상제기 때문인 것이지 그 정확한 분석은 필요해 보인다. 1990년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수상은 “과거 일시기, 한반도가 우리나라의 행위에 의해 견디기 힘든 어려움과 슬픔을 체험한 것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고 솔직히 사죄의 심정을 말씀드립니다”라며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하였다. 동시에 사할린 한일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으며, 한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40억 엔을 지원할 것을 표명하였다. 1988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요구한 23억 달러의 보상과 사죄 요구에 대해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난 문제라고 일축했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1993년 역사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수상 또한 8월 23일 시정방침 연설에서 “과거 우리나라의 침략행위와 식민지 지배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점”에 대해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다. 동시에 8월 25일, 호소카와 수상은 “전쟁책임과 전쟁 보상을 분리해서 생각할 방침”이라고 말하며 식민지 관련 보상 문제는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사할린 잔류 한국인의 영주 귀국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후 일시귀국과 영구귀국을 지원하는 사업이 구체화되었다.

이렇듯 1990년 이후 심화된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은 명시적이지 않았지만 일본의 책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안이 되고 있는 역사 문제(한인 원폭피해자 문제, 사할린 잔류 한국인 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에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저자가 분석한 고노 담화와 그 후속조치로 아시아여성기금 또한 이러한 예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의적 책임론은 이러한 일본의 새로운 과거사 정책과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한 기존 해석 사이의 괴리를 논리적으로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인 것이다. 그리고 비록 ‘도의적’이라는 단어가 첨부되었더라도 도의적 ‘책임’론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이상, 보상과 배상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실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저자는 일본 정부가 일시금 금액 조정 과정에서 보상으로 변역되었던 ‘償い金’에 정부 자금을 투여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은 요구하되 일본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갖기 위해 물질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처음 불명확하지만 보상 문제를 언급한 것은 1998년 시점으로 보인다. 1998년 1월 26일, 당시 유종하 외무장관은 국회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에는 군대위안부 문제의 불법성이 논의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일본이 이제 와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발언하였다.

그렇다고 이후 한국 정부가 보상이나 배상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언급한 적은 없다. 오직 법적 책임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골 포스트’를 옮겼다는 주장보다 일본의 과거사 정책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국가 보상 문제가 불가피하게 등장했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는 정책적 관심이 ‘역사 문제 관련 전후 한

일관계의 변화와 연속'이라는 보다 큰 학문적 관심을 덮어버리기는 했지만, 이 책은 정책적 그리고 학문적으로 매우 유용하며 심도있는 논의를 이끌어내고 있음은 확실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 5. 28. 규칙 제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독도연구소장, 역사연구실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제19호, 2007. 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동북아역사재단

부 칙<제43호, 2010. 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역사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에서 실무를 총괄할 편집이사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림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 (A, A, A)
 -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B, C) (B, B, C)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 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 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nahf.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족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 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 1> 1)> (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동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齋鶴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장석호 동북아역사재단 역사연구실장

● 편집이사

박선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편집위원

김문자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김은숙 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김정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남상호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안병직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이종국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종수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현혜 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임상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전호태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병삼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재윤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혜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최영호 영산대학교 일본비즈니스학과 교수

허동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50호(2015. 1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초판 1쇄 인쇄 2015년 12월 24일

초판 1쇄 발행 2015년 12월 31일

펴낸이 김호섭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81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